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04-01

201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Nation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10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과)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보조연구원	이자영(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목 차

[연구요약]	1
제1편 [서론]	15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장 주요 연구내용	18
제1절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18
1. 사형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18
2. 사형에 대한 대체형벌의 유형과 도입가능성 논의	18
3.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논의	19
제2절 실태조사 연구의 방법	19
제2편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고찰]	23
제1장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25
제1절 사형 존폐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25
1. 1997년까지의 논의 동향	25
가. 헌법적 관점	26
나. 법철학적 관점	26
다. 법사회학적 관점	26
라. 형법적 관점	27
2. 2006년까지의 논의 동향	27
가. 존치론	27
나. 축소와 개선론	28
다. 폐지론	28
3. 2007년 이후의 논의 동향	29
가. 사형존폐론의 구체화	29
나.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29
다.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실증적 분석	30
제2절 국가기관별 동향	30
1. 법무부	30
가. 사형제도의 폐지 반대	30
나. 대검찰청 형사법제과의 연구용역	31
다. 사형제도와 명목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31
2. 대법원	32
가. 헌법재판소 이전: 헌법정신이 결여된 형식적 위헌 판단	32

나. 2000년대 중반 이전: 사형허용요건의 실질적 검토	33
다. 현재	33
3. 헌법재판소	34
가. 부적법 각하와 사실 판단의 유보	34
나. 합헌판단	35
다. 개별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36
4. 국가인권위원회	37
가. 공식적인 사형폐지 입장의 표명	37
나. 적극적인 사형폐지 의견의 개진	37
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내 사형폐지 활동의 지원과 협력	37
제3절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 전개	38
1. [의안번호 152463] 15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	38
2. [의안번호 161085] 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8
3. [의안번호 171129] 17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39
4. [의안번호 180928]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40
5. [의안번호 186259]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40
6. [의안번호 1809976]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40
7. [의안번호 1909976] 19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41
제2장 사형대상범죄와 사형제도 운영 현황	42
제1절 사형대상범죄와 문제점	42
1. 사형대상범죄	42
2.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52
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의 도입	52
나.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규정	52
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의 도입	53
라. 상해행위에 대한 사형의 도입	53
마.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53
3. 대통령 긴급조치를 통한 사형선고와 집행의 위험성	54
제2절 사형의 선고현황	54
1. 1980년~1997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54
2. 1998년~2012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55
3. 2013년 이후 하급심의 사형선고 경향	56
제3절 사형의 집행현황	57
1. 사형집행의 목적	57
2. 사형집행의 계획	57
3. 사형집행의 절차와 집행정지	58
가. 구신과 집행	58
나. 사형의 집행정지	60
4. 신뢰할 수 없는 사형의 집행통계: 공식통계의 부존재	60

가.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부정확성	60
나.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불투명성	62
5. 1980년~1997년 사형집행의 현황	64
제4절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처우	64
1. 법적 근거	64
2. 사형확정자의 수용	65
3. 사형확정자의 처우	66
제3장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67
제1절 국내 논의의 동향	67
1. 개념	67
2. 사형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	67
가. 국회	67
나. 헌법재판소	68
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여론조사	68
3. 사형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입장	68
가. 논의의 출발	68
나. 논의방향	69
4. 2005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의견	73
5. 2009년 형사법 개정 연구	73
6. 2017년 통일형법시안	74
제2절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동향	74
1. 서설	74
2. 사형폐지와 종신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	75
가. 국제연합(UN)의 규칙	75
나. 유럽의 기준	77
3. 유럽국가	79
가. 일반적인 동향	79
나. 상대적 종신형만 존재하는 국가	79
다. 사면이 허용되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중된 종신형을 두고 있는 국가	89
라.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수위가 종신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되어 있는 국가	91
마. 중간요약	92
4. 미국	101
가. 사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101
나. 종신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102
다. 주정부별 종신형제도의 운용 경향	103
라. 종신형 수형자의 현황	105
마. 여론조사와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의 결정	108
바. 최근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	108
사. 텍사스 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110

5. 일본	111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중(重)무기형의 도입 검토	111
나. 중무기형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112
다. 중무기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112
라. 무기형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오인	113
마.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의 추진	113
제3절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114
1.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114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	114
가. 위헌성	114
나. 형벌목적과의 관계	115
다. 교정처우상의 문제	115
3. 소결: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115
제4절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116
1. 서설	116
2.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의 도입	117
3. 범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118
제5절 사형폐지 법률 개정 및 입법방식	119
1. 비교법적 검토	119
2. 국제적 기준 검토	120
3.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검토	120
4.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122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	122
나.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개정	124
제4장 결론	126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관련 조사결과]	129
제1장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131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131
제2절 조사설계	132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132
2. 조사방법	133
3. 조사내용	134
4. 조사대상자 특성	136
제2장 일반국민대상 조사결과	138
제1절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8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138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40
3. 사형제도 폐지 및 찬성이유	142
4. 가족 중 사형수 및 사형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43
5.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와 피해자 가족의 극복방법	144
6.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145
7.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146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150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150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152
3. 사형제도의 필요성	154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156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156
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 인식	156
나.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159
다.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160
라.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164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166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166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 대한 인식	168
다.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169
라.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	170
마.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172
바.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173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175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177
제4절 설문 이후 인식변화	179
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179
가.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	179
나.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183
2.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185
제3장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188
제1절 일반국민과의 인식비교	188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188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189
3.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 및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	189
4.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191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193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193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194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194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194
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194
나.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195
다.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195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196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196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	197
다.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197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198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198
제4절 전문 분야별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인식	199
1. 시민단체 대상 사형제도에 폐지시 인권 및 피해자 보호관련 우려사항	199
2. 언론인 대상 사형제도와 언론	200
3. 범조인 대상 추가 조사항목	201
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 동의여부	201
나. 사형제도와 우리나라의 안전성 여부	201
다.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	202
라.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202
마. 주요범죄별 사형제도의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203
4. 교정공무원 대상 추가 조사항목	204
5. 국회의원 관련 추가 조사항목	204
제4장 조사의 함의	206
[참고문헌]	209
[부록] 사형제도 관련 양식	217
[국민인식 조사 설문지(일반국민/시민단체)]	233
[전문가 대상별 조사 설문지]	242
1 언론인	242
2. 범조인	252
3. 교정공무원	264
4. 국회의원	276

표 목차

표 II-1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들에 규정된 사형대상범죄	42
표 II-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 인원	61
표 II-3	군사재판에 의한 민간인 등 사형집행 인원(제주4.3사건)	62
표 II-4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여순사건)	62
표 II-5	한국전쟁기간 특조령 적용 부역자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	63
표 II-6	1950-1955년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인원	63
표 II-7	사형폐지법안의 발의와 제시된 대체형벌	67
표 II-8	유럽 국가별 사형폐지를 규정한 헌법 조문 비교	94
표 II-9	유럽 국가별 종신형의 비교	95
표 II-10	사형과 종신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유기징역형제도 개관	98
표 II-11	국가별 종신형제도의 개관	99
표 II-12	주정부별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와 종신형의 형태	104
표 II-13	주정부별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의 분포(2012년 기준)	106
표 II-14	2007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7개 주에서의 절대적 종신형제도	109
표 III-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132
표 III-2	일반국민 표집수	132
표 III-3	조사방법 개요	134
표 III-4	조사내용	134
표 III-5	분야별 전문가 대상 추가 조사항목	135
표 III-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136
표 III-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전문가)	137
표 III-8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139
표 III-9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일반국민)	140
표 III-10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41
표 III-11	응답자 특성별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144
표 III-12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을 통한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 완화(일반국민)	145
표 III-13	응답자 특성별 사형선고에 대한 오관가능성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47
표 III-14	응답자 특성별 오관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148
표 III-15	응답자 특성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50
표 III-16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	151
표 III-17	사형제도 인식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51
표 III-18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일반국민)	152
표 III-19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53
표 III-20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54
표 III-21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155
표 III-22	사형제도 인식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	156

표 III-23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157
표 III-24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158
표 III-25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158
표 III-26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60
표 III-2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60
표 III-2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응보_일반국민)	161
표 III-2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응보_일반국민)	162
표 III-3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162
표 III-3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163
표 III-3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163
표 III-3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164
표 III-34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65
표 III-35	국가의 사형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65
표 III-3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67
표 III-3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67
표 III-3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168
표 III-3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169
표 III-4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70
표 III-4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170
표 III-4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71
표 III-4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72
표 III-44	응답자 특성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74
표 III-45	사형제도 인식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74
표 III-4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76
표 III-4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76
표 III-48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78
표 III-4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78
표 III-5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181
표 III-5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182
표 III-52	응답자 특성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184
표 III-53	사형제도 인식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184
표 III-54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 비교	188
표 III-5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 비교	188
표 III-56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비교	189
표 III-57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	189
표 III-58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	190

표 III-59 사형선고에 대한 오관가능성의 평가	191
표 III-60 오관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 비교	192
표 III-61 오관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 비교	192
표 III-62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 비교	193
표 III-63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 비교	193
표 III-6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비교	194
표 III-65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 비교	195
표 III-66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 인식 비교	195
표 III-67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비교	196
표 III-68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비교	196
표 III-69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전문가)	197
표 III-70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 비교	197
표 III-7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 비교	198
표 III-72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동의여부 비교	199
표 III-73 법조인들의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판결 동의여부	201
표 III-74 법조인들의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에 따른 사회상황 인식	202
표 III-75 법조인들의 사형집행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202
표 III-76 법조인들의 사형선고의 오관을 인식	203
표 III-77 주요 죄형별 사형제도 찬반여부와 대체형벌	203
표 III-78 사형제도 폐지여론에 대한 동의여부	205

그림 목차

그림 III-1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일반국민)	138
그림 III-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일반국민)	139
그림 III-3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41
그림 III-4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142
그림 III-5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143
그림 III-6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143
그림 III-7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일반국민)	144
그림 III-8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할 수 있는 방법(일반국민)	146
그림 III-9	사형선고에 대한 오관가능성의 평가(일반국민)	146
그림 III-10	오관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148
그림 III-11	오관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일반국민)	149
그림 III-12	오관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보상 인식(일반국민)	149
그림 III-13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150
그림 III-1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153
그림 III-1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155
그림 III-16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157
그림 III-17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159
그림 III-18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일반국민)	161
그림 III-19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164
그림 III-20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	166
그림 III-21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168
그림 III-22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	169
그림 III-23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171
그림 III-2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173
그림 III-25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73
그림 III-2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175
그림 III-27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175
그림 III-28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77
그림 III-29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179
그림 III-30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일반국민)	180
그림 III-3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_일반국민)	180
그림 III-32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일반국민)	183
그림 III-33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일반국민)	183
그림 III-3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의 유형(일반국민)	185
그림 III-35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1: 당장 폐지)	186
그림 III-3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2: 향후 폐지)	186
그림 III-37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3: 소극적 유지)	187

그림 III-38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4: 적극적 유지)	187
그림 III-39 언론인 대상 추가질문	200
그림 III-40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	206
그림 III-41 상황에 따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207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추세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사형폐지국가는 142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106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7개국, 사실상 폐지 29개국)이며, 사형존속국가는 56개국(사형집행국가는 23개국)임
 - 이러한 결과는 지구촌 198개 국가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사형을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사형존속국가 중 40% 정도만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지난 제1기와 제2기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집행의 정지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었고, 법무부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설계과정에서 사형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의도한 바 있음

□ 연구의 방향과 목적

- 그러나 이제는 정책수립과 그 방향성을 더 이상 국민감정에 기대어 사형폐지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이끌기보다 제도 폐지를 위한 인식 변화 및 개선을 향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으로 변경해야 하며 그 목표는 생명존중의식과 문화를 증진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생명권 존중을 실천하는 전략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사형제도의 법적인 폐지 및 대체형벌의 도입을 통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야 함
- 이 연구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형제도의 폐지 및 대체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 사형제도 관련 문헌연구 :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연구

- 사형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사형에 대한 대체형벌의 유형과 도입가능성 논의
-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논의

□ **사형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 조사
- 사형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조사

II.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연구

1.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 **사형 존폐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 1997년까지의 논의 동향
 - 이 시기에는 헌법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 법사회학적 관점 및 형사정책을 포함한 형법적 관점에서 존속과 폐지의 견해가 제시되었음
 - 주로 교과서 등에서 이른바 ‘조건부 사형폐지’가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우회적인 사형존치론에 가까웠음
- 2006년까지의 논의 동향
 - 사형제도의 단계적 폐지 또는 점진적 폐지가 주장되었으나 이는 소극적 존치의견에 가까웠음
 - 학계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의의 공론화를 요청하였음
- 2007년 이후의 논의 동향
 - 사실상 사형집행이 중단되고 10년을 경과하게 된 시점에서 사형제도와 헌법상 생명권 보장의 현실적 한계 여부를 검토한 연구결과 등이 나오면서 사형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또한 이 시기부터는 사형폐지와 함께 고려해야 할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음
 -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도 다수 출간되었음

□ **국가기관별 동향**

- 법무부
 - 사형제도의 존속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일관되게 표명해 왔음
 -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인 기능과 국민여론과 법감정, 그리고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출범 이전부터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해 왔음

- 1990년대에 들어서도 사형에 대한 기존의 합헌 입장을 재확인해 왔음
-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사형선고의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사형허용요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왔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사형허용요건의 엄격성과 논리적 사형 반대의견이 등장하였음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그 출범 이후 초기에만 하더라도 사형제도에 관한 심판사건에서 부적법각하로 결정하거나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였음
 - 199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
 - 2005년 4월 6일 개최된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에 관한 전향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였음
 -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에 선행하여 지속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국가에 권고하는 의견 제시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내 사형폐지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음

□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 전개

- 1999년 12월 7일에 제안된 15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의안번호 152463]은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에 중전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였던 부분은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사형존폐 문제에 관한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있었을 뿐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는 없었음
- 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61085]은 사형폐지와 법원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한 경우 수형자가 복역개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선고(상대적 종신형)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법안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대체형벌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17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71129]은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내용과 논의 대상도 과거에 비하여 구체화되었음
- 18대 국회에서는 사형폐지법안이 세 차례나 중복 제안되었고, 모두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규정하였음
- 19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09976]은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내용으로 규정하였음

2. 사형대상범죄와 사형제도 운영 현황

□ 사형대상범죄와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형법을 비롯한 20개 법률에서 155개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함

□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의 도입
 -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20개 법률 중 16개 법률에서 인명침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태도는 당해 범죄행위와 법정형 간에 균형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규정
 - 미수범의 불법과 기수범의 그것 간에는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 그럼에도 기수범에 적용되는 사형규정을 아무런 고민 없이 미수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의 도입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결합범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사형대상범죄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형을 도입하고 있어 책임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상해행위에 대한 사형의 도입
 - 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상해행위에 대해서도 사형규정을 둔 예를 발견할 수 있음(예: 항공안전법 등)
 - 상해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형준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보아야 함
-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명시하고 있는 범죄는 형법상의 여적죄(제93조)뿐만 아니라 균형법상의 다수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사형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리적 양형의 선택폭이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하게 좁아 구체적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과잉금지위반이라는 비판 제기

□ 사형의 선고현황

- 1980년~1997년까지 제1심 사형선고
 - 1980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18년의 기간 동안 제1심 형사재판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된 인원은 모두 425명(연평균 23.6명)이었음
 - 시기별로는 1980년 이래로 1987년까지(제5공화국)가 188명(44.2%), 1988년~1992년(제6공화국)의 경우 129명(30.4%), 1993년~1997년(문민정부)은 108명(25.4%)이었음
- 1998년~2012년까지 제1심 사형선고
 -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심 형사공판에서의 사형선고 인원은 모두 115명(연평균 7.7명)에 달함
 -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는 주로 살인(60명), 강도살인(33명), 성폭력특별법 위반(11명), 특정범죄가중법 위

반(6명) 등 고의적인 생명침해범이며, 과거와 달리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무하였음

○ 2013년 이후 하급심의 사형선고 경향

- 2013년의 경우 제1심에서는 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으나 상급심에서는 이를 무기징역으로 완화하였음
- 그러나 2014년에는 항소심이 제1심의 사형선고를 유지하면서, 2013년과는 달라진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음
- 2018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실시하였음

□ 사형의 집행현황

○ 신뢰할 수 없는 사형의 집행통계: 공식통계의 부존재

-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인원은 902명(중앙시사매거진, 2005), 998명(한국경제신문, 2006), 919명(경향신문, 2009), 920명(한겨레신문, 2012)등 제각각이었음
- 국정감사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서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923명이라고 함
- 그러나 각각의 통계수치가 달라 사형집행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오차는 국내의 관련 통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채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 선포된 계엄 상황 아래의 민간인과 통상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인원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임

○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불투명성

- 군사법원(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불분명한 차원을 넘어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

○ 1980년~1997년 사형집행의 현황

- 198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9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이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모두 166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음
- 그러나 1981년, 1984년, 1988년, 1993년, 1996년 등 5년간은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있었던 것은 13년간이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8명씩을 집행한 것임

3.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 국내 논의의 동향

○ 사형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

- 국회에서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5차례에 걸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될 때마다 종신형은 그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의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태도를 굳건히 유지했으나, 2010년 결정에서

소수 위헌의견(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자유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사형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학계의 입장으로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론,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 절충적 입장(현 단계에서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종국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 도입), 절대적 종신형 도입 반대론, 현행 무기징역형의 실무상 운용론 등으로 나뉘고 있음
- 2005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에서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2017년 통일형법시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공동연구 결과)에서는 통일한국의 형법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음

□ 사형제도 및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기준

○ 사형제도 및 종신형에 대한 국제연합(UN)의 기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7조는 비인도적인 형벌을 부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은 수감제도에 있어서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의정서) 제1조는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형폐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은 사형유지국가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의 유예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형폐지국가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재도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음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의 선고나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금지하고 있음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항과 제110조 제3항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성인범죄자에게도 선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사형제도 및 종신형에 관한 유럽연합(EU)의 기준

-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제1조는 사형폐지를 명시하고 있음
- 유럽이사회는 수형자가 더 이상 사회에 대하여 위협하지 않음에도 그를 평생 동안 가두는 범죄예방정책은 형을 집행하는 동안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현대적인 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범죄자의 사회로의 재통합 이념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권고하였음
- 유럽인권재판소는 사형의 집행은 물론 가석방의 기회가 없는 종신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 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유럽국가

-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로 상대적 종신형은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구금을 의미하지 않음

- 그러나 상대적 종신형은 일의적이지 아니하며 개별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

○ 미국

- 미국은 최근 워싱턴 주 대법원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함으로써 워싱턴 주를 포함하여 총 20개 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됨
- 미국 연방정부는 사형과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채용하고 있으며,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 사형이 폐지된 3개 주(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에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였고,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3개 주(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음 사형이 폐지된 16개 주와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27개 주 등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모두 도입되어 있음
-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형벌의 명칭이 절대적 종신형(life-without-parole)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20년 내지 25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사실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과 동등한 경우도 있음
- 미국에서의 종신형제도와 관련하여 사형을 폐지한 주정부에서는 종신수형자의 처우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주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제도의 실익이 논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

○ 일본

- 현행 형법상 무기형제도와 다른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중(重)무기형의 도입 검토
-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중무기형의 창설을 시도했으나 국회 다수파의 찬성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함
- 인도적인 차원과 교정시설의 질서유지 및 과다수용 비용의 발생을 이유로 한 중무기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가 대두되고 있으며, 무기형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오인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의 추진과정에서 치밀한 검증과 정확한 인식 아래 국민 여론과 현장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사회적으로 타당한 형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응보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요구됨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회방위 기능(무해화)을 달성하기 어려움
-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잔혹한 형벌로서 인권에 반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에 비하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형벌임
- 궁극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바람직함

○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

-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움
- 절대적 종신형은 재사회화나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음
-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들을 실제로 감호하는 현장에서 볼 때 행형성적이 아무리 양호해져도 혜택이 없으며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까닭에 갇힌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게 됨

○ 소결: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를 절망에 빠트리게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사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적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상대적 종신형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선(원칙적으로 30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5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 자력있는 범죄자가 피해회복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유족이 곧바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 자력있는 범죄자가 피해회복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 도입

-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함

○ 범죄자에게 피해회복의사가 있으나 자력이 없는 경우

- 유족이 피해자기금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기금이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범죄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함

□ 사형폐지 법률 개정 및 입법방식

○ 비교법적 검토

- 외국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법방식이 취해졌음
- 독일에서는 헌법(독일기본법)을 제정할 때부터 사형폐지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독일형법상 절대적 종신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상대적 종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사형폐지법을 제정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이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사형폐지를 프랑스 헌법에 명기하였음

- 터키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 집행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했음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검토
 -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대상자의 3분의 2 이상(66.9%)이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1) 절대적 종신형, 2) 절대적 종신형 + 손해배상, 3) 상대적 종신형, 4) 무기징역 등을 제시하였을 때 설문대상자들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압도적인 찬성(절대적 종신형만 제시한 경우 78.9%, 손해배상도 추가한 경우 85.2%가 동의함)을 나타낸 반면, 상대적 종신형과 무기징역의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상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60.9%,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55.5%가 동의하지 않음)이 더 많았음
 - 설문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은 현행 무기징역에 비하여 훨씬 강화된 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 명칭을 종신형으로 함
 -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할 때는 가석방불허기간을 정하도록 함
 - 가석방의 심사절차도 무기형과 달리 종신형의 경우 보다 어렵게 규정해야 함
 - 이른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되,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결론

□ 사형폐지 및 종신형 도입

- 일체의 석방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보다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사형을 폐지하면 국가형벌의 위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어 흉악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종신수형자의 가석방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조건과 의무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형태의 강력한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 방안

- 사형을 폐지하되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이를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경제적 배상을 받

기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함

- 범죄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피해자유족 등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종신형의 구체적 내용**

-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할 때는 유기징역형의 형기상한(30년 이상 50년 이하)을 참작하여 가석방불허기간을 정함
- 가석방의 심사절차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기수형자와 달리 종신수형자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가석방결정을 하게 함
- 종신수형자의 가석방기간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신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함
-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전자발찌)을 필요적으로 받게 함
- 사형의 대체형벌로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방식으로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아울러 형법의 형의 선고, 형의 양정, 형의 집행, 가석방 규정 등을 종신형 도입에 맞추어 개정해야 함 (법률개정안 제시)

III.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관련 조사결과

□ **조사설계**

- 일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 비례할당을 통하여 표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인 (주)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 ±3.1%p 오차범위)하였고, 전문가들은 인권 및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국회의원, 법조인, 교정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132명에 대하여 개별면접조사와 전화 및 웹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조사대상	표본수	표집대상	조사방법
일반국민	1,000명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95%신뢰수준 ±3.1%p 오차범위)
전문가	전체	132명	시민단체, 언론인, 국회의원, 법조인, 교정공무원 등 대상
	시민단체	32명	인권 및 범죄피해자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30명	신문, 통신, 방송사 등
	국회의원	6명	국회의원
	법조인	54명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교정공무원	10명	교도관, 교정위원 등
			개별면접조사 (웹 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 전문가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실시함

- 조사방법은 문항개발을 위한 문헌조사 및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연구진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문항에 대하여 본 과제의 중간보고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 일반국민 대상 주요 조사결과

-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대체로 높은 편(67.9%)이나 이 중 대부분이(82.5%) 언론보도를 통해 사형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본권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36.6%)’이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명권(27.7%)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 반면, 국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35.2%)’이라 응답하고, 다음으로 자유권(24.1%)이라 응답함. 이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71.0%) 및 범죄예방효과(84.5%)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형벌목적에도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조사결과에 비하여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는 의견이 증가한 반면, 폐지하지는 의견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로 ‘흉악범죄의 증가’, ‘사형제도의 위하력’, 그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응보적 입장’ 순으로 조사된 반면,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 ‘오판가능성(22.7%)’, ‘국가의 생명권 박탈 부정(17.7%)’, ‘정치적으로 악용 우려(14.3%)’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로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가 11.6%,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15.6% 나타남
- 사형제도 폐지 의견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당장 폐지(4.4%), 향후 폐지(15.9%)였던 것이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폐지 53.9%,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폐지는 6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의 상황변화에 따른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황변화에 따라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사형제도의 대체형벌과 관련하여 주로 ‘절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전체의 37.5%가 동의하고 있으나,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및 향후 폐지’하지는 집단의 경우 각각 79.5%와 77.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29.3%)’ 및 ‘사형제도를 더 강화 (21.1%)’하지는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시 일반국민들의 45.5%가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도 6.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 혹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소극적 반대 37.0%, 적극적 반대 10.5%로 조사됨.
- 소극적 혹은 적극적 반대의사는 대부분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집단에서도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겠다는 의견이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선고/집행에 신중’ 입장에서는 41.6%, ‘사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27.6%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한 정보습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69.9%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7.7%는 새로운 정보습득을 통하여 인식변화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존의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사형제도의 향후 폐지’ 의견 및 ‘사형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나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감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한 부정확하거나 단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설문 이후 새로운 정보습득 및 인식변화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함. 특히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책이 요구됨
- 생명권 존중에 대한 인식 및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견해는 서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들은 시대적 상황변화 및 여건, 그 밖에 인권의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사형제도의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더 많이 찬성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할 경우 응답자의 66.9%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일반국민들의 3분의 2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한 적절한 대체형벌의 마련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에 일반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과반수 이상이 수용 또는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은 향후 입법정책결정에 참고할 수 있음

□ 전문가 대상 주요 조사결과

- 전문가들의 사형제도의 인지율은 일반인들에 비하여 23.8%p 높았으며, 사형제도를 인지하는 경로가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언론보도는 41.8%p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교육과 논문 등 전문자료는 각각 13.8%p와 20.1%p 높게 나타남
- 기본권과 관련하여 생명권을 자신 및 국가에게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가 일반국민에 비하여 각각 14.7%p와 14.0%p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은 일반국민(16.5%)에 비하여 29.0%p 높은 수치이며,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일반국민(59.5%)에 비하여 22.4%p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71.0%) 및 범죄예방효과(84.5%)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형벌목적에도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국민들은 비교적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사형제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임
-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77.7%가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일반국민들에 비하여 10.8%p 높음) 볼 때 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는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유사하게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68.2%), 상대적 종신형(56.8%), 무기징역(54.5%) 순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37.5%, 전문가들의 62.9%가 동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분야별로는 시민단체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비율이 90.6%로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법조인과 언론인은 60%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70.2%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문항에서 사형제도 폐지 시 우려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상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로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형이 가지고 있는 위하력이 사라져 범죄가 증가하고 사적복수의 수단으로 살인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형집행 보도와 범죄예방 효과의 관련성에서 언론인들의 56.7%가 사형집행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형집행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은 30.0%로 나타남
-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항목에서는 법조인들의 61.5%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으며, 주로 판사와 검사가 합헌에 동의하는 비율이 대학교수와 변호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리고 문화수준과 사회현실의 불안전성과 관련하여 법조인들의 69.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

고, 25.0%가 우리나라의 사회상황이 사형제도를 유지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주요 죄형별 사형제도의 찬반여부와 대체형벌과 관련하여 대체로 정치범, 공안사범, 군사사범의 경우 사형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형사범과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사형을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체형벌에 있어서도 일반형사범과 특정범죄사범의 경우에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찬성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정치범과 공안사범, 군사사범의 경우에는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명/%)

구분		빈도	사형찬성	사형반대	절대적종신형	절대적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상대적 종신형	무기징역
일반형사범	살인죄	53	43.4	56.6	48.3%	34.5%	17.2%	0.0%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	53	30.2	69.8	25.7%	48.6%	22.9%	2.9%
	강도살인죄	53	45.3	54.7	46.4%	35.7%	17.9%	0.0%
	강간살인죄	53	45.3	54.7	57.1%	28.6%	14.3%	0.0%
특정범죄	상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18	34.0	66.0	51.5%	27.3%	21.2%	0.0%
	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8	35.3	64.7	57.6%	30.3%	12.1%	0.0%
정치범	내란목적 살인죄	14	26.4	73.6	40.5%	27.0%	27.0%	5.4%
	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8	15.1	84.9	31.9%	31.9%	31.9%	4.3%
공안사범	여적죄	53	18.9	81.1	38.6%	27.3%	25.0%	9.1%
	간첩죄	53	11.3	88.7	19.1%	21.3%	40.4%	19.1%
	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수괴, 중요임무종사자	53	13.2	86.8	21.4%	28.6%	33.3%	16.7%
군사사범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과 중요임무 종사자	4	7.5	92.5	17.8%	24.4%	40.0%	17.8%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	7	13.2	86.8	14.3%	23.8%	40.5%	21.4%
	적진에서의 명령 등의 허위전달죄	7	13.2	86.8	16.7%	23.8%	38.1%	21.4%

- 교정공무원들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사형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도입에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사형확정자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0%가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50% 수준에서 일반수형자와의 혼거수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혼거수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사형확정자들이 일반수형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제1편: 서론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세 번째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심의에 99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으며, 사형폐지는 23개 국가가 권고한 사항이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형폐지국가는 142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106개국,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폐지 7개국, 사실상 폐지 29개국)이며, 사형존속국가는 56개국(사형집행국가는 23개국)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구촌 198개 국가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그들의 국가형벌목록에서 사형을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이지만 실효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존속국가 가운데 40% 정도만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은 이제 제3기에 접어들었고, 그 정책수립의 방향은 국내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제1기와 제2기의 인권NAP은 폐지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집행의 정지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사형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무부는 제3기 국가NAP의 설계과정에서 사형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위헌성 검토 및 개별 범죄구성 요건에 존재하는 사형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수립과 그 방향성을 더 이상 국민감정에 기대어 사형폐지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이끌기보다 제도 폐지를 위한 인식 변화 및 개선을 향한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으로 변경해야 하며 그 목표는 생명존중의식과 문화를 증진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생명권 존중을 실천하는 전략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의 가입과 사형제도의 법적인 폐지 및 대체형벌의 도입을 통한 사형제도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연구의 결과가 사형제도 폐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회적 논의에 하나의 준거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더 잡아 이 연구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사형제도의 폐지 및 대체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사형제도 관련 문헌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실태조사 연구이다. 문헌연구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정책적 연구가 중점을 이루는 반면,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제1절 문헌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1. 사형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 논의는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특히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생명권 조항의 신설이나 사형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던 관련 헌법 제110조 제3항 단서의 삭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형폐지 및 대체형벌로서의 종신형 도입 문제 등은 주로 형법 및 형사정책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가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논의는 사형을 비롯한 형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개정안 작성과정에서 형사법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었던 사항, 국회에 제출되었던 사형폐지법안의 취지, 사형제도의 위헌논란과 관련된 판례 등을 비롯한 헌법적 차원에서 전개된 논의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2. 사형에 대한 대체형벌의 유형과 도입가능성 논의

사형의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 생명형의 다음 수위에 해당하는 형벌은 종생(終生)의 기간 구금하는 자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사형폐지입법(안)이 제안될 때마다 무기형이 아닌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형의 대체형벌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무기형과 새로이 도입하려는 종신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개념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특히 종신형제도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신형의 개념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입법사례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는 종신형의 선택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과 형벌목적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교법적 분석에 있어서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에서 그 지위를 대체한 종신형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특히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내지 무기자유형이 병존하는 국가, 상대적 종신형만 존재하는 국가로 대별하여 이들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종신형제도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수위가 종신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종신형을 대체형벌에서 제외하게 된 입법적 연혁과 사회적 배경 등을 확인하였다.

종신형을 도입하려면 그것이 인간존엄이나 인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비례성원칙이나 본질침해금지원칙 등에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를 고려해야하고 아울러 법감정이라고 표현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신형은 형벌이라는 형벌제도가 일반적으로 추구

해야 할 목적으로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및 재사회화의 관점들이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유기적인 선순환의 구조로 대체형벌의 수준이 결정될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이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논의

이를 위하여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형폐지 혹은 제한 과정에서의 입법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비교법적 차원에서 사형을 헌법상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지 혹은 형법 등 하위의 법률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헌법에 의한 사형 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과의 관계 속에 규정되고 있는지를 정리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제2절 실태조사 연구의 방법

사형제도폐지와 관련된 기존의 설문조사들은 주로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로 진행되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형제도폐지와 관련된 찬반여부를 주요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사형제도에 따른 효과성 및 영향력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사형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찬반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형제도의 정책개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이분법적 설문을 구성하기보다는 사형제도의 ‘유지·강화’, ‘신중운용’, ‘당장 폐지’, ‘향후 폐지’ 등과 같이 인식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반국민과 함께 인권 및 피해자 보호 시민단체,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조인, 국회의원 등 입법관련 종사자와 교정담당공무원과 같이 사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 집단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각각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국민과 달리 전문가집단의 경우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각 집단의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개별면접조사(일부 웹 조사 및 전화면접)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조사의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집단의 경우 설문초안을 가지고 사전에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일반국민인식조사의 설문구성작업에 그 결과를 반영하기도 했다. 예컨대, 만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정담당공무원과 ‘폐지 찬성’ 및 ‘폐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구진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문항에 대하여 본 과제의 중간보고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주요 항목에 대하여 과거 조사결과(2003년)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형제도폐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국민인식조사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경과한 지금의 사법(司法)환경은 경제, 사회, 문화 각 층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달라졌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30여년 넘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

엇인지,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분화 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평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4점 척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조사의 주요 조사표본 중 일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 비례할당을 통하여 표집대상을 선정하였고, 전문조사기관인 (주)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 ±3.1%p 오차범위)하였다. 전문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5개 전문분야의 13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와 전화 및 웹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생명권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반응, 사형제도의 대안(대체형벌과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설문문항 외에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분류	세부항목
생명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 국가가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의 필요성 •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 사형폐지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 제안 • 극단적 상황(가족이 사형과 관련)에서의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유지의견 시 그 이유 - 사형제도 폐지의견 시 그 이유 • 사형제도와 형벌목적과의 부합 정도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사형제도의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 가능성 •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사형제도 유지·강화 등)의 효과성 • 사형의 대체형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종신형 - 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 상대적 종신형 - 무기징역 - (전문가에 한하여) 장기징역형 • 대체형벌 도입 시 사형제도의 폐지 동의 여부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오판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방법 • 설문 이후 사형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습득여부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연령/거주 지역 • 종교/학력/직업 • 월평균 소득(개인 & 가구소득)

분야별 전문가 대상 추가 조사항목

분류	세부항목
전문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형벌로 장기징역형에 대한 동의여부(시민단체 제외)
시민단체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고, 아래의 질적 문항에 대하여 조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의 대안이 가져오는 인권문제
언론인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와 범죄예방의 효과 • 사형집행 과정 언론 공개 여부
국회의원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의 영향
법조인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과 범죄예방효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 죄형별 대체형벌
교정담당공무원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 전 사형수와의 면회 허용 문제 • 사형수의 수용태도 • 사형집행 참관 경험 유무 및 집행 후 생활의 변화 • 사형집행 시 교화된 사형수 •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등

제2편: 사형제도에 관한 규범적 · 정책적 고찰

제1장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의 동향

제1절 사형 존폐에 관한 학계의 논의 동향

과거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의 다수는 사형제도의 존속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왔다.¹⁾ 그러나 공식적으로 법률 실무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와 연구전문가(특히 헌법 및 형사법)들의 입장은 다수의견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²⁾ 다만 1989년 이후 법학자를 중심으로 발표된 논문들에 나타난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 개선방안이 포함된 대안들을 정리해보면 정량적인 측면에서 사형의 존치보다는 폐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폐지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즉각적인 폐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에 동의하는 소극적 폐지론도 있으며, 이러한 점진적 폐지의견이 절충적이면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문헌에 있어서 학술논문의 경우는 즉각적인 폐지론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존치의견에 가까운 단계적 폐지론에 입각한 서술이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학자들의 견해는 존치와 폐지의 양극단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개선 내지 신중론의 모색을 시도하는 입장들이 관련 논쟁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형제도와 관련된 법률전문가집단의 인식을 조사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하지만,³⁾ 이들의 생각과 태도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현존하는 사형제도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1997년까지의 논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사형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연구자들은 1990년대 말까지-정확하게는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그 논쟁에 있어서 헌법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 법사회학적 관점 및 형사정책을 포함한 형법적 관점에서 존속과 폐지의 견해를 제시해 왔다.⁴⁾ 이 시기의 논의는 연구논문의 형식보다 주로 헌법학이나 형법학 또는 형사정책의 교과서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있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 등에는 이른바 ‘조건부 사형폐지’이 소개되면서 강경한 존치의견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조건부의 사형폐지론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회적인 사형존치론에 가깝다.

1) 예컨대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10., 118~120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9/11;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62쪽; 연구총서 07-09-0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1)-사법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99~100쪽;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63쪽 이하 등 각 참조.

2)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연구자 가운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또는 국책 또는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헌법학 294명, 형사법학 334명(형법 276명, 형사소송법 44명, 형사정책 14명), 경찰행정학 115명, 범죄학 83명(범죄사회학 69명, 범죄심리학 14명) 등 826명을 사형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계의 연구전문가집단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데, 특히 형사법학 분야로 제한 할 때 2009년 3월 16일, 법무부에 제출한 전국 형사법 교수의 사형집행 재개반대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이 가운데 39.5%인 132명이었다.

3) 2016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10., 244~47쪽; 연구총서 07-09-02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1)-사법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99~204쪽 각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하태영, “사형제도의 폐지”, 경남법학 제13호,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32쪽 이하 참조.

가. 헌법적 관점

헌법적 관점에서 사형이 합헌이라는 의견은 그 존폐문제를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과 결부시켜야 할 문제라고 파악하면서도 대법원의 합헌판결에 입각하여 사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⁵⁾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주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⁶⁾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오히려 법리적 논증으로 위헌을 주장하는 견해들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인간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전제하고,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야만적이면서 잔혹한 형벌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은 물론이고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나,⁷⁾ 국가목적에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사형에 대하여 그 존엄성 침해의 현상을 비판하고 헌법 제10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헌임을 주장하는 논거가 제시되었다.⁸⁾

나. 법철학적 관점

사형의 존폐에 대하여 1차적으로 그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논구하려는 태도는 사형을 사회의 도덕적 반응의 표현이자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철학적 정의를 동원하여 한편으로 응보감정의 원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보감정과 결부된 논의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존치론의 하나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인간 생명의 무한성과 함께 국가에게는 사람을 교수할 권리가 없음을 지적하고 정의는 오직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수치가 될 뿐 아니라 국가도덕성의 기초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폐지론의 일각에서 제기되었다.⁹⁾

다. 법사회학적 관점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사형의 문제를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여 아직 우리 사회의 단계는 이를 논의할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사형폐지를 요청하는 연구자들은 즉각적인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는 흉악성을 띠는 범죄현실과 분단으로 인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사형의 존속이 바람직하며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를 살피더라도 폐지가 곤란함을 논거로 제시한다.¹⁰⁾ 그런데 조건부 사형폐지론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진적 형태의 정치적 결단에 따르는 의견은 그 시기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 채 단지 현재 상황에서 그 시기와 조건의 미도래 내지 불충분성에 의존하고 있으나,¹¹⁾ 그것은 조건이 부가된 폐지론이라기보다 사형 존속을 지지하는 태도를 은닉하고 있는 반대 입장의 또 다른 모습에 불과했다.

5)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6, 307쪽.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498쪽.

7) 김일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433쪽; 류지영, “사형의 위헌성”, 논문집 제 20호, 우석대학교, 1998, 135쪽.

8) 심재우,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형벌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9호, 1995년 5·6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3쪽.

9) 이에 대해서는 신진규, 사형, 형사법강좌2, 박영사, 1984, 821쪽;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손해목박사학박기념논문집, 1993, 506~508쪽; 심재우, 앞의 글, 3쪽.

10)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4, 244쪽; 손해목, 형법총론 8인 공저, 법문사, 1988, 521쪽; 김남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8권,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30쪽.

11) 김기두, “사형제도”, 법정 1965년 10월호, 349쪽; 남홍우, 형법강의(총론), 일조각, 1969, 292쪽;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3, 349쪽; 정규만,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제182호, 국회사무처, 1989, 66쪽 등 참조.

그러나 근래에 와서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는 견해들은 존폐의 어느 일방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거나,¹²⁾ 폐지론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¹³⁾ 사형대상범죄의 축소나 그 선고에 있어서 신중성, 사형적용기준의 엄격화 그리고 사형집행을 유예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난다.

사형폐지의 조속한 여건 조성과 가능한 시일 내에 사형을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¹⁴⁾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정치 스스로 계몽되어 자발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사형폐지에 있어 더욱 타당하고 희망적이라는 의견¹⁵⁾ 등은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즉각적인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라. 형법적 관점

형사정책을 포함한 형법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존립 및 그 유지와 범죄예방에 있어 특별한 위하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⁶⁾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폐지론은 형벌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형이 범죄예방이나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¹⁷⁾ 형법이론상 의사론과 책임론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합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¹⁸⁾ 등을 비판의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2. 2006년까지의 논의 동향

가. 존치론

2000년대 중반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학계입장을 존치보다는 폐지의견이 우세했다고 판단하는 연구결과에서도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폐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형폐지에 공감하는 의견이지만 즉시 폐지에는 반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적 폐지론 등은 관점에 따라 소극적 존치의견에 가깝다고 해석한다.¹⁹⁾ 아울러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면서 그 타당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의의 공론화를 요청한다.²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가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의 문화, 역사와 관련되고 헌법적 가치질서의 유지 내지 파괴의 방지를 위한 생명침해는 허용된다거나,²¹⁾ 사형의 시행과정에서의 과도성, 불평등성, 자의성 등의 측면에는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사형은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²²⁾

또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 헌법체계 아래에서 사형은 합헌으로 정당화되고, 공

12)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 제16호, 한국교정학회, 2002, 160~162쪽.

13) 전지연,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2호-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53쪽.

14)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443~444쪽.

15)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314~315쪽.

16) 차용석, “흉악범과 극형”, 신동아 1983년 7월호, 동아일보사, 122쪽;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395쪽;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498쪽;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511쪽

17) 이진호, 형법학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227쪽;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년 4월호, 90쪽; 진계호, 신교형법총론, 대왕사, 1986, 525쪽 등

18) 류지영, “자유 의사와 사형”, 논문집 제14호, 전주우석대학교, 1992, 325쪽.

19) 강석구/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00쪽.

20)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이념논쟁과 국민정서”, 형사정책연구 제17권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33~34쪽.

21) 김상겸, “사형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 국회보 제455호, 국회사무처, 2004, 103쪽.

22) 김인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위헌성 여부”, 교정 제287호, 법무부, 2000, 30쪽.

평하게 적용한다면 그 자체로서 사형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 국민의 감정에 따른 사형의 존치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²³⁾ 아울러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응보개념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봉착하는 것이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흉악범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너무 약한 형벌은 일반시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 복수를 야기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²⁴⁾ 이 시기의 존치론에 있어서도 오랜 연혁적 배경을 깔고 있는 이른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이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대응논리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나. 축소와 개선론

그러나 존폐론 양측의 어떤 논점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변경은 의회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헌법적 평가는 사형규정의 축소와 사형적용기준의 확립을 도모하고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만장일치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엄격화를 요청하는 신중론이 중간지점의 논의로 나타났다.²⁵⁾

또한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지만 시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존치론자의 대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형대상범죄의 축소 및 그 선고에 있어서 대법관의 3분의 2 또는 5분의 4 등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절대다수에 의한 선고의 필요성을 지적하거나,²⁶⁾ 법률상 사형규정은 고의 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해야 하고 법원은 사형선고에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사형의 사실상 유예(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는 집행의 유예)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형대기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의 경과 후 심사를 통하여 무기형으로의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등²⁷⁾ 의 축소 내지 개선의견도 대두되었다.

다. 폐지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형폐지론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구체적이면서 강화된 위헌논증을 나타내는데, 생명에 대한 제한은 언제나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법관 및 사형집행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며,²⁸⁾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전가해 사회에서 이들을 영원히 추방하는 것은 반인륜적이고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나아가 사형집행을 하는 교도관, 구형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마저 침해하게 되는데,²⁹⁾ 존재이유가 명료하지 않은 사형제도는 반성하는 범죄자에게 가해질 경우 그 자의 새로운 시작 가능성,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 그 자의 개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³⁰⁾

23)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15집, 청주대학교, 1999, 56~57쪽.

24)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202쪽 이하 참조.

25) 이훈동, 앞의 논문, 160쪽 이하.

26) 전지연,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2호(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53쪽.

27)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 사형-그 법 이론적, 정책적 검토,” 사목 제246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70쪽.

28)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법학논집 제34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454쪽.

29)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2쪽.

30) 이상혁,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현재의 사형제도,” 사목 제246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93~96쪽.

또한 위하효과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는 사형의 정당성이 논증되지 않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범죄억제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는 한 ‘공공의 복리’를 이유로 한 정당화도 불가하다고 판단한다.³¹⁾

그밖에 한국 사회에 특유한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여 사형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권력 강화나 지속적 권력 장악의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던 뼈아픈 과거사에 입각해 사형폐지의 정당성이 논증되기도 하였다.³²⁾

3. 2007년 이후의 논의 동향

가. 사형존폐론의 구체화

사실상 사형집행이 중단되고 10년을 경과하게 된 시점에서도 사형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법무당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대변하는 논의 결과가 있었고,³³⁾ 근래에도 그 존치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³⁴⁾ 사형제도와 헌법상 생명권 보장의 현실적 한계 여부를 검토한 연구결과³⁵⁾는 이후로 지속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다 시금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타난다.³⁶⁾

현재, 우리 사회의 사형논의는 존폐에 대한 직접적 논쟁보다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의 증거규칙을 엄격히 하고 그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거나,³⁷⁾ 사형 양형판단의 합리성이 향후 사형존폐의 입법과정과 사회적 여론형성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³⁸⁾ 이러한 관점의 실질적인 이동은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거나 사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³⁹⁾

나.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의 본격화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부터는 사형폐지와 함께 고려해야 할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안은 절대적 종신형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⁴⁰⁾ 상대적 종신형을 주장하는 입장들도 나타난다.⁴¹⁾

또한 사형존치를 지지하면서 그동안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형확정자의 처우를 소개한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 형벌로 이해하고,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⁴²⁾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하고,⁴³⁾ 사형제도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체형벌이 논의될

31) 이재석,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8집제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24쪽.

32)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제2호, 한국법학원, 1998, 16쪽.

33)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785~800쪽.

34) 권오걸,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법학연구 제17권제4호, 한국법학회, 2017, 305~325쪽.

35) 이정원, “사형 대상범죄의 축소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543쪽 이하

36) 허완중,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38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09~168쪽.

37) 이정렬, “사형사범: 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569쪽 이하

38) 김한균, “사형의 양형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법무부, 2017, 249~279쪽.

39) 김재윤, “사형 구제제도의 현황과 완비,”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733쪽 이하; 하태훈,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697쪽 이하; 이훈동, “전환기의 한국 형법-사형제도의 새로운 시각,”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433쪽 이하;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5~148쪽 각 참조.

40) 황병돈,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8권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85쪽 이하.

41)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23쪽 이하.

것을 제안하는 견해들도 있었다.⁴⁴⁾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판단할 때 우리 사회에서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종류와 그 형식을 결정하는 작업은 논쟁의 대상을 특정하고 이제 막 공론의 장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실증적 분석

이와 동시에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⁴⁵⁾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고,⁴⁶⁾ 정부수립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사형선고와 그 집행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고,⁴⁷⁾ 아울러 제한적이지만 살인범죄의 공동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관련된 사건의 사형선고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 및 만족감,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에 대한 지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⁴⁸⁾

이외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라도 형집행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할만한 견해이다.⁴⁹⁾

제2절 국가기관별 동향

1. 법무부

가. 사형제도의 폐지 반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책임기관으로써 법무부는 한편으로 1996년 11월 28일, 헌재에 의한 사형제도 합헌결정을 인용하면서 사형제도의 존속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론조사 결

42) 조근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51~67쪽.

43)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제3호, 중앙법학회, 2010, 253~284쪽.

44) 승재현, 조성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135~156쪽; 박찬걸, “사형 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30호, 한양법학회, 2010, 349~370쪽;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91~622쪽;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85~420쪽; 이원경,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교정연구 제69호, 한국교정학회, 2015, 267~291쪽.

45) 오경식,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 현황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275~296쪽.

46) 이덕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23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277~300쪽.

47) 이덕인,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9권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3~232쪽; 이덕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26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31~168쪽; 이덕인,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4쪽; 이덕인, “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65~104쪽; 이덕인,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제26권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5~57쪽; 이덕인,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제7권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247~278쪽.

48) 김은영, 공정식, “살인범죄 피해자들의 종결감과 사형선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1권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151~180쪽.

49) 김영철, 조현욱,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1쪽 이하.

과를 거론하며 국민의 법감정이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폐지가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01년 12월 7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통하여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다하고 있고, 개선이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면 이들을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법무부로서는 사회여건상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였다.⁵⁰⁾

이러한 태도는 헌법재판의 변론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법무부장관은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 제110조 제4항을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고 표현하면서 생명권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며,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약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형벌이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의 본질을 가지는 이상 생명을 침해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의 법익침해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일반예방의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고 위하효과에 있어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방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입법자에 의해 사형대상범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사법부가 사형선고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어 사형제도가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연간 1,000건 이상의 살인사건과 10,000건 이상의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사형제도 존치에 관한 국민여론이 폐지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등을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⁵¹⁾

특히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흉악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검찰은 대개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⁵²⁾

나. 대검찰청 형사법제과의 연구용역

2006년 11월, 대검찰청 형사법제과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무기형의 도입안을 검토하면서 소요예산과 종신형의 지속가능성과 변질가능성의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아울러 사형규정의 축소와 사형선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형규정 대상범죄의 대폭적인 축소와 사형선고 요건의 강화, 절대적 종신형의 선택적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⁵³⁾

이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결과 가운데 특히 사형규정 대상범죄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련하여 살인범죄로 제한하고,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 목적 등 그 성격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인 사형 규정의 세분화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사형규정의 폐지, 균형법상 과도한 사형규정의 삭제 등은 법무당국의 실현 의지만 있다면 즉시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대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태도를 밝혀왔던 법무부는 이 연구결과조차 창고 속에 방치한 채 이후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실천적 개선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 사형제도와 명목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을 수립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기본계획과제에서 개폐를 검토하고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1015.

51) 헌법재판소 2010.02.25. 2008헌가23결정 참조.

52) 2017년도 인권보고서 제32집, 대한변호협회, 2018, 45쪽 이하 참조.

53)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11(http://www.prism.go.kr/homepage/res-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280000-200600011), 59쪽 이하 참조.

사형의 형사정책적인 기능과 국민여론과 법감정, 그리고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⁵⁴⁾

2007년 이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마련된 후 이행과정을 거쳐 왔으나 생명권 분야에 속하는 문제로 사형은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계획안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형의 위헌성 검토와 사형대상범죄의 축소 검토를 거론하였으나, 사형의 위헌성 검토에 관해서는 법무부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않고 민간의 여론조사에만 의존해왔고, 사형대상범죄의 축소 검토도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형의 대체형벌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1차 기본계획에 검토사항으로 포함했다가 그 자체평가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는 생략한 채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 장기수용에 따른 예산문제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후 사실상 추진에 대한 거부 입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에 포함은 시켰으나 연도별 이행상황 보고에서는 아예 검토 내용이 누락되어 버렸고, 3차 기본계획 초안에서는 계획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서 사형 제도로 국한한다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명목상의 과제에 불과한 것이다.⁵⁵⁾

2. 대법원

가. 헌법재판소 이전: 헌법정신이 결여된 형식적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이전부터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진 여러 차례의 상고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나 기본입장은 1963년 2월 28일, 처음으로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래로,⁵⁶⁾ 1980년대의 판례까지 이러한 논점을 그대로 관철하였다.⁵⁷⁾ 다만 제한적 사형 선택을 지지하면서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라도 극형이 불가피하다면 사형이 선택되어야 한 다거나,⁵⁸⁾ 범죄로 인하여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형제도는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적 총의’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⁵⁹⁾

1990년대에 들어서도 사형에 대한 기존의 합헌 입장은 재확인되었으며,⁶⁰⁾ 통치권 작용으로서의 형벌종류 가운데 사형의 인정 여부 및 그 대상범죄는 항상 국가의 형사적 정책면과 인도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은 국가의 발전과 도덕적 감정의 변천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⁶¹⁾ 이와 같이 한편으로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을 굳건히 인정하면서, 다른 한

54) 법무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5쪽.

55)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17.10., 17~19쪽.

56) 대법원 1963.02.28. 62도241판결: “헌법 제9조(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8조(현행헌법 제37조 제2항)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하였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형사상 또는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된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

57)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969판결.

58) 대법원 1985.06.11. 선고, 85도926판결; 1987.10.13. 선고, 87도1240판결; 1992.08.14. 선고, 92도1086판결; 대법원 1995.01.13. 선고, 94도2662판결.

59) 대법원 1983.03.08. 선고, 82도3248판결.

60) 대법원 1967.09.19. 선고, 67도988판결.

편으로는 형의 종류 가운데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및 살인죄(제250조 제1항)와 사형집행을 규정하는 형법 제66조, (구)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해서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⁶²⁾

나. 2000년대 중반 이전: 사형허용요건의 실질적 검토

1990년대 말부터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서의 사형선택에 있어서는 결과불법 뿐 아니라 행위불법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저질러진 범행에 대해서는 사형을 회피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양형조건(형법 제51조)만을 따지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복잡 미묘한 심리관계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여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정신상태와 심리상태의 변화 등 주관적 양형요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형선고에 있어서는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 등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⁶³⁾ 그 허용요건으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향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을 살피서 사형을 회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주문하고 있다.⁶⁴⁾

다. 현재

(1) 사형허용요건의 엄격성과 논리적 사형 반대의견의 등장

사형을 면하고자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코올중독상태를 주장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저하를 이유로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⁶⁵⁾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이상,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⁶⁶⁾

가장 최근에 사형이 선고된 상고심 재판의 다수의견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하여 그것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사형제도가 인정되고, 우리의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형벌이기에 그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⁶⁷⁾ 더불어 사형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의 규정은 물론이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심리한 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⁶⁸⁾

61) 대법원 1990.04.24. 선고, 90도319판결; 대법원 1991.02.26. 선고, 90도2906판결.

62) 대법원 1994.12.19. 자 94초123결정.

63) 대법원 1999.06.11. 선고, 99도763판결;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도9867판결 등.

64)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6도354판결; 대법원 2005.08.25. 선고, 2005도4178판결; 대법원 2004.09.03. 선고, 2004도3538판결;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도924판결;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1도6425판결; 대법원 2000.07.06. 선고, 2000도1507판결 등 참조.

65) 대법원 2014.01.24. 선고, 2012도8980판결.

66) 대법원 2015.08.28. 선고, 2015도5785판결.

67) 대법원 2016.02.19. 선고, 2015도12980판결.

68)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6도354판결; 대법원 2013.01.24. 선고, 2012도8980판결 등.

그러나 이 판결의 소수 반대의견은 사형선고가 정당화되려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피고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명백해야 하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음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반대의견은 사형을 불가침적인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형벌로 파악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기능하지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형벌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은 특별예방이나 일반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고, 단지 응보기능과 당해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기능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장기간의 미집행으로 사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서 볼 때 극악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인 개인의 악성에서만 찾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책임을 범죄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2) 재심사건의 무죄확정과 과도한 사형규정의 정비

이와 같이 대법원은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며 후퇴하지 않았으나 과거 위법수사에 따라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선고된 잘못된 사형판결을 바로잡은 재심의 결과를 확정하고,⁶⁹⁾ 이외에 형법상 동일한 구성요건이면서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0조의 통화위조죄에 대하여 특별한 가중적인 구성요건 없이 단순히 사형만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형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⁷⁰⁾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조작된 공안사건으로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희생자들이 청구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하여 억울하게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사람의 신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상고심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3. 헌법재판소

가. 부적법 각하와 사실 판단의 유보

현재는 출범 이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모두 33건의 재판을 처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헌마사건(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3건,⁷¹⁾ 헌바사건(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12건,⁷²⁾ 헌가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 7건,⁷³⁾ 헌아사건

69)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도9695판결;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3도1830판결.

70)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5도632판결.

71) 헌법재판소 1993.11.25. 89헌마36결정; 2004.02.26. 2003헌마441결정; 2009.10.29. 2008헌마230결정; 2008.03.25. 2008헌마234결정; 2010.04.06. 2010헌마182결정; 2011.09.06. 2011헌마420결정; 2013.05.30. 2012헌마463결정; 2014.04.08. 2014헌마259결정; 2016.02.16. 2016헌마74결정; 2016.04.12. 2016헌마204결정; 2016.04.05. 2016헌마206결정; 2017.07.25. 2017헌마753결정; 2017.12.12. 2017헌마1310결정 등.

72) 헌법재판소 1992.04.28. 90헌바24결정; 1995.04.20. 91헌바11결정; 1995.10.26. 92헌바45결정; 1996.11.28. 95헌바1결정; 2003.11.27. 2002헌바24결정; 2009.06.25. 2007헌바25결정; 2009.02.26. 2008헌바943(병합)결정; 2016.05.26. 2013헌바98결정; 2015.04.30. 2013헌바103결정; 2014.11.27. 2014헌바224결정, 2014헌가11(병합)결정; 2018.07.03. 2018헌바237결정; 2018.07.17. 2018헌바238결정 등.

73) 헌법재판소 1996.01.25. 95헌가5결정; 2001.11.29. 2001헌가16결정; 2002.11.28. 2002헌가5결정; 2007.11.29. 2006헌가13결정; 2008.

(현재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1건⁷⁴⁾ 등이다.

현재가 처리한 첫 번째 사례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도중 위헌 제청한 사건으로 청구인은 우리 헌법상 생명권에 관한 명문이 없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통설에 의하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생명권의 존재 근거를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생명권이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때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인간존엄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첫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재판도 하나의 제도로서 인간이 행하는 것인 만큼 오만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셋째, 사형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예방의 효과가 과히 크지 않고, 넷째,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한 8인의 재판관 전원은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본안 문제로 나아가지도 아니한 채 부적법 각하하였다.⁷⁵⁾ 두 번째 헌법재판 또한 피고인이 상고심 도중에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등 사형 관련 법조문의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과 동시에 상고심마저 기각되자 1990년 5월,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그해 12월 4일, 청구인의 사형이 집행되고 그로부터 4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994년 12월 29일에 와서야 청구인의 사망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⁷⁶⁾

나. 합헌판단

(1) 실질적 위헌성 심사의 시작

1996년 11월 28일, 세 번째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이 각 사형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청구인이 1995년 3월 1일, 형벌제도로써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및 형법 제250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 와서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지금 곧 사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비록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고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⁷⁷⁾

12.26. 2007헌가10-16(병합)결정; 2010.02.25. 2008헌가20결정; 2010.02.25. 2008헌가23결정 등.

74) 헌법재판소 2017.08.22. 2017헌아406결정[사형미집행 위헌확인(재심)]

75) 헌법재판소 1993.11.25. 89헌마36결정.

76) 헌법재판소 1994.12.29. 90헌바13결정.

77)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결정; 그러나 이 사건의 청구인은 1994년 12월, 대법원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후 열린 재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사형을 회피할 수 있었다.

(2) 헌법적합성 여부의 구체적 검토

이후 2010년의 네 번째 헌법재판에서 비로소 헌법적합성 여부가 논의되었는데 당시 다수의견은 종전의 입장을 바탕으로 헌법 제1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형은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⁷⁸⁾ 부가적으로 사형에는 심리적 위하효과를 통한 범죄예방과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의 기능이 인정되고, 해당 범죄인의 재범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사형집행 또한 인간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반하지 않으며,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도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의 선언규정인 헌법 제11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위헌 여부의 최종 판단권한은 헌재에 있으나 법률상의 존폐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에 관련된 책임이 입법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개별 사형규정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범에 사형이 규정된 개별 조문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에서 헌재는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규정한 제5조의3 제2항 1호를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와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⁹⁾ 그러나 마약 사용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비매수를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범 제11조 제1항 및 (구)마약법(1993.12.27. 법률 제4632호로 개정되기 전) 제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간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⁸⁰⁾

아울러 (구)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죄(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것에 대하여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면,⁸¹⁾ 형법과 비교할 때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법정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범죄구성요건들, 예컨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게 법정형의 상한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 가운데 다시 범한 죄가 찬양, 고무 등 비교적 경한 범죄일지라도 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⁸²⁾ 단순 매수나 단순 판매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에게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특정범죄가중범 제11조 제1항),⁸³⁾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조문(균형법 제53조 제1항),⁸⁴⁾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범 제10조 가운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형법 제207조 제1항) 및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78) 헌법재판소 2010.02.25. 2008헌가23결정.

79) 헌법재판소 1992.04.28. 90헌바24결정.

80) 헌법재판소 1995.04.20. 91헌바11결정.

81)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가16결정.

82) 헌법재판소 2002.11.28. 2002헌가5결정.

83)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가24결정; 이후 특정범죄가중범 제11조 제1항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04.24. 2011헌바2결정.

84) 헌법재판소 2007.11.29. 2006헌가13결정.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같은 법조 제4항)를 가중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⁸⁵⁾을 각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가. 공식적인 사형폐지 입장의 표명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사형폐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2005년 4월 6일, 개최된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의 생명권 보장 의무, 생명권의 제한 가능 여부, 사형의 법적 근거, 사형 관여자의 양심의 자유, 헌법상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사형의 범죄억제력과 오판의 가능성, 국민의 법감정, 피해자의 인권 등을 검토한 다음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만 사형폐지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제도, 일정기간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도 및 전쟁 시 사형제도의 예외적 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의 채택 여부는 결국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선에서 그쳐버렸다.

사형제도에 대한 인권위 활동의 실천적 기본방향은 그 폐지와 대체형벌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가 사형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형의 미집행을 이끌어 낸 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있다.

나. 적극적인 사형폐지 의견의 개진

인권위는 2009년 2월, 사형집행 논란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형폐지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⁸⁶⁾ 2010년 3월에는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전시가 아닌 평시에 균형법상 사형집행의 중단을 선언하고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 바 있다.⁸⁷⁾ 아울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개선해야 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개선안을 담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에 선행하여 지속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국가에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내 사형폐지 활동의 지원과 협력

대외적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와 제4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특히 규약 제3부 제6조(생명권 및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제1기부터 제3기에 이르는 심의에서도 사형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제3기의 심의에 있어서는 정부를 향하여 선택의정서 등의 가입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2018년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의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엄) 결의와 관련하여 국내 이행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자 그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

85) 헌법재판소 2014.11.27. 2014헌바224결정.

86)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사건(2008헌가23)에 관한 의견제출, 2009.07.06.

87) 균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 2017.12.21.

다. 2018년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제3절 국회의 사형폐지 법안 전개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하나의 불문율처럼 사형제도의 존폐를 국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자제되었다. 그러나 생명권을 바라보는 시민정신의 변화와 사형폐지를 희망하는 시민운동의 태동이 일부 입법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1999년 12월 7일, 사형폐지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모두 일곱 차례나 관련 법안의 제출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이외에 달리 세부적으로 그 절차가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물론 국회 사무처(법제예산실) 차원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사형폐지보다는 사형제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사형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절차의 전개는 입법기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연구전문가들의 의견 제시에 그쳤을 뿐 그것이 입법자들의 의사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아니었다.

1. [의안번호 152463] 15대 국회 사형폐지특별법안

이 법안은 15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6개월여 남겨둔 1999년 12월 7일에 제안되었다. 그러나 입법 수단을 통하여 사형의 폐지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후의 법안제안이 형식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 전형이 되었다.⁸⁸⁾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사형을 인간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한 형벌로 판단하고,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된 경우 회복할 수 없다는 점과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한 후 중범죄에 대한 위하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인권존중과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사형을 영구히 폐지하는 대신에 종전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였던 부분은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의 전문위원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형의 존폐 여부를 생명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관련된 위헌성과 위하효과의 문제,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형벌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었다.

2. [의안번호 161085] 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5대 국회의 임기 말에 촉박하게 사형폐지법(안)이 제안되어 입법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반성에 따라 16대 국회가 개원한 1년 후인 2001년 10월 30일에 제안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것임을 목적에 명시하

88)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유재건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제15대 국회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4호, 1999.12.15., 45쪽 참조.

고(안 제1조), 현재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명기하고 있는 형법과 그밖에 모든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형을 일체 폐지하며(안 제2조), 법원으로 하여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그 범죄의 종류, 죄질, 정상 여하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그 복역을 개시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개선, 교화,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안 제3조).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상정되었지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검토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은 15대 국회와 동일하게 사형의 존폐 여부는 생명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관련된 위헌성과 위하효과의 문제,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다만 법체계상 문제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후 복역을 개시하면 최소한 15년이 경과해야 되고, 이러한 기간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사실상 법원 판결로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행정권의 침해 소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도 대체형벌의 검토는 제외되어 있다.

3. [의안번호 171129] 17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7대 국회가 개원한 첫해인 2004년 12월 9일, 발의된 이 법안 또한 이전의 의안들이 사형폐지의 목적으로 천명한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면서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한 후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고(안 제2조), 종신형의 정의를 사망 때까지 형무소 내에 구치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두고 있다(안 제3조). 이 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년 8개월을 방치되어 있다가 2007년 8월 8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었다. 대표 발의자 유인태 의원은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공전하는 상황을 개탄하며 안건의 폐기를 요청한 후 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였다.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면 의원 30인의 동의로 다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소위 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입법부 전원의 참석 아래 의견을 듣고 폐기되든 가결되든 부결되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었다.⁸⁹⁾ 그러나 이러한 시도조차 9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후 임기만으로 중단되었다.

검토보고서는 사형을 폐지하는 문제를 헌법과 17개 관련 법률에 걸쳐 있는 중요한 형사정책적인 사항이므로 단순히 생명박탈이라는 인간존엄성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형의 실질적 위하효과, 피해자의 보호방안, 대체형벌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살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형폐지에 대한 외국의 추세도 고려할 수 있지만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종교적 배경 및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의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안 이전에 제15대 국회의 법안에서는 대체형벌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제16대 국회의 법안에서는 ‘최소한 15년까지는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금지하는 무기형’인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이 법안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

89)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록, 2007.08.08., 47쪽.

체형벌로 선택함으로써 그 내용과 논의 대상이 과거에 비하여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4. [의안번호 180928]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8대 국회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관련 법안이 중복 제안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의된 이 법안은 대체형인 종신형을 엄격하게 정의하여 형법에 따른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는 징역형이라고 명시하고(안 제2조), 형의 종류 가운데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한 후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및 부칙 제3조).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까지 상정되었으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⁹⁰⁾

검토보고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시기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그 국가와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 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성숙성과 포용성이 충분히 무르익었는지 여부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⁹¹⁾ 그러나 존폐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하면서도 대체형벌에 대해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무기형과 그 법적 성질을 같이하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형벌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5. [의안번호 186259]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8대 국회의 두 번째 관련 법안인 이 법안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고(안 제2조),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구금시설(형무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대체형벌로 규정하였다(안 제3조). 검토의견에서는 형법개정연구회의 ‘형법 개정시안’을 인용하여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으므로 오히려 사형보다 책임주위에 맞지 않는 형벌일 수 있고, 교정 측면에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제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6. [의안번호 1809976] 18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의안번호 180928] 특별법안과 마찬가지로 종신형에 대해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수용하고, 형법에 따른 가석방과 사면법에 따른 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3조), 전문위원에 의한 별도의 검토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90) 제18대 국회 제278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08.11.19., 40쪽.

91) 제18대 국회 제278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8.11.17., 20쪽.

7. [의안번호 1909976] 19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에서도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 형법 및 기타 법률에 법정된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특히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사형확정자들도 향후 사형집행 없이 사망할 때까지 수용되어야 하므로 수용을 위한 추가적인 경비 지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추가되는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첫째, 1998년 이후 약 1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향후 사형이 다시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기존의 사형확정자 수용에 따른 비용은 사망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둘째, 사형확정자에 대한 연간 수용비용⁹²⁾은 1명당 약 200만원⁹³⁾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라 수용비용이 추가로 지출된다고 가정하여도 기존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연간 추가 재정소요는 약 1억1,600만원(200만원×58명)에 그친다는 점을 그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한 유인태 의원은 제안 설명의 자리에서 입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대체형벌인 절대적 종신형에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종교, 인권단체 및 학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된 대안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향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결에 의한 가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⁹⁴⁾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 여러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전체 국회의원의 총의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국회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전원위원회의 활용을 거론하면서 중요 의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를 불문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심사를 위해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의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⁹⁵⁾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후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자 이 법안 역시 기존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폐기되는 전철을 밟았다.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의안번호 186259] 법안과 비교할 때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92) 법무부 규정에 따른 급량비, 피복비, 수용비, 의료비, 연료비의 전체 합계 금액.

93) 2013년 기준, 사형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수용자 1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경비는 동일함.

94) 제33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5.8.11., 23쪽.

95) 제33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5.8.11., 25쪽.

제2장 사형대상범죄와 사형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사형대상범죄와 문제점

1. 사형대상범죄

사형대상범죄란 법정형에 사형이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형법을 비롯한 20개 법률에서 155개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테러방지법 등이다.

아래의 [표 1]96)은 현행 법질서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개별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 현행 형법과 형사특별법들에 규정된 사형대상범죄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형 법	제87조제1호	(내란)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서 “수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제87조제2호	(내란)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및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사형
	제94조제1항	(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5조제1항	(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96) 아래의 표는 강석구/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36~149쪽의 표를 인용하되 필요시 수정하였음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95조제2항	(시설제공이적)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8조제1항	(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98조제2항	(간첩)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19조제1항	(폭발물사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19조제2항	(폭발물사용)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164조제2항 후단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제1항(=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50조제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250조제2항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291조제1항	(피악취유인자등살해) 악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01조의2 전단	(강간등 살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각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24조의4 전단	(인질살해) 제324조의2(=인질강요)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38조전단	(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40조제3항	(해상강도 살인치사강간) 제1항(=해상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군형법	제5조제1호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사람으로서 “수괴”	사형
	제5조제2호	(반란)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제6조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전조(=제5조)의 예에 의함
	제11조제1항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사형
	제11조제2항	(군용물건제공)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사형
	제12조	(군용시설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	사형
	제13조제1항 전단	(간첩)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	사형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13조제1항 후단	(간첩방조)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13조제2항	(간첩)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	사형
	제13조제3항 제1호	(간첩·간첩방조)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
	제13조제3항 제2호	(간첩·간첩방조)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
	제13조제3항 제3호	(간첩·간첩방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
	제14조제1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2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3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4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5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6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7호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4조제8호	(일반이적) 전3조 및 동조 전각호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	사형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	사형
	제20조	(불법진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제22조	(항복) 지휘관이 그 할 비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	사형
	제23조	(부대인솔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비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때	사형
	제24조제1호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로서 “적전의 경우”	사형
	제27조제1호	(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때로서 “적전인	사형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경우”	
	제27조제2호	(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때로서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제28조제1호	(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내에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때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0조제1항 제1호	(군무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0조제2항	(군무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 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전조(=제30조)의 예에 의함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	사형
	제37조제1호	(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8조제1항 제1호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9조	(명령등의 허위전달)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	전조(=제38조)의 예에 의함
	제40조제1항 제1호	(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40조제2항	(초령위반)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41조제1항 제1호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2조제2항	(유해음식물공급치사) 전항(=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2조제4항	(이적유해음식물공급)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4조제1호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45조제1호 전단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항명)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에 “수괴”	사형
	제45조제1호 후단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항명)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에 “그밖의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50조제1호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제1항 제1호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제1항 제2호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 제48조 내지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52조의4 제1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5 제1호	(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5 제2호	(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6 제1호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2조의6 제2호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3조제1항	(상관살해) 상관을 살해한 사람	사형
	제56조제1호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제1항 제1호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제1항 제2호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4 제1호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6 제1호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6 제2호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9조제1항	(초병살해) 초병을 살해한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60조제4항 제1호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치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제4항 제2호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치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60조의5 제1호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군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적전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5 제2호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군인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6조제1항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군의 공장·함선·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전차·자동차·교량을 소훼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66조제2항 제1호	(군용시설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으로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67조제1호	(노적군용물예의 방화) 불을 놓아 노적한 병기·탄약·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으로서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68조	(폭발물파열)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군의 공장·함선·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전차·자동차·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노적한 병기·탄약·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한 사람	전2조(=제66조·제67조)의 예에 의함
	제71조제1항	(함선의 복몰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71조제2항	(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71조제3항	전2항(함선·항공기의 복몰치사상 또는 손괴치사상)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75조제1항 제1호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를 범한 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75조제1항 제2호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83조제1항	(약탈로 인한 치사)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84조제1항	(전지강간)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	사형
	제92조의8	(강간등살인)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국가 보안법	제3조제1항 제1호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로서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조제1항 제2호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로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제1항 제1호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로서 “형법 제92조 내지 제97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함 ⁹⁷⁾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제4조제1항 제2호 가목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로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4조제1항 제2호 나목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로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4조제1항 제3호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로서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 ⁹⁸⁾ 를 한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4조제1항 제4호	(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로서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조제2항	(잠입, 탈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1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2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3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6호	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7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제58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8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항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문화재 보호법	제93조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3호	(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로서 “제1호(=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조제1항 제3호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약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동법 제56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로서 “제1호(=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조의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항공보안법	제39조	(항공기파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0조제2항	(항공기납치치사상)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41조제2항	(항공시설파손치사상)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살인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2조제1항 진단	제6조제1항(선박납치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12조제2항 진단	제5조제1항·제2항(폭행·협박상해·살인죄), 제7조(선박등 손괴죄) 또는 그 미수(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12조 제3항 진단	제8조 내지 제10조(선박운항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위험물건 설치·탑재죄, 허위정보전달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9조제1항	(강간 등 살인)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조제3항	(강간 등 치사)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원자력안전법	제113조 제1항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13조 제2항	전쟁·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7조제6항 제1호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수괴” 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47조제8항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1호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등,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2호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제44조제1항 제3호	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호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호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6호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7호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8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4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9호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46조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단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지뢰 등 특정재래식 무기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호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2 제2항 제2호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3 제2항 제1호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로서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법률명	조 문	구성요건	법정형
		서 “수괴”	
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顛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38조제2항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39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테러단체 구성죄 등)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서 “수괴” 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

현행 법질서상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은 대부분 사형존치론에서 나오고 있다.

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한 사형의 도입

사형대상범죄 규정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인명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20개 법률 중 문화재보호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을 제외한 16개 법률에서 인명침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응보론적 관점에서 출발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와 법정형간에 균형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규정

또한 대부분의 사형대상범죄 규정은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질서

97) 이러한 행위 중 사형에 처해지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환유치(형법 제92조) ② 여적(與敵)(형법 제93조) ③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는 ‘모병이적’(형법 제94조제1항) ④ 시설제공이적(형법 제95조) ⑤ 시설파괴이적(형법 제96조) ⑥ 존속살해(형법 제250조제2항) ⑦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⑧ 해상강도 살인·치사·강간(형법 제340조제3항).

98)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요(형법 제115조) ② 폭발물사용(형법 제119조제1항) ③ 도주원조(형법 제147조, 제148조) ④ 방화 및 진화방해(형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⑤ 일수 및 방수방해(형법 제177조 내지 제180조) ⑥ 음용수사용방해 및 수도불통(형법 제192조 내지 제195조) ⑦ 통화위조·변조, 위변조통화 수입·수출·취득·지정행사(형법 제207조, 제208조 및 제210조) ⑧ 살인, 촉탁·승낙·위계등에 의한 살인(형법 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 ⑨ 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및 각종 강도의 상해·치상(형법 제333조 내지 제337조).

에서는 미수범에 대하여 독립적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죄에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형법 제25조 제2항). 따라서 예를 들어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법관은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⁹⁹⁾ 그러나 미수범의 불법과 기수범의 그것 간에는 질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수범에 적용되는 사형규정을 아무런 고민 없이 미수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의 도입

결과적 가중범이란 예를 들어 강도치사죄의 경우와 같이 고의의 기본범죄(강도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과실치사)가 결합된 범죄구성요건을 말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강도살인죄의 경우와 같이 고의의 기본범죄(강도죄)와 고의의 중한 결과(살인죄)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범에 비하여 그 불법의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결합범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사형대상범죄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형을 도입하고 있다. 균형법, 문화재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9개 법률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사형을 도입하고 있다. 사형존치론자 중에서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발생 가운데 어느 쪽에서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다면 책임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견해¹⁰⁰⁾가 있다.

라. 상해행위에 대한 사형의 도입

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상해행위에 대해서도 사형규정을 둔 예가 있다는 점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은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적전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게 사형을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해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사형존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벌권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절대적 법정형으로서의 사형규정

절대적 법정형이란 법정형에 명시되어 있는 형벌이 사형뿐인 경우를 말한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이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의 여적죄(제93조)뿐만 아니라 균형법상의 반란수괴죄(제5조 제1호),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죄(제6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제11조), 군용시설 등 파괴죄(제12조), 간첩죄(제13조. 단, 간첩방조 제외), 불법전투개시죄(제18조), 불법전투계속죄(제19조), 항복죄(제22조), 부대인솔도피죄(제23조), 적전 직무유기죄(제24조 제1호), 지휘관의 수so이탈죄(제27조 제1호), 적전으로의 도주죄(제33조), 집단항명수괴죄(제45조 제1호 전단), 상관살해죄(제53조 제1항), 전지간간죄(제84조 제1항) 등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형만이 절대적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도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

99) 예를 들어 강석구/김한균, 앞의 보고서, 153쪽.

100) 강석구/김한균, 앞의 보고서, 154쪽.

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택의 폭이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¹⁰¹⁾

3. 대통령 긴급조치를 통한 사형선고와 집행의 위험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법질서 아래 사형대상범죄 규정이 드러내는 문제점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전시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가안으로 존재하는 호수미기재의 대통령 긴급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이승만정권이 적 치하의 부역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처형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과도한 형태의 가중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단심재판과 군법회의를 통한 사형선고를 허용하기 위하여 급조한 법적 근거인 이른바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어떠한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과거사에 대한 조명 과정에서 목격한 바 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참극은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통계를 어느 것 하나도 공식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든 주된 원인으로 설명된다.

이 법령은 1960년 10월 13일, 폐지되었다가 박정희정권 시기인 1975년 5월 21일, 슬그머니 되살아나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안)’과 ‘전시법원 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등 두 개 전시대기법령(戰時待機法令) 형식의 대통령 긴급조치(안)으로 부활하였다. 이후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9년 6월 8일, 3급 비밀로 지정된 이래 그 명칭이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및 ‘전시법원 검찰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변경되어 이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⁰²⁾ 이 위헌적 법령은 전쟁이라는 국가위기상황이 야기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자 사형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법살인의 도구이기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설령 평시가 아닌 국가비상사태에는 사법절차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논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법령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사형의 선고현황

1. 1980년~1997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먼저 1980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18년의 기간 동안 제1심 형사재판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된 인원은 모두 425명(연평균 23.6명)으로 파악되며, 시기별로는 1980년 이래로 1987년까지[제5공화국, 이하 (Ⅰ)시기]가 188명(44.2%), 1988년~1992년[제6공화국, 이하 (Ⅱ)시기]의 경우 129명(30.4%), 1993년~1997년[문민정부, 이하 (Ⅲ)시기]은 108명(25.4%)이다. 연평균에 있어서는 제6공화국(25.8명)의 기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5공화국(25.8명), 문민정부(21.6명)의 순이었으며, 죄명별로는 살인(247명), 강도살인(115명) 등 생명침해범(362명)의 비중(85.2%)이 압도적이었다. 사형이 선고된 제1심의 특징은 (Ⅰ)시기의 경우 전체 사형선고인원

101) 강석구/김한균, 앞의 보고서, 155쪽.

102) 2017년 4월, 국민안전처의 용역연구보고에도 이 두 법령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융합형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7.04.27., 60쪽.

(188명)에서 161명(85.6%)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행위로 사형에 처해졌는데, 강도범과 강도강간범 각 3명 및 외환죄 3명, 국가보안법 위반 15명, 반공법 위반 3명 등 27명(14.4%)은 생명침해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사형이 선고되었다. (Ⅱ)시기 또한 생명침해가 수반된 범죄를 저지른 123명(95.3%)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생명을 침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3명(강도범 2명과 마약제조사범 1명)에 대해, 공안 사건은 그 빈도가 대폭 감소하여 2명에 대해서만 사형이 선고되어 뚜렷이 줄어들었다. (Ⅲ)시기에 있어서는 107명(99.1%)이 생명침해범이었으며, 공안사건은 행위주체가 직접 생명침해에 가담하지 않은 내란죄 1명이 유일하였다.

제1심에서 사형선고의 빈도가 특히 높았던 살인과 강도살인/강도치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살인의 경우 검찰에 접수된 11,404명 가운데 9,215명(80.8%)이 기소되어 247명(2.7%)에게 사형, 918명(9.9%)은 무기징역, 2,447명(26.6%)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2,125명(23.1%)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478명(37.7%)은 5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처해졌다. 강도살인/강도치사에 있어서는 모두 1,704명이 검찰에 접수된 후 1,672명(98.1%)이 기소되었는데 이 가운데 사형 115명(6.9%), 무기징역 361명(21.6%),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406명(24.3%),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356명(21.3%)이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34명(25.9%)은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정권별로는 살인의 경우 (Ⅰ)시기에 전체 3,496명(연평균 437명)을 처리하여 100명(2.9%)에게, 강도살인은 전체 629명(연평균 78.6명)을 처리하여 48명(7.6%)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하였다. (Ⅱ)시기에는 살인의 경우 전체 2,670명(연평균 534명)을 처리하여 83명(3.1%)에게, 강도살인은 전체 564명(연평균 112.8명)을 처리하여 29명(5.1%)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고, (Ⅲ)시기는 살인의 경우 전체 3,049명(연평균 610명)을 처리하여 64명(2.1%)에게, 강도살인은 전체 479명(연평균 95.8명)을 처리하여 38명(7.9%)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2. 1998년~2012년까지 제1심 죄명별 사형선고의 분포

김대중 정부(Ⅳ), 노무현 정부(Ⅴ), 이명박 정부(Ⅵ)를 각 구분한 후 그 시기에 해당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심 형사공판에서의 사형선고 인원은 모두 115명(연평균 7.7명)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살인(60명), 강도살인(33명), 성폭력특별법 위반(11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6명) 등 고의적인 생명침해범이며, 과거와 달리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전무하였다.

(Ⅳ)시기 연평균 14.6명, 전체 73명(63.5%)이던 제1심의 사형선고 인원은 (Ⅴ)시기에 25명(21.7%)으로, (Ⅵ)시기에 와서는 17명(14.7%)으로 대폭 줄었으며, (Ⅳ), (Ⅴ)시기 형법범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Ⅵ)시기는 형법범(7명)보다 형사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전체 인원의 과반 이상(10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서 형사법관 전체의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사형제도의 문제점 내지 위헌성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사형선고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빈발하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형의 의미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여러모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다.¹⁰³⁾

이 시기 제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살인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

103)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816>).

간 최대 1,236명(2011년)에서부터 최소 959명(2006년)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 연평균 810명(전체 12,156명)이 기소되었으나 사형이 선고된 인원은 60명(연평균 4.0명), 무기징역의 경우도 550명(연평균 36.7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살인죄로 기소된 전체 인원의 72.4%(8,807명)는 유기징역형에 처해졌고, 집행유예 역시 18.2%(2,214명)를 차지하고 있어서 설령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다라도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살인사건의 검찰접수 인원 증감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사형선고 인원이 2002년 이후 통계에서 2004년(7명)을 제외하고는 매년 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살인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양형위원회, 2014). 구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사형 회피에 있어서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참작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비교연구가 수행된다면 그 상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2013년 이후 하급심의 사형선고 경향

2013년의 경우 제1심에서는 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이어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오관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점, 현행법상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고 범행동기, 살해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항소심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으며 다른 범죄전력도 전혀 없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자백하고 있는 이상 교화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부산고법 2013.5.15. 선고, 2013노94판결), 이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 형의 과정을 상고로 다룰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였다.

두 번째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 참여재판에 의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안이다.104) 존속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자 9명의 배심원 전원은 모든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후 양형에 있어서도 8명의 배심원이 낸 사형 의견을 제1심이 받아 들였으나 이 사건의 항소심 또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앞의 두 사안과 마찬가지로 살해된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의 제1심이 사형을 선고하자 항소심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2013년과는 달라진 결과를 보였다. 2015년에는 민간법원 제1심의 사형선고는 없었으나 육군 모 사단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 도중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통군사법원과 그 항소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제1심의 사형선고는 없었다. 이와 같이 2013년부터 제1심 형사공판에서 사형선고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하급심 법원이 가급적 사형선고를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항소심의 경우를 보면 2013년, 2016년에는 사형선고가 없었으나 2014년, 제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건의 사건이 사형으로 변경되었고, 2015년에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1건

104) 인천지법 2013.12.18. 선고, 2013고합658판결.

의 판결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2018년 2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계획과 내용만보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2013년 하급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2심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3절 사형의 집행현황

1. 사형집행의 목적

형사실체법의 기본법인 형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사형확정자의 신분이 민간인의 경우 사형의 집행은 교도소(형무소) 내에서 교수하도록 되어 있으며(형법 제66조), 군인의 경우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하도록 되어 있다(군형법 제3조).

사형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관련하여 범죄자를 포함한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으나, 특히 권위주의시기의 사형집행은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일반예방의 효과에 치중하면서 부수적으로는 과중한 수용부담 및 잔여 재소자에 대한 형벌집행의 과급효과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더구나 권위주의가 종식된 문민정부에 들어서 조차 1994년의 첫 사형집행을 앞두고 1993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 자료에서 밝힌 검찰국의 실무의견은 복수의 집행계획안 가운데 하나의 안을 제시한 후 그 채택이 상당한 근거를 강력범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분위기 이완현상(각종 시위 등의 발생)을 경계하기 위한 것임에 있었고, 이를 통하여 당시의 사형집행이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형집행의 계획

실제 사형집행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시기가 조율되고 사형확정자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했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의 파악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공문서를 통하여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먼저 죄질과 사형확정시기를 고려하고 재심청구자 가운데 1차 청구자는 관계적으로 제외하였으나 고의적, 상습적 청구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포함되었다.

1997년 마지막 집행의 경우 대상자의 선정기준에는 연쇄강도강간 등 가정과괴사범, 불특정 다수인 살해사범, 어린이 유괴살인 등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폐륜범죄자와 국가기강의 확립 차원 및 장기미집행자, 신체상 장애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그런데 법률상 사형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463조), 실무상으로는 법무부 교정국 보안1과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형확정자 현황보고’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검찰국이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와 동시에 별도로 그 결과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률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집행계획은 복수의 안으로 검토, 보고되었는데, 그 절차는 검찰국 소속 사무관이 작성한 ‘사형집행 관계자료’에 대해 검사, 주무 과장, 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로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자필로 계획안의 표지에 해당 집행일자와 선정된 내용을 기재하여 주무부서에 하달하는 방식이었다. 사형확정자의 관리와 집행 및 사후 처리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국 제2과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으나, 공안사건에 있어서는 검찰국 제3과가 전담하면서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등을 위반한 사형확정자 가운데 집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가 사전에 개입하여 집행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3. 사형집행의 절차와 집행정지

가. 구신과 집행

과거 사형집행이 있었을 당시 그 절차의 대강은 형사소송법 제463조부터 제469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¹⁰⁵⁾ 그러나 실무상 사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861호)’이 있다. 사형의 집행 또한 일반 형벌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재판결과와 상소제기 등의 내용을 집행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즉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의 결과 통지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집행원부(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검찰집행사무규칙 제2조),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사무규칙 제3조).

검사가 사형의 집행을 지휘할 경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형집행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야 한다(사무규칙 제4조). 이때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구금된 자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원부 및 지휘서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5조).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먼저 판결 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선고법원·형명·형기),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사무규칙 제8조 제1항). 검사는 사형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사형확정자가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그 ‘판결서등본 송부서(별지 제8호 서식)’에 판결서등본과 ‘사형확정자 심신상황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8조 제2항).

105) 사형집행방법과 장소, 절차에 대해서 조근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57쪽 이하 참조.

아울러 판결 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구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형집행을 구신(보고)해야 한다(사무규칙 제9조 제1항).

사형집행의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기록, 판결서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에는 사실조사보고서, 사형확정자 심신상황조회 회답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9조 제2항). 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재심청구·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 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사무규칙 제9조 제3항), 사형집행구신 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 후 6월 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사형확정자 재심상황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9조 제4항).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사무규칙 제9조 제5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확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해야 하고(사무규칙 제10조 제1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통상 제1심 공소유지 검사),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0조 제2항). 이 때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사형집행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0조 제3항).

만일 사형확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설비가 없으면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을 지휘해야 하고(사무규칙 제11조 제1항), 이송이 완료되면 이송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가 소재한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1조 제2항). 사형확정자의 이송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이송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가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재판집행 촉탁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2조).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을 후 재심청구, 상소권회복청구, 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으면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사무규칙 제13조 제1항). 사형집행지휘를 촉탁 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사형확정자에게 사무규칙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사무규칙 제13조 제2항), 이 통지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 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3조 제3항).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소속 검찰청의 장은 재심청구 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거나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형집행종료의 보고는 사형집행종료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사무규칙 제14조 제1항). 이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 받아 처리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14조 제2항).

사형의 집행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형집행법 제91조 제2항, 균형집행법 제78조)에 교정시설 내의 사형장에서 이루어지며(형집행법 제91조 제1항),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11조).

나. 사형의 집행정지

사형확정자 가운데 선정된 집행대상자에 대한 심신상황 조회결과,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여성으로 임신 중에 있으면(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사형집행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등 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사무규칙 28조 제1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정지 결정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정지를 결정하고 ‘형집행정지지휘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형집행정지자 명부(별지 제23호 서식)’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정지자 기록(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 지휘서를 사형확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사무규칙 제28조 제2항). 아울러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형집행을 촉탁한 후 경우에는 촉탁한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촉탁 받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반촉을 구한 후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 사형집행정지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사형집행을 촉탁 받은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사무규칙 제28조 제3항),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사형집행지휘를 취소해야 한다(사무규칙 제28조 제4항).

4. 신뢰할 수 없는 사형의 집행통계: 공식통계의 부존재

가.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부정확성

언론을 통하여 그간 알려진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인원은 902명(중앙시사매거진, 2005), 998명(한국경제신문, 2006), 919명(경향신문, 2009), 920명(한겨레신문, 2012)등 제각각이었으며, 국정감사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서 현재 공식적인 통계로 언급되는 바에 의하면 923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정보들은 어느 것이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1950년 이후 1990년까지 사형집행인원 1,216명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75명을 더하면 1,291명이 되는데,¹⁰⁶⁾ 이를 법무부의 2009년 자료(923명)와 대조할 경우 368명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1990년까지의 통계가 참조하고 있는 법무연감에 따르면,¹⁰⁷⁾ 1950년부터 1989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1,221명이며, 이에 의하더라도 그 결원은 378명이 된다.¹⁰⁸⁾

106) 김용우, “사형제도 존속문제”, 현안분석 제37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16~17쪽; 법무연감, 법무부, 2008, 770쪽 참조.

107) 법무연감, 법무부, 1998, 94쪽.

108) 정부수립 이후 첫 사형집행은 1948년 8월 26일, 서울형무소 7명(강도살인 6명, 살인 1명), 대구형무소 1명(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8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것이다. 이경열, “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토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2015, 143쪽.

표 II-2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사형집행 인원

집행인원	출처	연도
1,216명	김응우, 헌안분석보고서	1991.09.
902명	동아일보 ¹⁰⁹⁾	1997.12.31.
1,287명	1998년 법무연감	1998.09.
1,601명	한용순, 석사학위논문 ¹¹⁰⁾	2002.02.
923명	국가인권위원회 ¹¹¹⁾	2004.04.28.
998명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¹¹²⁾	2006.01.13.
900명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¹¹³⁾	2006.11.13.
1,634명	배성범, 연구논문 ¹¹⁴⁾	2007.12.
1,596명	Johnson & Zimring	2008
1,476명	조균석, 연구논문 ¹¹⁵⁾	2009.02.
923명	18대 국회 국정감사자료 ¹¹⁶⁾	2009.10.11.
1,310명	19대 국회 사형폐지법안 ¹¹⁷⁾	2015.07.06.
919명	동아일보 ¹¹⁸⁾	2018.02.22.

- 109) 1997년의 마지막 사형집행 직후의 이 수치는 1949년, 1950년의 국가보안법 사범 및 한국전쟁 당시 사형집행인원(특조령 위반)을 제외한 것이다. 이 통계의 수치는 대검찰청,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쟁론쟁”, 범죄분석 통권 제134호, 2001, 19쪽에서도 확인된다.
- 110) 이 논문에서는 통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남 순천지역의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연락한 결과, 2001년 당시 광주지검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교정국의 도움을 받아 통계를 추산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 111) 사형제도 개선 청문회 자료집, 2004.04.28.
- 112)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발제한 이현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글 인용.
- 113) 법무부 용역연구로써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06.13.~2006.11.13., 1쪽.
- 114) 통계의 출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배성범 검사는 우리나라의 사형집행인원을 제1공화국 1,103명, 제2공화국 62명, 제3공화국 173명, 제4공화국 139명, 제5공화국 61명, 제6공화국 39명, 문민정부 5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790쪽; 이 수치는 정부수립 이후 일반법원의 사형선고에 의한 사형집행 920명에 군사법원에서의 사형집행인원(714명)을 합산한 것이라고 한다. 홍완식, 법과 사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3, 257쪽; 유영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타커스, 2016. 재인용.
- 115) 통계의 출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균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09, 63쪽.
- 116) 18대 국회의 2009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9월 25일, 당시 한나라당 소속 홍일표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1980년 이후 사형집행인원에 대해 10월 19일자로 검찰국 형사기획과가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reqdoc/2009/pdf/000611399.PDF>)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13), 76쪽), 정부수립 이후 사형통계는 이보다 앞서 9월 11일(<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reqdoc/2009/pdf/000611393.PDF>)에 한나라당 소속 박민식 의원의 요구로 10월 10일, 제출되었으나, 해당 자료는 공백처리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되었다(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VII), 16쪽);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 이후 사형의 첫 집행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 확정자를 1949년 7월 14일에 집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약 1년간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970년 법무부 문서보관소 화재로 정부 공식문서가 소실된 점을 들고 있고, 923명이라는 통계는 이후 대검찰청과 각 교도소 등에 흩어져 있던 사형 관련 자료를 모아 복원한 결과라고 한다. 따라서 이 통계는 ‘공식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추정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 117) 통계의 출처 근거 제시 없으며 국회의안번호(1915958),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 의원 등 172인);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누적통계라는 이 자료 역시 정확하지 아니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안 원문 주1)에서 1980년 10명이 집행되었다고 하나 법무부 통계는 9명이며, 1982년의 경우 21명이라고 하나 역시 법무부 통계는 23명이고, 1985년은 1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법무부 통계는 11명이다. 아울러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집행인원을 111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법무부 통계는 같은 기간 101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제시된 연도별 집행인원을 합산하면 1,238명으로 당초 1,310명이라고 제시한 결과와 대조할 때 72명의 인원에 차이가 나타난다.
- 118) 가장 최근의 1심 사형선고 후의 신문기사.

이러한 오차는 국내의 관련 통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채 전시 등 비상사태에서 선포된 계엄 상황 아래의 민간인과 통상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 인원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통계들은 신뢰할 수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일제강점이 종료된 1945년부터 1997년까지 민간법원과 군사법원의 사형집행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외국 문헌¹¹⁹⁾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문헌¹²⁰⁾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군정기(732명)를 제외하더라도 제1공화국 이래 1997년까지의 사형집행인원은 1,596명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법무부 공식통계와의 편차는 673명으로 더욱 늘어난다.

나.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집행의 불투명성

이와 같은 공백은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 정부수립 전후의 국지적 혼란상황과 한국전쟁기간에 발생한 국가불법의 결과를 고의, 과실 여부를 떠나 공식통계에서 빠트렸던 까닭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쟁 초반 일반법원과 군법회의를 가리지 않고 사형선고를 남발한 후 집단처형의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군사법원(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불분명한 차원을 넘어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II-3 군사재판에 의한 민간인 등 사형집행 인원(제주4.3사건)

연도	집행인원(명)	비고
1949.02.27	39	제주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구형법 제77조(내란) 적용)
1949.10.02	249	고등군법회의(국방경비법 제33조(적 구원 통신 등), 제34조(간첩) 적용) ¹²¹⁾
합계		288명 ¹²²⁾

표 II-4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여순사건)

연도	집행인원(명)	비고
1948.10.31	76	순천지역 군법회의
1948.11.14	46	고등군법회의
1948.11.16	12	제1차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민간인)
1948.11.30	+300	제2차-제9차 고등군법회의(민간인)
1948.11.23	23	대전군법회의
1948.11.27	55	총10차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로 1차 집행(군인)
1949.01.17	69	총10차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로 2차 집행(군인)
합계		최소 558명

119) David T Johnson, Franklin E Zimring,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60.

120) 한용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7쪽. <표-1> 참조.

121)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편사연구사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62년까지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해 판결을 받은 피고인 23,000여명 가운데 약 30%인 7,300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김득중,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법·역사적 접근”, 아세아연구 제53권 제4호, 2010, 32쪽.

122) 1949년 10월 2일, 집행된 인원 가운데 20명은 제주도 주둔 9연대 소속 군인임. K MAG, G-2 Periodic Report, No.192, October 6, 1949; Joint Weeka, No.17, September 30-October 7, 1949.

위의 [표 3]과 [표 4]와 같이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한 군사법원(군법회의)의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최소 846명에 달한다.

표 II-5 한국전쟁기간 특조령 적용 부역자재판에 의한 사형집행 인원

기간	집행인원(명)	비고
1950.11.07	25	중앙고등군법회의 및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
1950.11.24	242	서울지방법원(민간 법원재판)
1950.11.25	96	중앙고등군법회의
	65	서울지구 고등군법회의
1950.12.15	39	법무부?
합계		467명(+)

아울러 [표5] 한국전쟁기간 특조령이 적용되어 군사법원(군법회의)과 민간법원에 의한 사형판결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은 최소 467명에 이른다. 그런데 [표 6]에서와 같이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발발 후 6개월간의 사형선고인원은 무려 1,90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사형집행 인원을 쉽게 가늠할 수 없게 한다.

표 II-6 1950-1955년 군사재판에 의한 사형선고 인원

연도	육군본부(1956) ¹²³⁾	육군본부(1998) ¹²⁴⁾	(1956) : (1998) 비교
1950.06-1950.12	1,902	1,902	0
1951	1,132	925	-207
1952	559	136	-423
1953	29	62	+33
1954	54	58	+4
1955	42	42	0
합계	3,718명	3,125명	-593명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기간까지 확인된 통계만으로도 최소 1,313명이라는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성찰해 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형벌제도로써 사형에 내포되어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사회일반에 공지하려면 그 출발점은 공식적이면서 실증적인 통계 자료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민간법원의 사형선고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증하는 작업과 군사법원의 사형선고에 따른 사형집행 인원을 정리하여 특징하는 작업은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사형의 존치와 집행의 재개를 요청하는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여론 형성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23) 육군본부(편),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군사감실, 1956, 127-129쪽.

124) 육군본부, 법무50년사(1946-1998), 육군본부 법무감실, 1998, 173쪽.

5. 1980년~1997년 사형집행의 현황

1980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검이826.1-25602)에 따라 9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진 이래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18년 동안 모두 166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1981년, 1984년, 1988년, 1993년, 1996년 등 5년간은 사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있었던 것은 13년간이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8명씩을 집행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생명침해의 결과가 수반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 살인(44.6%), 강도살인(31.9%), 존속살인(7.8%), 약취유인살인(6.6%)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1.8%) 등으로 152명(91.6%)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생명침해의 결과가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는 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11명(6.6%)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강도강간(가정파괴범) 3명(1.8%) 등 14명이다.

권별로는 1980년 이래로 1987년까지 제5공화국 시기에 70명이 집행되어 전체 집행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안사범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 의한 경우는 59명으로 연평균 9.8명꼴로 집행되었고, 살인(25명)과 강도살인(24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약취유인살인(6명)과 존속살인(4명)으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이 뒤를 잇고 있다. 죄명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1985년 집행의 경우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생명을 침해하지 아니한 일반 형사사건(상습강도강간)으로 사형이 확정된 3명의 집행이 있었으나, 공식통계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1988년~1992년까지의 제6공화국 시기에는 39명이 집행되었으나(연평균 9.8명), 이 시기부터 공안사범에 대한 집행이 사라졌는데, 집행된 사형확정자들은 전원이 생명을 침해한 살인(20명), 강도살인(12명), 존속살인(3명), 약취유인살인(2명)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1993년~1997년까지의 문민정부 시기에는 57명이 집행되었으며(연평균 19명), 살인(30명), 강도살인(15명), 존속살인(13명), 약취유인살인(11명), 현주건조물방화치사(1명) 등 54명(94.7%)이 생명침해 범죄들이었고, 생명침해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상습강도강간을 저지른 3명도 엄형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수대에 올라야 했다.

제4절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처우

1. 법적 근거

현행 법령에서 사형확정자와 이들에 대한 처우, 사형집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형법과 군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이하 형집행법)’,¹²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96호 이하 형집행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923호, 이하 형집행법시행규칙)’,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제861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66호 이하 군형집행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66호 이하 군형집행법시행

125) 사형확정자를 포함한 수용자들에 대하여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경수, “수형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인권과 정의 제449호, 대한변호사회, 2015, 88-89쪽.

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91호 이하 균형집행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사형집행의 대강을 형법과 균형법,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형집행법, 형집행법시행령, 형집행법시행규칙,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균형집행법, 균형집행법시행령, 균형집행법시행규칙 등에 두고 있다.¹²⁶⁾

2. 사형확정자의 수용

(구)형법(법률 제105호, 1950.03.02., 제정) 이래로 2007년까지는 민간의 사형확정자의 경우 미결수용자로 분류되어 전국의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22일,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이 시행되면서(법률 제 8728호), 현재 민간인 신분의 사형확정자는 구치소 뿐 아니라 교도소에도 수용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균형집행법 제77조 제1항). 사형이 확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하되,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 수용할 수 있으나(형집행법 제89조 제1항, 균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이들의 수용 거실에 대한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집행법 제89조 제2항).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형확정자는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구분 수용하되, 교도소 수용의 경우는 교도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며, 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는 구치소 수용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 교도소에서 교육·교화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시행규칙 제150조 제1항). 그러나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앞의 구분 수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하거나,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150조 제2항),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일반경비시설)과 도주방지 및 수형자 상호 간 접촉을 차단하는 강화된 설비를 갖추고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엄중히 하는 교정시설(중경비시설) 등 경비등급이 높은 설비와 계호의 정도를 유지하는 곳(형집행법 제57조 제2항)이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08조). 사형확정자는 매월 4회로 접견 횟수가 제한되지만(시행령 제109조), 교정시설의 소장이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용된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도 있으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110조).

126) 조균석, 앞의 논문, 54~55쪽.

3. 사형확정자의 처우

2008년 연말부터 각급 교정시설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90조 제1항, 균형집행법 제77조 제3항).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형확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51조),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교도관과 지속적인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52조 제1항). 아울러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53조 제1항). 그러나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면 그의 의사, 건강상태, 담당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3조 제3항). 또한 사형확정자에게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소장은 그 프로그램이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54조). 사형확정자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고(시행규칙 제155조),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은 월 3회 이내의 범위로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6조).¹²⁷⁾ 그러나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주제로 다룬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이에 대한 논의도 실무 차원에서 수용자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어서 처우와 관련한 법적 접근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¹²⁸⁾

127) 현행법상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의 현황과 인권적 교정처우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의 쟁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2011, 231쪽 이하 참조.

128) 신양균, “사형확정자의 처우,” 법조 제670호, 법조협회, 2012, 151쪽 이하 참조.

제3장 사형의 대체형벌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국내 논의의 동향

1. 개념

종신형(Life imprisonment)은 수형자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하는 자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실태에 따라 가석방과 사면, 감형이 없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절대적(Absolute)’으로 석방의 기회가 박탈되는 종신형일 수도 있고, ‘가석방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사면 또는 감형은 가능한’ 종신형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단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를 상대적(Relative) 종신형이라고 할 때 그 외의 종신형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절대적 종신형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형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순위의 중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도 정해진 형기 없이 무기한의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¹²⁹⁾ 일정기간 복역 후에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는 상대적 종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판단할 때 상대적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일생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되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형벌임에 대하여 무기징역은 일정기간과 조건 아래 가석방을 전제로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형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

가. 국회

[표 7]과 같이 2004년, 17대 국회에서 175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처음으로 사형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이 등장하게 되었고, 연이어 2005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2006년 법무부도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와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형폐지의 대체형벌이 제도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구체적인 논의를 촉발하지는 못하였고 이후로 19대 국회까지 5차례에 걸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될 때마다 종신형은 그 대안으로써 거론되어 왔다.

표 II-7 사형폐지법안의 발의와 제시된 대체형벌

	발의일	발의자	대체형벌
15대	1999.12.07	유재건의원 등 91인	무기징역
16대	2001.10.30	정대철의원 등 63인	무기징역 (가석방 제한 15년)
17대	2004.12.09	유인태의원 등 175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불가능)

129)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428판결.

18대	2008.09.12	박선영의원 등 39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사면·감형 불가능)
	2009.10.08	김부겸의원 등 53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불가능)
	2010.11.22	주성영의원 등 10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사면·감형 불가능)
19대	2015.07.06	유인태의원 등 172인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불가능)

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에 의한 실질적 위헌 심사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재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태도를 굳건히 유지했으나 특히 2010년 결정에서 소수 위헌의견(김희옥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체계에 상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가석방 없는 무기자유형 등의 수단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가가 범인을 교도소에 계속 수용하고 있는 한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목적은 사형과 똑같이 달성될 수 있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절대적 종신형제도 또는 유기징역제도의 개선 등 사형을 대체할만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현행 무기징역형이 아닌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사형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여론조사

또한 1999년 10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여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형 찬성의견이 50%이고, 폐지의견이 43%였지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폐지의견은 61.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⁰⁾ 국민여론의 태도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단순하게 질문할 경우 존치의견이 우세했지만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대체형벌을 전제할 경우 사형폐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형 대체형벌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입장

가. 논의의 출발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대체형벌이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¹³¹⁾ 당시의 논의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나누어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사형폐지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형벌효과의 측면에서 사형을 그대로 존치시키되 집행유예제도를 두어 사형선고 뒤 정황을 참작하여 신설되는 종신형으로 ‘감형’을 하는, 일종의 사형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비슷한 시기, 사형폐지와 대체형벌을 연계하는 형태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견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폐지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 아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의 평가가 있으면 그때 상대적 종신형을

130)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9.02.18., 17쪽.

131)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청구법학 제15권, 청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51-52쪽

인정하지는 것이다.¹³²⁾ 이와 같이 종신형이 단계적 구조를 취해야 했던 것은 논의당시의 무기징역제도가 형법 개정 전의 상황이었던 까닭에 10년의 복역 후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논의방향

사형을 폐지할 경우 도입해야 할 대체형벌과 관련된 국내 학계의 논의 방향은 크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현행 무기징역제도의 보완 및 유지, 그리고 절충적인 입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대체형벌의 도입을 주장하더라도 일부의 견해는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지 않거나 사형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신형은 병사 또는 자연사할 때까지 수형자를 수감시설에 감금하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법률상의 용어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석방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고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한다. 나아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가석방 뿐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게 보장된 사면권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를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¹³³⁾

(1) 절대적 종신형 도입론

(가) 내용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제안되었던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들은 원칙적으로 사형폐지를 전제하면서 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¹³⁴⁾ 이들에 의하면 절대적 종신형이 위험적 요소를 띠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대안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사형을 대체할만한 필요 충분한 형벌이 된다고 국민 대부분을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형폐지전략으로서 중간단계의 대체형벌은 절대적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¹³⁵⁾ 아울러 위험성의 문제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¹³⁶⁾ 만일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게 되면 가석방이 허용되는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행법상의 무기징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감정, 피해자감정, 위하력 등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절대적 종신형의 타당성을 주장한다.¹³⁷⁾

절대적 종신형을 사회적 생존에 대한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날 사회가 생물적 생존을 박탈했던 전통 사형제도에서 사회적 생존을 박탈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의 대체형벌로 적합하거나,¹³⁸⁾ 현행 무기형을 상대적 종신형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도 무기형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이 되고 있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법 감정도 맞지 않으며 특히 사면이 남용되고 있으므로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전혀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¹³⁹⁾

132)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34쪽

133)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0쪽 이하 참조.

134)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28쪽 이하 참조.

135) 김영옥,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 제2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2, 279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141쪽 이하.

136)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92쪽.

137) 김인선, “한국의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재고”,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199쪽.

138)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법학연구 제25호, 한국법학회, 2007, 367쪽.

139)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5호, 한양법학회, 2009, 351~352쪽.

또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20년 이상을 수감하면서 행형성과 개선의 정, 재범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후,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동안 경제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피해자측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¹⁴⁰⁾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응보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¹⁴¹⁾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사면이나 감형은 허용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형벌체계와의 균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견해¹⁴²⁾도 있다.

이외에도 중대범죄의 유형이나 성격, 정도에 따라 사형, 절대적 종신형, 무기형(상대적 종신형), 유기형의 형태로 다단계적 형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형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20년의 기간 수형생활 후 가석방이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특별사면이 아닌 국회 동의를 거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¹⁴³⁾

더불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그것이 사형과 무기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형벌이며, 사형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응보 감정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거나,¹⁴⁴⁾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여론과 사형확정자 뿐 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교도관, 피해자, 사형확정자의 가족 등 관계되는 모든 이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는 상처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¹⁴⁵⁾ 국민 감정상 사형폐지의 수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¹⁴⁶⁾

(나) 비판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이 완벽하게 사형을 대체하는 이상적인 형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에 이를 때까지 수감시설에 수용된다는 것은 수형자에게는 허무감, 정신적 심리적 공황, 절망감 등에 빠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고,¹⁴⁷⁾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것은 재사회화의 형벌목적이 배제된 형벌이기에 사형제도와 별반의 차이가 없으며,¹⁴⁸⁾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¹⁴⁹⁾ 이것은 결국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하며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 있다.¹⁵⁰⁾

물론 생명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에 비하여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

140)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0~144쪽.

141) 송문호, “한국형사제도의 발전경향”, 법학연구 제38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3쪽.

142) 이원경,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교정연구 제69호, 한국교정학회, 2015, 287쪽.

143) 김중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호, 한국법학회, 2005, 38~40쪽;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체 형으로 형기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행상이 양호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은 물론이고 사면이나 감형에 의한 출소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자유형 가운데 최고의 형벌이며 사형폐지에 상응하는 대체형벌로 생명침해법 가운데 특히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중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형벌제도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144)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42쪽

145)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법학연구 제25호, 한국법학회, 2007, 364쪽.

146)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0쪽

147) 김인선,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토론”, 411쪽;

148)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166쪽;

149)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1쪽 이하; 이훈동, “전환기의 한국형법: 사형제도의 새로운 시각”,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5, 442쪽.

150) 손동권,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85쪽;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7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2쪽.

고 감성적인 수용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사형폐지를 우려하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여타의 대체형벌보다 저항감이 덜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형의 존속으로부터 폐지로 급격히 변경할 수 없는 국가들이 선택지로 선호하는 과도기 단계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⁵¹⁾ 그러나 국가의 의도된 죽임은 회피되지만 자연사 혹은 병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고,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사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이를 도입한다면 사형에 가해졌던 인간존엄과 가치에 관련된 위헌성 비난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옮겨갈 것이다. 오늘날 수형자를 일정한 기본권의 제약이 허용되는 특별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도 엄연히 인간존엄과 가치의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절대적 종신형은 일생이 구금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격의 윤리성을 파괴하게 되어 인간존엄과 가치의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¹⁵²⁾

이외에도 우리의 행형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질서의 문란과 교정사고의 증가, 교정시설이나 행형예산의 부담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2) 상대적 종신형 도입론

절대적 종신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위헌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상대적 종신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신형의 집행에서 가석방이 논의될 수 있는 시점을 25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¹⁵³⁾ 절대적 종신형은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¹⁵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현행 무기형과는 가석방 조건을 달리하는 상대적 종신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¹⁵⁵⁾ 사면과 감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수형자의 사회복귀는 형법상 가석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수형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¹⁵⁶⁾ 인간존엄성과 형벌목적은 동시에 고려할 때 가석방과 사면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을 사형의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¹⁵⁷⁾ 등이 논쟁되고 있으나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서와 무기징역형과의 양형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준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석방, 사면, 감형 또는 복권 등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한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종신형이 선고된 이후 수감시설에서 복역한 시간적 경과의 정도가 될 것이다.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은 범죄에 대한 형벌목적(응보와 예방)에 부합해야 하는데,¹⁵⁸⁾ 우리나라

151) 박관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15쪽 이하;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92쪽;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9호,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245쪽;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6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49쪽 이하;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232쪽.

152) 이상돈,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은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 박영사, 2006, 713 -714쪽;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141쪽;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233쪽.

153)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 FORUM 제15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243~244쪽.

154)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166~167쪽.

155) 신양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636쪽 이하.

156) 이승준, 앞의 논문, 145쪽.

157)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제3호, 중앙법학회, 2010, 278쪽.

라 학자들은 15년,¹⁵⁹⁾ 20년,¹⁶⁰⁾ 20년 이상,¹⁶¹⁾ 25년,¹⁶²⁾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삼아 잔여 수명이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기간¹⁶³⁾ 등 그 기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3) 절충적 입장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모두 사형의 대체형벌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를 모두 검토하여 절충하려는 견해도 나타난다. 즉, 과도적인 상황인 현 단계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그것은 한시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중국적으로는 입법차원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거나,¹⁶⁴⁾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으로 채택하되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 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중국적 사형폐지의 대안은 상대적 종신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에 속한다.¹⁶⁵⁾

이외에 대체형벌을 일률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범죄의 행위태양과 책임의 정도, 사회적 비난의 강도, 형벌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이원체계로 정비하자는 견해도 있다.¹⁶⁶⁾

(4) 절대적 종신형 도입 반대론

사형의 대체형벌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되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가치에 위반되므로 그 도입에 반대하거나,¹⁶⁷⁾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대응책으로의 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수형자의 인권적 처우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도 나타난다.¹⁶⁸⁾

(5) 현행 무기징역형의 실무상 운용론

별도의 대체형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현행 무기징역형과 상대적 종신형과 비교할 때 운용현실에 있어서(즉 현행 형법상 유기자유형의 상한이 30년으로 되고, 무기징역형은 최장 50년으로 상향되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제도를 실무상 운용하자는 견해가 있다.¹⁶⁹⁾

158)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22쪽;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FORUM 제15권, 2004.12, 243쪽.

159) 제16대 국회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60)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2.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소고”, 278쪽;

161)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4쪽

162) 이인영, 앞의 논문, 243쪽

163) 이승준, 앞의 논문, 143쪽.

164) 유병철,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0호, 한국교정학회, 2013, 175쪽;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쪽 이하.

165) 조국, “사형폐지 소론”, 형사정책 제20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317~318쪽.

166) 이덕인,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제7권제2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5, 272쪽.

167) 김중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17호, 한양법학회, 2005, 263~264쪽.

168)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245쪽; 김창군, “특별형벌의 속성과 문제점”,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1999, 339쪽.

169) 주현경, 앞의 논문, 413쪽; 이경열, “중국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토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163~164쪽.

4. 2005년 법무부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 의견

지난 2005년, 법무부의 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는 가석방이 불허 되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고, 위원회 구성원의 회의 결과, 전원 찬성의견으로 사형 존치를 전제로 해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태도는 사형과 무기형과의 간극(대개 18년 내지 23년 복역)을 좁히기 위한 종신형 도입에 전원이 반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형의 가석방 불허 기간에 대해서는 당시 10년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위원회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으며 가석방 불허 기간을 법원이 선고하게 하는 등의 대안에 대하여도 다수 의견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¹⁷⁰⁾

5. 2009년 형사법 개정 연구

2009년 법무부가 발간한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에서는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절대적 종신형제도 도입의 반대입장의 논거들이 제시되었다.¹⁷¹⁾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기간의 구금생활은 수형자에게 정신적 장애를 야기하고 인격의 퇴화, 유년 단계로의 퇴고, 사회적응능력의 상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신형의 집행은 ‘끝없는 공포의 연속(Schrecken ohne Ende)’이라는 점에서 ‘공포와 함께 끝(Ende mit Schrecken)’인 사형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1977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독일 기본법에 상응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¹⁷²⁾ 종신형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종신수형자에 대하여 특별사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치국가원칙은 종신형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할 절차를 제정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1981년, 독일은 제19차 개정형법에서 제57a조(Aussetzung des Strafrestes bei lebenslaenger Freiheitsstrafe)를 신설하면서 종신형에 대하여도 가석방이 허용될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의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지만 사형이 구형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비교적 장기라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표시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들어선 현재의 상황에 극단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형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수인하면서도 사형이 아니라면 또 다른 차선의 형벌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복역 후 가석방되는 형벌이 아니라야만 한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감성적 논리나 형이상학적인 이념의 차원을 넘어 현실적으로 사형의 대체형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¹⁷³⁾

170) 연구총서 09-25-05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총칙 개정안: 죄수, 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7쪽.

171) 법무부, 형사법개정 연구자료집, 2009, 444쪽; 손동권,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285면 각 참조.

172) BVerfG 45, 187.

173) 김은영, 공정식, “살인범죄 피해자들의 종결감과 사형선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1권제3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6. 2017년 통일형법시안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현행 형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통일형법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¹⁷⁴⁾ 통일형법시안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제도적으로만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범죄증가 등의 부작용이 진단된 바 없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형법에는 굳이 사형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논거로 사형을 형벌목록에서 삭제하였다.¹⁷⁵⁾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문제도 통일형법시안 작성과정에서 연구진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가석방이 불허되는 절대적 종신형이 현재도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형벌이므로 향후 통일한국의 형법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¹⁷⁶⁾ 통일형법시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징역, 금고, 구류로 되어 있는 것을 자유형으로 통합시켰고, 벌금과 과료도 벌금형으로 통합시켜 현행 9가지 형벌의 종류를 자유형과 벌금형으로 단순화시켰다.¹⁷⁷⁾

제2절 종신형에 대한 국제적 동향

1. 서설

종신형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과 국민의 법 감정 등 심리적 요소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¹⁷⁸⁾ 1) 절대적 종신형만 시행하거나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국가, 2) 상대적 종신형만 시행하고 있는 국가, 3) 종신형 없이 유기의 자유형 제도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구별된다. 다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미국(다수의 주에서 시행)을 포함하더라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약 80여개 국가에서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에는 사형을 폐지한 국가도 상당수 있고 사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신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다[표 10]. 그러나 약 30여개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고도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표 11].

사형을 폐지한 유럽국가들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상대적 종신형으로 법정최고형을 대체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면서 당초에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마련해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이를 폐지한 후 상대적 종신형으로 일원화하였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는 유럽지역의 국가는 네덜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가석방을 불허하는 종신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사면이 허용되는데, 이를 통하여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전환이 가능

2016, 151쪽 이하 참조

174) 박학모, 임석순, 오영근, 전지연, 이용식, 이승호, 한영수, 정승환, 이진국, 류부근, 김선택, 윤정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연구(III)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83쪽 이하 참조

175) 박학모 외 11인, 앞의 책, 187쪽.

176) 박학모 외 11인, 앞의 책, 188면.

177) 통일형법시안 제39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형, 2. 벌금형 (박학모 외 11인, 앞의 책, 183쪽 참조)

178)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Life Imprisonment, United Nations, 1994, paragraph.21~33.

하다. 감형에 가까운 이와 같은 사면조치가 이루어지면 통상 형기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가석방도 가능하게 된다. 불가리아의 경우에도 종신형을 부과하더라도 복역기간이 20년을 경과하면 30년의 유기자유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많은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 사형폐지와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마련한 뉴멕시코 주를 비롯하여 일부 주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최고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주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를 형벌강화의 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형을 폐지한 유럽국가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현행 무기징역에 가까운 상대적 종신형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에 의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최소 복역기간은 벨기에의 경우 10년(재범에 있어서는 14년), 덴마크는 12년,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은 12년에서 30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15년, 프랑스는 18년에서 30년, 헝가리(시효 없는 범죄의 경우 최장 30년)와 체코는 20년,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25년, 이탈리아는 26년 등이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의 경우는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은 1979년 헌법개정과정에서 유기자유형만을 규정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는 사형폐지를 하면서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유기자유형의 상한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장기 20년(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30년, 포르투갈은 재범의 경우 25년)이고, 노르웨이는 21년이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일반범죄의 유기자유형 장기는 15년이지만 중대범죄의 장기는 20년에서 40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가운데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본에 국한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형폐지와 종신형제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

가. 국제연합(UN)의 규칙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들을 살펴보면,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6년 3월 8일부터 국제조약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⁷⁹⁾ 제6조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생명권이 있고 이를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며,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에 대하여 가장 중한 범죄로 제한하여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⁸⁰⁾ 1989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179) 대한민국의 경우 1990년 7월 10일 발효, 조약 제1007호.

180)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6조

- ①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②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 ③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 ④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 ⑤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 ⑥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선택 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을 채택한 후, 1991년 7월 11일부터는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¹⁸¹⁾ 제2선택 의정서 제1조는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결의안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사형집행 유예가 인권의 향상과 점진적인 발전에 기여하며, 사형집행의 억지력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오판으로 인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으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사형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금지하며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사형집행의 유예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형폐지국가에 대해서도 사형제도의 재 도입 금지를 요구하였다.¹⁸²⁾ 유엔은 이와 같은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 반복하여 채택하였다.¹⁸³⁾

종신형제도와 관련하여 국제규약(B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방 가능성이 부정되는 종신형의 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⁸⁴⁾ 제3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은 물론이고 석방의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¹⁸⁵⁾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¹⁸⁶⁾ 제77조 제1항,¹⁸⁷⁾ 제78조 제3항¹⁸⁸⁾과 제110조 제3항¹⁸⁹⁾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

181)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미가입국임. 이에 관해서는 박미숙, “국제조약중의 사형규범과 한국형사법의 조화 및 완비,”비교형사법연구 제 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829쪽 이하 참조.

182)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8 December 2007. 62/149.

183) 결의안 원문과 번역문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337~363쪽 참조.

184) 1989. 11. 20. 유엔총회 결의, 1990. 9. 2. 발효.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최병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8, 634쪽 이하 참조.

185) 아동권리협약 제37조(고문, 사형, 종신형의 금지; 권리지원)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한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186)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000년 3월 8일에 서명하고, 2002년 11월 8일 제234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비준하였다.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규정 원문은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법무부 2008, 참조.

187) 제77조(적용 가능한 형벌) ① 제110조를 조건으로, 재판소는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의 형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최고 3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유기징역

나. 범죄의 극도의 중대성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개별적 정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에는 종신형(life imprisonment)

188) 제78조(형의 결정) ③ 어떠한 자가 2개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과 총 징역기간을 명시하는 합산형을 선고한다. 이 기간은 선고된 개별형 중 가장 중한 형보다 짧아서는 아니되며, 또한 30년의 징역 또는 제77조 제1항 나호에 따른 무기징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형을 성인범죄자에게도 선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장기의 종신구금의 조건과 처우에 대하여 1955년, 개최된 제1차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인이 사회로 돌아 왔을 때 법을 지키면서 자활하는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한 널리 보장하기 위해 구금기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만(규칙 제58조), 수형자의 책임관념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형생활과 사회생활간의 어떠한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규칙 제60조).

1980년, 유엔의 제6차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는 장기복역 특히 무기복역은 적절한 단계에서 그 수형자를 사회생활의 주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상당한 조치들을 제공하지 않는 한 바람직한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유엔 소속의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위원회(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의 1994년 종신형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사법권이 종신형을 운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¹⁹⁰⁾ 이 보고서에서 종신형을 부과하는 형벌정책은 사회를 방위하고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종신형 수형자의 항소권리와 사면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범죄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석방의 가능성을 금지할 수 있다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나. 유럽의 기준

(1)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¹⁹¹⁾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참작하여 1950년 유럽 평의회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고, 1953년 9월 3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유럽인권협약에서 사형과 관련된 조항은 제2조(생명권)이다.¹⁹²⁾ 유럽인권협약 제2조 제1항은 사형판결의 집행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사형을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는 중죄를 이유로 선고한 사형판결을 집행함으로써 살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1983년 4월 28일에 체결되고 1985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¹⁹³⁾에 따라 유럽평의회 모든 회원국은 전시에만 사형집행이 허용되었다. 그 당시 유럽평의회 46개

189) 제110조(감형에 대한 재판소의 재검토) ③ 형의 3분의 2 또는 종신형의 경우 25년을 복역한 경우, 재판소는 감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형을 재검토한다. 그 전에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190) Penal Reform International, Penal Reform Briefing No.1, “Alternatives and the Death penalty: the problems with life imprisonment,”2007, p.9. (<https://www.penalreform.org/wp-content/uploads/2013/06/UNODC-1994-Lifers.pdf>)

191) 정식명칭은 「유럽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다. 유럽인권협약 원문은 https://www.echr.coe.int/Documents/Convention_ENG.pdf 참조.

192) 제2조(생명권) ①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법률적으로 보호된다. 법원이 사형을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는 중죄를 이유로 선고한 사형판결을 집행함으로써 살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살인이 야기된 경우에는 그 살인은 본 조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위법한 행위로부터 누군가를 방위하기 위한 경우

나.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그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다. 반란이나 폭동을 합법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경우

193)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원문은 https://www.echr.coe.int/Documents/Library_Collection_P6_ETS114E_ENG.pdf 참조.

회원국들은 1997년까지 제6의정서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제6의정서기 발효된 이후로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아가 2002년 5월 3일자로 발효된 「모든 상황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¹⁹⁴⁾(Protocol No. 13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는 전시(戰時)의 경우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제6의정서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전시에만 사형집행이 허용되었으나 제13의정서로 인하여 전시에도 사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제13의정서 제1조는, “사형을 폐지한다. 누구도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며 집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¹⁹⁵⁾고 명시하고 있다.

종신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 역시 유럽평의회가 주도하고 있는데, 1976년 2월 장기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결의안에서 일반예방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조건부 가석방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권고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형자가 더 이상 사회에 대하여 위협하지 않음에도 그를 평생 동안 가두는 범죄예방정책은 형을 집행하는 동안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현대적인 원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범죄자의 사회로의 재통합 이념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다.¹⁹⁶⁾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금지,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금지)를 근거로 사형 뿐만 아니라 절대적 종신형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는 2013년 7월 9일 영국인 수형자 Vinter 등 3인에게 부과된 ‘가석방의 기회가 없는 종신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¹⁹⁷⁾

(2)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1957년 12월 13일에 서명하였고 1960년 4월 18일자로 발효된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제11조는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으면서 7개 항목의 선언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다. 항목)가 “대한민국이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¹⁹⁸⁾ 이 협약은 2011년 3월 10일 국회의 비준을 받아 2011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되었다(조약 2070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 조약에 따라 유럽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한 범죄자나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에 대해서만 사

194)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원문은 <https://rm.coe.int/1680081563> 참조.

195) Article 1(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death penalty shall be abolished. No one shall be condemned to such penalty or executed.

196)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solution (76) 2 on the Treatment of Long-Term Prisoners(Adop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17 February 1976 at the 254th 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 이 결의안의 내용은 <https://rm.coe.int/16804f2385> 참조.

197) 유럽인권재판소의 대재판부(Grand Chamber)는 2013년 7월 9일 ‘Vinter and Others v. UK 사건’에서 영국과 웨일즈의 수감자가 불치의 시한부 환자이거나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있는 부정기형의 형태인 종신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2013-III, 319쪽 이하의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s nos. 66060/09, 130/10 and 3896/10) 참조.

198) 조약원문을 보려면,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외교부(http://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 참조.

형을 집행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¹⁹⁹⁾

3. 유럽국가

가. 일반적인 동향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종신형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구금을 의미하지 않는다.²⁰⁰⁾ 왜냐하면 극소수의 예외를 상정하지 않는 한 유럽의 국가들은 저마다의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수형자가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⁰¹⁾ 그러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생(終生)의 기간을 수감시설에서 보내야만 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다. 종신형과 관련된 유럽국가들의 형사정책은 가장 가혹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인정사정없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의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²⁰²⁾ 영국의 종신형은 사전에 최저 구금기간(tariff)을 규정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위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시기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의 위헌을 선언한 이래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종신형 자체를 폐지하고 유기자유형을 최고형으로 법정한 국가들인 스페인은 30년, 포르투갈은 25년, 노르웨이는 21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경우는 40년을 유기자유형의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장기간 구금시설에 수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유기자유형만을 두고 있더라도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100년 이상의 유기자유형이 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종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형의 집행 종료 후 특히 위험한 범죄자에게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구금의 부과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형벌정책은 결국 종신형을 운용하는 국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종신형을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평생 동안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조치’라고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유럽에서 종신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²⁰³⁾

나. 상대적 종신형만 존재하는 국가

(1) 영국

(가) 사형폐지의 역사적 배경

1776년까지 영국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220개에 이르렀으나 19세기에 접어들어 그 수가 차츰 감소하게 되면서 1861년에 와서는 모살죄, 대역죄, 폭력을 수반한 해적죄, 해군시설에 대한 방화죄, 간첩죄 등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죄로 줄어들게 되었고, 평시에 사형이 실제로 적용된 것은 모살죄에 국한되었다. 아울러 1868년 이후로는 형집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처형이 금지되었으며, 1933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한 이래로 사형의 적용은 더욱 제한되었다.

199)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234쪽.

200) 유럽국가들의 종신형제도에 대해서는 Dirk van Zyl Smit, Catherine Appleton, *Life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Bloomsbury Publishing, 2016 및 Kirstin Drenkhahn, Manuela Dudeck, Frieder Dünkel, *Long-Term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Routledge, 2014을 주로 참조하였다.

201) 특히 이와 관련하여 Christopher Nuttall, *Council of Europe,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2000, pp.109-120.

202) Jensen, Eric L., “Life Imprisonment as a Penal Policy,” *Riev. int. estud. vascos.* 55, 1, 2010, p.116.

203) Margaret E. Leigey, *The Forgotten Men: Serving a Life without Parole Sent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참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은 숏한 인명 피해를 경험했는데, 특히 나치의 대량학살이 가져온 인명경시에 대하여 반성적 성찰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영국에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되돌아보고, 다수의 영국 의회의원들이 사형의 제한과 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의회는 ‘사형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Capital Punishment)’를 구성한 후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1957년, 제정된 Homicide Act에 따라 사형은 일정한 중대 유형의 모살죄 등에 국한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모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다.²⁰⁴⁾ 이처럼 위원회의 보고와 그에 연이은 입법이 사형폐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사형이 선고되는 모살의 유형을 한정하는 등 수 많은 인명침해 범죄유형을 사형의 적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후 본격화되는 사형폐지과정에 하나의 포석을 놓는 시초가 되었다.

1950년대에 영국에서 이처럼 사형제도와 관련된 급진적인 변화가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건(1건은 명백한 오판이었고, 2건은 양형상의 과도함이 문제가 된 사건)의 억울한 사형집행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²⁰⁵⁾

이러한 상황 아래 강력한 사형폐지론을 고수했던 당시 총리 헤럴드 윌슨(Harold Wilson)은 1965년, Murder(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ct를 제정하여 잠정적으로 5년간 일정한 중대 모살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모든 모살죄에 대하여 반드시 종신형(필요적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다.²⁰⁶⁾ 그리고 다시 5년이 경과한 1969년, 항구적으로 사형폐지를 확정하는 의회의 의결이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물론 영국에서 모살 이외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사형폐지는 2003년에 와서야 비로소 완결되지만 그 이전에도 영국에서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모살죄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1965년 이후로 30년 이상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에서의 사형폐지는 1965년이라고 할 수 있다.²⁰⁷⁾

(나) 종신형의 형태

원래 영국에서 모살죄(Murder)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 유일했으나 1957년 제정된 Homicide Act에 의하여 모살행위가 일정한 중대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외의 모살죄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5년간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Murder(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ct가 1965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을 당시 사형존치를 지지하는 측에서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자 종신형의 재량적 선택을 대신하여 필요적 종신형(Mandatory Life Sentence)을 마련하게 되었다.

재량적 종신형(Discretionary Life Sentence)은 모살죄 이외의 중대범죄(고살죄, 살인미수, 강간죄, 강도죄, 방화죄 등)에 대하여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선고된다.

204) Jeremy Horder, Homicide and the Politics of Law Reform, OUP Oxford, 2012, pp.223.

205) 명백한 오판은 티모시 에반스(Timothy Evans)사건으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1950년,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으며 뒤늦게 진실이 규명되었고, 1966년, 사후사면이 되었다. 양형상 과도함이 문제된 사건 가운데 데릭 벤틀리(Derek Bentley)는 심야에 강도행위를 저지르던 도중, 경찰관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되었으나 실행범은 공범이었던 16세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실행범은 연령제한으로 사형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당시 19세였던 벤틀리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벤틀리는 지적장애가 있었던 점을 들어 다수의 시민들이 그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하였으나 1953년 집행이 이루어졌고 1993년에 와서야 사후사면이 행해진 후 1998년, 법원은 유죄판결을 파기하였다. 두 번째로 루스 엘리스(Ruth Ellis)사건은 질투 때문에 애인을 충동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28세라고 하는 연령과 금발머리, 두 아이의 어머니, 법정에서의 태도, 애인으로부터 받았던 폭력 등을 근거로 많은 시민들이 사형집행에 반대하였으나 1955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Catharine Arnold, Underworld London: Crime and Punishment in the Capital City, Simon and Schuster, 2012, pp.265~279.

206) John Hostettler, A History of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Waterside Press, 2009, p.266.

207) David Hirschel, J. David Hirschel, William O. Wakefield, Scott Sasse,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Jones & Bartlett Learning, 2008, pp.36~37.

1997년에 도입된 자동적 종신형(Automatic Life Sentence)은 중대한 폭력 혹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자동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자 입안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영국에서 종신형 수형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 공공보호 종신구금형(Imprisonment for Public Protection: IPP)

전술한 자동적 종신형이 종신형 수형자의 양산을 불러온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이른바 공공보호 종신구금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종신형이라기보다 일종의 보안처분에 가까운 부정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제제의 부과대상은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지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의 최저구금기간(Tariff, Minimum term)은 종신형보다 짧으며 가석방 이후 10년이 경과하면 석방의 조건(License)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종신형과 구별된다.

이 유형의 형벌은 2005년, 24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2012년에 와서 6,02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최저 구금기간이 짧은 경미범죄자에게도 부과되자 교정시설 내의 수감인원이 과잉화되고 충분한 개선 갱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시행 7년만인 2012년에 폐지되었다.²⁰⁸⁾

(라) 모든 종신형, 부정기형에 대한 가석방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기까지의 최저 구금기간은 심리를 담당할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하고, 기간 경과 후의 가석방 허가 여부는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공에 대한 위협의 존재 여부라는 관점에서 결정한다. 2003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모살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가능하게 되는 기간(Starting Point)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a. 범행당시 21세 이상으로 2명 이상의 모살죄에서 계획성, 유괴,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아동살해죄에서 납치,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교도관에 대한 살인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교의를 추진하기 위한 살인죄 등에는 종신수감명령(Whole Life Order), b. 범행당시 18세 이상으로 화기, 폭발물을 사용한 살인죄, 이욕 목적의 살인죄(예를 들면, 강도살인죄), 형사사범을 방해하는 살인죄(예를 들면, 증인살해죄), 성적 또는 가학적 행위를 수반하는 살인죄는 30년, c. 범행당시 18세 이상으로 나이프 등의 흉기를 사용한 살인죄는 25년, d. 범행당시 18세 이상으로 앞의 a. b. c.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15년이다.²⁰⁹⁾

(2) 프랑스

(가)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창설의 사적 배경

① 1960년대까지의 상황

프랑스에서는 1981년, 당시 법무장관 로베르 바당테르(Robert Badinter)의 주도로 사형폐지법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사형폐지법의 제도화로부터 26년이 경과한 2007년 2월, 사형폐지는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에 명문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사형폐지에 대한 60% 이상 국민의 찬성,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형폐지에 관한 여

208)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Towards Effective Sentencing: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vol.1, The Stationery Office, 2008, pp.18.

209) Great Britain: Parliament.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HL 189, HC 1293 - Legislative Scrutiny: (1)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and (2) Deregulation Bill, The Stationery Office, 2014., pp.10~12.

러 조약에의 가입과 비준의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프랑스에서의 사형폐지를 향한 도전은 오랜 연혁적 배경을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 국민의회(하원) 의원이었던 생파르조(Le Pelletier de Saint-Fargeau)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형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안은 가결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1810년, 형법전에는 이전보다 사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후 1830년대에 와서 사형 범죄의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형폐지가 정치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1906년, 프랑스 제3공화국체제 아래에서 사형의 종식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자 사형폐지법(안)이 만들어지고 국민투표(Referendum)에 부쳐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대다수를 점하여 1908년 12월, 국민회의에 제출된 법안은 부결되었다. 이후로 1970년대까지 프랑스에서 사형폐지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²¹⁰⁾ 그런데 실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형에 처해졌던 범죄자의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더욱이 1952년부터 1967년까지 사형판결의 수는 연평균 4건 이하였고, 처형자의 수는 대략 매년 1명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사면과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하급심 사형판결에 대한 파기 등에 의하여 사형집행은 가능한 한 회피되었기 때문이다. 1962년과 1965년, 1967년에는 사형의 집행이 전혀 없었고, 1960년대에 있어서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여론도 전체 국민의 약 35%에 그쳤다.

② 1970년대의 상황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사형존치가 국민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몇몇 중대사건에서 중죄법원(Cour d'assises)이 사형을 선고하자 대통령은 1960년대까지 사형을 가능한 한 회피하고자 활용했던 사면의 관례를 깨고 사건의 관련자 가운데 일부를 처형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사형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에 대하여 미디어와 여론에 의한 논의가 비등하였고, 중대사건의 발생과 그에 대한 사법적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형존치의 정당성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형판결은 증가했지만 사형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다시 사면으로 대응하였고 사형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되지 아니하는 구금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배경에 두고 1977년, 이른바 ‘폭력,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연구위원회’가 당시 대통령인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폭력과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103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위원회는 사형폐지에 대한 투표를 행하여 찬성 6명, 반대 3명, 보류 2명으로 표결된 사실에 근거하여 사형폐지를 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정리하고 사형을 대신하여 15년에서부터 20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상대적 가석방의 창설이 제안되었다.

1970년대에 있어서 사형에 대한 프랑스의 여론은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79년 4월에 이루어진 언론사 르피가로(Le Figaro)와 여론조사기업인 소프레(Sofre)의 공동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국민의 55%가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37%, 의견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8%였다.²¹¹⁾ 유권자 가운데 공화국연합당(RPR) 지지자의 68%, 프랑스민주연합당(UDF) 지지자의 60%, 프랑스공산당(PC) 지지자의 54%, 사회당(PS) 지지자의 48%가 각각 사형존치에 찬성을 표하였다.

210) Robert Badinter, Abolition: One Man's Battle Against the Death Penalty, UPNE, 2008, pp.221.

211) Council of Europe, The Death Penalty: Abolition in Europe, vol. 285, Council of Europe, 1999, p.113.

(나) 사형폐지법의 성립

① 1981년 대통령 선거와 사형제도

프랑스의 사형폐지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의 전환은 1981년의 대통령선거였다. 프랑스민주연합당(UDF) 소속으로 당시 현직 대통령 테스탱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의회에 사형폐지를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사형존치에 잠정적이거나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국연합(RPR)의 시라크(Jacques Chirac)는 사형폐지에 찬성하지만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헌법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당(PS)의 미테랑(Francois Mitterrand)은 명시적으로 사형폐지 찬성을 지지하고 의회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때 사형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1981년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에 더하여 프랑스에서 사형문제에 국민이 결단을 내리는 기회가 된 것이다.

② 사형폐지법의 가결과 내용

1981년 5월 25일, 선거의 결과,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6월 14일과 21일의 국민의회 선거에서 사회당이 압승함에 따라 미테랑 대통령은 사형폐지론자인 로베르 바당테르(Robert Badinter)를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바당테르는 1981년 8월 29일, 의회에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1981년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의회에서 논의에 부쳐진 후 찬성 363 대 반대 117로 가결되었다. 9월 30일에는 상원(Sénat)의 표결이 이루어져 찬성 160 대 반대 126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 이후 “사형폐지에 관한 1981년 10월 9일의 법률 제1981-908호(Loi no. 1981-908 du 9 octobre 1981 portant abolition de la peine de mort)”로 정식 공포되었다.

법률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결정적인 동시에 전반적인 형태로 사형을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제1조), 둘째,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무기징역형 및 무기구금형을 취하는 것을 명기하였으며(제3조), 셋째, 군법 및 전시에 있어서도 사형의 폐지를 명문화하고 있다(제6조, 제7조).²¹²⁾

주목되는 점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무기형을 채용했던 것이지만 이것은 전술한 ‘폭력,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연구위원회’가 제안했던 것과 같은 상대적 종신형이다. 즉 프랑스의 종신형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전 생애를 구금당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종생이라고 하는 형기의 도중에 가석방에 의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최저 구금기간은 18년이며, 기간의 경과 후 가석방의 신청이 가능하다.

(다) 폐지 후 국내여론의 추이

그런데 사형폐지법의 제정 이후 여론이 곧바로 사형폐지에 대한 찬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1999년까지 사형폐지론자보다 사형존속을 희망하는 의견이 더 많았고 특히 사형폐지법이 제정된 4년 후인 198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5%의 국민이 사형폐지에 반대하고 전체 국민의 29%만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다. 의회에서도 1984년 6월 14일, Alain Mayoud 의원에 의해 사형폐지법의 성립 이후 처음으로 사형부활에 관한 의원입법이 제출된 이래로 약 30여종에 달하는 사형부활법안이 제출되었다. 특히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억제책으로서 사형의 부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에도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사형부활이 주장되기도 했는데 2004년 4월 8일, 의회에 제출된 사형부활법안에는 테러행위를 어

212) https://franceintheus.org/IMG/pdf/Death_penalty.pdf.

떻게 재판할 것인지가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동시다발 테러 이후부터 스페인과 발리 등지에서 테러행위가 빈발하자 ‘전쟁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표현되는 테러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사형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일부 입법자들의 이와 같은 시도와는 대조적으로 1999년 이래로 프랑스에서는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의견을 상회하고 있다. 9.11 이후로 테러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형폐지를 지지하는 프랑스 국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사형폐지와 국민여론의 연동을 고민하는 존치국가들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사형폐지의 과정에서 있어서 프랑스는 이를 추동하는 형이상학적인 이념에 앞서 먼저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후 여론이 서서히 사형폐지를 추인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국민적인 합의(consensus)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를 배경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에 사형폐지규정의 범정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라) 사형폐지에 관한 헌법 개정

사형폐지를 헌법적 측면에서 완성하게 된 것은 2007년 1월 17일,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총리와 클레망 법무장관이 시라크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같은 날,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을 의회에 보고했던 필리프 위온 의원은 사형폐지를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에 명기한 이유로서 특히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제1의 이유는 사법적 요구(exigence juridique)라고 불리는 것으로 사형폐지 각국이 협조하고 가입 또는 비준하고 있는 국제 여러 조약에 프랑스가 참가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형을 부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덕적,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마) 종신형이 선고되는 범죄

프랑스에서 종신형은 가중살인죄, 반역죄, 테러행위, 마약조직의 중심인물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거나 고문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중죄 등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매년 평균 25건의 종신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현재 약 550명이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으나 가중살인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종신형은 드물다. 종신형 수형자들은 가석방 대상이 되기 전까지 평균 18년에서 2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강간죄나 고문을 포함한 아동살해죄, 계획적인 공무원살해죄(2011년 이후), 그리고 죽음을 초래하는 테러의 경우, 법원은 최대 30년의 종신형 기간을 부과하거나 수형자가 가석방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법원이 수형자에게 남은 전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라고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재적응의 심각한 징조로 보안구금기간을 줄이거나 심각한 건강상 이유로 보안구금기간 전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2011년부터 범행 당시 16세 이하였던 사람에 대한 최고 형량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되고, 1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종신형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범죄자에게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3) 독일

(가) 사형폐지와 절대적 종신형 도입 후 상대적 종신형으로의 일원화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과도기적 대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0년 후인 1981년부터 현재까지 상대적 종신형으로 법정 최고형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1949년 5월 24일, 독일기본법 제102조가 사형의 폐지(Die Todesstrafe ist abgeschafft)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형법 제211조도 사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채택되었다.²¹³⁾

그러나 독일형법 제2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자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살에 대한 종신형은 독일기본법의 정신에 합치되며, 종신형으로서의 형집행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인 회복 불가능한 침해상태를 야기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종신형의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에 속하므로 특별사면의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종신형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를 제정법으로 규율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을 결정하였다.²¹⁴⁾ 이 판결의 쟁점은 모든 수형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형자들이 사회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석방될 현실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수형자는 자신의 가석방에 동의해야 하며 (§57a I Nr. 3 StGB), 반성의 표시나 자비를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석방의 조건이 아니다.

이에 따라 1981년 제20차 형법개정을 통하여 상대적 종신형이 채택되는데, ① 15년을 복역한 경우, ②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해야 할 특히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③ 일반인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안관찰(Führungsaufsicht)을 조건으로 무기자유형의 남은 잔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종신형이 선고되는 범죄

따라서 독일에서 종신형(lebenslange Freiheitsstrafe)이 선고되는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15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독일형법상 살인죄, 대량학살죄, 반인륜 범죄, 일부 전쟁범죄에 대해서 종신형은 의무적으로 선고되며, 침략전쟁 음모, 대역죄, 반역죄, 아동 학대치사, 강간치사, 강도치사, 방화치사, 갈취 목적의 약취유인치사, 인질납치치사, 핵폭발로 인한 치사, 폭발물치사, 전리 방사선의 오남용으로 인한 치사, 강도치사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 공격행위,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항공 또는 해상교통의 공격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신형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종신형은 살인죄에 대하여 내려진다.²¹⁵⁾

(다) 가석방

법원이 가석방 신청을 거부할 경우 수감자는 2년 이하로 결정된 법원의 차단기간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7a IV StGB). 만일 법원이 ‘중한 범죄의 심각성’이 존재한다고 판결하면 가석방은 15년 이상 비특정기간 동안 연기된다 (§57a StGB). 수형자가 신청한 첫 번째 가석방을 거부하면서 법원은 범죄의 극단적인 심각성과 더불어 수감된 수형자의 발전(혹은 그것의 부족)에 근거하여 적합성의 결여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수형자가 몇 년 더 복역해야 다시 조기석방 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비록 평균적인 기간이 약 5년이고 더 긴 기간은 드물지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한 적군파(RAF) 테러범죄자의 경우, 법원은 그가 다시 가석방 자격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최소한 11년(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최소 26년형)의 유예를 명령했다. 이렇게 긴 시간은 그가 테러단체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의 살인에 가담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 5명의 살인으로 적어도 38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사회에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후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 판결은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종신형의 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구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213) 이와 관련하여 특히 Yvonne Hötzel, Debatten um die Todesstra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49 bis 1990, Walter de Gruyter, 2011 참조.

214) BVerfGE 45, 187

215) Ulrike Grasberger,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en der Höchststrafen in den USA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odesstrafe und lebenslange Freiheitsstrafe, Forum-Verlag Godesberg, 1996, S.49~50.

다(§57a I Nr. 3 StGB와 함께 §57 I Nr. 2 StGB). 그러나 이 사건은 독일헌법재판소에 항소되었고(BVerfG, Judgment from 29.11.2011-2 BvR 1758/10), 특정한 이유로 수형자를 38년 이상 감금하는 결정은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4) 스위스

스위스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은 종신형이며, 살인죄, 집단학살죄, 한정된 인질납치죄, 그리고 외세와 협력하여 스위스에 대항하는 전쟁을 계획한 행위에도 부과될 수 있다.²¹⁶⁾ 균형법에 따르면, 전시의 폭동죄, 명령불복종죄, 반역죄, 간첩죄 등을 이유로 종신형이 부과될 수 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은 원칙적으로 15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 부과된 형벌 이외에 종신형은 의도적으로 중범죄를 범하거나 시도할 경우 살인죄, 강간죄 또는 방화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복지에 대해 침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선고될 수 있다. 구금기간은 무기한이지만 구금의 지속성 여부는 매년 1회 관할 교정당국에 의해 검토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상습범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시민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의 발의를 위해 194,390명의 서명을 받아 폭력적인 강력 범죄자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구금을 명령할 수 있도록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People's Party)만 지지하였고, 다른 주요 정당들과 정부 그리고 종신형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에 의해 배척되었으나, 2004년 2월 8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6%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고, 관련 법률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덴마크

덴마크에서 ‘종신형(Livsvarigt fængsel)’은 형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규정된 가장 중한 형벌이다. 그러나 종신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생활하지 않고 복역 후 12년 경과 뒤에 사면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가 성공적이면 법무부장관(또는 장관이 인가한 사람)은 사면을 허가하는데, 이 경우 최대 5년의 가석방 기간이 조건으로 부가된다.

종신형이 선고된 수형자들은 평균 17년을 복역하는데, 재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일부 범죄자들이 평균보다 상당히 긴 시간을 복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사례에서 복역기간이 30년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살인범죄자들이 주로 종신형의 대상이지만 모든 살인죄에 종신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전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살인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평균적으로 덴마크에서 살인범죄자는 통상 20년까지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근의 사례에서 종신형을 받는 모든 사람은 살인범죄자였으나, 반역을 저지른 사람, 의회에 대한 무력의 사용, 전시의 스파이 활동, 테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방화, 악화된 상황에서의 운송수단 납치 또는 의도적인 핵물질의 방출행위 또한 종신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²¹⁷⁾

216) 자세한 것은 Dirk van Zyl Smit, Catherine Appleton, *Life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2016, pp.435 이하 참조

217) Lars Bo Langsted, Peter Garde, Vagn Greve, *Criminal Law in Denmark*,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pp.239 이하; Peter Scharff Smith, Thomas Ugelvik, 앞의 책, pp.481 이하 각 참조.

(6) 핀란드

핀란드에서도 종신형은 최고의 형벌이지만 실제적으로 종신형이 수형자의 전 생애 동안을 지속하지는 않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구금과 갇혀있는 생활에 수감되는 구금, 감독된 가석방 그리고 완전한 가석방으로 구성된다. 핀란드는 1949년, 평화시 범죄와 1972년, 모든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이래로 종신형은 살인죄와 반역죄, 간첩죄, 전쟁범죄, 집단학살죄, 인류에 대한 범죄 그리고 테러행위 등에 제한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이다. 1889년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종신형은 적어도 12년의 수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수형자는 이 기간이 경과한 뒤 조건부로 석방되지만 남은 여생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다. 1931년 이후 종신형 수형자는 대통령 사면에 의해 석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호관찰기간은 8년이였다.

현재, 종신형 수형자는 수감 후 12년을 경과한 뒤 가석방이 고려될 수 있고 대부분은 12년에서 15년간 복역한 후에 석방된다. 2006년부터 석방위원회(Parole Board)로 기능하고 있는 헬싱키항소법원(Helsingin hovioikeus)은 종신형 수형자가 12년 동안 복역하면 가석방자로 간주하고 있다. 가석방이 거부된다면 새로운 가석방 청문회는 2년 후로 예정되어 있다. 가석방이 허용된다면 위반이 없다고 가정하고, 3년의 가석방 기간을 충족할 때 완전한 석방으로 이어진다.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21세 미만이라면, 첫 번째 가석방 청문회는 10년 복역 후에 진행된다. 핀란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종신형을 선고 할 수 없고,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한 최대 형벌은 15년이며, 7년 반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2017년 현재, 핀란드에서 종신형을 선고된 수형자 가운데 가장 긴 구금기간은 22년이다.²¹⁸⁾

(7)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종신형(ergastolo)은 그 기간이 불확정적이다. 형 확정 후 10년경과 후(행형성적에 따라 8년 후) 수형자는 하루 동안 혹은 집에서 1년에 최대 45일을 보낼 수 있고, 교도소 밖에서의 작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형확정 후 26년 경과 뒤(행형성적에 따라서는 21년 후) 가석방될 수도 있다. 교도소 밖에서 일하거나 가석방될 수 있으려면 종신형 수형자는 가석방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법원(Tribunale di Sorveglianz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²¹⁹⁾ 그러나 수사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한, 마피아 활동 또는 테러와의 연관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게는 가석방의 자격이 허락되지 않는다. 1회 이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독거 수용된다.²²⁰⁾

(8) 폴란드

폴란드에서의 종신형(Kara dożywotniego pozbawienia wolności)도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것은 반역죄, 대량 학살죄, 반인륜적 범죄, 대량 살상무기의 불법 사용, 전쟁범죄, 살인죄 등 중범죄에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교정시설 수감자의 0.3%에 해당하는 300여명 가량이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방식의 교정처우가 적용되며, 통상 자살 고위험군 수형자로 분류되어 혼자 수용하고 있다. 종신형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25년을 복역해야 하며, 그 기간은 법원의

218) Matti Jouts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Finland: A General Introduction, vol.3, Ministry of Justice, Finland, 1995 참조.

219) Susanna Marietti, European Prison Observatory: Prison conditions in Italy, European Prison Observatory, Detention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2013, p.35.

220) Astolfo Di Amato, Criminal Law in Italy,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pp.127~128

판결로 정해진다. 그러나 1995년, 폴란드에서 종신형이 다시 도입된 이래로 가장 장기의 최소기간에 대한 판결은 45년이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이 일부의 종신형 수형자는 평생을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석방될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됨을 암시한다.²²¹⁾

그러나 대통령에게는 언제든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사면을 허가할 권한이 있지만 사면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다. 현재, 폴란드 교정시설에 구금된 종신형 수형자들은 모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20년에 처음으로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²²²⁾

(9) 러시아

러시아에서 종신형은 1992년 12월 17일, 법률 4123-I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이 법률은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자들의 형량을 소급하여 종신형으로 낮추는 것이었다.²²³⁾ 종신형이 별도의 형벌로 자리 잡은 것은 1996년 러시아형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다.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인구 및 공공의 도덕에 가해지는 중대한 범죄와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공공안전 및 성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중범죄 등이다(러시아형법 제57조 제1항). 러시아형법 제57조 제2항은 여성과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종신형의 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의 최고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종신형 수형자들은 최고등급의 보안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단일 살인죄에 대하여 종신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가 수용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고,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에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최소 구금기간(Minimum tariff)인 25년 또는 30년(만일 남성 범죄자라면 65세 이상인 경우)이 경과된 후 법원에 ‘조건부 조기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 대상자는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고, 특정 지역의 방문 제한 등 조건이 수반되며, 이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가석방을 철회할 수 있다. 종신형 수형자가 신청한 가석방이 거부되더라도 3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을 재신청할 수 있다.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종신형은 살인죄, 중강도죄, 집단학살죄 등에 부과되며, 수형자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정당국이 판단하면 15년의 형기가 경과되면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동의에 따라 사면을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연령이 21세 미만의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고 최대형량은 20년이다.²²⁴⁾

(11) 벨기에

벨기에에서도 종신형은 사형이 폐지된 이후 형벌규범에 의해 선고 가능한 가장 중한 형벌이지만 단순 살인죄

221) Piotr Kadocznny, Marcin Wolny, European Prison Observatory: Prison conditions in Poland, European Prison Observatory, Detention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2013, pp.40~41.

222) Konrad Buczkowski, Beata Czarnicka-Dzialuk, Witold Klaus, Anna Kossowska, Irena Rzeplińska, Dagmara Woniakowska-Fajst, Dobrochna Wójcik, Criminality and Criminal Justice in Contemporary Poland: Sociopol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016 참조.

223) 사형폐지 이전 러시아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Bill Bowring, Law, Rights and Ideology in Russia: Landmarks in the Destiny of a Great Power, Routledge, 2013, pp.174 이하 참조.

224) Claus Kress, Flavia Lattanzi, The Rome Statute and Domestic Legal Orders: General aspects and constitutional issues, Editrice il Sirente, 2000, p.61.

만으로도 부과될 수 있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15년(유죄판결의 전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경우), 19년(이전 유죄판결의 전력이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23년(이전 유죄판결의 전력이 5년 이상인 경우)을 복역한 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가석방을 거부하더라도 수감자는 매년 계속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²²⁵⁾

(12) 스웨덴

스웨덴에서의 종신형은 불확정의 구금기간에 대한 선고를 말한다. 스웨덴형법에 따르면 가장 중한 형벌은 10년 또는 종신형이다. 그래서 실제로 종신형은 10년 이상의 구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형자는 정부에 대하여 사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종신형은 표준 가석방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감형되었다. 사면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도 허용될 수 있으나 매년 허용되는 사면의 수는 1991년 이래로 낮았는데, 보통 연간 한 두건을 넘지 않는다. 1991년까지는 15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후로 교정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은 차츰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일반적으로 21년이 되었다. 범행 당시 21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교정당국과 수형자 및 희생자들의 비판이 증가하자 2006년,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수형자는 Örebro 하급심 법원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하기 전, 최소 10년을 복역해야 하고, 스웨덴 법률에 의해 허용된 가장 긴 확정형으로 정해진 형량은 18년 이하가 될 수 없다. 법원은 가석방의 판결을 내릴 때 범죄의 성격,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자 행동, 공공 안전 그리고 갱생의 기회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수형자들은 너무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어 결코 석방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선고형이 25년에서부터 31년 사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07년, 스웨덴 대법원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의 ‘일반적인 선택 사항’으로서 종신형보다 10년의 유기징역형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2009년 7월 1일,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어 종신형 이외의 최대 형량은 10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다.²²⁶⁾

다. 사면이 허용되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중된 종신형을 두고 있는 국가

(1) 네덜란드

1861년,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1873년,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이래로 네덜란드의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하는 거의 죽을 때까지의 구금을 의미해 왔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종신형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으며, 단지 사면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칙령에 따라 허가되는데, 1970년대 이래로 오직 두 차례 불치병에 걸린 수형자에게 사면이 허락될 만큼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종신형의 엄중한 성격 때문에 1945년 이래로 전쟁범죄자를 포함하여 불과 41명의 범죄자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국가에서 종신형에 처해지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살인죄는 약 12년에서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²²⁷⁾ 3인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 다른 범죄사실과 결합되지 않는 한 살인죄만으로는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225) Dirk Van Zyl Smit, Frieder Du 'nkel, 앞의 책, pp.32 이하 참조.

226) Dirk Van Zyl Smit, Frieder Du 'nkel, Imprisonment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isoners' Rights and Prison Condi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p.634 이하 참조.

227) P. J. P. Tak, The Dutch criminal justice system, Wolf Legal Publishers, 2008, pp.112~115.

그러나 예외적으로 2005년,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Theo van Gogh)를 살해한 모하메드 부예리(Mohammed Bouyeri)에게는 단순살인이지만 강력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신형이 선고되었다.²²⁸⁾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다른 범죄의 유형으로는 살인죄의 재범, 다중살인죄 또는 고문살인 등 중죄에 해당하는 별도의 상황이 개입되어 있었다.

(2) 터키

터키에서도 종신형은 가장 중한 형태의 처벌이며, 종신형은 과거의 사형이 담당하던 형벌의 기능을 대체한다. 2002년 8월 3일, 터키 법률 제4771호는 평시의 사형을 폐지하면서 터키형법의 17개 조항에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변경했고, 2004년 7월 14일의 법률 제5218호에 의하여 사형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터키형법의 약 40개 조항과 산림법과 같은 다른 형사법령들에 두었던 사형은 ‘가중된 종신형(Aggravated life imprisonment)’으로 대체되었다.

2005년 6월 1일, 터키 신형법(법률 제5237호), 신형사소송법(법률 제5271호), 신형집행법(법률 제5275호)과 같은 다수의 새로운 형사법령이 시행되었는데, 터키형법[TPC] 제45조 내지 52조는 형벌을 엄격한 자유형, 통상의 자유형,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자유형은 가중된 종신형, 종신형, 유기징역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신형과 가중된 종신형 이외에 다른 무기한의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터키형법 제47조에 따라 가중된 종신형이 평생 지속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집행법(LES) 제107조에서는 품행이 바른 경우 조건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갱생, 건강 악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대통령은 수감자들을 사면할 수 있다.

통상의 종신형은 비정치범과 정치범 및 조직범죄에 대한 종신형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는 24년 경과 뒤 가석방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3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석방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거부될 수 있으나, 거부되더라도 수형자는 3년마다 재신청할 수 있다.

가중된 종신형이 선고된 수형자들은 최소한 30년(비정치범)에서 최대 36년(비정치범인 조직범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될 수 있으나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는 가석방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남은 전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의한 사면, 감형의 가능성은 보장하고 있다.²²⁹⁾

형집행법 제107조에 따르면 가석방된 수형자들은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교정시설에 구금되었던 기간의 절반을 감독기간(denetim süresi)으로 보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선고는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집행법 제107조 제16항은 형법상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 헌법질서에 반하는 범죄와 국방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된 종신형이 선고된 경우는 조건부 석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사망에 이를 때까지의 수감). 이와 같은 규정은 모든 테러사건에 적용되며 수감자들은 남은 전 여생을 교정 시설에서 보내야만 한다.²³⁰⁾

228) 이 사건과 관련하여 Ron Eyeran, *The Assassination of Theo van Gogh: From Social Drama to Cultural Trauma*, Duke University Press, 2008, pp.175 이하 참조.

229) Florian Lüdtke & İdil Aydınoglu, *CISST-Addressing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Life Imprisonment, Civil Society in the Penal System/Turkey's Center for Prison Studies*, pp.32~43.

230) Tuğrul Ansay, Don Wallace, *Introduction to Turkish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p.176 이하 참조.

라.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의 수위가 종신형이 아닌 유기자유형으로 되어 있는 국가

(1) 스페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코 정권의 독재가 이어졌던 스페인은 1970년대 후반까지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사형집행은 1974년에 있었으며, 1978년, 생명권을 규정한 스페인 신헌법 제15조에 의하여 사형은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스페인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사형은 프랑코 시대의 압정에 대한 기억과 함께 하고, 사형폐지는 프랑코 독재의 종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2015년 7월 1일, 스페인에서도 LO 1/2015가 발효되면서 종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신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수정할 수 있는 영구적인 구금(prison permanente revisable)’이라고 불린다.²³¹⁾

세간에서는 스페인을 ‘종신형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으로 종종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형벌의 종류 가운데 종신형(Life Sentence)은 없지만 강력범죄의 병합죄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40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테러리스트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에게는 25년이 경과된 후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형이 폐지된 나라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40년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³²⁾

스페인의 형사구금제도의 기본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는 스페인헌법 제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구금 및 보안조치를 수반하는 형벌은 갇혀서 사회와의 재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강제노역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그 구금 중에 형의 조건, 형벌의 목적 및 형사법에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결국 수형자는 문화적 기회 및 전반적인 인격 형성의 기회에 대한 접근과 함께 유상의 고용 및 적절한 사회보장 급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헌법의 조항 속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강제노역의 폐지와 임금제, 사회보장의 권리마저 헌법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보장하는 규범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스페인헌법은 1975년 프랑코 독재정권의 종료로부터 20년의 토의를 거친 결과, 1995년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형벌은 자유형과 신체의 구속을 수반하지 않는 형으로 설정되고 전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은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른다. 원래 스페인에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은 없고 사형폐지 때도 대체형벌이 도입되지 않았다. 즉, 스페인에서는 범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고형은 단일 사건에서는 20년, 경합범의 경우 40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2015년, 테러범죄 등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의 집행개시 후 25년을 경과한 후 갇혀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40년을 다시 수년간 연장할 수 있는 형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실제로 형벌을 선고한 사례도 없으며 그 정착 여부는 미지수이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의 종신형은 균형법 위반행위(예컨대 전쟁 상황에서 적군에 대한 원조)로 제한된다. 일반형법상 최대 확정형은 21년의 징역형이지만 14년 이상 복역하는 수형자의 비율은 높지 않다.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231) Jon-Mirena Landa Gorostiza, Prisión y alternativas en el nuevo Código Penal tras la reforma 2015, Dykinson, 2016, pp.37~38.

232) 이와 관련하여 Julián Carlos Ríos Martín, Life imprisonment in Spain: An inhuman and unlawful punishment (www.statewatch.org/.../no-259-life-imprisonment-in-Spain.pdf).

자신에게 선고된 형기의 3분의 1(최대 7년)을 복역한 후 주말 동안 감독되지 않은 가석방을 받게 되며, 그들은 형기의 3분의 2(최대 14년)를 복역한 후에는 조기 석방될 수도 있다.

2008년, 노르웨이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마련한 로마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30년의 새로운 최대 형벌을 도입하였다. 형법상 ‘예방구금(forvaring)’이라고 불리는, 불확정적인 이 형벌이 적용되면서 최고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수형자가 원래의 형을 복역 후에도 여전히 위험하다고 여겨진다면, 구금은 한번에 5년씩 연장될 수 있다. 5년마다 구금을 갱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제 종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예방구금은 수형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로 간주될 때, 그리고 미래에 그가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 수형자는 매년 한 번씩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가 더 이상 사회에 위험하지 않다고 결정된다면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²³³⁾

(3) 크로아티아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종신형이 없다. 크로아티아형법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형태의 범죄들에 대해 20년에서 40년 사이의 장기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²³⁴⁾ 크로아티아형법에 따르면 각 유죄판결 건수의 형량 합계가 40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형량은 40년으로 제한된다.

2003년 7월, 당초 종신형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가 의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후 2004년에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후로도 종신형의 도입을 위한 의회절차가 시도되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크로아티아의 일부 정치인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여전히 종신형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현존하는 장기의 구금형(long-time imprisonment)으로도 충분한 범죄억제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벌이 부과된 범죄자들에게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종신형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전개해 오고 있다.²³⁵⁾

마. 중간요약

유럽국가들의 종신형은 해당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과 형사사법체계의 구축과정에서 수립된 범죄정책이 결합되어 있으며 중대범죄에 대한 범죄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벨기에와 스웨덴의 종신형은 유럽에서도 관대한 편이다. 이들 두 국가에서 종신형에 복역하는 사람들은 10년이 경과한 뒤에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종신형 수형자가 12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청문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종신형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복역하면 교도소 밖에서 일할 권리와 집에서 1년에 최대 45일을 보낼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지만 최소 26년을 복역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으며,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적지만 비협조적인 마피아 관련자나 테러리스트들을 평생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종신형 수형자들이 가석방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앞의 나라들보다 좀 더 긴 기간을 구금되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이 금지된 독일에서 종신형에 복역하는 사람들은 15년이 경과

233) Peter Scharff Smith, Thomas Ugelvik, *Scandinavian Penal History, Culture and Prison Practice: Embraced By the Welfare State?*, Springer, 2017, pp.511 이하 참조.

234) Irma Kovčo Vukadin, Vladimira Žakman-Ban, Anita Jandrić Nišević, “Prisoner Rehabilitation in Croati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year 12 no.2, 2010, p.148

235) Dirk van Zyl Smit, Catherine Appleton, 앞의 책, pp.360~366.

한 후에 가석방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대기기간은 중대범죄의 경우 18년, 테러리즘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26년으로 한층 더 늘어난다. 영국에서도 종신형 수형자는 구금 뒤 1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의 기회를 제공 받지만 인종적인 동기가 부여된 다수의 살인사건이나 특별히 사법당국을 겨냥한 살인사건 등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기 기간이 25년 또는 30년으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종신형 수형자에게 가석방 청문회 전까지 18년의 복역을 요구하지만 아동살해죄의 경우 가석방 청문을 요청하려면 그 최소기간은 30년까지로 연장되며, 심지어 법원이 종신토록 - 감형의 여지는 있는 - 가석방금지명령을 할 수도 있다.

동유럽국가에서는 종신형에 대한 최초의 가석방 청문이 열릴 때까지 서유럽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청문회 전까지 최소 20년의 복역을 요구하거나(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이보다 긴 25년의 복역을 요구하면서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고(폴란드), 범죄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로 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하기도 한다(헝가리).

사형이나 종신형의 제도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완화된 처벌형식의 끝에 위치한 나라로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모든 수형자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후에 주말을 자택에서 보낼 수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최대 25년의 형기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스는 16년간 복역한 뒤에는 수형자에게 가석방 청문회를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자유형의 일반적인 상한은 20년이지만, 경합범의 경우 최장 40년으로 늘어난다.

유럽국가 중에서 보다 강화된 처벌형식의 극단적인 끝에는 장기자유형과 종신형의 적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 세 나라가 있다. 아일랜드에서 살인이나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자동적으로 최소 4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네덜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함께 가장 가혹한 형태의 종신형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론적으로 왕실에 의한 사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종신형이 훨씬 더 흔해짐에 따라 사면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는 30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또는 장기자유형)을 최고형벌로 대체하여 운용하고 있고, 이에 관한 많은 경험적 결과를 토대로 형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 직후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사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간주되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호하여 입법한 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절대적 종신형이 드러내는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위헌문제에 직면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가석방이 용이하지는 아니하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대적 종신형을 취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표 II-8 유럽 국가별 사형폐지를 규정한 헌법 조문 비교

국가명	헌법 조문	내용
독일	제102조	기본법 제102조는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9장 사법에 속하고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법원의 조직,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재판관의 독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2조에 있어서 “사형은 폐지한다.” 라고 명기되었다.
프랑스	제66조의1	제66조의1은 제8장 사법권에 속하고 “어느 누구도 사형에 처해져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제85조	헌법 제85조는 제3장 연방의 집행 제2절 사법권에 속하고 “사형은 이를 폐지한다.” 라고 명기되었다.
아일랜드	제15조 제5절 제2항	헌법 제15조는 아일랜드 의회의 권능, 헌법의 최고법규성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제5절 제2항에 있어서 “아일랜드 의회는 사형을 과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제27조 제4항	제27조는 제1편 시민의 권리 및 의무 제1장 시민관계에 속하고 형벌에 대한 규정으로, 제4항에서 “사형은 전시군법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나 전시에 있어서의 사형도 1949년 10월의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현재 모든 상황 아래에서의 사형폐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내세울지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네덜란드	제114조	제114조는 제6장 사법조직에 속하고 “사형은 이를 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룩셈부르크	제18조	제18조는 제2장 룩셈부르크인과 그 권리에 속해 있고, “사형은 이를 제정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	제4조	헌법은 통치법전, 왕위 계승법,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등 4개의 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형폐지의 규정은 통치법전 제2장 기본적 자유 및 권리 제4조이다. 제4조에 있어서 “사형은 행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기되어 있다.
핀란드	제7조 제2항	제7조는 제2장 기본적 권리 및 자유의 안에 위치되어 있다. 제1항은 생존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며 고문 또는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방법에서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었다.
크로아티아	21조 제2항	제21조는 제3장 인권 옹호 및 기본적 자유 제2장 개인적 정치적 자유 및 권리에 속하고 제21조 제1항에 생존권을 규정한 후 제2항에서 “크로아티아공화국에 있어서 사형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기되었다.
슬로바키아	15조 제3항	제15조는 제2편 기본적 권리 및 자유 제2절 기본적 인권 및 자유에 속하고 제1항에서는 생존권이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누구도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되었다. 제3항에서는 “사형은 이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고 명기되었다.
슬로베니아	제17조	제17조는 제2장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속하고, 제14조에서 법 아래의 평등,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기본적 자유의 법에 의한 제한 등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제17조에 있어서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이 기술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은 불가침의 것이다. 슬로베니아공화국에 있어서 사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루마니아	제22조	제22조는 제1편 일반원칙 제1장 기본조항에 속하고 생명, 개인의 일체성의 보증, 사형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 제3항에 “사형은 이를 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체코공화국	제3조	제3조는 “체코공화국에 있어서 헌법체계 전체의 구성요소는 기본적 권리 및 자유 헌장이다.” 라고 말한다. 즉 체코헌법은 1991년 1월 9일에 체코슬로바키아 시대에 채용되었던 기본적 권리 및 자유헌장에 기초한다는 것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다. 그 기본적 권리 및 자유헌장의 제6조에서 “사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체코헌법은 사형폐지를 국시로서 표명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제69조 제2항	헌법 제69조 제1항에 있어서 인신의 자유(노예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및 재판의 적정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제2항에 “사형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명기되어 있다.
포르투갈	제24조	제24조는 제2편 권리, 자유 및 보장 제1장 개인적 권리, 자유 및 보장에 속하고 제24조 제2항에 있어서 “사형은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II-9 유럽 국가별 종신형의 비교

국가명	종신형의 법률상 정의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신형은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반드시 복역해야 하는 최저구금기간을 포함한다. 최소 복역형기가 지나면 수형자는 석방조건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하지만 가석방 위원회가 신청하고 국무부장관이 결정해야 한다. 가석방된 자는 “조건부 석방(on licence)” 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석방의 조건으로 감독 또는 이동의 제한 등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석방된 자가 석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가 판결 없이 “재구금(recall)” 된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수감되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종신형을 받고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석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평생 구금되어야 한다. 가석방이 가능한 최저구금기간에 대해 2003년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2003)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최저구금기간의 ‘기준 기간’ 을 규정하고 있다. ²³⁶⁾ 범죄의 죄질과 범정 등에 따라 법원은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형기를 줄이고 반대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늘려야 한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자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 최저구금기간은 12년이다. ²³⁷⁾
영국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종신형으로 형의 집행중인 자는 최저구금기간을 복역해야 한다. 최저구금기간이 지나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북아일랜드의 가석방위원회는 최저구금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며 가석방심사는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다. 가석방 될 경우 주거지역 제한 등 가석방 조건(licence)이 적용 된다.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구금된다. ²³⁸⁾
영국 (스코틀랜드)	종신형을 선고할 때, 사실심 판사는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최저구금기간을 정해야 한다. 최저구금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위원회는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를 “종신형 가석방 조건(life licence)” 에 따라 석방여부를 결정하며 수형자는 구금 대상에서 행동제약의 대상이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가석방위원회는 2년마다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아일랜드	종신형은 부정기형으로 평생구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아일랜드 가석방위원회의 권고와 조언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까지 복역해야 하는 최저구금기간은 약 12년이다. ²³⁹⁾
프랑스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 자격을 얻기까지 반드시 “최소복역형기(safety period)” 를 복역해야 한다. 최소복역형기는 짧게는 18년 길게는 30년에 이른다. ²⁴⁰⁾
독일	종신형을 선고 받고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단 가석방 조건은 (i)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이상 구금을 요하지 않고 (ii) 공공의 안녕을 고려해 석방이 적합하고 (iii) 형을 집행중인 자가 동의한 경우이다. ²⁴¹⁾
오스트리아	종신형은 부정기구금 기간을 포함하지만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i) 15년 이상 복역 (ii)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이상 구금을 요하지 않고 (iii) 수형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²⁴²⁾
네덜란드	네덜란드형법은 종신형을 “종신형이 선고되면 자유의 박탈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²⁴³⁾ 가석방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는 감형을 신청할 수 있다. ²⁴⁴⁾
벨기에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는 구금기간이 15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최저구금기간은 19-23년으로 늘어난다. ²⁴⁵⁾
룩셈부르크	종신형을 선고 받고 1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대상이 된다. ²⁴⁶⁾
덴마크	종신형을 선고 받고 최저구금기간인 12년이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여부를 결정한다. ²⁴⁷⁾
스웨덴	종신형은 부정기형으로 이론적으로는 해당 수형자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구히 구금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형자는 복역 후 10년이 지나야 정기한부 감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복역형기는 18년으로 정할 수 있다. ²⁴⁸⁾
핀란드	종신형을 선고 받고 최저구금기간인 12년이 경과되면 조건부 가석방 대상이 된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21세 미만인 자의 경우 최저구금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²⁴⁹⁾
그리스	종신형을 선고 받고 최저구금기간이 16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는 가석방 대상이 된다. ²⁵⁰⁾
이탈리아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기간이 26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²⁵¹⁾
헝가리	종신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는 최저구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최저구금기간은 일반적으로 20

국가명	종신형의 법률상 정의
	<p>년이지만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의 경우 최저구금기간은 30년이다.²⁵²⁾ 규정이 절대적 종신형에 해당하고 유럽인권협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구금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²⁵³⁾</p>
<p>폴란드</p>	<p>“영구 자유박탈형” 을 선고받은 자는 최저구금기간인 25년이 경과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²⁵⁴⁾ 영구 자유박탈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자가 조건부로 석방되면 10년 동안 가석방 상태가 유지되고²⁵⁵⁾ 가석방 상태에서도 재구금될 수 있다. 석방이 철회되면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는 15년이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 ²⁵⁶⁾</p>
<p>불가리아</p>	<p>종신형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의 구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수형자의 복역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종신형을 자유형 30년으로 대체할 수 있다.²⁵⁷⁾</p>
<p>체코공화국</p>	<p>종신형을 선고 받고 최저구금기간인 20년이 경과되면 조건부 가석방 대상이 된다.²⁵⁸⁾</p>
<p>라트비아</p>	<p>종신형을 선고 받고 최저구금기간인 25년이 경과되면 조건부 가석방 대상이 된다.²⁵⁹⁾</p>
<p>크로아티아</p>	<p>크로아티아에서 종신형은 폐지되었다. 폐지 이전을 보면, 종신형을 선고받고 최소 20년 이상 복역한 경우 조건부로 가석방 될 수 있다.²⁶⁰⁾ 조건부 가석방 기간이 15년이 경과되면 종신형은 만류가 된다. ²⁶¹⁾</p>
<p>리투아니아</p>	<p>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는 복역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교정시설로 이감될 수 있다. 종신형은 25년 형으로 단축될 수 있다.²⁶²⁾</p>
<p>루마니아</p>	<p>종신형을 선고 받고 구금중인 수형자는 최저구금기간인 20년이 지나야만 가석방 자격을 갖게 된다.²⁶³⁾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60세가 된 수형자는 최저구금기간인 15년이 경과된 경우 가석방될 수 있다.²⁶⁴⁾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된 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형은 복역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⁶⁵⁾ 가석방 조건을 갖추려면 수형자는 반드시 “모범적인 수형생활, 개전의 정을 보여야하며 이전의 범죄경력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²⁶⁶⁾</p>
<p>에스토니아</p>	<p>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기간이 30년을 경과하면 가석방 될 수 있다.²⁶⁷⁾ 가석방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반드시 범정, 수형자의 성격, 수형생활, 가석방 된 경우 생활조건 및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²⁶⁸⁾</p>
<p>슬로바키아</p>	<p>종신형을 선고 받고 25년 이상 복역한 자는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석방 될 수 없다.²⁶⁹⁾</p>
<p>슬로베니아</p>	<p>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가석방 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재범 가능성 (ii) 이전의 범죄 경력; (iii) 자신의 범죄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 (iv) 수형생활; (v) 중독에 대한 치료의 성공; (vi) 수형자의 사회복귀 조건.²⁷⁰⁾</p>
<p>몰타</p>	<p>종신형을 선고하면 법원은 수형자의 가석방 전 최소구금기간을 총리에게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²⁷¹⁾ 최대구금기간은 정하지 않아도 되면 종신형은 수형자의 남은 여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i>Kafkaris v. Cyprus,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i>를 보면 절대적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²⁷²⁾</p>
<p>사이프러스</p>	<p>종신형은 개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석방이 될 수 있다.²⁷³⁾ 1993-2008 기간 동안 실제로 11명이 석방되었다. 판결문 <i>Kafkaris v. Cyprus</i> 참조.²⁷⁴⁾ 유럽인권재판소는 <i>Kafkaris v Cyprus</i> [2008] 사건 판결문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처우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석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석방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석방이 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부여함을 의미한다.²⁷⁵⁾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통령의 사면에 따른 석방은 법에 따른 석방과 석방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해당된다.²⁷⁶⁾</p>
<p>스페인</p>	<p>종신형 금지: 스페인법은 범죄자의 연령, 범죄와 범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종신형은 적법하지 않다.²⁷⁷⁾</p>
<p>포르투갈</p>	<p>종신형 금지: 포르투갈헌법 제3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형벌 또는 보안처분도 본질적으로 영구히 지속되거나 부정기 기간 동안 연속되어서도 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 제4항은 범죄인 인도가 금지된 범죄와 관련해 실제로 종신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부정기형 또는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자유 박탈이 적용되는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²⁷⁸⁾</p>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fe_imprisonment]

- 236) Criminal Justice Act 2003, Schedule 21 참조.
- 237) Criminal Justice Act 2003, Schedule 21, Section 7.
- 238) the website of the Parole Commissioners for Northern Ireland for more information(<http://www.parolecomni.org.uk/index.htm>) 참조.
- 239) Citizen's Information Ireland(http://www.citizensinformation.ie/en/justice/criminal_law/criminal_trial/types_of_sentences.html).
- 240) 프랑스형법 제132-23조(<http://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 241) 독일형법 제57a조 제1항(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index.html).
- 242) 오스트리아형법 제57a조 제1항
- 243) 네덜란드형법 제31조 제1항.
- 244) *Vinter v. the United Kingdom*(Applications Nos. 66069/09, 130/10 and 3896/1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 July 2013, para. 68 참조.
- 245)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s. 66069/09, 130/10 and 3896/1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 July 2013, para. 68
- 246)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Application Nos. 66069/09, 130/10 and 3896/1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 July 2013, para. 68.
- 247) 덴마크형법 제41조(<http://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21398>).
- 24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Commutation of Life Imprisonment”(http://www.government.se/sb/d/9256/a/124123).
- 249) 핀란드형법 제2장 2c, 제10조 제1항.
- 250) Cheliotis, L.K. “Conditional Release from Prison in Greece: Policy and Practice” in Padfield, N. et al, *Release from Prison: European Policy and Practice 2010* Cullompton: Willan Publishing p.10. (http://www.academia.edu/323956/Cheliotis_L_K_2010_Greece_in_N_Padfield_D_van_Zyl_Smit_and_F_Dunkel_eds_Release_from_Prison_European_Policy_and_Practice_pp_213-236_Cullompton_Willan_Publishing).
- 251)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Application Nos. 66069/09, 130/10 and 3896/1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9 July 2013, para. 68.
- 252) 헝가리형법, 제47A조 제1항과 제2항.
- 253) See above regarding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254) 폴란드형법 제78조 제3항(http://www.imolin.org/doc/amlid/Poland_Penal_Code1.pdf).
- 255) 폴란드형법 제80조 제3항.
- 256) 폴란드형법 제81조.
- 257) 불가리아형법 제38A조 제3항.
- 258) 체코공화국형법 제62조 제2항(http://www.coe.int/t/dlapil/codexter/Source/country_profiles/legislation/CT%20Legislation%20-%20Czech%20Republic%20Criminal%20Code.pdf).
- 259) 라트비아형법 제61조 제3항(<http://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 260) 크로아티아형법 제55조 제2항(http://www.vsrh.hr/CustomPages/Static/HRV/Files/Legislation__Criminal-Code.pdf).
- 261) 크로아티아형법 제55조 제3항.
- 262) 리투아니아형법 제51조 제1항(<http://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 263) 루마니아형법 제72조 제1항(<http://legislationline.org/download/action/download/id/1695/file/1cc95d23be999896581124f9dd-8.htm/preview>).
- 264) 루마니아형법 제72조 제2항.
- 265) 루마니아형법 제72조 제3항 및 제73조.
- 266) 루마니아형법 제72조 제1항.
- 267) 에스토니아형법 제77조 제1항(<http://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 268) 에스토니아형법 제76조 제3항.
- 269) 슬로바키아형법 제67조 제3항.
- 270) 슬로베니아형법 제88조 제5항.
- 271) 몰타형법 제493조(<http://www.justiceservices.gov.mt/DownloadDocument.aspx?app=lom&itemid=8574>).
- 272) The chapter on life imprisonmen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bove 참조.
- 273) *Kafkaris v. Cyprus* [2008] App. No. 21906/04 for an overview of Cypriot and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law in the area of life imprisonment(<http://hudoc.echr.coe.int/sites/eng/pages/search.aspx?i=001-85019>) 참조.
- 274) *Kafkaris v. Cyprus* [2008] App. No. 21906/04 at para. 103.
- 275) Ibid. at paras. 95-99
- 276) Ibid. at para. 103
- 277) 스페인형법 제76조 제1항(http://www.sanchezcervera-abogados.com/en/files/2012/06/Criminal_Code_C%3%B3digo_Penal.pdf).
- 278) 포르투갈헌법(http://app.parlamento.pt/site_antigo/ingles/cons_leg/Constitution_VII_revisao_definitive.pdf).

표 II-10 사형과 종신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유기징역형제도 개관

연번	국가명	종신형	사형제도	가석방 신청 전 최소 복역기간	형의 최장기간
1	엘살바도르	×(전시예외)	○(전시예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75년
2	노르웨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1년(일반범죄), 30년(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3	슬로베니아	×	×	없음	없음
4	안도라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5년
5	볼리비아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5년
7	브라질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8	카보베르데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5년
9	콜롬비아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60년
10	코스타리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50년
11	크로아티아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0년
12	도미니카공화국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13	에콰도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5년
14	과테말라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50년
15	온두라스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0년
16	아이슬란드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0년
17	코소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0년
18	마카오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5년(이례적인 경우 30년)
19	몬테네그로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0년
20	모잠비크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21	니카라과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22	파나마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50년
23	파라과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5년
24	포르투갈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25년
25	콩고공화국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26	세르비아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40년
27	수리남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50년
28	우루과이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29	바티칸시국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5년
30	베네수엘라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양함	30년

표 II-11 국가별 종신형제도의 개관

연번	국가명	사형제도	종신형	가석방 신청 전 최소 복역기간	형의 최장기간	무기한 선고(예방구금 혹은 정신의학적 구금 제외)
1	멕시코	×	○ 약취유인과 관련된 살인으로 오직 치와와주에서만	판결에 따름	최소 60년(약취유인과 관련된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70년) 치와와주에서는 약취유인과 관련된 살인은 종신형	×
2	독일	×	○ 21세 이상에게만 해당(매우 드문 경우로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는 18세 이상이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음)	1977년 이전: 없음 (대통령사면 제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후 1977년 이후: 최소 15년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가장 일반적으로 최소 15년)	없음	×
3	일본	○	○ 20세 이상	20년 혹은 없음	없음	×(65세에 징역 10년으로 대체)
4	우즈베키스탄	×	○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만	25년 혹은 없음	60세 이상 30년	×
5	카자흐스탄	○	○ 18세 이상 남성만	25년	없음	×
6	알바니아	×	○ 18세 이상 남성만	25년	모든 여성의 경우 최대 30년	미상
7	러시아	○	○ 18세부터 65세 사이의 남성만	25년 혹은 30년	25년-30년	×
8	아제르바이잔	×	○ 18-65세 남성만	25년	1건의 살인에 대해 15년(여러 건의 범죄에 대해 최대 20년)	×
9	벨라루스	○	○ 18세부터 65세 사이의 남성만	25년	15년(18세 미만), 25년(65세 이상, 여성)	미상
10	이스라엘	○	○	없음	없음	○
11	아일랜드	×	○	12-30년 혹은 없음	없음	○
12	베트남	○	○	없음	없음	○
13	네덜란드	×	○	없음[예외적인 경우에는 칙령(royal decree)에 의해서만 부여됨]	없음	○
14	에스토니아	×	○	30년	없음	○
15	북한	○	○	15년	없음	○
16	프랑스	×	○	판결에 따름, 최대 30년(판결의 선고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0년[추가적인 상황 없이 단일살인(single murder), 마약밀매, 약취유인, 강간]	○
17	몰타	×	○	없음(오로지 대통령의 사면에 의함)	없음	○
18	인도네시아	○	○	없음	20년(1개 이상의 법원에 의해 선고되면 더 길어짐)	○
19	이프가니스탄	○	○	없음	없음	○
20	라오스	○	○	없음	없음	○
21	나이지리아	○	○	없음	없음	○
22	터키	×	○	종신형: 24년 (조직범죄 30년), 복수의 종신형: 30년 (조직범죄 34년), 가중 종신형: 30년 (조직범죄 36년), 복수 가중종신형: 36년 (조직범죄 40년)	없음	○

연번	국가명	사형제도	종신형	가석방 신청 전 최소 복역기간	형의 최장기간	무기한 선고(예방구금 혹은 정신의학적 제외)
23	뉴질랜드	×	○	10년 이상(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24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	○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최대 종신기간)	없음	○
25	홍콩	×	○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26	영국: 스코틀랜드	×	○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17-30년	○
27	그리스	×	○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16-32년	○
28	미국	○	○	15년 이하의 기간 또는 없음(범죄와 주정부에 따라 다름)	주정부에 따라 다름	○
29	페루	○	○	35년 혹은 없음	없음	○
30	몰도바	×	○	35년	없음	○
31	키르기스스탄	×	○	30년	없음	○
32	인도	○	○	25년 혹은 없음	없음	○
33	캐나다	×	○	1급 살인 또는 높은 반역죄: 최소 25년, 2급 살인: 최소 10년(복수의 살인사건의 경우 25년 이상 가석방 불가)	없음	○
34	라트비아	×	○	25년	없음	○
35	슬로바키아	×	○	25년	없음	○
36	리투아니아	×	○	25년	없음	○
37	이탈리아	×	○	21년, 26년 혹은 없음	없음	○
38	헝가리	×	○	20-40년 혹은 없음	없음	○
39	칠레	○	○	20년, 군사범죄 40년	없음	○
40	불가리아	×	○	20년 혹은 없음	없음	○
41	말레이시아	○	○	20년 혹은 없음	없음	○
42	아르헨티나	×	○	20년 혹은 없음	없음	○
43	사이프러스	×	○	20년	없음	○
44	싱가포르	○	○	20년	없음	○
45	스웨덴	×	○	18년 혹은 없음	없음	○
46	스페인	×	○	18-22년(범죄에 따라)	20-40년	○
47	오스트리아	×	○	15년 혹은 없음	없음	○
48	룩셈부르크	×	○	15년	없음	○
49	모나코	×	○	15년	없음	○
50	마케도니아	×	○	15년	없음	○
51	핀란드	×	○	12년	없음	○
52	덴마크	×	○	12년	없음	○
53	자메이카	○	○	20-30년 혹은 없음(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54	호주	×	○	10, 20, 25년 혹은 없음(법관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55	스위스	×	○	10, 15년(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56	이라크	미상	○	미상	미상	미상
57	시리아	미상	○	미상	미상	미상
58	대만	○	○	25년	없음	○
59	남아프리카	×	○	10, 15, 25년	없음	×
60	루마니아	×	○	20년	없음	×(60세에 징역25년으로 대체됨)
61	튀니지	○	○	없음	없음	×

연번	국가명	사형제도	종신형	가석방 신청 전 최소 복역기간	형의 최장기간	무기한 선고(예방구금 혹은 정신의학적 구금 제외)
62	모로코	○	○	없음	없음	×
63	요르단	○	○	없음	없음	×
64	태국	○	○	없음	없음	×
65	타지키스탄	○	○	없음	없음	×
66	투르크메스탄	×	○	없음	없음	×
67	이집트	○	○	없음	없음	×
68	캄보디아	×	○	없음	없음	×
69	사우디아라비아	○	○	없음	없음	×
70	영국: 북아일랜드	×	○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71	쿠바	○	○	30년 혹은 없음	없음	×
72	방글라데시	○	○	30년	20년	×
73	폴란드	×	○	25년 혹은 그 이상 (법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정)	없음	×
74	체코공화국	×	○	20년(통상의 경우) 혹은 30년 이상 (판결에 따라)	30년	×
75	아르메니아	×	○	20년	20-30년	×
76	네팔	×	○	20년	없음	×
77	우크라이나	×	○	20년	없음	×
78	조지아	×	○	20년	없음	×
79	벨기에	×	○	15년(전과 없거나 3년 이하), 19년(전과 5년 미만) 또는 23년(전과 5년 이상)	없음	×
80	리히텐슈타인	×	○	15년	없음	×
81	중국	○	○	13년 혹은 없음(심각한 부패범죄)	없음	×
82	레바논	○	○	10년	없음	×
83	벨리즈	○	○	없음	미상	미상
84	키리바시	×	○	25년 혹은 없음	없음	미상
85	파키스탄	○	○	25년	없음	미상

4. 미국

가. 사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사형제도의 존치와 적극적인 집행을 동시에 시도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²⁷⁹⁾ 1846년, 미시간 주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폐지한 이래로 위스콘신(1853년), 메인(1887년), 미네소타(1911년), 하와이(1957년), 알래스카(1957년), 버몬트(1964년), 아이오와(1965년), 웨스트버지니아(1965년)에서 사형이 폐지되었고,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였던 시기에 노스다코타(1973년)도 사형을 폐지하였다. 이후 19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을 다시 합헌으로 선언한 뒤에도 워싱턴 D.C.(1981년)와 매사추세츠(1984년), 로드아일랜드(1984년)가 사형폐지 대열에 합류하였고, 21세기에 들어 뉴욕(2004년), 뉴저지(2007년), 뉴멕시코(2009년), 일리노이(2011년), 코네티컷(2012), 메릴랜드(2013년)도 사형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너무나 자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방식(in an

279) Roger Hood, The Injustice of Death Penalty, in the Machinery of Death: A Shocking Indictment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175, Amnesty International, 1995.

arbitrary and racially biased manner)으로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²⁸⁰⁾ 이번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8명의 재소자를 종신형으로 전환하였고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20번째 주가 되었다. 이전에도 워싱턴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3번이나 판단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사형제 무효(invalid)를 선언했기에 그 중요성은 더 크다 할 것이다. 이번 워싱턴 대법원의 결정으로 여전히 사형을 선고하고 연간 일정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주는 30개 주로 줄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주지사(주정부)가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주로는 펜실베이니아(2015년), 콜로라도(2013년), 오리건(2011년)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도의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체적인 움직임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전개하자 미국도 이러한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려는 추세였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67년 사형제도에 대한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바 있으나, 이러한 정부결정은 권력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았다. 물론 1972년 *Furman v. Georgia*²⁸¹⁾ 판결을 통하여 사형선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배심원에게 사형선고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조지아주의 사형제도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연방수정 헌법 제8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할 때 ‘잔혹하고 이상한(Cruel and Unusual)’ 형벌이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위헌이 선언되었으나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을 피력한 것은 아니었다.

이 판결로 인하여 미국 전역의 사형집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나,²⁸²⁾ 1976년 *Gregg v. Georgia*²⁸³⁾ 판결의 다수의견이 종전의 위헌판결 이후 제정된 조지아의 주법은 사형선고를 담당하는 배심원들에게 사형선고가 가능한 10여개의 가중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Clear and Objective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방 수정헌법 제8조 및 제14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게 되자 일시적인 사형집행 중지의 상황은 일거에 종결되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같은 해, *Gregg* 판결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함에 따라,²⁸⁴⁾ 미국에서의 사형제도는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법률로 취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확립되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종신형제도의 개괄적 연혁

미국 연방정부는 사형과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채용하고 있으며,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 사형이 폐지된 3개 주(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에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였고,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3개 주(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이 폐지된 16개 주와 사형이 존치되고 있는 27개 주 등 43개 주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모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는 명칭은 절대적 종신형(life-without-parole)으로 되어 있더라도 20년 내지 25년이 경과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사실상로는 상대적 종신형(life sentence)과 같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형정책은 20년 내지 2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하더라도 종신형 수형자의 대다수가 고령화로 인하여 흉악범죄를 재범할

280) State V. Gregory. (http://www.courts.wa.gov/appellate_trial_courts/SupremeCourt/?fa=supremecourt.StatevGregory) 참조

281) 408 U.S. 238(1972).

282) Franklin E. Zimring & Gordon Hawkins,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 37(1986).

283) 428 U.S. 153(1976).

284) Roberts v. Louisiana, 428 U.S. 325, 331-32(1976); Proffitt v. Florida, 428 U.S. 242, 251 (1976); Jurek v. Texas, 428 U.S. 262, 268(1976).

위험성이 전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또 다른 사형의 형태라는 견해도 있으나,²⁸⁵⁾ 미국의 사형제도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88년에 사형법령을 부활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without-parole) 선고의 선택가능성을 포함하였다.²⁸⁶⁾ 1994년, 사형이 가능한 범죄목록을 늘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의 선택가능성은 더욱 늘어났다. 주정부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은 1974년 이후부터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2년, Furman사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이 사형선고의 여부를 배심원에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조지아의 주법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결과가 종신형 도입에 있어 크게 작용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197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는 사형집행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특히 종신형을 도입한 49개 주 가운데 21개 주는 1990년대에 종신형을 도입했는데 이 시기는 3회의 중죄 혹은 살인을 반복하면 일생을 구금시설에서 복역하며 사회로 되돌아 올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른바 삼진아웃법(three strike out law)이 몇몇 주에서 도입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미국에서의 종신형제도와 관련하여 사형을 폐지한 주정부에서는 종신수형자의 처우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주에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제도의 실익이 논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다. 주정부별 종신형제도의 운용 경향

종신형제도를 도입한 주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떠한 종신형도 존재하지 않는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연방정부를 비롯한 6개주에서는 절대적 종신형만(life-without-parole)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43개의 주는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11개의 주(캘리포니아,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뉴저지, 뉴욕, 미네소타, 미시시피,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텍사스)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고, 상대적 종신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4개의 주(앨라배마, 인디애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절대적 종신형의 선고가 우위에 있는 2개의 주(미시건, 네브래스카),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이 비교적 균형 있게 선고되고 있는 3개의 주(아칸소, 매사추세츠, 웨스트버지니아)들이 있다.²⁸⁷⁾

아래의 [표 12]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별로 사형의 존치 여부와 종신형의 유형, 절대적 종신형의 필수적 선고 여부, 가석방 가능성 여부 등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주에서는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부과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형이 존속되고 있는 주에서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 여부를 선택하거나 또는 사형을 포함한 법정형의 목록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주정부에서도 사형 또는 종신형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외에 일정기간의 경과 후 가석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대적 종신형을 함께 운용한다.

285) Robert Johnson,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Other Death Penalty Notes on Life Under Sentence of Death by Incarceration," The Prison Journal Volume 88 Number 2, 2008, pp.328 이하 참조.

286) 미국의 종신형 가운데 특히 절대적 종신형은 'Death-in-prison-sentence'라고 명명될 만큼 사형 이외의 가장 가혹한 형벌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harles J. Ogletree, Jr., Austin Sarat,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New Death Penalty?, NYU Press, 2012, pp.66 이하 참조.

287) Ashley Nellis, Life Goes On: The Historic Rise In Life Sentence In America, The Sentencing Project, 2013, pp.25~30.

표 II-12 주정부별 사형제도의 존속 여부와 종신형의 형태

주명	사형존치 여부 ²⁸⁸⁾	종신형 유형 ²⁸⁹⁾	절대적 종신형 선택 여부	가석방	소년법 종신형 선고의 법적 근거	소년법에 대한 종신형 선택 여부 ²⁹⁰⁾
연방정부	○	절대적	자유재량	불가능	○	자유재량
알래스카	×	×	×	가능	×	×
일리노이	×	절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불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아이오와	×	절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불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메인	×	절대적	자유재량	불가능	×	자유재량
루이지애나	○	절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불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펜실베이니아	○	절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불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사우스다코타	○	절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불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앨라배마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애리조나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아칸소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캘리포니아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
콜라로라도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
델라웨어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플로리다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조지아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아이다호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인디애나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켄터키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
미네소타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미주리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몬태나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네브래스카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네바다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노스캐롤라이나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오하이오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오클라호마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오리건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
사우스캐롤라이나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테네시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텍사스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주명	사형준치 여부 ²⁸⁸⁾	종신형 유형 ²⁸⁹⁾	절대적 종신형 선택 여부	가석방	소년법 종신형 선고의 법적 근거	소년법에 대한 종신형 선택 여부 ²⁹⁰⁾
유타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버지니아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워싱턴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자유재량
와이오밍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코네티컷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하와이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메릴랜드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미시간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뉴저지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뉴멕시코	×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
미시시피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노스다코타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로드아일랜드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버몬트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웨스트버지니아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위스콘신	×	절대적/상대적	자유재량	가능	○	자유재량
매사추세츠	사실상 폐지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뉴욕	사실상 폐지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캔자스	1976년 이후 미집행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
뉴햄프셔	1976년 이후 미집행	절대적/상대적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가능	○	의무적인 선고 범죄유형 있음

[출처] <https://deathpenaltyinfo.org/life-without-parole#States>

라. 종신형 수형자의 현황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전체 수형자 159,520명(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을 모두 포함) 가운데 수형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약 23,000여명을 제외하고 136,773명의 종신형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 이상을 상회하는 87,933명(64.3%)이 살인죄를 범하였으며, 성폭행, 강간죄가 13.7%(18,679명), 가중처벌되는 폭행죄, 강도죄, 약취유인죄가 14.1%(19,304명), 마약범죄가 2.0%(2,686명), 재산범죄 4.0%(5,416명), 기타 2.0%(2,755명)의 순이었다.²⁹¹⁾ 그런데 마약범죄 2,500건과 재산범죄

288)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주지사(주정부)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로는 펜실베이니아(2015), 콜로라도(2013), 오리건(2011) 주가 있다.

289) 명칭은 절대적 종신형(life-without-parole)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경과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주도 있고, 상대적 종신형(life sentence)을 주로 운용하지만 가석방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이른바 “삼진아웃”법이 적용되는 경우 가석방이 불허되는 절대적 종신형을 예외적으로 함께 병용하는 주도 있다.

290) ‘의무’라는 용어는 판사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그 범죄는 일급 살인이다.

5,000건을 포함하여 약 1만 명 이상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은 범죄로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아이다호(54.1%), 워싱턴(46.2%), 앨라배마(39.2%), 조지아(38.7%), 캔자스(38.1%), 델라웨어(36.3%), 사우스캐롤라이나(36.2%), 루이지애나(33.2%)의 경우는 종신형 수형자의 30% 이상은 생명침해가 수반되지 않았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미국 전체의 종신형 수형자는 1984년 34,000명, 1992년 69,845명, 2003년 127,677명, 2005년 132,000명, 2008년 142,727명, 2012년 159,520명으로 누적 증가추세를 보이며,²⁹²⁾ 이 가운데 특히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는 1992년 12,453명, 2003년 33,633명, 2008년 40,174명, 2012년 49,081명으로 20년 사이에 4배 늘어났다.²⁹³⁾ 주정부별 선고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분포는 아래의 [표 13]과 같다.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는 플로리다(7,992명)가 가장 많았고, 연방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펜실베이니아(5,102명), 루이지애나(4,637명), 캘리포니아(4,603명), 미시간(3,635명)를 포함한 5개 주의 인원은 25,969명으로 미국 전역의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 49,081명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35,759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9,999명), 텍사스(8,493명), 조지아(7,125명), 오하이오(5,667명) 등 5개 주의 인원이 67,043명으로 전체 미국의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 110,439명의 60.7%를 점하고 있다.²⁹⁴⁾

표 II-13 주정부별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의 분포(2012년 기준)

(단위: 명, %)

주명	상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2012년 합계	전체 수형 인원	종신형 비율
연방정부	1,362	4,058	5,420	218,830	2.5
앨라배마	3,811	1,507	5,318	32,038	16.6
알래스카	0	0	0	3,899	0.0
애리조나	1,053	441	1,494	39,885	3.7
아칸소	872	528	1,400	14,644	9.6
캘리포니아	35,759	4,603	40,362	133,883	30.1

291) 2013년의 범죄별 상황에 대해서는 Glenn R. Schmitt, Hyun J. Konfrst, Life Sentences in the Federal System,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One Columbus Circle, N.E. Washington, DC, 2015, pp.10.

292) Figures for 1984 obtained from: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84). Corrections Compendium. Vol. 3 (9). Figures for 1992 obtained from: Maguire, K., Pastore, A. L., & Flanagan, T. J. (Eds.) (1993). Source 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2.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Figures for 2003 obtained from: Mauer, M., King, R., & Young, M. (2004). The Meaning of 'Life': Long Prison Sentences in Context. Washington, D. C.: The Sentencing Project. Figures for 2005 obtained from: Liptak, A. (2005, October 5). Serving Life with No Chance at Redemption. The New York Times. Figures for 2008 obtained from Nellis, A., & King, R. S. (2009). No Exit: The Expanding Use of Life Sentences in America. Washington, D. C.: The Sentencing Project. Data for 2012 collected from each state's department of corrections by The Sentencing Project.

293) Figures for 1992 obtained from: Maguire, K., Pastore, A. L., & Flanagan, T. J. (Eds.) (1993). Source 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2.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Figures for 2003 obtained from: Mauer, M., King, R., & Young, M. (2004). The Meaning of 'Life': Long Prison Sentences in Context. Washington, D. C.: The Sentencing Project. Figures for 2005 obtained from: Liptak, A. (2005, October 5). Serving Life with No Chance at Redemption. The New York Times. Figures for 2008 obtained from Nellis, A., & King, R. S. (2009). No Exit: The Expanding Use of Life Sentences in America. Washington, D. C.: The Sentencing Project. Data for 2012 collected from each state's department of corrections by The Sentencing Project.

294) 2016년의 경우는 미국의 전체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 53,290명 가운데 플로리다(8,919명: 16.7%), 펜실베이니아(5,398명: 10.1%), 캘리포니아(5,090명: 9.6%), 루이지애나(4,875명: 9.1%) 및 미시간(3,804명: 7.1%)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전미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절반 이상(52.6%)에 해당하며,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주의 교정시설에 복역하는 수형자의 10% 이상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수형자였다. Ashley Nellis, Still Life: America's Increasing Use of Life and Long-Term Sentences, The Sentencing Project, 2017, pp.9~10.

(단위: 명, %)

주명	상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2012년 합계	전체 수형 인원	종신형 비율
콜라로라도	2,015	606	2,621	20,628	12.7
코네티컷	289	70	359	12,549	2.9
델라웨어	142	386	528	4,003	13.2
플로리다	4,157	7,992	12,149	99,866	12.2
조지아	7,125	813	7,938	56,246	14.1
하와이	365	47	412	3,565	11.6
아이다호	402	122	524	7,333	7.1
일리노이	1,141	1,600	2,741	48,427	5.7
인디애나	129	113	242	28,270	0.9
아이오와	45	635	680	8,244	8.2
캔자스	1,040	21	1,061	9,318	11.4
켄터키	809	99	908	22,411	4.1
루이지애나	20	4,637	4,657	40,170	11.6
메인	4	55	59	2,125	2.8
메릴랜드	2,090	380	2,470	21,398	11.5
매사추세츠	930	1,045	1,975	10,175	19.4
미시간	1,502	3,635	5,137	43,444	11.8
미네소타	426	102	528	9,501	5.6
미시시피	555	1,518	2,073	22,187	9.3
미주리	1,744	1,063	2,807	31,057	9.0
몬테나	44	53	97	2,463	3.9
네브래스카	95	236	331	4,782	6.9
네바다	2,228	491	2,719	12,639	21.5
뉴햄프셔	134	79	213	2,614	8.1
뉴저지	1,096	70	1,166	23,810	4.9
뉴멕시코	408	0	408	6,647	6.1
뉴욕	9,999	246	10,245	54,397	18.8
노스캐롤라이나	1,882	1,228	3,110	37,383	8.3
노스다코타	38	27	65	1,536	4.2
오하이오	5,667	408	6,075	50,964	11.9
오클라호마	1,735	780	2,515	26,257	9.6
오리건	627	180	807	14,212	5.7
펜실베이니아	2	5,102	5,104	51,184	10.0
로드아일랜드	175	32	207	2,417	8.6
사우스캐롤라이나	1,231	988	2,219	22,567	9.8
사우스다코타	0	181	181	3,648	5.0
테네시	1,908	317	2,225	20,079	11.1
텍사스	8,493	538	9,031	150,782	6.0
유타	1,943	105	2,048	7,025	29.2
버몬트	107	14	121	2,084	5.8
버지니아	1,371	774	2,145	37,182	5.8
워싱턴	2,000	623	2,623	17,031	15.4
웨스트버지니아	359	276	635	7,036	9.0
위스콘신	956	229	1,185	22,041	5.4
와이오밍	154	28	182	1,987	9.2
합계	110,439	49,081	159,520	1,506,934	10.6%

[출처] <https://www.sentencingproject.org/publications/life-goes-on-the-historic-rise-in-life-sentences-in-america/>

캘리포니아는 상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을 모두 채용하여 그 운용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 35,759명, 후

자의 경우는 4,603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주정부 전체 수형인원 133,883명 가운데 종신형의 비율이 30.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가 가장 많은 플로리다의 경우 전체 수형인원에서 종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2.2%였고,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주정부에서 전체 수형인원에서 종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10%(펜실베이니아의 경우로 상대적 종신형 2명, 절대적 종신형 5,102명 등으로 합계 5,104명)에서 최대 18.8%(뉴욕의 경우로 상대적 종신형 9,999명, 절대적 종신형 246명 등 합계 10,245명)로 나타나지만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가 세 번째로 많았던 텍사스의 경우는 전체 수형인원 가운데 종신형의 비율은 6%(상대적 종신형 8,493명, 절대적 종신형 538명 등 합계 9,031명)에 불과했다.

마. 여론조사와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의 결정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았던 오클라호마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의 여론조사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사형폐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었다. 1991년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① 25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② 40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③ 절대적 종신형, ④ 절대적 종신형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을 부가하는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①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31.1% 사형 지지 51.6% 모름 13.0%, ②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39.7% 사형 지지 46.4% 모름 10.7%, ③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46.0% 사형지지 42.9% 모름 8.9%, ④의 경우 사형폐지 찬성 64.2% 사형 지지 26.1% 모름 7.3%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앨라배마, 루이지애나 주의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과 감형이 허용되지 않으며 생명을 마칠 때까지 수감시설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언하고 있으며,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감형위원회 또는 주지사에게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감형의 권한이 주어졌으나 1974년 이래로 감형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네브래스카주는 1991년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에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부결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2010년, 여론조사기관인 Lake Research Partners에 의하여 1,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살인죄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 선택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과반수를 넘어선 응답자(61%)들이 고무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응답자의 표본은 사형이 존재하는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 1,144명과 사형이 폐지된 주에 거주하는 유권자 356명을 더한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한 6%와 대체형벌이 아닌 사형을 고수하려는 응답자 33%를 제외하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는 13%,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을 선택한 경우는 9%에 그쳤으나 절대적 종신형에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방식은 39%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²⁹⁵⁾

바. 최근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

2007년 이후로 사형을 폐지한 7개의 주(델라웨어, 메릴랜드,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멕시코, 뉴저지, 뉴욕)에서는 예외 없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였다. 이들 주정부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개별 주의 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래의 [표 14]는 각 주별로 이러한 경우에 양형을 다루는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뉴멕시코, 코네티컷, 메릴랜드는 전향적으로 사형을 폐지했지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여전히 사형

295) <https://deathpenaltyinfo.org/documents/FactSheet.pdf>.

확정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메릴랜드 주지사인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는 사형확정자 전원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였다. 코네티컷 주의 경우는 주대법원이 사형확정자들에 대해 재심을 선언하였고, 각각의 사건에서 주 대법원은 재판을 앞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급심 법원에 지시한 바 있다.

표 II-14 2007년 이후 사형을 폐지한 7개 주에서의 절대적 종신형제도

사형폐지	절대적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주가 있는가?	절대적 종신형이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 의무사항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가?	특별한 사법절차가 사용되는가?	배심원은 절대적 종신형 선고를 결정에 참여하는가?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형을 결정하는가?
델라웨어 (2016)	살인과 관련해 사형이 위험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 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은 남아 있음.	사형조항이 무효화됨에 따라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양형이 되었음.	해당 없음	아니오.	아니오.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자동적으로 종신형이 집행됨.
메릴랜드 (2013)	네. 법에 따라 사형제도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처벌 가능한 최고의 양형은 절대적 종신형임.	아니오. 절대적 종신형은 가중한 선고로 여겨지고 있음	절대적 종신형 결정은 검사의 재량임.	아니오.	아니오. 양형은 판사가 정함.
코네티컷 (2012)	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 중죄'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상황에서의 살인'의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음.	네.	해당 없음	아니오.	아니오. 특수한 상황에서의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적용됨.
일리노이 (2011)	1급 살인의 경우 적용 가능.	모든 1급 살인에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가중요소에 따라 재량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함. 20-100년까지 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특정 법적 가중요건이 있거나 또는 살인이 매우 잔혹하고 극악무도하거나 악랄한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	이전 판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일리노이법 725 ILCS 5/111-3(c-5)를 적용함.	네. 배심원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절대적 종신형을 결정해야 함
뉴멕시코 (2009)	네. 이전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경우 현재 최고형은 절대적 종신형	배심원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정황을 찾으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은 복역 기간이 3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 받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려면 반드시 법적 가중요소가 있어야 함.	아니오.	피고인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려면 배심원은 가중요소가 있는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함.

사형폐지	절대적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있는가?	절대적 종신형이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 의무사항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결정하는가?	특별한 사법절차가 사용되는가?	배심원은 절대적 종신형 선고를 결정에 참여하는가?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형을 결정하는가?
뉴저지 (2007)	네. 이전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범죄의 경우 현재 최고형은 절대적 종신형	아니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실한 가중처벌 정황을 검사나 검사가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음.	피고인이 배심재판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심원은 재판이나 심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실한 가중처벌 정황을 찾아야 함. 사형과 마찬가지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 두 단계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중요소는 이전의 살인행위임. 피고인이 '유무죄 판단'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 그의 죄를 입증해야 함.	네. 합리적 의심을 넘어 가중요소를 찾은 경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절대적 종신형을 결정할 수 있음.
뉴욕 (2007)	네. 경찰관 살인은 가중살인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만 처벌. 1급 살인은 절대적 종신형 또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처벌 가능.	가중 살인인 경찰관 살인의 경우 법에 따라 절대적 종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1급 살인의 경우 절대적 종신형은 임의적 선택가능.	판사의 재량으로 1급 살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	아니오.	배심원은 오직 유무죄만을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함. 양형은 판사가 결정함.

[출처]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http://deathpenaltyinfo.org/lwop-post-repeal>)

사. 텍사스 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

미국에서도 특히 사형집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텍사스 주는 2005년 9월에 와서야 비로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는데, 이는 알래스카 주를 제외하고 49개의 미국 주정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사형을 유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 이래로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사형선고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텍사스 주에서의 사형선고 감소가 오직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영향을 미친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²⁹⁶⁾

미국의 경우 오판에 의하여 무고하게 사형이 선고된 후 집행된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73년 이후 미국 전역에서 142명이 오판에 의하여 사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텍사스 주에서의 사례였다. 텍사스 주에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기 1년 전인 200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에 75%가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 가운데 76%는 절대적 종신형이 마련되더라도 사형에 찬성한다는 보수적 응답을 하였으며,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는 78%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0%가 그렇다고 하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296) <https://txparolelaw.com/what-is-life-without-parole-in-texas/>.

텍사스 주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는 민주당 소속의 주 의회 상원의원의 활동이 주도적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에디 루시오 주니어(Eddie Lucio Junior) 상원의원은 19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종신형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네 번째인 2005년, 간신히 그 법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²⁹⁷⁾ 실패로 돌아간 가결 이전의 법률안은 40년간을 복역조건으로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이었으나 가결된 법률안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종신형이었다. 루시오 의원은 종신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살인피해자의 유족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이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가장 위험한 범죄자가 두 번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유족들의 확신에 응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⁹⁸⁾

텍사스 주 검찰은 최후까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보안상 위험이 증대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른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텍사스 주는 분명히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과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심원에게는 적당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 징역 20년이나 30년 정도가 선고되었을 피고인들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도하게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찾아졌던 것이다. 텍사스 주에서 2005년,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당시에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절대적 종신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 의회에 의하여 거의 2년에 1회 정도로 법안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는 과정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되는 대상범죄의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텍사스 주의 절대적 종신형법안은 네 번째 시도로 성립되었으나 실제로 법안을 제안했던 루시오 의원은 세 가지의 선택지, 즉 사형은 물론이고 가석방 있는 상대적 종신형도 존치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텍사스 주의 검찰당국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입법이 되면 배심원들은 무난한 형벌을 선택하려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중간형벌에 해당하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택하게 되어 오로지 사형만이 적합한 사건에서도 사형선고가 되지 않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이유로 인하여 2005년, 법안에서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이 형벌목록에서 배제되었다.

5. 일본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중(重)무기형의 도입 검토

미국과 함께 일본도 현재, 사형을 선고하면서 매년 일정한 사형의 집행을 이어 오고 있는 존치국가이지만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중무기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무기형은 무기형 가운데 형기 도중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수형자는 사망할 때까지 형사시설에 구금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용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무기형 또는 절대적 종신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²⁹⁹⁾

297) <https://senate.texas.gov/press.php?id=27-20030203a>; <https://senate.texas.gov/press.php?id=27-20050315b>.

298) Brandon L. Garrett, *End of Its Rope: How Killing the Death Penalty Can Revive Crimin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pp.167~168.

일본에서의 무기형이란 형기에 기한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형기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절대적 부정기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의 끝이 없는, 즉 이 형벌을 선고 받은 수형자에게는 형기가 평생에 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 동안을 구금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형이 가진 원래의 명목상 성질인 형법에 가석방이나 사면의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도 평생 구금되지만 무기형과 같이 가석방의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평생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현행 형법상 무기형제도는 반드시 수형자를 평생 구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무기형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³⁰⁰⁾

나. 중무기형제도 도입의 추진 경과

이와 관련하여 대체형벌의 창설을 주장하는 관점은 크게 사형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사형에는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없으나 현행 형벌제도 아래에서 무기형에는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형벌로서 사회복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형을 폐지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2003년, ‘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은 가석방 없는 중무기징역형 및 중무기금고형을 도입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고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사형제도 조사회를 설치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중무기형의 창설 및 사형제도 조사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는 중단되어 버렸다. 이후 2008년 4월, 사형폐지 추진 의원연맹은 다시 ‘중무기형의 창설 및 사형평결 전원일치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5월, 이 의원연맹과 사형 존속의 입장에서 중무기형의 창설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초당파 의원연맹인 ‘양형제도를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중무기형의 창설을 시도했으나 국회 다수과의 찬성과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 중무기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중무기형은 재범의 방지와 중대범죄자를 형사시설에서 평생 격리하여 자신의 범죄에 대한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증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차단된 수형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어 인격의 붕괴가 우려되고, 이러한 사정 아래 수형자의 처우 역시 어렵게 된다는 단점도 공존한다. 이렇듯 중무기형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술한 긍정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으나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사형과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과 사형존치를 지지하는 일각에서도 사람을 평생 교정시설에 가두는 형벌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는 의견이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와 과도한 수용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에 의문을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형법 제28조에 따르면 무기형에 처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복역하고,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는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가석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그칠 뿐이지 반드시 장래적인 가석방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전의 상태가 있을 때’라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무성이 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 제5관 허가기준’ 제28조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상태를 가리

299) 일본에서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방식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第59回 人權擁護大会 シンポジウム 第3分科会 基調報告書, 死刑廃止と拘禁刑の改革を考える-寛容と共生の社会をめざして-, 日本弁護士連合会, 2016.10.6., 173頁 이하.

300) 이와 관련하여 Mai Sato, *The Death Penalty in Japan: Will the Public Tolerate Aboli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pp.158 이하 참조.

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현행 제도상의 무기형에 대한 가석방이 손쉽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무기형을 도입하지 않아도 무기형으로 그 형벌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 무기형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에 대한 오인

일본에서 무기형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제도의 실제 운용 상황이 오인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오류에 바탕을 둔 논의가 중무기형의 도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무기형 수형자들에게 10여 년간의 복역기간을 경과한 다음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점차 가석방의 운용이 강화되어 왔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가석방이 허가된 자는 최소한 20년이 넘는 기간을 형사시설에서 복역한 이후였다. 즉, 1980년대까지 가석방 허가자의 평균 복역기간은 15년~18년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20년, 23년으로 점점 늘었다가 2004년 이후로는 25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2004년, 25년 10개월, 2005년, 27년 2개월, 2006년, 25년 1개월, 2007년, 31년 10개월, 2008년 28년 7개월, 2009년 30년 2개월, 2010년 35년 3개월, 2011년 35년 2개월, 2012년 31년 8개월, 2013년 31년 2개월, 2014년 31년 4개월 등으로 최근에 와서는 수감기간이 최소한 30년 이상 되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 최근까지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까닭에 무기형에 처해진 자라도 10여년 혹은 길어야 20년 정도의 복역 끝에 가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오류 있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자리 잡혔고, 이러한 오인에 근거하여 사형폐지와는 별개로 기존의 무기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무기형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무기형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중심으로 무기형의 가석방에 대한 곤란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타난다. 가령 교정시설에는 1천8여명을 넘는 무기형 수형자가 존재하지만 가석방은 연간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석방률은 0%대에 가깝고, 대부분의 재소자에게 가석방은 절망적이라든가, 2005년의 일본형법 개정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20년에서부터 30년으로 상향된 덕분에 무기형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30년 이상의 복역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마.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의 추진

일본은 아직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으며 대체형벌과 관련된 논의 역시 다양한 논점과 결합하여 이를 전개하는 시도가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치밀한 검증과 정확한 인식 아래 국민 여론과 현장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사회적으로 타당한 형벌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사형폐지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6년 10월 7일, 사형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제도 전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에서 사형제도와 그 대체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일본에서 2020년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유엔 범죄방지 형사사법회의 이전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흉악한 범죄에 대한 대체형벌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형의 선고 시에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제도 혹은 기존의 무기형이 가석방의 허용시기를 10년으로 하고 있는 요건을 가중하여 20년 또는 25년 등으로 미루는 중무기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감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본인의 갱생이 진척된 때에는 법원 등의 새로운 판단에 따라 현행의 ‘무기형으로의 감형’이나 사면 등의 적용에 의한 ‘형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도 검토되고 있다.

제3절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 가능성 검토

1. 절대적 종신형의 논거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형을 폐지하고 기존의 무기징역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응보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형을 대체할 중한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사회방위 기능(무해화)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종신형 역시 잔혹한 형벌로서 인권에 반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도에 비하면 분명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이 사형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피해자 측의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고 정신적·경제적 보상을 이행시키기 위해서도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사형폐지의 대체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또는 더 나아가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이나 감형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특히 위헌논란, 형벌목적과의 관계, 교정처우상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위헌성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가장 중대한 비판은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본질적 내용(헌법 제37조 제2항)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³⁰¹⁾ 이와 달리 절대적 종신형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인권보장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거나,³⁰²⁾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³⁰³⁾

301)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97쪽; 신양균, 앞의 논문, 638쪽; 이승준, 앞의 논문, 141쪽.

302)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6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58쪽.

303)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6쪽.

나. 형벌목적과의 관계

절대적 종신형은 재사회화나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의 목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만일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형벌을 상대적 종신형으로 규정할 경우 형벌의 목적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응보감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소극적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범죄자에 대한 무해화 시도를 통한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해당 범죄자를 사회로부터의 영구 퇴출한다는 의식이 사회 일반의 관념 속에 자리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일반예방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의 엄중함과 처벌의 확실성, 공평한 범집행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회 일반이 그동안 가져왔던 사형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절대적 종신형이 특별예방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고 수형자를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시킨다고 하는 행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시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³⁰⁴⁾

다. 교정처우상의 문제

이외에도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들을 실제로 감호하는 현장에서 볼 때 행형성적이 아무리 양호해져도 혜택이 없으며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까닭에 갇혀서 인생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³⁰⁵⁾

3. 소결: 상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은 전술한 비판을 근거로 살필 때 또 다른 인권침해로 평가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수형자를 절망에 빠트리게 되어 또 다른 형태의 ‘사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의 존치 또는 폐지를 둘러싸고 그 지향점을 ‘인권’에 두는 한 사형을 대체할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점에서 적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사형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⁰⁶⁾

304) 박찬걸, 앞의 논문, 18쪽; 신양균, 앞의 논문, 638쪽; 주현경, 앞의 논문, 407쪽.

305) 박찬걸, 앞의 논문, 19쪽.

306) 그러나 연구진 가운데에는 상대적 종신형보다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음을 밝혀둔다. 이덕인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에 대하여 첫째, 위헌성이 문제되는 형벌은 이미 사형제도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 정도는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사형의 집행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가 파괴된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절대적 종신형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고, 또한 생명권의 제한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동일하게 헌법 제10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기본권의 질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인간성을 말할 수 있는 장기구급의 문제는 비단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있어서만 비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우리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최대 5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기징역형제도에도 해당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반대하면서 가석방이 제한되는 상대적 종신형이 바람직하다거나 유기형의 상한을 폐지하지는 주장의 이면에는 혹시 사형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입장이 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재고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과 비교할 때 인도적인 형벌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형벌의 정당성 측면에서 독립적인 논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상대적인 가치판단의 대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결국 형이상학적인 논증만을 되풀이하는 것이기에 우리 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사형을 대체할 형벌의 선택가능성은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둘째, 형벌목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만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형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한

문제는 상대적 종신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상대적 종신형의 본질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가석방, 사면, 감형 또는 복권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바로 법원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이후 수형자가 교정시설에서 복역한 시간적 경과의 정도이다. 학계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에 대하여 15년, 20년, 25년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점, 사형폐지에 따른 대체형벌은 현행 형법상 무기형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어느 정도 위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기간을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선(원칙적으로 30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5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4절 범죄피해자(유가족) 지원 등 보완방안

1. 서설

종래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는 범죄인, 즉 사형확정자의 인권과 결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형과 범죄피해자(유가족)의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사형을 포함한 형벌들이 역사적으로 국가의 공(公)형벌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기는 했어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범죄피해자(유가족)의 의사 또는 응보욕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관념이 깔려있기도 하다. 특히 살인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의 경우 피살자의 유가족은 국가형벌권이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은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유가족의 응보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법원의 사형선고만이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으며, 심지어 살인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가족도 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종래 사형대상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안정감이나 응보욕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만족했던 피해자나 유가족이 이제는 사형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상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형을 폐지하되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일정하게 만

사면이라고 하는 자유회복의 여지를 두는 절대적 종신형이 마련될 경우 교정, 교화와 재사회화의 형벌 목적은 완전히 포기되거나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귀의 가능성과 연결된 수형자의 출소 가능성 여부가 이 대체형벌을 배척해야 하는 주된 논거로 설명되지만 교정시설 내에서 일생 동안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사회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사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교정시설도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인간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속죄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에서 실형 일생을 복역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을 통하여 일정한 작업장려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허용한다면 종신형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방편이자 또 다른 형태의 사회복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적 종신형에는 사회복귀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회복귀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한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교정처우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하고,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이후 이에 해당하는 종신형 수형자들에게 대한 독립된 처우의 마련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정행정이 수형자들을 방치하고 단순히 가두어두는 것을 행형의 목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형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형기가 무기한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개선, 교화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행형법령의 정비와 보안을 통하여 추후 예상되는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종신의 기간을 수감시설에 구금하는 까닭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 문제는 비단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도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과 관련하여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형집행법 등을 개정하여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고 그 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재비판을 하였다.

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보상방안이다.

상대적 종신형제도와 피해자나 그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연계시키는 방식은 이미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91년 네브래스카 주에서 실시한 사형의 대체형벌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사형을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되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을 부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형폐지에 찬성한 응답자가 64.2% 사형존치를 지지한 응답자가 26.1%, ‘모름’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7.3%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상대적 종신형과 경제적 보상방안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해서는 범죄자에게 배상을 위한 자력이 있는 경우와 자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의 도입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이를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강제로라도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그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져 민법 제750조 소정의 ‘권리침해’가 되고, 이는 곧 민사상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 그러나 민·형 분리사상이 비교적 강하게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구조와 문화 속에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법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문제는 범죄자가 범행 후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과거 용산 초등생 강간살인 사건³⁰⁷⁾과 학교폭력 거액 배상 사건³⁰⁸⁾ 등 두 건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형 분리사상이 엄격하게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사상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범죄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검찰)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재산을 임시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른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는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장래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점에서 범죄인 재산의 일시적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는 외형상 몰수추징 보전제도와 유사하다. 몰수추징 보전도 장래에 행해질 몰수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307) 용산 초등생 강간살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2006년 2월경 초등학생 피해자(여, 10세)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후 2006년 4월, 가해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을 저가(1억 1,300만원)에 매각한 후 도피해버렸다. 2006. 6. 20. 한국일보, 2008. 6. 30. 서울신문 보도.

308) 학교폭력 거액 배상 사건에서는 2007년 3월경 피해자(남, 9세)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 충격으로 뇌병변 1급 장애 및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2010년 8월경 법원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의 배상명령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재산명시신청 등 가해자 부모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가해자가 2011년 5월, 가해자 부모 소유 부동산(공시지가 1억 9,300만원)을 자신의 가족(누나) 명의로 변경하여 은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 간호에 전념하고 아버지는 실명으로 그가 운영하던 빵집은 폐업하여 배상금을 못 받으면 피해자의 치료는 물론 생계유지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12. 9. 6. 동아일보 보도.

말하기 때문이다. 범죄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와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와 현행법상의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그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우선, 제도의 성질 면에서 보면,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형벌의 한 종류인 몰수의 대상에 대한 몰수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한 추징을 미리 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재산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이 점에서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국가형벌권 행사와 직결되어 있지만,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는 오로지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의 관점이 전면에 등장한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몰수추징 보전제도는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즉, 몰수의 대상은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권리³⁰⁹⁾이어야 하므로 범죄와 관련 없는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³¹⁰⁾ 이에 반해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는 당해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당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권리가 아닌 경우에도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가 범죄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상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죄인 재산 전부를 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범죄인의 재산 중 특정된 재산만을 보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제도의 구체적 형성에 달려있다.

다만, 범죄인재산에 대하여 긴급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인 검사가 피해자를 대행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전절차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몰수추징 보전절차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자력이 있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경제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범죄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자에게 피해자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범죄사건에서 자력을 갖춘 범죄자들은 많지 않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자나 그 유족을 위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피해자기금모델과 재사회화기금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³¹¹⁾

309) 대법원 1976.09.28. 선고 75도3607판결.

310) 대법원 1967.02.07. 선고 66오2결정.

311) 물론 이러한 기금모델 이외에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지급액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보호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사회국가원리에 기초하여 보충적으로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족이 만족할 만한 구조금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에 의하면,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국가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현실적인 구조금의 액수가 적다는 것이다. 범

우선 피해자기금모델은 국가가 벌금액이나 과태료 중 일정비율을 특별재산으로 구성한 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범죄자가 무자력이어서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사정이 되지 못할 때 피해자기금에서 직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과 유사하고,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피해자기금모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기금에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는 것보다 한층 더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자와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나 그 유족의 민사청구권만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에 반해 재사회화기금모델은 피해자기금의 재원을 벌금액이나 과태료 등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피해자기금모델과 동일하지만, 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자기금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기금이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범죄자가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도록 의도하는 방식이다.³¹²⁾ 그리고 범죄자는 피해자기금에서 대여해준 금액만큼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통하여 받게 되는 작업상여금이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의 직업활동 등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게 된다. 이 모델은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특별예방적 관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피해회복 이익을 강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기금모델보다 한층 발전된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사회화기금모델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대여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한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익 및 이에 기초한 가석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사회화기금모델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사형폐지 법률 개정 및 입법방식

1. 비교법적 검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비록 사형 제도를 명목상 존치시키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형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영구히 폐지한 국가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중에서 폐지된 사형의 대체형벌은 가석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부터 일정기간 복역 후에만 가능한 종신형까지, 심지어는 종신형이 아닌 유기형, 즉 장기자유형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실로 다양하다. 사형의 대체형벌은 결국 각 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정치·문화·역사적 배경 속에 발전한 것이기에 어떤 입법례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다를 성질은 아니다.

그런데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다.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경우 사형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주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주에서는

죄피해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유족구조금은 최소 940만원, 최대 1억 128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실제로 유족구조금을 1억 넘게 수령하는 유족은 많지 않을 것이다.

312) 재사회화기금모델에 관한 내용은 이진국, 사회내 제제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1-93쪽 참조.

사형을 유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총기류소지를 허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인 미국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형벌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벌강화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형폐지에 선도적인 유럽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이 폐지된 사형의 대체형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종신형이 국가의 가장 중한 형벌로서 사형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우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입법방식이 취해졌다. 나치시대의 인명살상의 참혹함을 겪은 독일의 입법방식을 살펴보면, 헌법(독일기본법)을 제정할 때부터 사형폐지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으로 승격시켰고, 사형의 대체형벌로 도입한 독일형법상의 절대적 종신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이 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상대적 종신형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프랑스의 입법방식은 사형폐지법을 제정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이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사형폐지를 프랑스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그 동안 일부에서 논의되던 사형부활법안에 대해 일종의 쉼표를 박았다. 터키의 입법방식을 살펴보면 유럽연합가입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형 집행법 등을 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했다. 프랑코 독재정권에서 벗어난 스페인의 경우는 종신형과 같은 대체형벌을 도입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형을 폐지하기도 했다.

2. 국제적 기준 검토

1989년 12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199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한 국제적 규범이 되고 있다. 그에 앞서 유럽연합은 1985년에 유럽 인권협약 제6의정서에 모든 가입국가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사형폐지규정을 명기하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는 지위에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유럽의 구속력 있는 규범을 무시하고 사형을 다시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국제적 기준은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도 그 인권침해 가능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성인범죄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절대적 종신형이 유럽 인권협약 제3조(고문,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³¹³⁾ 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구금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사회 재통합을 목적으로 한 행형(처우)의 목적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검토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 제도를 유지하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313) 유럽인권재판소가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유럽연합인권협약 제3조 위반으로 판결한 사례로는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9. July 2013), *Öcalan v. Turkey* (18. March 2014), *László Magyar v. Hungary* (20. May 2014), *Harakchiev and Tolumov v. Bulgaria* (8. July 2014)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유럽인권재판소의 보도자료(https://www.echr.co.e.int/Documents/FS_Life_sentences_ENG.pdf) 참조. *Case of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3] App. No. 66069/09, 131/10 and 3896/10; *Kafkaris v. Cyprus* [2008] App. No. 21906/04 at para. 103.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의견은 20.3%(당장 폐지: 4.4%, 향후 폐지: 15.9%)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사형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9.9%로 나왔다. 그러나 ‘오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일반국민의 53.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일반국민의 66.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사형존폐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렇게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제도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국가가 사형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로 가장 높고, 2) 그러더라도 나오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 3) 소극적 반대 비율이 37.0%, 4) 적극적 반대 비율은 10.5%로 나온 설문조사결과도 이를 잘 응변해준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3분의 2 이상(66.9%)이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된다는 조건 하에서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결과는 상당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1) 절대적 종신형, 2) 절대적 종신형 + 손해배상, 3) 상대적 종신형, 4) 무기징역 등을 제시하였을 때 국민들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압도적인 찬성(절대적 종신형만 제시한 경우 78.9%, 손해배상도 추가한 경우 85.2%가 동의함)을 나타낸 반면, 상대적 종신형과 무기징역의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상대적 종신형에 대해서는 60.9%,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55.5%가 동의하지 않음)이 더 많았다.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은 현행 무기징역에 비하여 훨씬 강화된 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인식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정확하거나 단편적인 상황 속에서 사형 제도를 인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문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습득 및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쇄살인과 성폭력살인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흉악범죄의 증가현상이 아주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범죄에 대한 공포가 대중매체에 의하여 이처럼 증폭되면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엄벌주의를 선호하는 감정이 상당히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³¹⁴⁾ 그래서 사형존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국민들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사형의 형벌효과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그러나 사형의 존치가 흉악범죄의 억제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조사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엄벌주의에 입각한 형벌 강화보다는 범죄자가 범행 후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때 범죄억제효과가 더 명확히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³¹⁵⁾

국민여론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그대로 입법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특히 사형존폐논의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이 결부된 헌법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예를 비추어보아도 사형폐지법이 의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국민여론조사는 사형폐지 찬성비율이 반대의견보다 적었는데, 입법적 결단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후 오히려 사형폐지 찬성여론이 반대의견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민여론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문제도 헌법적 가치와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보다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호하더라도 절대적 종신형이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와 인권관련

314) 대중매체에 의한 위험한 범죄자의 가공 및 모럴 페닉에 대해서는 한영수,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13 봄호), 181면 이하 참조.

315)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문헌에 대해서는 한영수, 앞의 논문, 185면 이하 참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의 도입과 같은 입법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면 일차적으로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석방가능성이 항구적으로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와 근접한 유형의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국민들은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수인할 가능성이 높다. 사형을 폐지하려 할 때 국민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형벌의 위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어 흉악범죄의 증가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형벌을 도입하여 사형을 대체하도록 한다면 국민우려의 상당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사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볼 때도 그 형벌효과가 크게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종신형의 가석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사형폐지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

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

(1) 명칭 : 종신형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종신형을 도입한다. 사형의 대체형벌의 명칭을 “종신형”으로 정한 이유는 현행 형법에 규정된 무기형(무기징역, 무기금고)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현행 무기형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형벌로서 종신형을 도입함으로써 사형을 대체하려는 취지다. 징역과 달리 금고는 대부분 과실범에 한하여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닌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예는 실제로 없다. 따라서 종신형은 징역과 금고를 구별할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단일한 자유형의 형태인 “종신형”으로 도입한다.

(2) 종신형 수형자의 가석방 제한

종신형은 가석방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상대적 종신형이다. 현행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도 20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종신형이라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교하여 가석방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함으로써 사형의 대체형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할 때는 유기징역형의 형기상한을 참작하여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석방불허기간을 정한다. 이처럼 장기간의 가석방불허기간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종신형 수형자는 고령화가 된 후 에나 가석방이 될 수 있어서 석방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석방의 심사절차도 무기형과 달리 종신형의 경우 보다 어렵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석방허가관은 행정관청인 법무부가 담당한다. 즉,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도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종신형 수형자의 가석방은 법원의 사법적 심사도 받게 함으로써 가석방허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종신형 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가석방신청을 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석방허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종신형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허가의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무기수의 가석방기간은 10년이며, 유기형에 있어서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그러나 종신형 수형자의 가석방기간은 종신형의 형벌성격상 그가 사망할 때까지로 정함으로써 현행 무기형과의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형법 제73조의2 제2항). 종신형 수형자도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 살인범이나 성폭력범죄자는 가석방기간 중은 물론 형기종료 후에도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이른바 “전자발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형은 주로 살인범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고, 종신형이 이러한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신형 수형자가 가석방이 되면 필요적으로 전자감독을 받도록 하여 무기형과의 차별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고령화로 인하여 전자감독을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감독처분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소멸하면 전자감독해제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전자감독을 받게 한다.

(3) 사실상의 절대적 종신형과 가까운 형태의 강화된 형벌

종신형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1) 30년 내지 50년이라는 가석방불허기간 설정, 2) 가석방허가 시 사법적 심사의 의무화, 3) 가석방된 자의 사망 시까지의 가석방기간 설정, 4)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시행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의무조건을 둠으로써 현행 무기형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한다면, 명목상 가석방의 기회는 열려 있어 위헌논란을 피하면서도 종신형을 선고받은 자는 고령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설사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가석방이 되더라도 종신토록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종신형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심사·허가·집행 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제한사유를 두게 된다면 종신형은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가는 형태의 강화된 형벌로 기능하게 되어 사형폐지로 인한 형벌약화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4) 종신형으로의 역류 억제 필요성

사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위치할 종신형은 가장 엄중한 국가형벌로서 지금까지 사형이 선고되던 이른바 “극악무도한”살인범죄자에게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사형이 선고되는 연간인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³¹⁶⁾ 이에 반하여 무기형이 선고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³¹⁷⁾ 그런데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형을 대체하는 이른바 “종신형으로의 역류”현상이 일어나 엄벌주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종신형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 종신형 선고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형벌효과가 무더질 수 있다. 따라서 무기형에서 종신형으로의 역류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사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 구성요건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른바 사형범죄의 대폭축소논의가 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법당국이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316) 우리나라 제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0건, 2016년 0건에 불과하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참조)

317) 우리나라 제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32건, 2012년 23건, 2013년 27건, 2014년 31건, 2015년 42건, 2016년 43건에 이르고 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참조)

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어서 사형선고건수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중살인범죄자, 연쇄살인범죄자, 성폭력살인범죄자 등에 국한되어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구성요건이 많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보다는 종신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함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형에서 종신형으로의 역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 사형범죄의 대폭 축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 중에서 살인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사형만 삭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을 형법에 규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명기할 필요가 있다.³¹⁸⁾

나.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형을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범죄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이 존중되는 국가형벌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신형의 정의) “종신형”이란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을 말한다.

제3조(사형의 종신형 대체)

- ①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 ②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확정자’를 ‘종신수형자’로 바꾼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종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신형의 도입과 시행을 위하여 「형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신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318) 참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사형을 존치하면서 동개정안 제44조 제3항에 “사형의 선고는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신중선언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형법 제42조(형의 기간)

- ① 중신형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형기로 한다. (신설)
- ②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 중신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생략)

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51조(양형)

-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생략)
- ② 중신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중신형) 중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절 가석방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형법 제72조의2(중신수형자의 가석방) (신설)

- ① 중신형을 선고할 때는 유기징역의 형기상한(원칙적으로 30년, 형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50년)을 참작하여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석방불허기간을 정해야 한다.
- ② 중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불허기간을 경과한 후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가석방의 기간은 가석방된 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한다.
- ④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석방된 자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전자감독을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감독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사라졌을 때에는 전자감독 해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제4장 결론

우리 사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는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사형제도의 위헌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를 위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여러 번 제출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학계에서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형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전면적인 형법개정안의 입안과정에도 사형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사형폐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형사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형법교수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작성한 통일형법시안에는 사형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서 이제는 사형폐지국가가 사형유지국가에 비하여 그 수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의 존중 등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사형의 집행만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에서 명실상부하게 법률적, 제도적으로도 사형을 항구히 폐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사형폐지를 위한 대체형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신형 관련 국제적 기준도 검토함으로써 사형의 적절한 대체형벌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또한 사형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단순히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급격히 높아져서 국민들의 3분의2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었고,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나름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외견상 매력적으로 보이고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석방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체의 석방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인권존중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상대적 종신형보다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사형을 폐지하면 국가형벌의 위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어 흉악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종신수형자의 가석방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약조건과 의무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형태의 강력한 대체형벌을 도입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둘째, 사형을 폐지하되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회복해 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자에게 자력이 있으나 이를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강제로라도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국가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한 후 피의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줌으로써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범죄인재산 긴급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에게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범죄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통하여 피해자유족 등에게 배상할 수 있는 재사회화기금모델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형의 대체형벌의 명칭은 ‘중신형’으로 하고, 법원이 중신형을 선고할 때는 유기징역형의 형기상한을 참작하여 30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석방불허기간을 정하고, 가석방의 심사절차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기수형자와 달리 중신수형자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법원이 가석방결정을 하게하고, 중신수형자의 가석방기간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중신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며,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전자발찌)을 필요적으로 받게 한다. 이와 같이 중신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의 심사, 허가, 기간, 집행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사유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절대적 중신형에 버금가는 형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형의 대체형벌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한다. 다만, 중신형이 사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기형이 선고되던 사례가 역류하여 중신형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의 대폭 축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살인범죄 이외의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추후에 이를 중신형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형에 있어서 중신형을 선고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형의 대체형벌로 중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방식으로는 「사형을 중신형으로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아울러 형법의 형의 선고, 형의 양정, 형의 집행, 가석방 규정 등을 중신형 도입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관련 조사결과

제1장 조사개요 및 조사대상자 특성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각 방송사 및 언론사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강력범죄의 발생 등과 같은 조사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묻는 식의 여론조사는 자칫 인기투표식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들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제외하면 모두 즉자적이고 단편적인 찬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의 경우, “귀하는 사형제도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와 “폐지하는 것이 좋다”의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사형제도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형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히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이분법적 설문을 구성하기보다는 사형제도의 ‘유지·강화’, ‘신중운용’, ‘당장 폐지’, ‘향후 폐지’ 등과 같이 인식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일부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몇 가지 설문의 경우 2003년 조사결과와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초점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대체형벌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있다. 그래서 사형폐지의 대안으로 중신형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형벌들이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피해자 유족의 입장, 사형수 가족의 입장, 사형제도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설문에 구성함으로써 설문조사 전과 후의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능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형제도(국가형벌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실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시민단체회원, 언론인, 법조인, 교정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개별면접조사(일부 웹 조사 포함)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인식조사 설문에 약간의 추가설문을 두었다. 무엇보다 사형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찬반의견 및 찬반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전문가 개별면담조사결과 도출된 ‘사형제도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사형이 법정최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구성요건의 타당성 여부’,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체형벌의 도입에 관한 의견’, ‘사형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그 밖에도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형집행의 대체형벌 등이 야기하는 인권문제’ 및 교정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형집행 시기 및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의견’, ‘사형수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설문에 반영하여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제2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본 조사의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조사대상		표본수	표집대상	조사방법
일반국민		1,000명	지역별, 연령별, 성별 비례할당	온라인 설문조사 (95%신뢰수준 ±3.1%p 오차범위)
전문가	전체	132명	시민단체, 언론인, 국회의원, 법조인, 교정공무원 등 대상	개별면접조사 (웹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시민단체	32명	인권 및 범죄피해자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30명	신문, 통신, 방송사 등	
	국회의원	6명	국회의원	
	법조인	54명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교정공무원	10명	교도관, 교정위원 등	

* 전문가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실시함

일반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연령별·성별 비례할당을 통하여 표집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할당표집수는 다음과 같다.³¹⁹⁾

표 Ⅲ-2 일반국민 표집수

(단위 : 명)

표본	전체					계
	만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서울	39	42	44	41	30	196
부산	12	12	14	16	13	67
대구	9	8	11	12	8	48
인천	11	12	14	14	8	59
광주	6	6	6	6	4	28

319) 전문가 집단의 경우 집단별 표본이 한정되어 일반국민과 같은 비례할당표집을 실시하지 못한 점은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단, 전문가 집단은 사형제도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표본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진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이다. 주로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사용되며, 분명한 표집틀이 없고, 최선의 표집선택의 방법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곳에서 이용된다. (사회학사전 일부 발췌 for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373&cid=42121&categoryId=42121>)

(단위 : 명)

표본	전체					계
	만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전	6	6	6	6	4	28
울산	4	4	6	6	4	24
경기	47	53	62	57	34	253
강원	5	4	6	8	6	29
충북	5	6	6	8	5	30
충남(세종포함)	7	9	11	10	8	45
전북	6	6	8	8	6	34
전남	5	6	7	9	6	33
경북	9	9	11	12	10	51
경남	11	12	15	16	10	64
제주	2	2	3	2	2	11
계	184	197	230	231	158	1,000

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방법은 문항개발을 위한 문헌조사 및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전문조사기관인 (주)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로 구성된 법조인, 신문, 통신, 방송사 등 언론인, 국회의원과 교정담당공무원 등의 5개 집단 대상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조사 및 설문문항 개발단계에서는 ‘사형제도 관련 연구 논문’, ‘사형제도 관련 법조문’, ‘사형제도 관련 외국 연구 사례’, ‘사형 판결 사례 연구’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 등의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신문 등에 나오는 다양한 자료,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와 관련된 찬반여부, 인지도, 인식 및 제도 개선방안 외에도 사형제도와 관련된 대체 형벌제도 등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도출하였다. 문헌조사의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각종 도서와 기타 문헌 자료 발굴,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한 1차 자료 수집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였다.

연구진에서 개발한 설문조사문항에 대하여 본 과제의 중간보고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문항의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형제도 및 사회조사 관련 전문가 3~4인에게 자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문항을 수정·반영하였다.

완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전문업체인 (주)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패널조사방식으로 2018년 8월 20일(월)부터 2018년 8월 28일(화)까지(10일간)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대상 개별면접조사(일부 웹 조사 병행)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를 실시하여 조사 분석내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형폐지의 대안 및 대체형벌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II-3 조사방법 개요

단계	조사방법	조사내용
1단계 (~7/10)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관련 연구 논문 • 사형제도 관련 법조문 • 사형제도 관련 외국 연구 사례 • 사형 판결 사례 연구 • 기타
2단계 (7/11~8/10)	설문개발 (연구진 &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자체 설문개발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설문문항 개선
3단계	설문조사 적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의 적합성 검토 - 사형제도 및 여론조사 관련 외부 전문가 3~4명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중간보고회를 실시함
4단계 (8/20~9/15)	조사수행 및 결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분석 •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형제도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7단계 (9/16~9/30)	조사결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검토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생명권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반응, 사형제도의 대안 모색(대체형벌 가능성),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III-4 조사내용

분류	세부항목
생명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 • 국가가 사회정의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의 필요성 •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 • 사형폐지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의 관계 •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 제안 • 극단적 상황(가족이 사형과 관련)에서의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의 유지의견 시 그 이유 - 사형제도의 폐지의견 시 그 이유 • 사형제도와 형벌목적과의 부합 정도 •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사형제도의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 가능성 •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사형제도 유지·강화 등)의 효과성 • 사형의 대체형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 종신형 - 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 상대적 종신형 - 무기징역 - (전문가에 한하여) 장기징역형 • 대체형벌 도입 시 사형제도의 폐지 동의 여부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형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오관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방법 • 설문 이후 사형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습득여부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 설문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원인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종교 • 학력 • 직업 • 월평균 소득(개인 & 가구소득)

또한 분야별 전문가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설문문항 외에 조사항목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5 분야별 전문가 대상 추가 조사항목

분류	세부항목
전문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형벌로 장기징역형에 대한 동의여부 (시민단체 제외)
시민단체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고, 아래의 질적 문항에 대하여 조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사형제도의 대안이 가져오는 인권문제
언론인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와 범죄예방의 효과 • 사형집행 과정 언론 공개 여부
국회의원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의 영향
법조인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과 범죄예방효과와의 관계 • 우리나라 재판의 오관 비율 • 죄형별 대체형벌
교정담당공무원 대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형집행 전 사형수와의 면회 허용 문제 • 사형수의 수용태도 • 사형집행 참관 경험 유무 및 집행 후 생활의 변화 • 사형집행 시 교화된 사형수 •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등

4. 조사대상자 특성

본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7	50.7%	종교	기독교	215	21.5%
	여성	493	49.3%		불교	156	15.6%
연령	20대	184	18.4%		천주교	87	8.7%
	30대	197	19.7%		무교	538	53.8%
	40대	230	23.0%		기타/무응답	4	0.4%
	50대	231	23.1%				
	60대	158	15.8%				
지역별	서울	196	19.6%		강원	29	2.9%
	부산	67	6.7%		충북	30	3.0%
	대구	48	4.8%		충남(세종)	45	4.5%
	인천	59	5.9%	전북	34	3.4%	
	광주	28	2.8%	전남	33	3.3%	
	대전	28	2.8%	경북	51	5.1%	
	울산	24	2.4%	경남	64	6.4%	
	경기	253	25.3%	제주	11	1.1%	
학력별	초등학교졸업	11	1.1%	대학교졸업	461	46.1%	
	중학교졸업	14	1.4%	대학원 재학 이상	68	6.8%	
	고등학교졸업	262	26.2%	기타/무응답	4	0.4%	
	전문대학졸업	180	18.0%				
직업별	전문/관리직	83	8.3%	판매/서비스업/영업직 피고용인	56	5.6%	
	행정직/관리직	67	6.7%	농림/어업/축산업	8	.8%	
	일반 사무직	253	25.3%	주부	183	18.3%	
	단순 노무직	46	4.6%	학생	77	7.7%	
	개인사업/자영업	77	7.7%	무직	61	6.1%	
	생산직/기능직 피고용인	53	5.3%	기타/무응답	36	3.6%	
월평균 소득별	소득없음	177	17.7%	월평균 가구 소득별	소득없음	23	2.3%
	100만원 미만	99	9.9%		100만원 미만	40	4.0%
	100-200만원 미만	187	18.7%		100-200만원 미만	77	7.7%
	200-300만원 미만	198	19.8%		200-300만원 미만	149	14.9%
	300-400만원 미만	159	15.9%		300-400만원 미만	209	20.9%
	400-500만원 미만	103	10.3%		400-500만원 미만	209	20.9%
	600-700만원 미만	29	2.9%		600-700만원 미만	142	14.2%
	700-1000만원 미만	30	3.0%		700-1000만원 미만	95	9.5%
	1000만원 이상	16	1.6%		1000만원 이상	52	5.2%
	기타/무응답	2	.2%		기타/무응답	4	0.4%

표 Ⅲ-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전문가)

구분		법조인	시민단체	언론인	국회의원	교정담당 공무원	전체
전체		54 40.9%	32 24.2%	30 22.7%	6 4.5%	10 7.6%	132 100.0%
성별	남성	41 75.9%	12 37.5%	15 50.0%	5 83.3%	9 90.0%	82 62.1%
	여성	13 24.1%	20 62.5%	15 50.0%	1 16.7%	1 10.0%	50 37.9%
연령대	20대	24 44.4%	6 18.8%	7 23.3%	1 16.7%	0 0.0%	38 28.8%
	30대	27 50.0%	8 25.0%	17 56.7%	1 16.7%	7 70.0%	60 45.5%
	40대	3 5.6%	13 40.6%	4 13.3%	4 66.7%	3 30.0%	27 20.5%
	50대	0 0.0%	3 9.4%	2 6.7%	0 0.0%	0 0.0%	5 3.8%
	60대이상	0 0.0%	2 6.3%	0 0.0%	0 0.0%	0 0.0%	2 1.5%
	종교	기독교	21 38.9%	7 21.9%	5 16.7%	3 50.0%	1 10.0%
불교		3 5.6%	1 3.1%	3 10.0%	1 16.7%	1 10.0%	9 6.8%
천주교		6 11.1%	7 21.9%	4 13.3%	0 0.0%	4 40.0%	21 15.9%
무교		23 42.6%	17 53.1%	18 60.0%	2 33.3%	4 40.0%	64 48.5%
기타/ 무응답		1 1.9%	0 0.0%	0 0.0%	0 0.0%	0 0.0%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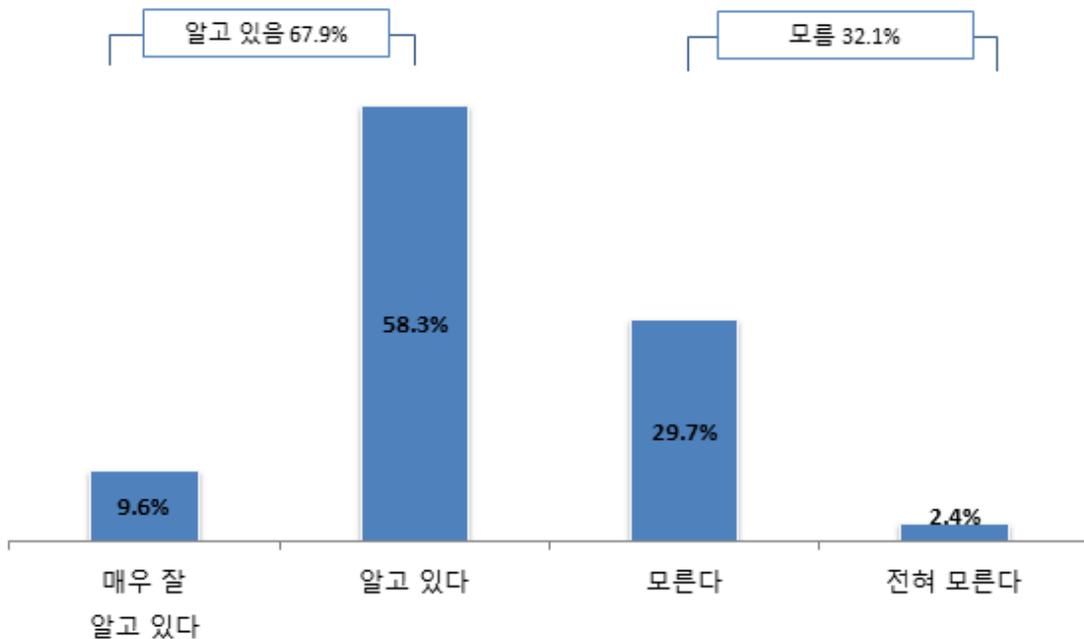
제2장 일반국민대상 조사결과

제1절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일반국민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매우 잘 알고 있다 9.6%, 알고 있다 58.3%)로 나타난 반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1%(모른다 29.7%, 전혀 모른다 2.4%)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65% 이상이 사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남성(75.5%)이 여성(60.0%)에 비하여 더 많이 사형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72.6%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와 불교에서 각각 72.1%와 70.5%로 천주교(66.7%)와 무교/기타(65.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교졸업 및 대학원재학 이상이 각각 73.5%와 76.5%로 고졸이하/기타 64.9%와 전문대학 졸업 55.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76.1%로 가장 높았고, 400~500만원(67.9%), 200~400만원(66.5%), 200만원 미만/기타 54.9%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형제도에 대해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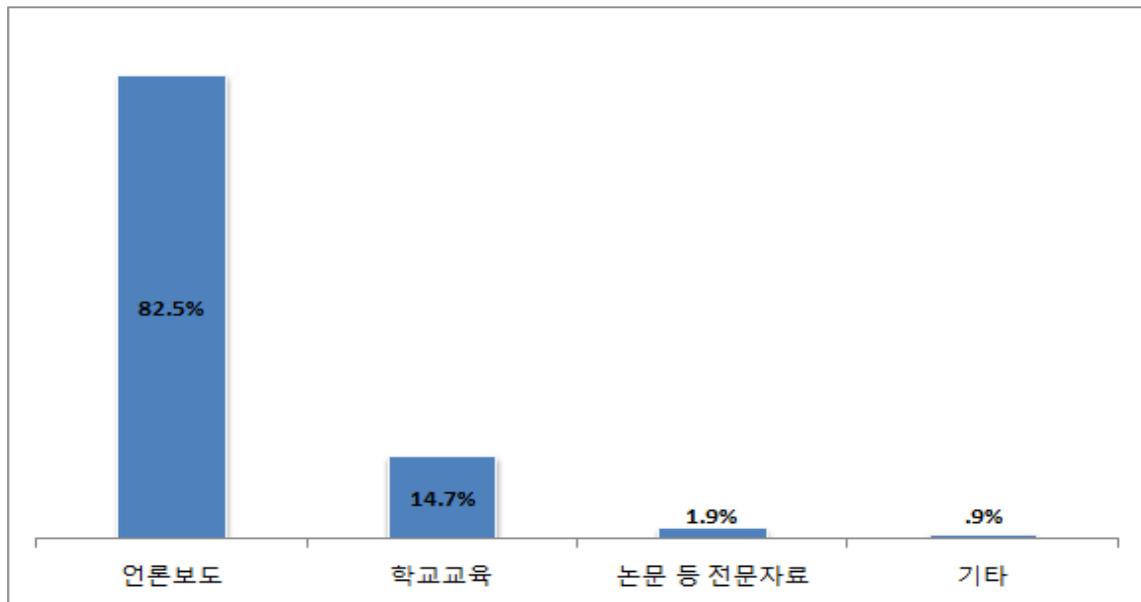
표 Ⅲ-8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알고있음	모름
전체		1,000	9.6	58.3	29.7	2.4	67.9	32.1
성별	남성	507	12.6	62.9	22.9	1.6	75.5	24.5
	여성	493	6.5	53.5	36.7	3.2	60.0	40.0
연령별	20대	184	10.9	56.5	30.4	2.2	67.4	32.6
	30대	197	13.2	59.4	24.9	2.5	72.6	27.4
	40대	230	6.5	58.7	31.7	3.0	65.2	34.8
	50대	231	10.0	56.7	31.6	1.7	66.7	33.3
	60대이상	158	7.6	60.8	29.1	2.5	68.4	31.6
종교	기독교	215	10.2	61.9	25.6	2.3	72.1	27.9
	불교	156	9.0	61.5	28.2	1.3	70.5	29.5
	천주교	87	2.3	64.4	32.2	1.1	66.7	33.3
	무교/기타	542	10.7	55.0	31.4	3.0	65.7	34.3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6.5	58.4	33.0	2.1	64.9	35.1
	전문대학졸업	180	5.6	49.4	40.0	5.0	55.0	45.0
	대학교졸업	461	12.8	60.7	24.7	1.7	73.5	26.5
	대학원재학이상	68	11.8	64.7	22.1	1.5	76.5	2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8.3	46.5	40.3	4.9	54.9	45.1
	200~400만원미만	358	8.9	57.5	30.4	3.1	66.5	33.5
	400~500만원미만	209	8.1	59.8	31.6	.5	67.9	32.1
	500만원이상	289	12.1	64.0	22.1	1.7	76.1	23.9

일반국민들이 사형제도를 인지하는 경로로는 ‘언론보도’가 82.5%로 가장 높았고, 학교교육(14.7%), 논문 등 전문자료(1.9%) 순으로 조사되어, 일반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도 언론보도를 통한 사형제도에 대한 정보습득이 성별, 종교, 학력, 소득별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대 연령의 경우에는 언론보도 56.5%, 학교교육 36.3%로 조사되어**, 20대 연령층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언론보도가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 인식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Ⅲ-9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인지경로(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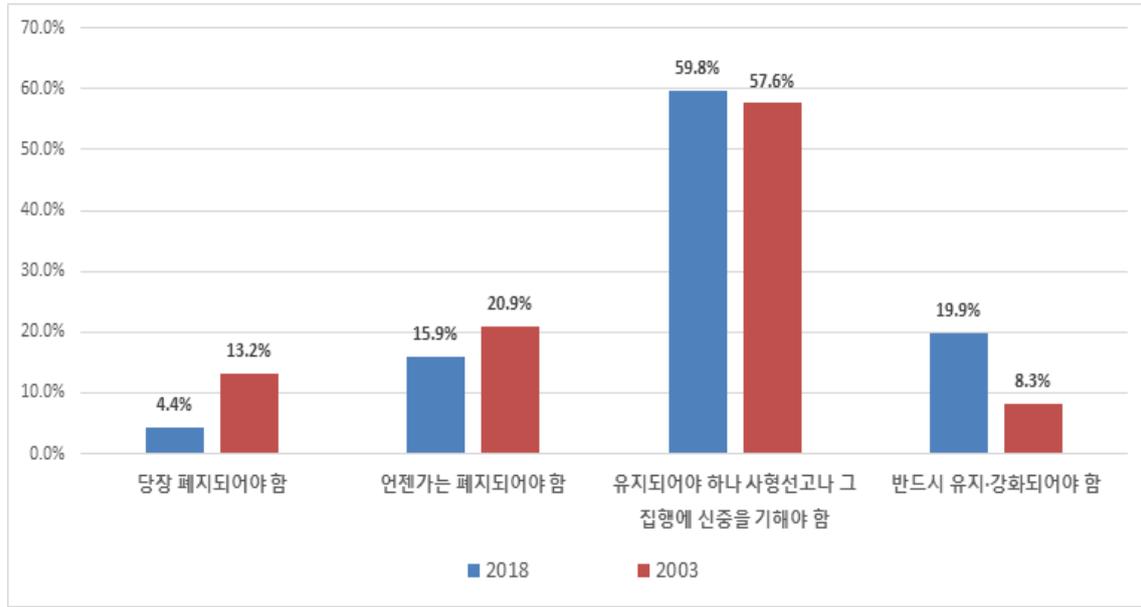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언론보도	학교교육	논문 등 전문자료	기타
전체		1,000	82.5%	14.7%	1.9%	0.9%
성별	남성	507	80.2%	16.7%	2.1%	1.0%
	여성	493	85.5%	12.2%	1.7%	0.7%
연령별	20대	184	56.5%	36.3%	4.0%	3.2%
	30대	197	80.4%	15.4%	2.8%	1.4%
	40대	230	88.7%	10.7%	.7%	0.0%
	50대	231	93.5%	5.2%	1.3%	0.0%
	60대이상	158	90.8%	8.3%	.9%	0.0%
종교	기독교	215	82.6%	12.3%	3.9%	1.3%
	불교	156	85.5%	12.7%	1.8%	0.0%
	천주교	87	84.5%	12.1%	1.7%	1.7%
	무교/기타	542	81.2%	16.8%	1.1%	0.8%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83.2%	13.7%	2.6%	0.5%
	전문대학졸업	180	87.9%	10.1%	2.0%	0.0%
	대학교졸업	461	79.9%	17.7%	.9%	1.5%
	대학원재학이상	68	86.5%	7.7%	5.8%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77.2%	19.0%	3.8%	0.0%
	200~400만원미만	358	82.4%	14.7%	2.5%	0.4%
	400~500만원미만	209	83.2%	14.7%	.7%	1.4%
	500만원이상	289	84.1%	13.2%	1.4%	1.4%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9.8%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9%로 조사되어 사형제도 유지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의견은 전체의 4.4%로 나타났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향후 폐지의 의견은 15.9%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2003년과 조사하여 비교하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2%p와 11.6%p로 증가한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지는 의견과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향후 폐지의 의견은 각각 8.8%p와 5.0%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성별,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는 크게 상이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연령대에서 사형을 유지하지는 의견이 각각 85.3%와 90.4%로 나타나 40대 72.2%, 50대 75.3%, 60대 이상 76.7%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기타와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 사형을 유지하지는 의견이 각각 81.7%와 82.1%로, 대학교졸업 76.1%와 대학원재학 이상 72.1%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반국민들의 대부분이 사형을 유지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범위에서 ‘향후 폐지’와 ‘당장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연령층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하일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는 의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 응답자 특성별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당장 폐지 되어야 함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함	유지하나 사형 선고/집행에 신중	더 강화 되어야 함
전체		1,000	4.4%	15.9%	59.8%	19.9%
성별	남성	507	4.3%	16.2%	59.6%	19.9%
	여성	493	4.5%	15.6%	60.0%	19.9%
연령별	20대	184	2.2%	12.5%	61.4%	23.9%
	30대	197	1.5%	8.1%	66.5%	23.9%
	40대	230	5.7%	22.2%	54.8%	17.4%
	50대	231	6.9%	17.7%	58.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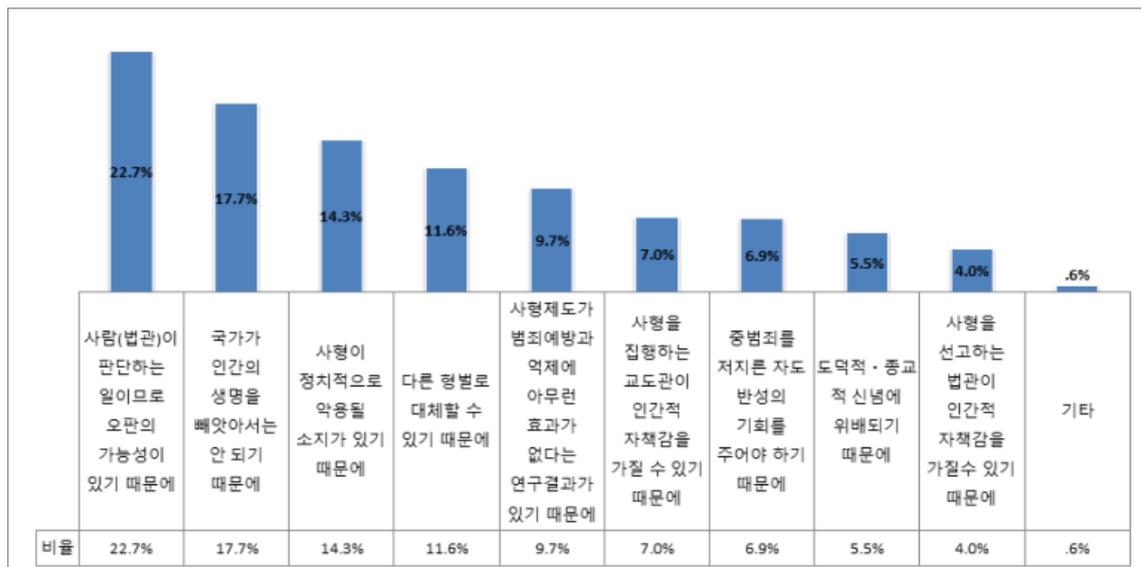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당장 폐지 되어야 함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함	유지하나 사형 선고/집행에 신중	더 강화 되어야 함
종교	60대이상	158	5.1%	17.7%	59.5%	17.7%
	기독교	215	6.5%	16.7%	56.7%	20.0%
	불교	156	4.5%	16.0%	60.3%	19.2%
	천주교	87	5.7%	19.5%	60.9%	13.8%
	무교/기타	542	3.3%	14.9%	60.7%	21.0%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4.5%	13.4%	62.9%	19.2%
	전문대학졸업	180	4.4%	7.8%	66.7%	21.1%
	대학교졸업	461	4.8%	19.1%	55.3%	20.8%
	대학원재학이상	68	1.5%	26.5%	58.8%	1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8.3%	12.5%	57.6%	21.5%
	200~400만원미만	358	4.7%	15.6%	62.3%	17.3%
	400~500만원미만	209	1.9%	15.8%	61.2%	21.1%
	500만원이상	289	3.8%	18.0%	56.7%	21.5%

3. 사형제도 폐지 및 찬성이유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로는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14.3%)’,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11.6%)’, ‘사형 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9.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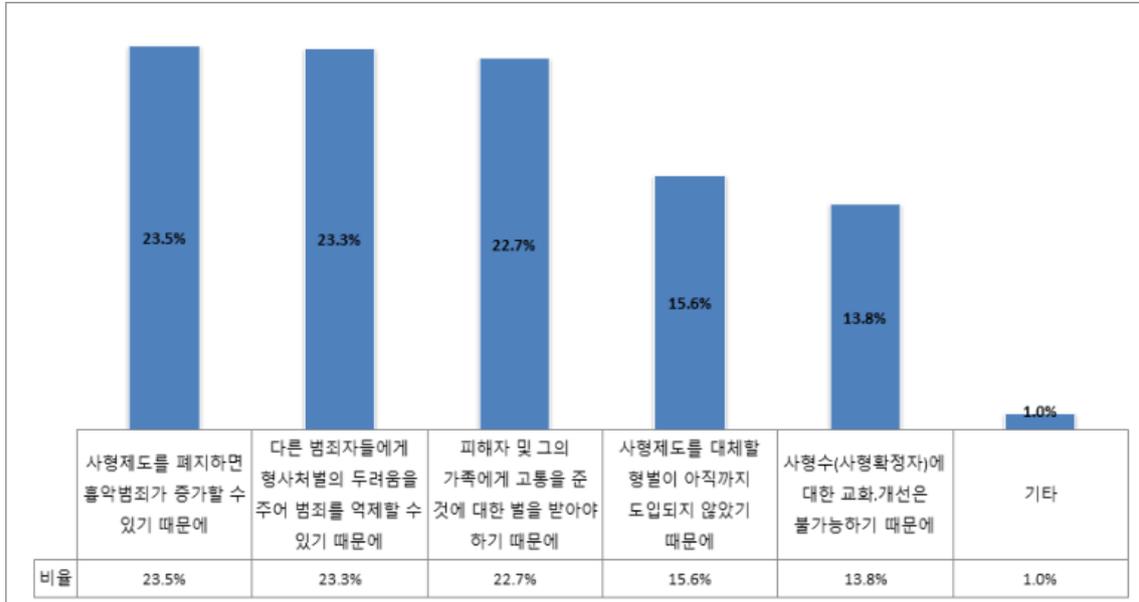
그림 Ⅲ-4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 그리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23.5%와 23.3%, 22.7%로 상대

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15.6%),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5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일반국민)



4. 가족 중 사형수 및 사형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으로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과 가족 중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일반국민들은 자신의 가족 중 사형수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27.9%로 조사되었고, 또한 가족 중 사형수에 의해 피해를 겪은 경우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20.2%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또는 향후 폐지(15.9%)에 비하여 각각 가족이 관계된 가정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6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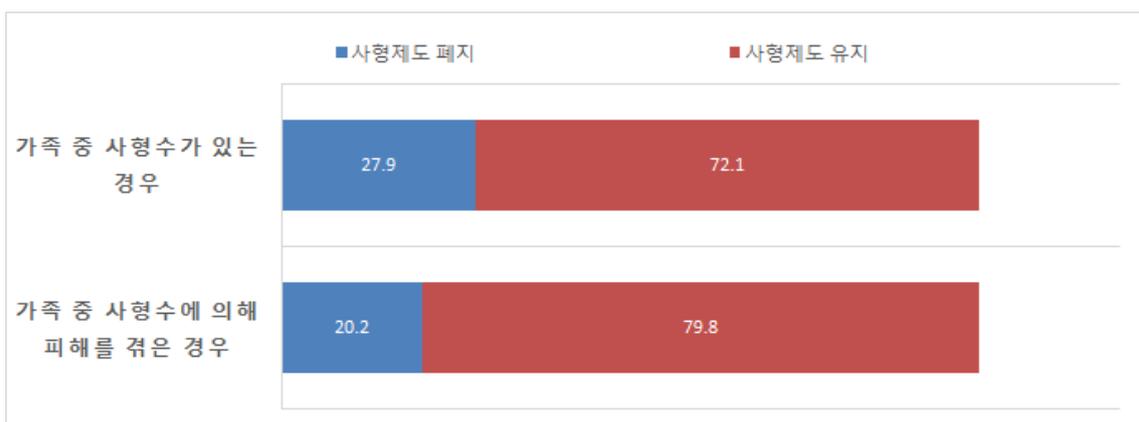


표 Ⅲ-11 응답자 특성별 가족 중 사형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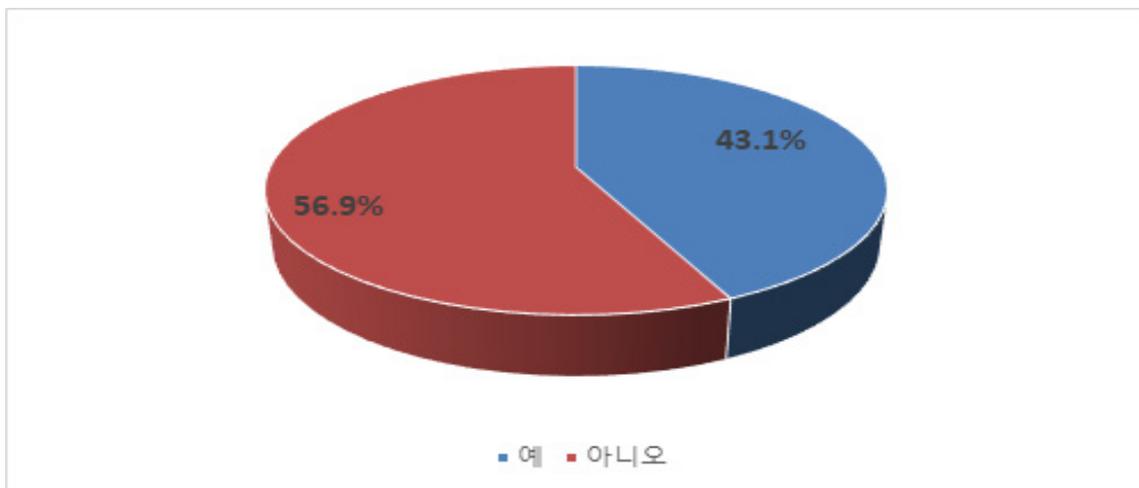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가족중사형수가 있는경우		가족중살인범죄 피해를 겪은경우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 유지	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 유지
전체		1,000	27.9%	72.1%	20.2%	79.8%
성별	남성	507	24.5%	75.5%	17.9%	82.1%
	여성	493	31.4%	68.6%	22.5%	77.5%
연령별	20대	184	24.5%	75.5%	15.2%	84.8%
	30대	197	21.3%	78.7%	14.2%	85.8%
	40대	230	33.5%	66.5%	23.5%	76.5%
	50대	231	29.4%	70.6%	24.2%	75.8%
	60대이상	158	29.7%	70.3%	22.8%	77.2%
종교	기독교	215	32.1%	67.9%	21.9%	78.1%
	불교	156	27.6%	72.4%	23.7%	76.3%
	천주교	87	29.9%	70.1%	18.4%	81.6%
	무교/기타	542	26.0%	74.0%	18.8%	81.2%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7.5%	72.5%	18.2%	81.8%
	전문대학졸업	180	22.2%	77.8%	16.7%	83.3%
	대학교졸업	461	28.9%	71.1%	21.5%	78.5%
	대학원재학이상	68	38.2%	61.8%	29.4%	70.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7.8%	72.2%	22.9%	77.1%
	200~400만원미만	358	27.1%	72.9%	20.4%	79.6%
	400~500만원미만	209	25.4%	74.6%	18.2%	81.8%
	500만원이상	289	30.8%	69.2%	20.1%	79.9%

5.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와 피해자 가족의 극복방법

만약 가족이 사형수(사형확정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이 사라지는가'라는 질문에 56.9%가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라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 43.1%로 사형확정자를 사형함으로써 감정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감정완화가 된다는 견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7 사형집행을 통한 감정완화(일반국민)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차이는 크게 상이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로는 남성(47.3%)이 여성(38.7%)에 비하여 감정완화가 된다는 견해가 더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와 무교/기타가 각각 40.8%와 4.9%로 감정완화가 된다고 응답하여 불교(37.2%)와 천주교(35.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도 고졸 이하/기타와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졸업의 경우 40% 이상이 사형집행을 통하여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이 사라진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여 대학원재학 이상의 경우 32.4%가 감정완화가 된다고 응답하여 다른 학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12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을 통한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 완화(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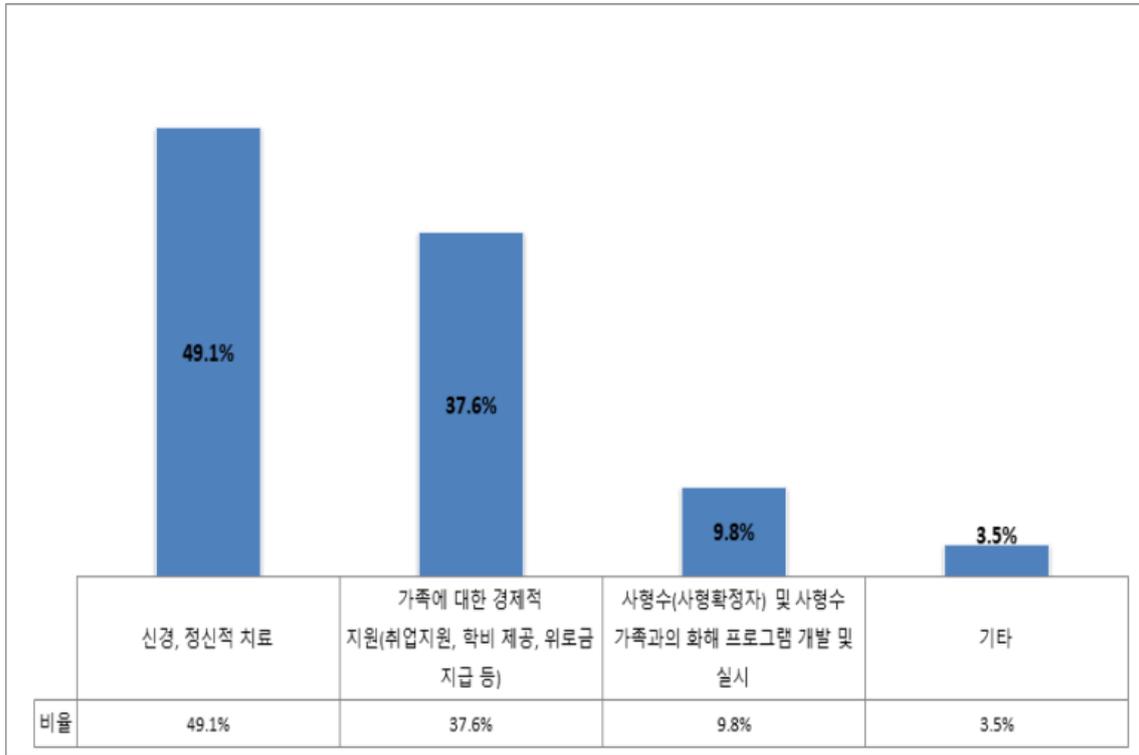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분노, 증오, 슬픔 등이 사라진다	분노, 증오, 슬픔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체		1,000	43.1%	56.9%
성별	남성	507	47.3%	52.7%
	여성	493	38.7%	61.3%
연령별	20대	184	40.2%	59.8%
	30대	197	44.7%	55.3%
	40대	230	40.9%	59.1%
	50대	231	45.5%	54.5%
	60대이상	158	44.3%	55.7%
종교	기독교	215	40.9%	59.1%
	불교	156	37.2%	62.8%
	천주교	87	35.6%	64.4%
	무교/기타	542	46.9%	53.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41.6%	58.4%
	전문대학졸업	180	42.2%	57.8%
	대학교졸업	461	46.0%	54.0%
	대학원재학이상	68	32.4%	67.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41.0%	59.0%
	200~400만원미만	358	43.3%	56.7%
	400~500만원미만	209	44.5%	55.5%
	500만원이상	289	42.9%	57.1%

6.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구제 방법으로는 신경·정신적인 치료가 4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취업지원, 학비 제공, 위로금 지급 등) 37.6%, 사형수 및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이 9.8%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형수에 대한 생명을 피해자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최장기간 동안의 유기징역을 보장, 사형수가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 사형수의 사과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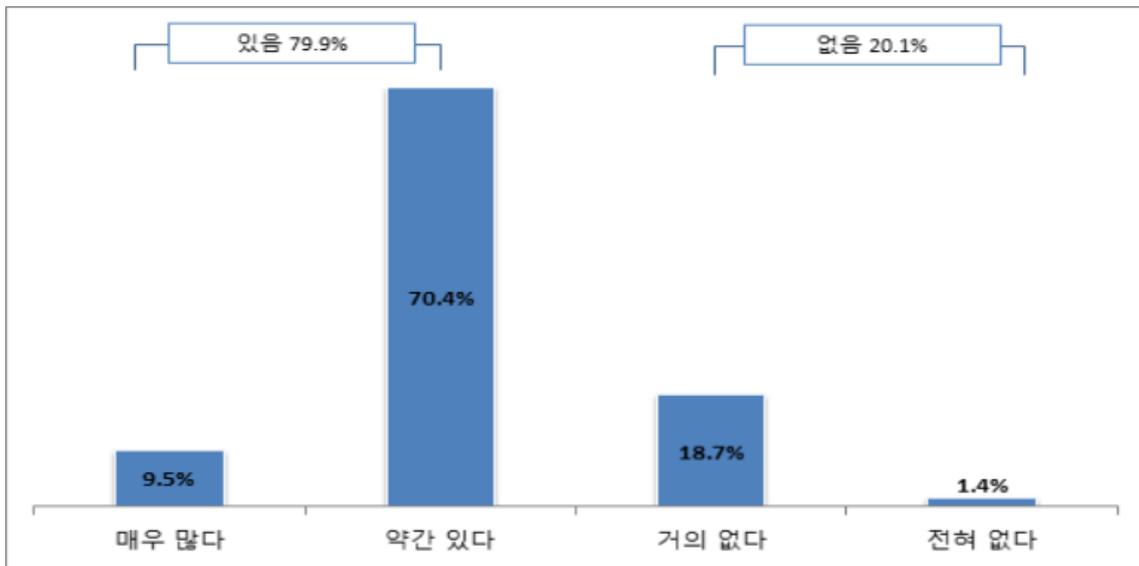
그림 Ⅲ-8 피해자 가족이 피해의 아픔을 극할 수 있는 방법(일반국민)



7.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잘못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9.9%(매우 많다 9.5%, 약간 있다 70.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9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의 평가(일반국민)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이러한 의견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기타와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기타에서 상대적으로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응답자 특성별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4점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	9.5%	70.4%	18.7%	1.4%	2.12	.569
성별	남성	507	9.5%	68.0%	20.9%	1.6%	2.15	.588
	여성	493	9.5%	72.8%	16.4%	1.2%	2.09	.548
연령별	20대	184	13.6%	69.0%	16.8%	.5%	2.04	.571
	30대	197	8.1%	70.1%	20.3%	1.5%	2.15	.569
	40대	230	9.1%	72.2%	17.0%	1.7%	2.11	.565
	50대	231	8.7%	70.6%	19.0%	1.7%	2.14	.573
	60대이상	158	8.2%	69.6%	20.9%	1.3%	2.15	.566
종교	기독교	215	9.8%	71.2%	16.3%	2.8%	2.12	.599
	불교	156	7.1%	76.3%	14.7%	1.9%	2.12	.532
	천주교	87	11.5%	63.2%	25.3%	0.0%	2.14	.594
	무교/기타	542	9.8%	69.6%	19.7%	.9%	2.12	.565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9.3%	73.2%	15.5%	2.1%	2.10	.566
	전문대학졸업	180	13.9%	64.4%	20.0%	1.7%	2.09	.632
	대학교졸업	461	8.7%	70.7%	19.7%	.9%	2.13	.551
	대학원재학이상	68	4.4%	72.1%	22.1%	1.5%	2.21	.53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1.1%	70.1%	16.0%	2.8%	2.10	.611
	200~400만원미만	358	8.9%	73.7%	15.9%	1.4%	2.10	.544
	400~500만원미만	209	9.6%	67.0%	23.0%	.5%	2.14	.570
	500만원이상	289	9.3%	68.9%	20.4%	1.4%	2.14	.579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경우는 53.9%로 나타났으며, 44.4%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50대(60.4%)와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64.7%)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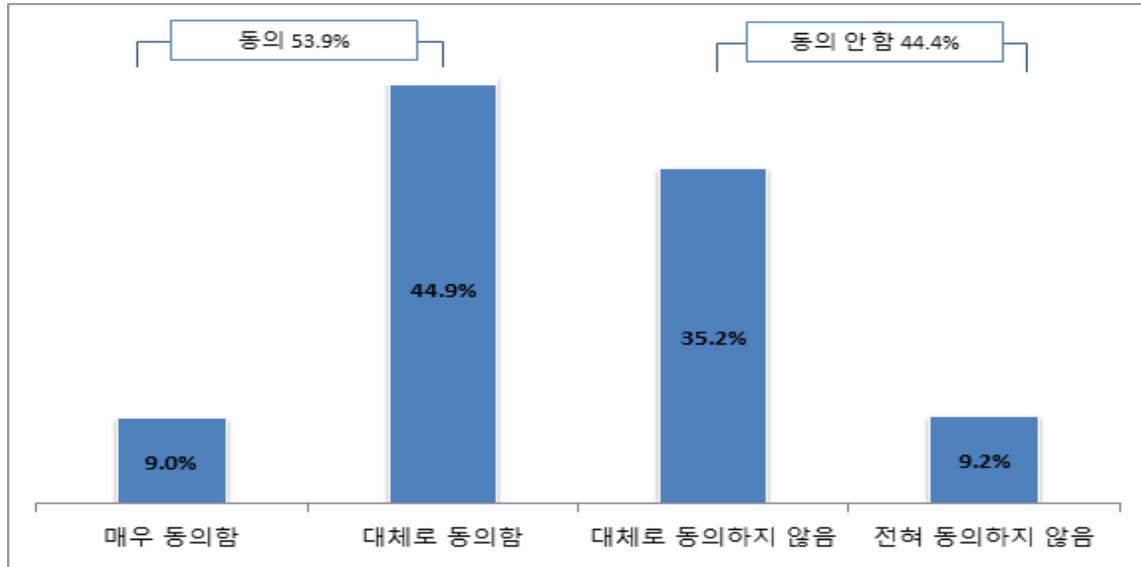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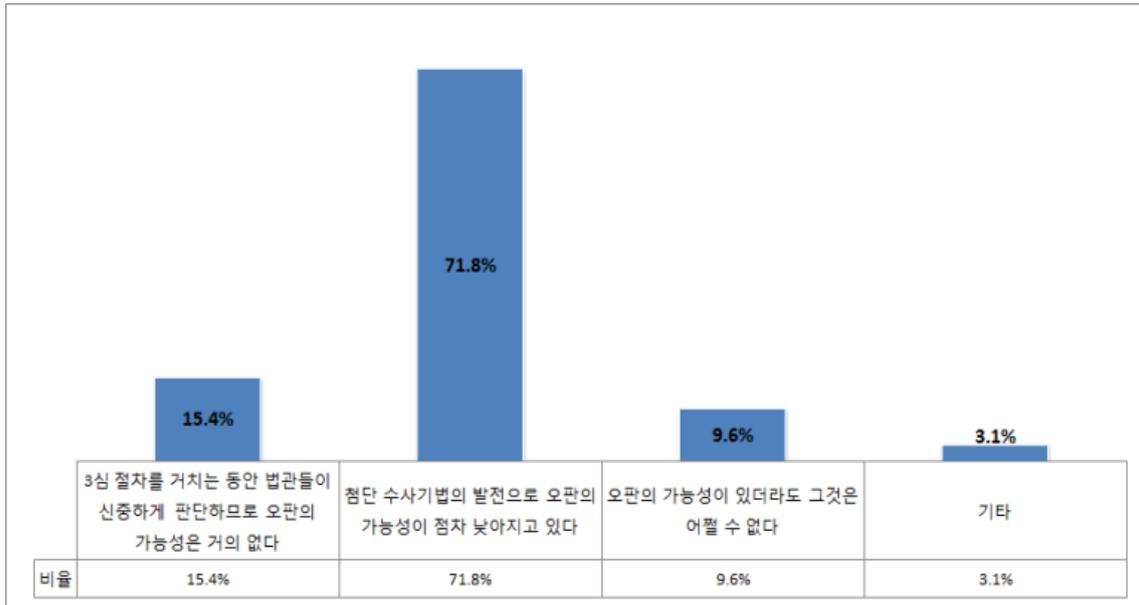
표 Ⅲ-14 응답자 특성별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체		1,000	9.0%	44.9%	35.2%	9.2%	1.7%	53.9%	44.4%
성별	남성	507	8.9%	43.0%	36.5%	10.3%	1.4%	51.9%	46.7%
	여성	493	9.1%	46.9%	33.9%	8.1%	2.0%	56.0%	42.0%
연령별	20대	184	7.6%	45.7%	35.9%	8.2%	2.7%	53.3%	44.0%
	30대	197	3.0%	42.6%	40.6%	12.2%	1.5%	45.7%	52.8%
	40대	230	12.6%	47.8%	30.4%	7.8%	1.3%	60.4%	38.3%
	50대	231	11.3%	42.9%	37.2%	8.7%	0.0%	54.1%	45.9%
	60대이상	158	9.5%	45.6%	31.6%	9.5%	3.8%	55.1%	41.1%
종교	기독교	215	11.6%	44.7%	35.8%	7.0%	0.9%	56.3%	42.8%
	불교	156	7.1%	48.1%	37.2%	7.1%	0.6%	55.1%	44.2%
	천주교	87	9.2%	37.9%	42.5%	8.0%	2.3%	47.1%	50.6%
	무교/기타	542	8.5%	45.2%	33.2%	10.9%	2.2%	53.7%	44.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8.2%	47.4%	32.0%	10.0%	2.4%	55.7%	41.9%
	전문대학졸업	180	11.7%	42.2%	37.8%	5.6%	2.8%	53.9%	43.3%
	대학교졸업	461	8.0%	43.2%	37.7%	10.0%	1.1%	51.2%	47.7%
	대학원재학이상	68	11.8%	52.9%	25.0%	10.3%	0.0%	64.7%	35.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2.5%	41.7%	33.3%	10.4%	2.1%	54.2%	43.8%
	200~400만원미만	358	8.1%	45.8%	35.2%	10.1%	0.8%	53.9%	45.3%
	400~500만원미만	209	7.7%	45.9%	36.8%	6.7%	2.9%	53.6%	43.5%
	500만원이상	289	9.3%	44.6%	34.9%	9.3%	1.7%	54.0%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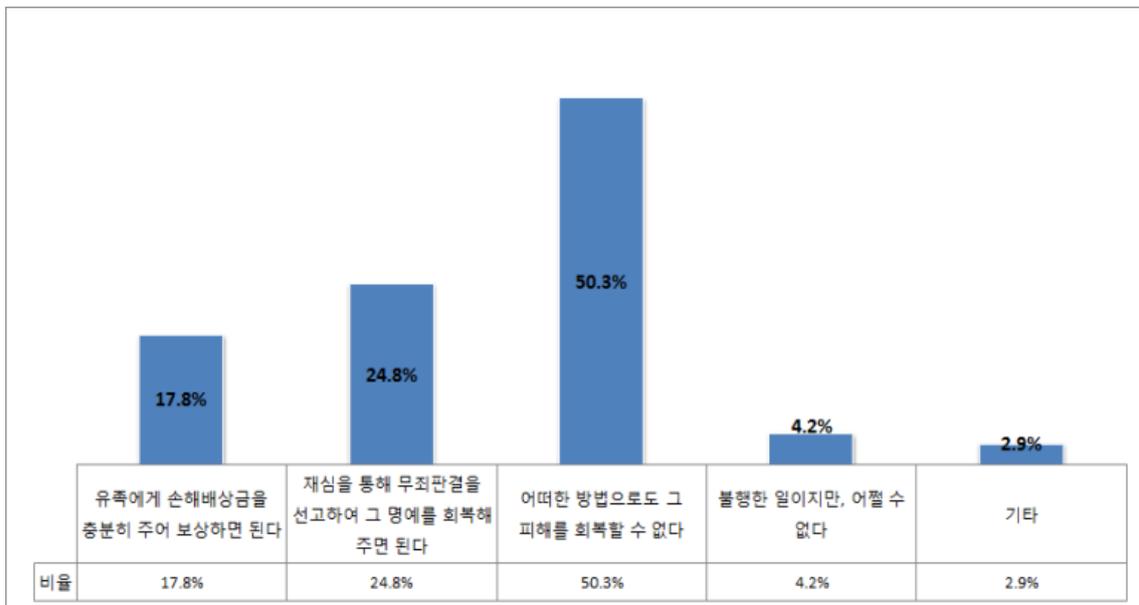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71.8%로 가장 높았고,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15.4%)’,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9.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일반국민)



아울러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50.4%로 가장 높았으며,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명예를 회복해 주면 된다(24.8%)’,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주어 보상하면 된다(17.8)’,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해보상 인식(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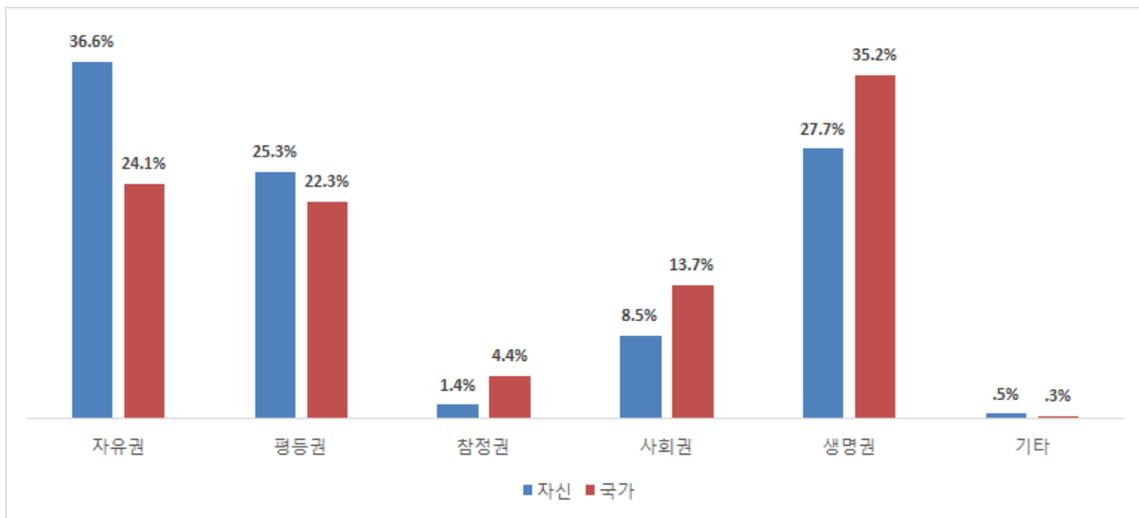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권과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해야되는 기본권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이 36.6%로 가장 높았고, 생명권(27.7%), 평등권(25.3%), 사회권(8.5%), 참정권(1.4%)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우선시 해야되는 기본권은 생명권이 35.2%로 가장 높았고, 자유권(24.1%), 평등권(22.3%), 사회권(13.7%), 참정권(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기타의견으로 모든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Ⅲ-13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에 대한 의견(일반국민)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생명권이라고 응답한 계층으로는 성별로는 여성(32.0%)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1.6%)이, 종교별로는 천주교(36.8%)가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생명권 존중에 대한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연령이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생명권을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기본권이 생명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응답자 특성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전체		1,000	36.6%	25.3%	1.4%	8.5%	27.7%	0.5%
성별	남성	507	42.0%	23.5%	1.8%	9.1%	23.5%	0.2%
	여성	493	31.0%	27.2%	1.0%	7.9%	32.0%	0.8%
연령별	20대	184	39.1%	29.3%	3.3%	9.2%	18.5%	0.5%
	30대	197	35.5%	27.4%	1.0%	12.2%	23.9%	0.0%
	40대	230	40.9%	20.4%	.4%	5.7%	31.7%	0.9%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50대	231	36.4%	23.8%	2.2%	5.6%	31.6%	0.4%
	60대이상	158	29.1%	27.2%	.0%	11.4%	31.6%	0.6%
종교	기독교	215	34.9%	25.1%	1.4%	8.8%	29.3%	0.5%
	불교	156	34.6%	26.9%	2.6%	5.8%	30.1%	0.0%
	천주교	87	29.9%	21.8%	1.1%	9.2%	36.8%	1.1%
	무교/기타	542	38.9%	25.5%	1.1%	9.0%	24.9%	0.6%
	고졸이하/기타	291	37.8%	25.4%	1.4%	7.2%	27.5%	0.7%
학력	전문대학졸업	180	37.8%	23.9%	1.1%	13.3%	23.9%	0.0%
	대학교졸업	461	35.4%	26.7%	1.5%	7.4%	28.6%	0.4%
	대학원재학이상	68	36.8%	19.1%	1.5%	8.8%	32.4%	1.5%
	200만원미만/기타	144	45.8%	21.5%	1.4%	11.1%	19.4%	0.7%
월평균 가구소득	200~400만원미만	358	35.2%	26.8%	2.0%	7.8%	27.4%	0.8%
	400~500만원미만	209	36.8%	22.5%	1.0%	9.6%	30.1%	0.0%
	500만원이상	289	33.6%	27.3%	1.0%	7.3%	30.4%	0.3%

표 Ⅲ-16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전체		1,000	24.1%	22.3%	4.4%	13.7%	35.2%	0.3%
성별	남성	507	28.4%	21.3%	4.5%	13.0%	32.7%	0.0%
	여성	493	19.7%	23.3%	4.3%	14.4%	37.7%	0.6%
연령별	20대	184	27.2%	22.8%	7.1%	16.8%	26.1%	0.0%
	30대	197	21.8%	21.3%	5.1%	20.8%	30.5%	0.5%
	40대	230	22.2%	17.4%	1.7%	10.4%	47.8%	0.4%
	50대	231	26.8%	24.2%	4.3%	10.0%	34.2%	0.4%
	60대이상	158	22.2%	27.2%	4.4%	11.4%	34.8%	0.0%
종교	기독교	215	20.9%	20.5%	3.7%	15.8%	39.1%	0.0%
	불교	156	23.7%	28.2%	3.8%	10.3%	34.0%	0.0%
	천주교	87	23.0%	25.3%	1.1%	13.8%	35.6%	1.1%
	무교/기타	542	25.6%	20.8%	5.4%	13.8%	33.9%	0.4%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2.7%	25.4%	5.8%	15.5%	30.6%	0.0%
	전문대학졸업	180	28.9%	22.8%	3.9%	15.0%	28.9%	0.6%
	대학교졸업	461	23.9%	20.4%	3.9%	12.6%	38.8%	0.4%
	대학원재학이상	68	19.1%	20.6%	2.9%	10.3%	47.1%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3.6%	23.6%	4.2%	16.0%	31.9%	0.7%
	200~400만원미만	358	24.9%	18.2%	5.3%	12.0%	39.4%	0.3%
	400~500만원미만	209	23.0%	22.0%	4.3%	15.3%	35.4%	0.0%
	500만원이상	289	24.2%	27.0%	3.5%	13.5%	31.5%	0.3%

사형제도 인지여부와 인지경로, 오판가능성 인지여부의 경우 사형제도의 인지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자유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형제도의 ‘당장 폐지’ 또는 ‘향후 폐지’하지는 견해를 보이는 집단들은 각각 40.9%와 36.5%로 생명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기본권이 생명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형제도의 인지 등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사형제도 인식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전체		1,000	36.6%	25.3%	1.4%	8.5%	27.7%	0.5%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있음	679	37.6%	24.0%	1.8%	9.0%	27.2%	0.4%
	모름	321	34.6%	28.0%	.6%	7.5%	28.7%	0.6%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38.0%	22.9%	1.3%	9.1%	28.6%	0.2%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35.3%	29.4%	4.2%	8.4%	21.0%	1.7%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36.2%	25.3%	1.5%	7.9%	28.7%	0.5%
	없음	201	38.3%	25.4%	1.0%	10.9%	23.9%	0.5%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36.4%	13.6%	2.3%	6.8%	40.9%	0.0%
	향후 폐지	159	34.0%	23.9%	1.3%	4.4%	36.5%	0.0%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38.1%	25.1%	1.2%	10.4%	24.6%	0.7%
	유지·강화	199	34.2%	29.6%	2.0%	6.5%	27.1%	0.5%

표 Ⅲ-18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기본권(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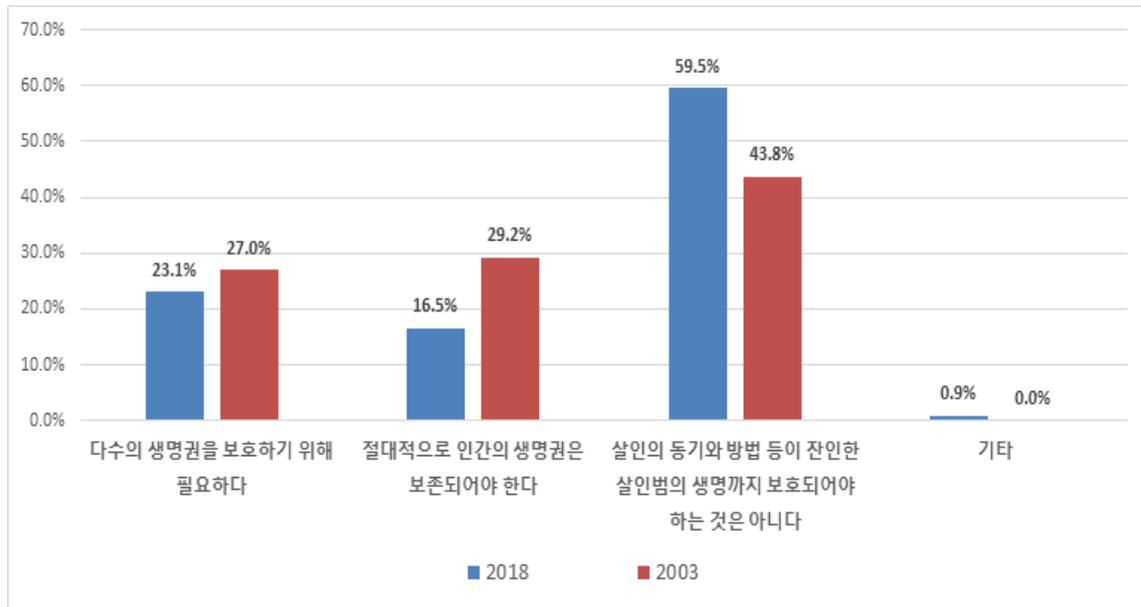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전체		1000	24.1%	22.3%	4.4%	13.7%	35.2%	0.3%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있음	679	24.7%	21.8%	4.9%	13.8%	34.6%	0.1%
	모름	321	22.7%	23.4%	3.4%	13.4%	36.4%	0.6%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24.6%	22.5%	4.1%	13.2%	35.4%	0.2%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5.2%	18.5%	8.4%	16.8%	31.1%	0.0%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4.3%	21.9%	4.3%	13.9%	35.3%	0.4%
	없음	201	23.4%	23.9%	5.0%	12.9%	34.8%	0.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22.7%	18.2%	4.5%	11.4%	43.2%	0.0%
	향후 폐지	159	20.8%	23.3%	4.4%	11.9%	39.6%	0.0%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24.2%	21.7%	4.3%	14.0%	35.3%	0.3%
	유지·강화	199	26.6%	24.1%	4.5%	14.6%	29.6%	0.5%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5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1%,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6.5%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제거에 대한 의견을 2003년과 조사하여 비교하면,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15.7%p로 증가한 반면,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2.7%p와 3.9%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반국민들의 대부분이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범위내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 및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경우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9 응답자 특성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체	1,000	23.1%	16.5%	59.5%	0.9%	
성별	남성	507	25.0%	17.4%	56.6%	1.0%
	여성	493	21.1%	15.6%	62.5%	0.8%
연령별	20대	184	22.8%	15.2%	59.8%	2.2%
	30대	197	21.3%	9.6%	68.0%	1.0%
	40대	230	26.5%	17.8%	54.8%	0.9%
	50대	231	22.9%	19.9%	56.7%	0.4%
	60대이상	158	20.9%	19.6%	59.5%	0.0%
종교	기독교	215	21.4%	22.8%	54.9%	0.9%
	불교	156	25.0%	11.5%	63.5%	0.0%
	천주교	87	21.8%	19.5%	58.6%	0.0%
	무교/기타	542	23.4%	14.9%	60.3%	1.3%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2.0%	18.2%	58.1%	1.7%
	전문대학졸업	180	23.3%	13.3%	62.8%	0.6%

	대학교졸업	461	24.1%	16.5%	58.8%	0.7%
	대학원재학이상	68	20.6%	17.6%	61.8%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8.8%	25.0%	54.2%	2.1%
	200~400만원미만	358	24.0%	15.1%	59.8%	1.1%
	400~500만원미만	209	26.3%	12.4%	60.8%	0.5%
	500만원이상	289	21.8%	17.0%	60.9%	0.3%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비교하면, 인지경로가 교육 및 연구자료 등으로 인지한 경우,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또는 향후 폐지하지는 의견일 때 각각 21.0%, 18.5%, 81.8%, 4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0 사형제도 인식별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체		1000	23.1%	16.5%	59.5%	0.9%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23.6%	18.3%	57.3%	0.9%
	모름	321	22.1%	12.8%	64.2%	0.9%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23.8%	17.7%	58.4%	0.2%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2.7%	21.0%	52.1%	4.2%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2.8%	18.5%	57.6%	1.1%
	없음	201	24.4%	8.5%	67.2%	0.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6.8%	81.8%	11.4%	0.0%
	향후 폐지	159	15.7%	42.1%	40.9%	1.3%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21.7%	7.5%	69.9%	0.8%
	유지·강화	199	36.7%	8.5%	53.8%	1.0%

3. 사형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의 86.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필요함 31.6%, 대체로 필요함 54.5%), 13.2%가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대체로 필요 없음 10.6%, 전혀 필요 없음 2.6%).

그림 Ⅲ-1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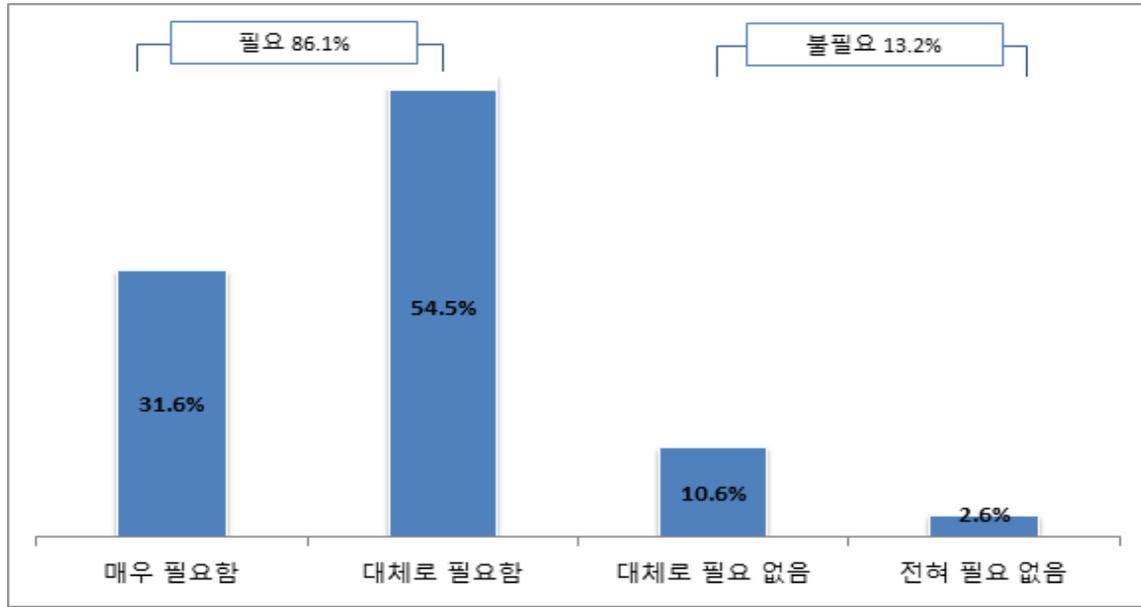


표 Ⅲ-21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필요함	대체로 필요함	대체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기타	필요	불필요
전체		1,000	31.6%	54.5%	10.6%	2.6%	0.7%	86.1%	13.2%
성별	남성	507	33.3%	53.1%	10.5%	2.8%	0.4%	86.4%	13.2%
	여성	493	29.8%	56.0%	10.8%	2.4%	1.0%	85.8%	13.2%
연령별	20대	184	28.8%	62.5%	7.6%	1.1%	0.0%	91.3%	8.7%
	30대	197	34.5%	57.4%	6.1%	1.5%	0.5%	91.9%	7.6%
	40대	230	30.4%	53.9%	10.4%	3.5%	1.7%	84.3%	13.9%
	50대	231	31.2%	50.6%	13.4%	4.3%	0.4%	81.8%	17.7%
	60대이상	158	33.5%	48.1%	15.8%	1.9%	0.6%	81.6%	17.7%
종교	기독교	215	28.4%	54.9%	12.1%	3.7%	0.9%	83.3%	15.8%
	불교	156	30.1%	57.7%	10.9%	1.3%	0.0%	87.8%	12.2%
	천주교	87	28.7%	55.2%	10.3%	3.4%	2.3%	83.9%	13.8%
	무교/기타	542	33.8%	53.3%	10.0%	2.4%	0.6%	87.1%	12.4%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32.0%	56.7%	9.6%	1.0%	0.7%	88.7%	10.7%
	전문대학졸업	180	32.8%	57.2%	4.4%	3.3%	2.2%	90.0%	7.8%
	대학교졸업	461	31.2%	52.9%	12.6%	3.0%	0.2%	84.2%	15.6%
	대학원재학이상	68	29.4%	48.5%	17.6%	4.4%	0.0%	77.9%	22.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9.2%	54.9%	11.8%	3.5%	0.7%	84.0%	15.3%
	200~400만원미만	358	30.4%	54.7%	11.2%	3.1%	0.6%	85.2%	14.2%
	400~500만원미만	209	30.1%	59.3%	8.1%	1.4%	1.0%	89.5%	9.6%
	500만원이상	289	35.3%	50.5%	11.1%	2.4%	0.7%	85.8%	13.5%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에서 22.1%가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계층에서 80% 이상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의 경우 각각 91.3%와 91.9%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에도 90.0%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비교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형제도를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사형제도 인지여부와 인지경로 등과는 관계없이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2 사형제도 인식별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필요함	대체로 필요함	대체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기타	필요	불필요
전체		1000	31.6%	54.5%	10.6%	2.6%	0.7%	86.1%	13.2%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36.4%	49.6%	11.2%	2.5%	0.3%	86.0%	13.7%
	모름	321	21.5%	64.8%	9.3%	2.8%	1.6%	86.3%	12.1%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37.3%	48.9%	10.7%	2.7%	0.4%	86.3%	13.4%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31.9%	52.9%	13.4%	1.7%	0.0%	84.9%	15.1%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7.7%	57.4%	11.4%	2.6%	0.9%	85.1%	14.0%
	없음	201	47.3%	42.8%	7.5%	2.5%	0.0%	90.0%	10.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9.1%	13.6%	38.6%	36.4%	2.3%	22.7%	75.0%
	향후 폐지	159	5.0%	45.3%	43.4%	5.0%	1.3%	50.3%	48.4%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25.9%	70.6%	2.8%	0.0%	0.7%	96.5%	2.8%
	유지·강화	199	74.9%	22.6%	1.5%	1.0%	0.0%	97.5%	2.5%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 인식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사형제도 유지·강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과 같은 직접적인 형사정책적 방안들이 각각 71.0%, 72.8%, 68.0%로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해 효과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6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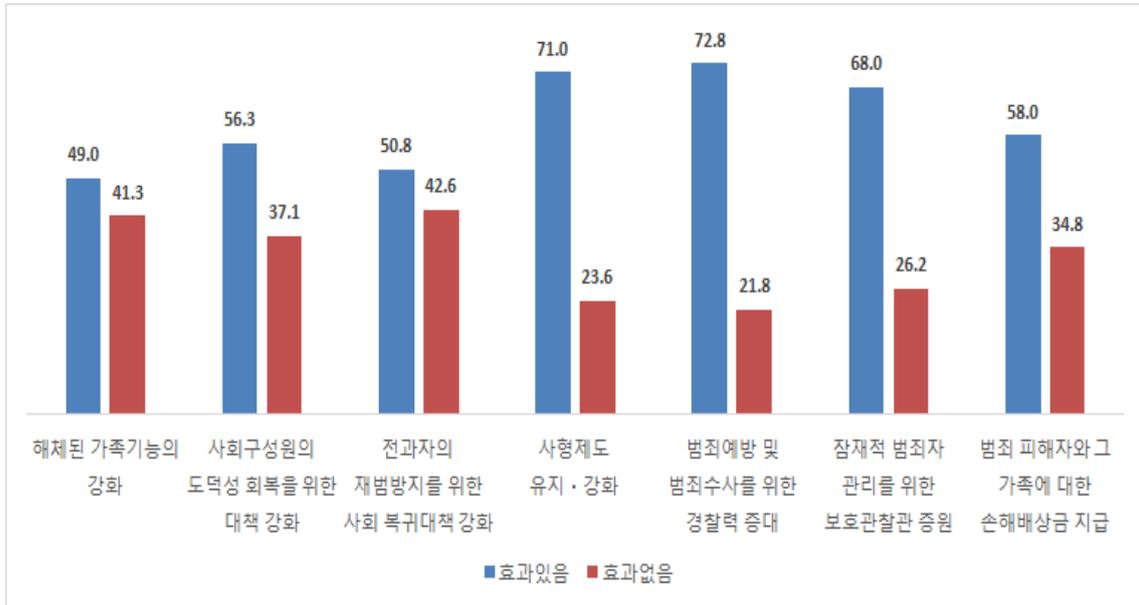


표 Ⅲ-23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성 평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 %)

구분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르겠다	효과 있음	효과 없음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9.0	40.0	32.2	9.1	9.7	49.0	41.3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11.7	44.6	30.5	6.6	6.6	56.3	37.1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11.3	39.5	30.6	12.0	6.6	50.8	42.6
사형제도 유지·강화	22.5	48.5	19.1	4.5	5.4	71.0	23.6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21.1	51.7	18.0	3.8	5.4	72.8	21.8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17.7	50.3	22.5	3.7	5.8	68.0	26.2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15.9	42.1	28.8	6.0	7.2	58.0	34.8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에서 33.8%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없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사형제도가 효과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경우 76.6%로 사형제도가 정책효과성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에도 74.4%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대체로 소득수준이 많을수록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4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단위 : 명 / %)

구분		응답자수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르겠다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000	22.5	48.5	19.1	4.5	5.4	71.0	23.6
성별	남성	507	25.2%	47.7%	17.6%	5.3%	4.1%	73.0%	22.9%
	여성	493	19.7%	49.3%	20.7%	3.7%	6.7%	69.0%	24.3%
연령별	20대	184	19.0%	52.2%	16.3%	3.8%	8.7%	71.2%	20.1%
	30대	197	24.4%	52.3%	14.7%	3.0%	5.6%	76.6%	17.8%
	40대	230	21.3%	48.3%	20.0%	5.7%	4.8%	69.6%	25.7%
	50대	231	23.8%	43.7%	24.7%	5.2%	2.6%	67.5%	29.9%
	60대이상	158	24.1%	46.8%	18.4%	4.4%	6.3%	70.9%	22.8%
종교	기독교	215	22.3%	44.2%	23.7%	5.1%	4.7%	66.5%	28.8%
	불교	156	22.4%	53.2%	17.9%	3.8%	2.6%	75.6%	21.8%
	천주교	87	18.4%	54.0%	20.7%	2.3%	4.6%	72.4%	23.0%
	무교/기타	542	23.2%	48.0%	17.3%	4.8%	6.6%	71.2%	22.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2.7%	47.4%	17.9%	4.1%	7.9%	70.1%	22.0%
	전문대학졸업	180	20.0%	54.4%	16.1%	2.8%	6.7%	74.4%	18.9%
	대학교졸업	461	24.5%	46.6%	20.2%	4.8%	3.9%	71.1%	24.9%
	대학원재학이상	68	14.7%	50.0%	25.0%	8.8%	1.5%	64.7%	3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0.1%	39.6%	17.4%	6.9%	16.0%	59.7%	24.3%
	200~400만원미만	358	21.2%	50.0%	19.8%	5.3%	3.6%	71.2%	25.1%
	400~500만원미만	209	24.4%	50.2%	17.2%	2.9%	5.3%	74.6%	20.1%
	500만원이상	289	23.9%	49.8%	20.4%	3.5%	2.4%	73.7%	23.9%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비교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형제도를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대체로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는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사형제도 인지여부와 인지경로,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사형제도의 정책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정책효과 인식(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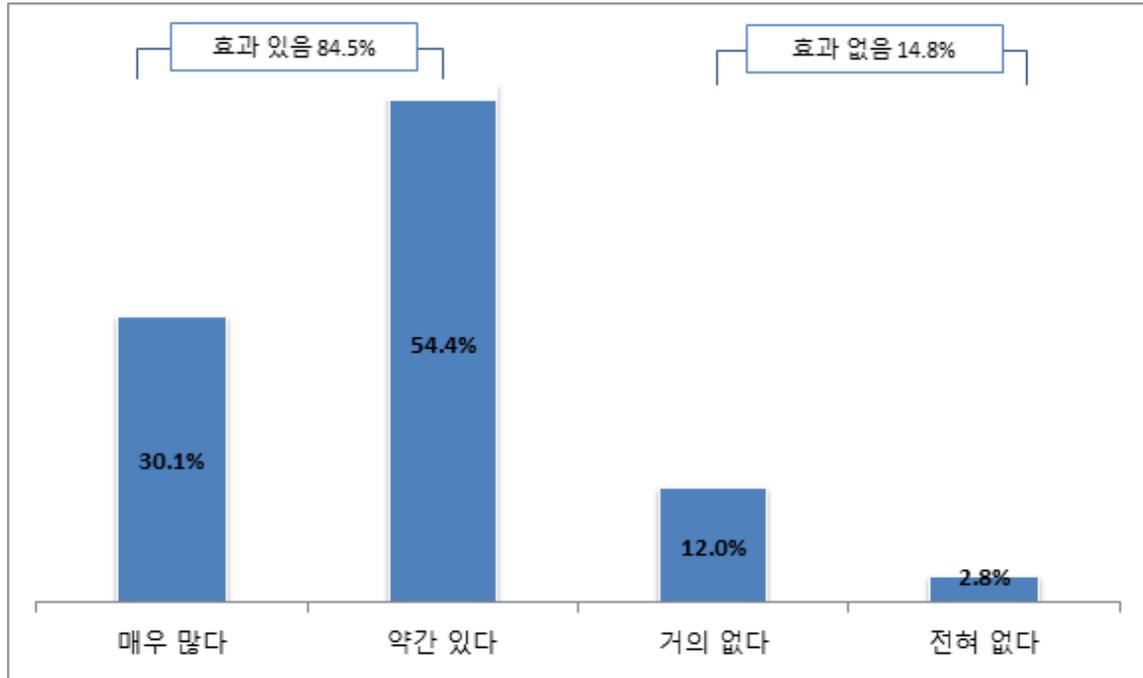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르겠다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000	22.5	48.5	19.1	4.5	5.4	71.0	23.6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26.2%	46.8%	19.9%	4.9%	2.2%	73.0%	24.7%
	모름	321	14.6%	52.0%	17.4%	3.7%	12.1%	66.7%	21.2%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26.8%	46.3%	20.0%	4.8%	2.1%	73.0%	24.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3.5%	49.6%	19.3%	5.0%	2.5%	73.1%	24.4%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0.3%	48.7%	20.8%	4.8%	5.5%	69.0%	25.5%
	없음	201	31.3%	47.8%	12.4%	3.5%	5.0%	79.1%	15.9%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11.4%	11.4%	38.6%	27.3%	11.4%	22.7%	65.9%
	향후 폐지	159	3.8%	28.9%	51.6%	7.5%	8.2%	32.7%	59.1%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8.1%	62.0%	12.4%	2.3%	5.2%	80.1%	14.7%
	유지·강화	199	53.3%	31.7%	9.0%	3.5%	2.5%	84.9%	12.6%

나.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사형제도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84.5%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매우 많다 30.1%, 약간 있다 54.4%), 14.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거의 없다 12.0%, 전혀 없다 2.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계층에서 23.5%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계층에서 80% 이상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30대 연령층의 경우 각각 90.4%로,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에도 90.0%로, 소득수준이 400~5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도 90.4%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형제도를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대체로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견해는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사형제도 인지도와 인지경로, 오판가능성 인지도 등과는 관계없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6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르겠다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000	30.1%	54.4%	12.0%	2.8%	0.7%	84.5%	14.8%
성별	남성	507	33.1%	51.5%	11.6%	3.2%	0.6%	84.6%	14.8%
	여성	493	27.0%	57.4%	12.4%	2.4%	0.8%	84.4%	14.8%
연령별	20대	184	27.7%	56.5%	9.8%	3.8%	2.2%	84.2%	13.6%
	30대	197	32.5%	57.9%	7.6%	2.0%	0.0%	90.4%	9.6%
	40대	230	26.5%	57.4%	12.6%	2.2%	1.3%	83.9%	14.8%
	50대	231	32.9%	48.5%	15.6%	3.0%	0.0%	81.4%	18.6%
	60대이상	158	31.0%	51.9%	13.9%	3.2%	0.0%	82.9%	17.1%
종교	기독교	215	29.8%	52.6%	12.6%	4.2%	0.9%	82.3%	16.7%
	불교	156	28.8%	59.6%	9.6%	1.9%	0.0%	88.5%	11.5%
	천주교	87	25.3%	56.3%	12.6%	5.7%	0.0%	81.6%	18.4%
	무교/기타	542	31.4%	53.3%	12.4%	2.0%	0.9%	84.7%	14.4%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30.6%	54.6%	11.3%	2.1%	1.4%	85.2%	13.4%
	전문대학졸업	180	32.2%	57.8%	6.7%	2.2%	1.1%	90.0%	8.9%
	대학교졸업	461	29.5%	53.6%	13.7%	3.0%	0.2%	83.1%	16.7%
	대학원재학이상	68	26.5%	50.0%	17.6%	5.9%	0.0%	76.5%	2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6.4%	54.2%	13.2%	4.9%	1.4%	80.6%	18.1%
	200~400만원미만	358	29.1%	52.8%	13.7%	3.9%	0.6%	81.8%	17.6%
	400~500만원미만	209	31.6%	58.9%	7.7%	1.0%	1.0%	90.4%	8.6%
	500만원이상	289	32.2%	53.3%	12.5%	1.7%	0.3%	85.5%	14.2%

표 Ⅲ-2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르겠다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체		1000	30.1%	54.4%	12.0%	2.8%	0.7%	84.5%	14.8%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33.4%	51.3%	12.1%	2.8%	0.4%	84.7%	14.9%
	모름	321	23.1%	61.1%	11.8%	2.8%	1.2%	84.1%	14.6%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33.8%	51.3%	12.7%	2.1%	0.2%	85.0%	14.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31.9%	51.3%	9.2%	5.9%	1.7%	83.2%	15.1%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7.3%	56.3%	12.8%	2.8%	0.9%	83.6%	15.5%
	없음	201	41.3%	46.8%	9.0%	3.0%	0.0%	88.1%	11.9%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11.4%	20.5%	36.4%	31.8%	0.0%	31.8%	68.2%
	향후 폐지	159	8.2%	49.1%	37.7%	5.0%	0.0%	57.2%	42.8%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25.1%	67.1%	6.4%	0.5%	1.0%	92.1%	6.9%
	유지·강화	199	66.8%	28.1%	3.0%	1.5%	0.5%	95.0%	4.5%

다.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보주의는 79.4%가, 일반예방은 82.6%가, 특별예방은 67.5%가 형벌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볼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20대의 경우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응보 22.3%, 일반예방 21.0%, 특별예방 35.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사형제도의 인지여부, 인지경로,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형제도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8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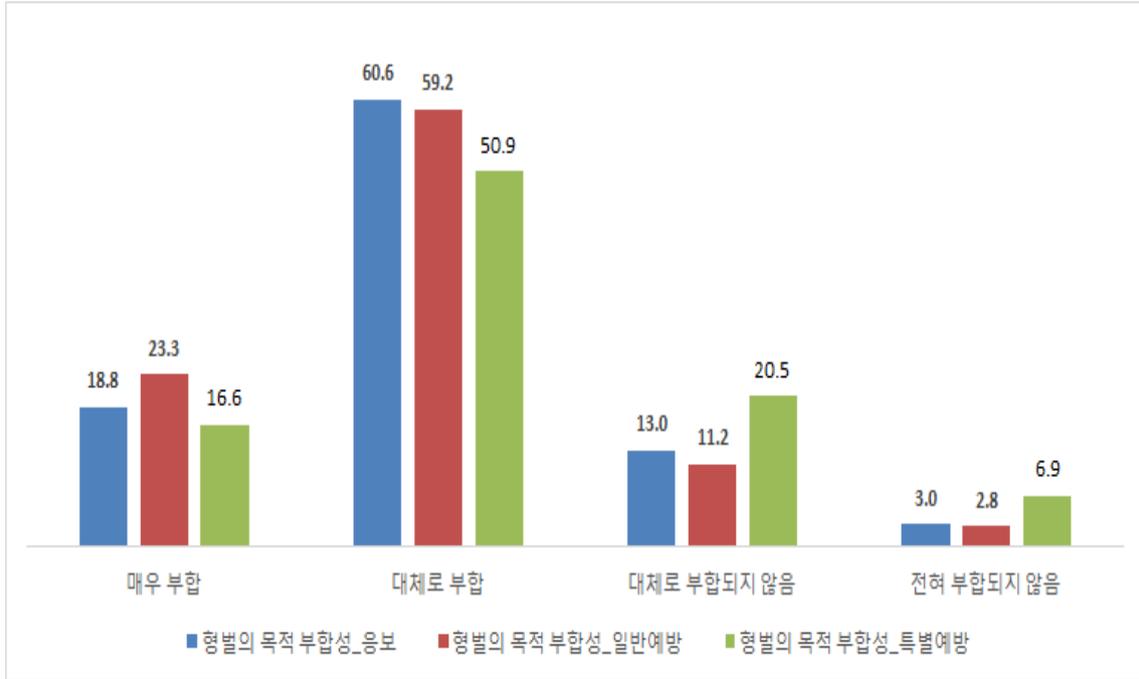


표 Ⅲ-2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응보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18.8%	60.6%	13.0%	3.0%	4.5%	79.4%	16.1%
성별	남성	507	24.1%	57.6%	12.2%	2.7%	3.5%	81.6%	14.9%
	여성	493	13.5%	63.7%	14.0%	3.3%	5.6%	77.2%	17.3%
연령별	20대	184	17.8%	50.3%	20.4%	1.9%	9.6%	68.2%	22.3%
	30대	197	18.5%	60.7%	12.4%	5.1%	3.4%	79.2%	17.4%
	40대	230	19.9%	68.1%	8.4%	1.2%	2.4%	88.0%	9.6%
	50대	231	18.4%	60.9%	13.8%	3.4%	3.4%	79.3%	17.2%
	60대이상	158	19.7%	63.1%	9.8%	3.3%	4.1%	82.8%	13.1%
종교	기독교	215	21.2%	58.2%	9.7%	4.2%	6.7%	79.4%	13.9%
	불교	156	11.3%	70.2%	12.1%	1.6%	4.8%	81.5%	13.7%
	천주교	87	21.5%	61.5%	12.3%	3.1%	1.5%	83.1%	15.4%
	무교/기타	542	19.6%	58.7%	14.7%	2.9%	4.1%	78.3%	17.6%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19.2%	54.4%	16.3%	3.3%	6.7%	73.6%	19.7%
	전문대학졸업	180	11.4%	67.7%	12.0%	3.2%	5.7%	79.1%	15.2%
	대학교졸업	461	22.5%	60.7%	11.1%	2.8%	2.8%	83.2%	14.0%
	대학원재학이상	68	14.3%	67.3%	14.3%	2.0%	2.0%	81.6%	16.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7.5%	58.8%	14.0%	3.5%	6.1%	76.3%	17.5%
	200~400만원미만	358	18.9%	60.0%	13.0%	2.8%	5.3%	78.9%	15.8%
	400~500만원미만	209	18.6%	63.4%	10.5%	2.9%	4.7%	82.0%	13.4%
	500만원이상	289	19.5%	60.2%	14.6%	3.1%	2.7%	79.6%	17.7%

표 Ⅲ-2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인식(응보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18.8%	60.6%	13.0%	3.0%	4.5%	79.4%	16.1%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22.1%	58.7%	13.6%	2.6%	2.9%	80.8%	16.2%
	모름	321	11.8%	64.6%	11.8%	3.9%	7.9%	76.4%	15.7%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21.8%	59.8%	12.9%	2.7%	2.9%	81.6%	15.6%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3.7%	53.8%	17.2%	2.2%	3.2%	77.4%	19.4%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16.2%	61.5%	14.3%	2.9%	5.1%	77.7%	17.2%
	없음	201	28.2%	57.5%	8.6%	3.4%	2.3%	85.6%	12.1%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2.5%	66.7%	13.5%	2.8%	4.3%	79.3%	16.4%
	유지·강화	199	37.7%	42.2%	11.6%	3.5%	5.0%	79.9%	15.1%

표 Ⅲ-3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23.3%	59.2%	11.2%	2.8%	3.5%	82.6%	13.9%
성별	남성	507	27.3%	58.3%	9.2%	3.2%	2.0%	85.6%	12.4%
	여성	493	19.3%	60.2%	13.2%	2.3%	5.1%	79.4%	15.5%
연령별	20대	184	21.7%	52.2%	17.2%	3.8%	5.1%	73.9%	21.0%
	30대	197	23.0%	60.1%	9.0%	4.5%	3.4%	83.1%	13.5%
	40대	230	26.5%	60.2%	7.8%	2.4%	3.0%	86.7%	10.2%
	50대	231	21.3%	63.8%	11.5%	1.1%	2.3%	85.1%	12.6%
	60대이상	158	24.6%	59.0%	10.7%	1.6%	4.1%	83.6%	12.3%
종교	기독교	215	23.0%	57.0%	10.3%	3.6%	6.1%	80.0%	13.9%
	불교	156	21.0%	62.9%	10.5%	1.6%	4.0%	83.9%	12.1%
	천주교	87	23.1%	67.7%	3.1%	3.1%	3.1%	90.8%	6.2%
	무교/기타	542	24.2%	57.8%	12.9%	2.7%	2.5%	81.9%	15.6%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0.5%	56.1%	15.5%	2.9%	5.0%	76.6%	18.4%
	전문대학졸업	180	20.3%	58.9%	12.7%	3.8%	4.4%	79.1%	16.5%
	대학교졸업	461	28.2%	59.3%	8.0%	2.0%	2.6%	87.5%	10.0%
	대학원재학이상	68	12.2%	75.5%	8.2%	4.1%	0.0%	87.8%	12.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1.1%	56.1%	14.0%	2.6%	6.1%	77.2%	16.7%
	200~400만원미만	358	22.1%	55.4%	14.4%	3.2%	4.9%	77.5%	17.5%
	400~500만원미만	209	25.0%	62.2%	8.1%	1.7%	2.9%	87.2%	9.9%
	500만원이상	289	24.8%	63.3%	8.0%	3.1%	0.9%	88.1%	11.1%

표 Ⅲ-3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일반예방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23.3%	59.2%	11.2%	2.8%	3.5%	82.6%	13.9%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26.3%	58.7%	9.8%	3.1%	2.0%	85.1%	12.9%
	모름	321	16.9%	60.2%	14.2%	2.0%	6.7%	77.2%	16.1%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27.6%	58.0%	9.6%	2.9%	2.0%	85.6%	12.4%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0.4%	62.4%	10.8%	4.3%	2.2%	82.8%	15.1%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0.1%	61.0%	12.4%	2.9%	3.7%	81.1%	15.2%
	없음	201	35.1%	52.9%	6.9%	2.3%	2.9%	87.9%	9.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8.6%	64.4%	11.5%	2.2%	3.3%	82.9%	13.7%
	유지·강화	199	37.7%	43.7%	10.1%	4.5%	4.0%	81.4%	14.6%

표 Ⅲ-3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_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16.6%	50.9%	20.5%	6.9%	5.1%	67.5%	27.4%
성별	남성	507	19.4%	51.9%	18.9%	6.5%	3.5%	71.2%	25.3%
	여성	493	13.7%	50.0%	22.1%	7.4%	6.9%	63.7%	29.4%
연령별	20대	184	15.9%	42.0%	24.8%	10.2%	7.0%	58.0%	35.0%
	30대	197	19.1%	53.9%	15.7%	8.4%	2.8%	73.0%	24.2%
	40대	230	14.5%	57.2%	19.9%	4.2%	4.2%	71.7%	24.1%
	50대	231	17.8%	47.1%	24.1%	5.2%	5.7%	64.9%	29.3%
	60대이상	158	14.8%	54.9%	17.2%	6.6%	6.6%	69.7%	23.8%
종교	기독교	215	15.8%	48.5%	21.8%	9.1%	4.8%	64.2%	30.9%
	불교	156	16.9%	55.6%	20.2%	2.4%	4.8%	72.6%	22.6%
	천주교	87	20.0%	56.9%	16.9%	1.5%	4.6%	76.9%	18.5%
	무교/기타	542	16.3%	49.7%	20.5%	8.1%	5.4%	65.9%	28.7%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16.3%	42.3%	25.1%	7.5%	8.8%	58.6%	32.6%
	전문대학졸업	180	12.0%	53.2%	20.9%	10.1%	3.8%	65.2%	31.0%
	대학교졸업	461	19.9%	53.0%	17.9%	5.1%	4.0%	72.9%	23.1%
	대학원재학이상	68	8.2%	71.4%	14.3%	6.1%	0.0%	79.6%	2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8.4%	40.4%	21.1%	10.5%	9.6%	58.8%	31.6%
	200~400만원미만	358	15.1%	53.0%	19.6%	6.7%	5.6%	68.1%	26.3%
	400~500만원미만	209	15.7%	54.7%	22.1%	4.1%	3.5%	70.3%	26.2%
	500만원이상	289	18.1%	50.9%	19.9%	7.5%	3.5%	69.0%	27.4%

표 Ⅲ-3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인식(특별예방_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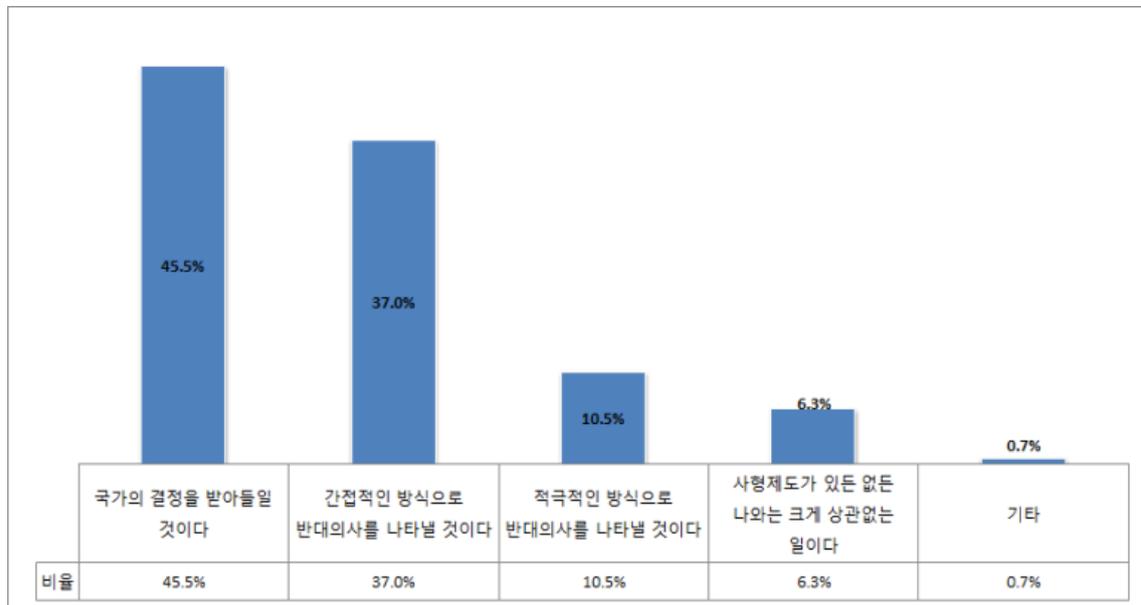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부합	부합하지 않음
전체		1000	16.6%	50.9%	20.5%	6.9%	5.1%	67.5%	27.4%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18.2%	51.7%	20.4%	6.4%	3.1%	70.0%	26.9%
	모름	321	13.0%	49.2%	20.5%	7.9%	9.4%	62.2%	28.3%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17.3%	52.0%	21.1%	6.7%	2.9%	69.3%	27.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2.6%	50.5%	17.2%	5.4%	4.3%	73.1%	22.6%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15.4%	50.9%	21.2%	7.2%	5.3%	66.3%	28.4%
	없음	201	20.7%	51.1%	17.8%	5.7%	4.6%	71.8%	23.6%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2.2%	54.8%	22.4%	5.0%	5.5%	67.1%	27.4%
	유지·강화	199	29.6%	39.2%	14.6%	12.6%	4.0%	68.8%	27.1%

라.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45.5%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37.0%)’,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10.5%)’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9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국가의 결정을 수용하는 비율(46.2%)과 적극적인 반대 비율(12.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60대 이상의 국가결정의 수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하여(각각 48.7%, 51.1%, 50.0%), 20대와 30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3.6%와 12.7%). 또한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 국가의 결정을 수용하는 비율(각각 51.2%와 48.1%)이 높은 반면에 천주교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비율(44.8%)이 높은 것으로 조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사되었다. 또한 학력이 대학원 재학이상 일 때와 소득수준이 200만원미만/기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61.8%와 50.0%, 51.6%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4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기타
전체		1,000	45.5%	37.0%	10.5%	6.3%	0.7%
성별	남성	507	46.2%	35.9%	12.4%	5.3%	0.2%
	여성	493	44.8%	38.1%	8.5%	7.3%	1.2%
연령별	20대	184	39.7%	39.1%	13.6%	6.0%	1.6%
	30대	197	37.1%	42.1%	12.7%	7.6%	0.5%
	40대	230	48.7%	37.8%	8.7%	3.9%	0.9%
	50대	231	51.1%	32.0%	8.7%	8.2%	0.0%
	60대이상	158	50.0%	34.2%	9.5%	5.7%	0.6%
종교	기독교	215	51.2%	31.6%	11.6%	4.7%	0.9%
	불교	156	48.1%	34.6%	9.6%	7.7%	0.0%
	천주교	87	42.5%	44.8%	9.2%	3.4%	0.0%
	무교/기타	542	43.0%	38.6%	10.5%	7.0%	0.9%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42.3%	40.5%	10.3%	5.5%	1.4%
	전문대학졸업	180	41.7%	39.4%	8.3%	9.4%	1.1%
	대학교졸업	461	46.6%	36.0%	11.9%	5.2%	.2%
	대학원재학이상	68	61.8%	22.1%	7.4%	8.8%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50.0%	27.1%	13.2%	7.6%	2.1%
	200~400만원미만	358	43.6%	38.3%	10.3%	7.0%	0.8%
	400~500만원미만	209	37.3%	45.5%	9.6%	7.2%	.5%
	500만원이상	289	51.6%	34.3%	10.0%	4.2%	0.0%

사형제도 인식별로는 비교하면, 인지경로가 언론보도인 경우,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 또는 향후 폐지하지는 의견일 때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응답이 각각 46.3%, 48.3%, 81.8%, 7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지경로가 교육 및 연구자료 등에 의한 경우와 사형제도를 더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의 경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낸다'는 응답이 각각 21.0%와 22.6%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Ⅲ-35 국가의 사형폐지결정에 대한 반응(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기타
전체		1000	45.5%	37.0%	10.5%	6.3%	0.7%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44.9%	38.4%	11.9%	4.3%	0.4%
	모름	321	46.7%	34.0%	7.5%	10.6%	1.2%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46.3%	38.9%	10.0%	4.6%	0.2%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38.7%	36.1%	21.0%	2.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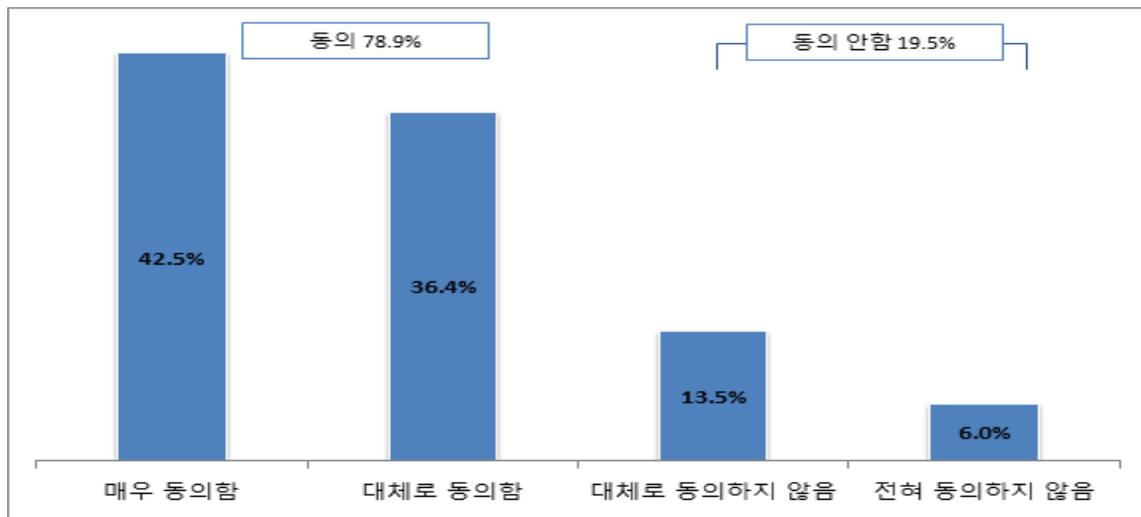
오관기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48.3%	35.8%	8.8%	6.3%	0.9%
	없음	201	34.3%	41.8%	17.4%	6.5%	0.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81.8%	11.4%	2.3%	2.3%	2.3%
	향후 폐지	159	72.3%	10.7%	6.9%	9.4%	0.6%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41.6%	43.0%	8.0%	6.7%	0.7%
	유지·강화	199	27.6%	45.7%	22.6%	3.5%	0.5%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들의 78.9%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42.5%, 대체로 동의 36.4%).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5%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3.5%, 전혀 동의하지 않음 6.0%).

그림 Ⅲ-20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81.9%)이 남성(75.9%)에 비하여 사형제도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82.6%)와 60대 이상(84.2%)에서, 기독교(81.9%)와 불교(84.0%)에서,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기타(81.8%)와 전문대학 졸업(80.6%)이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42.5%	36.4%	13.5%	6.0%	1.6%	78.9%	19.5%
성별	남성	507	41.8%	34.1%	13.6%	8.1%	2.4%	75.9%	21.7%
	여성	493	43.2%	38.7%	13.4%	3.9%	0.8%	81.9%	17.2%
연령별	20대	184	40.8%	31.5%	19.0%	6.0%	2.7%	72.3%	25.0%
	30대	197	45.2%	32.0%	13.7%	7.1%	2.0%	77.2%	20.8%
	40대	230	46.5%	36.1%	10.4%	6.1%	0.9%	82.6%	16.5%
	50대	231	38.5%	39.8%	15.6%	5.6%	0.4%	78.4%	21.2%
	60대이상	158	41.1%	43.0%	8.2%	5.1%	2.5%	84.2%	13.3%
종교	기독교	215	42.3%	39.5%	9.8%	6.5%	1.9%	81.9%	16.3%
	불교	156	46.8%	37.2%	10.9%	5.1%	0.0%	84.0%	16.0%
	천주교	87	39.1%	39.1%	12.6%	6.9%	2.3%	78.2%	19.5%
	무교/기타	542	41.9%	34.5%	15.9%	5.9%	1.8%	76.4%	21.8%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43.3%	38.5%	11.0%	4.8%	2.4%	81.8%	15.8%
	전문대학졸업	180	43.3%	37.2%	13.9%	3.3%	2.2%	80.6%	17.2%
	대학교졸업	461	41.6%	35.1%	14.3%	7.8%	1.1%	76.8%	22.1%
	대학원재학이상	68	42.6%	33.8%	17.6%	5.9%	0.0%	76.5%	2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34.0%	43.1%	16.0%	5.6%	1.4%	77.1%	21.5%
	200~400만원미만	358	45.5%	34.6%	12.3%	5.9%	1.7%	80.2%	18.2%
	400~500만원미만	209	43.5%	34.9%	14.4%	5.3%	1.9%	78.5%	19.6%
	500만원이상	289	42.2%	36.3%	13.1%	6.9%	1.4%	78.5%	20.1%

표 Ⅲ-3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42.5%	36.4%	13.5%	6.0%	1.6%	78.9%	19.5%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42.9%	36.2%	12.5%	6.9%	1.5%	79.1%	19.4%
	모름	321	41.7%	36.8%	15.6%	4.0%	1.9%	78.5%	19.6%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43.2%	36.4%	12.0%	7.1%	1.3%	79.6%	19.1%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41.2%	35.3%	15.1%	5.9%	2.5%	76.5%	21.0%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43.8%	37.4%	12.6%	4.5%	1.6%	81.2%	17.1%
	없음	201	37.3%	32.3%	16.9%	11.9%	1.5%	69.7%	28.9%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43.2%	40.9%	13.6%	2.3%	0.0%	84.1%	15.9%
	향후 폐지	159	38.4%	52.2%	8.2%	0.6%	0.6%	90.6%	8.8%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43.5%	36.0%	14.9%	4.0%	1.7%	79.4%	18.9%
	유지·강화	199	42.7%	24.1%	13.6%	17.1%	2.5%	66.8%	30.7%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85.2%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44.4%, 대체로 동의 40.8%).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3.8%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0.4%, 전혀 동의하지 않음 3.4%).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종교별, 학력별, 월평균 가구소득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1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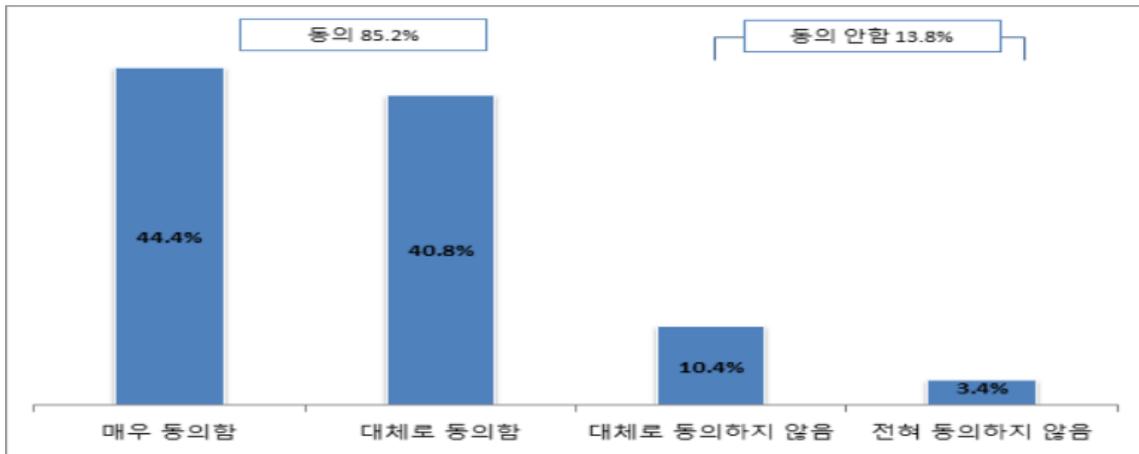


표 Ⅲ-38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44.4%	40.8%	10.4%	3.4%	1.0%	85.2%	13.8%
성별	남성	507	44.8%	41.6%	8.5%	4.3%	0.8%	86.4%	12.8%
	여성	493	44.0%	40.0%	12.4%	2.4%	1.2%	84.0%	14.8%
연령별	20대	184	44.6%	38.6%	10.9%	4.3%	1.6%	83.2%	15.2%
	30대	197	44.7%	43.7%	6.6%	5.1%	0.0%	88.3%	11.7%
	40대	230	46.1%	42.6%	7.4%	2.6%	1.3%	88.7%	10.0%
	50대	231	40.3%	41.6%	16.5%	1.7%	0.0%	81.8%	18.2%
	60대이상	158	47.5%	36.1%	10.1%	3.8%	2.5%	83.5%	13.9%
종교	기독교	215	40.9%	45.6%	9.3%	3.3%	0.9%	86.5%	12.6%
	불교	156	45.5%	40.4%	11.5%	2.6%	0.0%	85.9%	14.1%
	천주교	87	44.8%	40.2%	11.5%	2.3%	1.1%	85.1%	13.8%
	무교/기타	542	45.4%	39.1%	10.3%	3.9%	1.3%	84.5%	14.2%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44.0%	40.9%	10.7%	2.7%	1.7%	84.9%	13.4%
	전문대학졸업	180	47.2%	38.3%	10.0%	2.2%	2.2%	85.6%	12.2%
	대학교졸업	461	43.0%	43.0%	10.2%	3.7%	0.2%	85.9%	13.9%
	대학원재학이상	68	48.5%	32.4%	11.8%	7.4%	0.0%	80.9%	19.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41.0%	42.4%	9.7%	5.6%	1.4%	83.3%	15.3%
	200~400만원미만	358	44.4%	41.1%	9.5%	3.4%	1.7%	85.5%	12.8%
	400~500만원미만	209	45.5%	40.2%	12.9%	1.4%	0.0%	85.6%	14.4%
	500만원이상	289	45.3%	40.1%	10.0%	3.8%	0.7%	85.5%	13.8%

표 Ⅲ-3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_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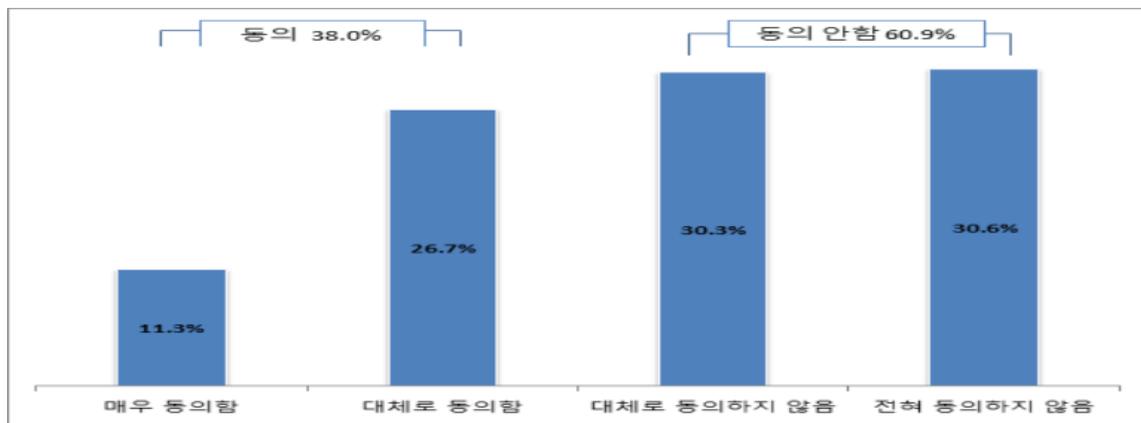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44.4%	40.8%	10.4%	3.4%	1.0%	85.2%	13.8%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43.7%	41.7%	10.0%	4.0%	.6%	85.4%	14.0%
	모름	321	45.8%	38.9%	11.2%	2.2%	1.9%	84.7%	13.4%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44.6%	40.9%	10.5%	3.4%	.5%	85.5%	13.9%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39.5%	45.4%	7.6%	6.7%	.8%	84.9%	14.3%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46.2%	41.2%	8.9%	2.8%	1.0%	87.4%	11.6%
	없음	201	37.3%	39.3%	16.4%	6.0%	1.0%	76.6%	22.4%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59.1%	25.0%	11.4%	2.3%	2.3%	84.1%	13.6%
	향후 폐지	159	34.0%	54.7%	8.2%	2.5%	.6%	88.7%	10.7%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45.0%	41.5%	11.2%	1.5%	.8%	86.5%	12.7%
	유지·강화	199	47.7%	31.2%	9.5%	10.1%	1.5%	78.9%	19.6%

다.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60.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0.3%, 전혀 동의하지 않음 30.6%). 반면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38.0%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 26.7%, 매우 동의 11.3%).

그림 Ⅲ-22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체로 성별, 연령별, 종교별, 학력별, 월평균 가구소득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별로 40대, 50대의 경우 각각 43.9%, 45.0%의 수준에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에도 각각 46.5%와 44.2%로 천주교(33.2%) 및 무교(3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상대적 종신형의 대체형벌화를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1.3%	26.7%	30.3%	30.6%	1.1%	38.0%	60.9%
성별	남성	507	10.3%	28.2%	28.2%	32.1%	1.2%	38.5%	60.4%
	여성	493	12.4%	25.2%	32.5%	29.0%	1.0%	37.5%	61.5%
연령별	20대	184	7.6%	21.2%	31.0%	38.6%	1.6%	28.8%	69.6%
	30대	197	9.1%	20.8%	33.0%	36.5%	0.5%	29.9%	69.5%
	40대	230	13.5%	30.4%	27.8%	27.0%	1.3%	43.9%	54.8%
	50대	231	14.3%	30.7%	29.9%	25.1%	0.0%	45.0%	55.0%
	60대이상	158	10.8%	29.1%	30.4%	27.2%	2.5%	39.9%	57.6%
종교	기독교	215	15.8%	30.7%	28.8%	23.3%	1.4%	46.5%	52.1%
	불교	156	13.5%	30.8%	30.1%	25.6%	0.0%	44.2%	55.8%
	천주교	87	8.0%	24.1%	34.5%	31.0%	2.3%	32.2%	65.5%
	무교/기타	542	9.4%	24.4%	30.3%	34.9%	1.1%	33.8%	65.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13.1%	26.8%	28.2%	30.6%	1.4%	39.9%	58.8%
	전문대학졸업	180	11.7%	23.9%	27.2%	35.0%	2.2%	35.6%	62.2%
	대학교졸업	461	10.6%	27.8%	32.5%	28.4%	0.7%	38.4%	61.0%
	대학원재학이상	68	7.4%	26.5%	32.4%	33.8%	0.0%	33.8%	66.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5.3%	25.0%	32.6%	26.4%	0.7%	40.3%	59.0%
	200~400만원미만	358	9.5%	27.1%	28.5%	33.5%	1.4%	36.6%	62.0%
	400~500만원미만	209	10.5%	26.3%	34.4%	28.7%	0.0%	36.8%	63.2%
	500만원이상	289	12.1%	27.3%	28.4%	30.4%	1.7%	39.4%	58.8%

표 Ⅲ-4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상대적 종신형_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1.3%	26.7%	30.3%	30.6%	1.1%	38.0%	60.9%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10.8%	26.1%	29.6%	32.8%	0.7%	36.8%	62.4%
	모름	321	12.5%	28.0%	31.8%	25.9%	1.9%	40.5%	57.6%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11.4%	25.9%	29.3%	32.5%	0.9%	37.3%	61.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7.6%	26.9%	31.1%	34.5%	0.0%	34.5%	65.5%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11.9%	28.9%	30.8%	27.4%	1.0%	40.8%	58.2%
	없음	201	9.0%	17.9%	28.4%	43.3%	1.5%	26.9%	71.6%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22.7%	36.4%	31.8%	9.1%	0.0%	59.1%	40.9%
	향후 폐지	159	6.3%	47.8%	31.4%	13.8%	0.6%	54.1%	45.3%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0.9%	23.2%	32.1%	32.8%	1.0%	34.1%	64.9%
	유지·강화	199	14.1%	18.1%	23.6%	42.2%	2.0%	32.2%	65.8%

라.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의 55.5%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무기징역형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32.6%, 전혀 동의하지 않음 22.9%). 반면에 동의하고 있다는 의견은 43.9%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12.4%, 대체로 동의 31.5%).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별, 종교별, 학력별에 대하여 다소 차이를 보

제3편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조사결과

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무기징역을 대체형벌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60.9%와 61.9%로 40대(50.4%), 50대(51.5%), 60대 이상(54.4%)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천주교(60.9%)가 기독교(48.8%)와 불교(50.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무기징역형을 사형제도 대체형벌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이상의 경우 60.3%가 다른 최종학력 계층들에 비하여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무기징역형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3 일반국민의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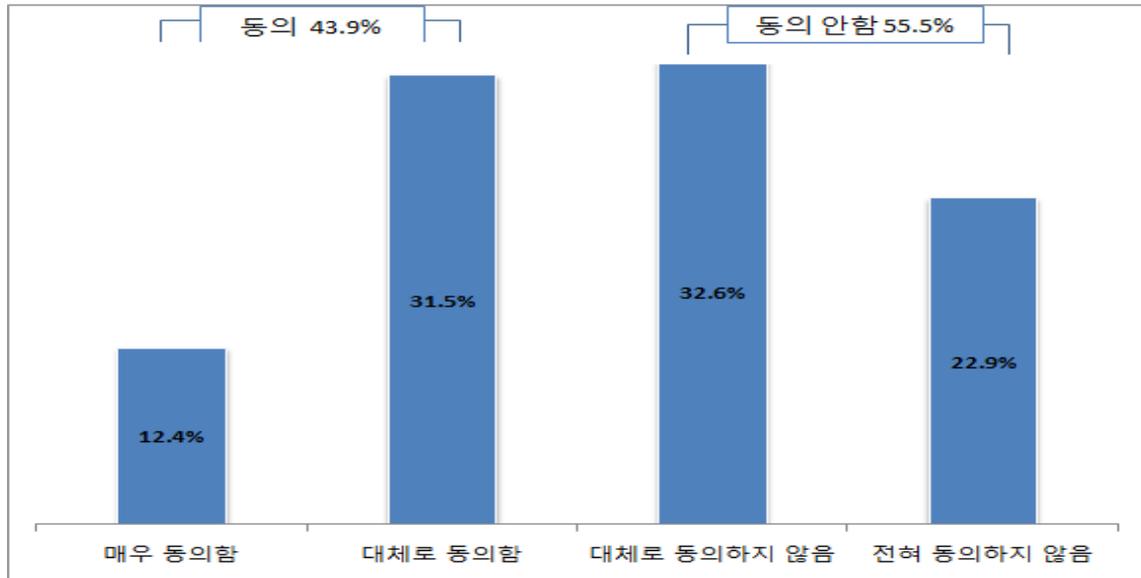


표 Ⅲ-42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2.4%	31.5%	32.6%	22.9%	0.6%	43.9%	55.5%
성별	남성	507	10.3%	31.4%	33.7%	24.1%	0.6%	41.6%	57.8%
	여성	493	14.6%	31.6%	31.4%	21.7%	0.6%	46.2%	53.1%
연령별	20대	184	13.0%	25.5%	37.0%	23.9%	0.5%	38.6%	60.9%
	30대	197	11.7%	26.4%	34.0%	27.9%	0.0%	38.1%	61.9%
	40대	230	13.5%	34.8%	30.0%	20.4%	1.3%	48.3%	50.4%
	50대	231	13.4%	35.1%	31.2%	20.3%	0.0%	48.5%	51.5%
	60대이상	158	9.5%	34.8%	31.6%	22.8%	1.3%	44.3%	54.4%
종교	기독교	215	14.0%	35.8%	29.8%	19.1%	1.4%	49.8%	48.8%
	불교	156	17.9%	32.1%	31.4%	18.6%	0.0%	50.0%	50.0%
	천주교	87	9.2%	29.9%	37.9%	23.0%	0.0%	39.1%	60.9%
	무교/기타	542	10.7%	29.9%	33.2%	25.6%	0.6%	40.6%	58.9%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15.1%	30.6%	31.3%	21.6%	1.4%	45.7%	52.9%
	전문대학졸업	180	15.6%	32.8%	31.7%	19.4%	0.6%	48.3%	51.1%
	대학교졸업	461	9.8%	31.9%	32.5%	25.6%	0.2%	41.6%	58.1%
	대학원재학이상	68	10.3%	29.4%	41.2%	19.1%	0.0%	39.7%	60.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3.2%	31.9%	36.8%	16.7%	1.4%	45.1%	53.5%
	200~400만원미만	358	12.8%	30.4%	29.6%	26.3%	0.8%	43.3%	55.9%
	400~500만원미만	209	12.0%	31.6%	36.8%	19.6%	0.0%	43.5%	56.5%
	500만원이상	289	11.8%	32.5%	31.1%	24.2%	0.3%	44.3%	55.4%

표 Ⅲ-43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무기징역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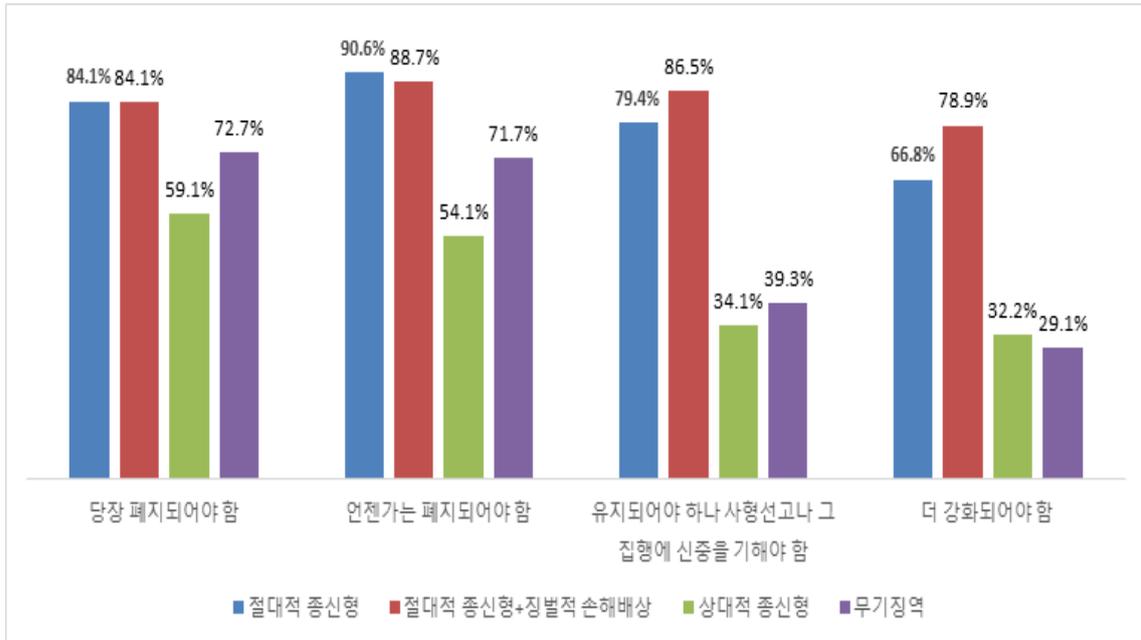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2.4%	31.5%	32.6%	22.9%	0.6%	43.9%	55.5%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11.8%	29.3%	32.3%	26.4%	0.3%	41.1%	58.6%
	모름	321	13.7%	36.1%	33.3%	15.6%	1.2%	49.8%	48.9%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11.3%	29.6%	31.4%	27.3%	0.4%	40.9%	58.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14.3%	27.7%	36.1%	21.8%	0.0%	42.0%	58.0%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12.8%	33.2%	33.0%	20.4%	0.6%	45.9%	53.4%
	없음	201	10.9%	24.9%	30.8%	32.8%	0.5%	35.8%	63.7%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34.1%	38.6%	15.9%	11.4%	0.0%	72.7%	27.3%
	향후 폐지	159	18.9%	52.8%	22.6%	5.7%	0.0%	71.7%	28.3%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8.9%	30.4%	37.1%	22.9%	0.7%	39.3%	60.0%
	유지·강화	199	13.1%	16.1%	30.7%	39.2%	1.0%	29.1%	69.8%

마.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 및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84.1%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무기징역형(72.7%), 상대적 종신형(59.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이 90.6%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88.7%), 무기징역형(71.7%), 상대적 종신형(54.1%)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의 비율이 86.5%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79.4%), 무기징역형(39.3%), 상대적 종신형(34.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가 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의 비율이 78.9%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66.8%), 상대적 종신형(32.2%), 무기징역형(29.1%)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 및 유지와 관계없이 절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형제도 폐지 의견의 경우에는 유지 의견에 비하여 상대적 종신형 및 무기징역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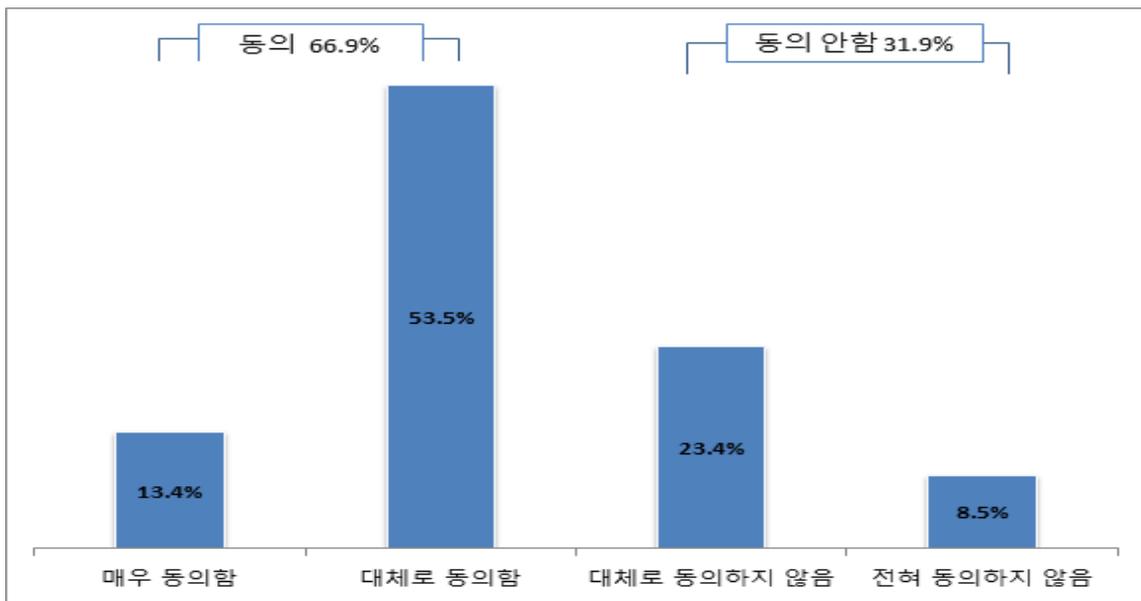
그림 Ⅲ-2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바.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66.9%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13.4%, 대체로 동의 53.5%).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9%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3.4%, 전혀 동의하지 않음 8.5%).

그림 Ⅲ-25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별로는 40대 70.9%가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72.1%와 71.2%로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기타의 70.4%가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4 응답자 특성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3.4%	53.5%	23.4%	8.5%	1.2%	66.9%	31.9%
성별	남성	507	14.0%	53.6%	21.7%	9.9%	0.8%	67.7%	31.6%
	여성	493	12.8%	53.3%	25.2%	7.1%	1.6%	66.1%	32.3%
연령별	20대	184	12.5%	55.4%	22.3%	8.7%	1.1%	67.9%	31.0%
	30대	197	12.2%	50.3%	26.4%	9.6%	1.5%	62.4%	36.0%
	40대	230	17.0%	53.9%	20.9%	7.0%	1.3%	70.9%	27.8%
	50대	231	13.9%	55.0%	22.1%	8.2%	0.9%	68.8%	30.3%
	60대이상	158	10.1%	52.5%	26.6%	9.5%	1.3%	62.7%	36.1%
종교	기독교	215	15.8%	56.3%	19.5%	7.0%	1.4%	72.1%	26.5%
	불교	156	12.8%	58.3%	20.5%	7.1%	1.3%	71.2%	27.6%
	천주교	87	10.3%	55.2%	28.7%	5.7%	0.0%	65.5%	34.5%
	무교/기타	542	13.1%	50.7%	24.9%	10.0%	1.3%	63.8%	34.9%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13.7%	56.7%	19.6%	8.2%	1.7%	70.4%	27.8%
	전문대학졸업	180	13.9%	54.4%	23.9%	6.7%	1.1%	68.3%	30.6%
	대학교졸업	461	12.4%	51.6%	25.6%	9.3%	1.1%	64.0%	34.9%
	대학원재학이상	68	17.6%	50.0%	23.5%	8.8%	0.0%	67.6%	32.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13.2%	49.3%	27.1%	8.3%	2.1%	62.5%	35.4%
	200~400만원미만	358	13.7%	53.9%	21.5%	9.5%	1.4%	67.6%	31.0%
	400~500만원미만	209	14.8%	51.2%	25.8%	7.2%	1.0%	66.0%	33.0%
	500만원이상	289	12.1%	56.7%	22.1%	8.3%	0.7%	68.9%	30.4%

표 Ⅲ-45 사형제도 인식별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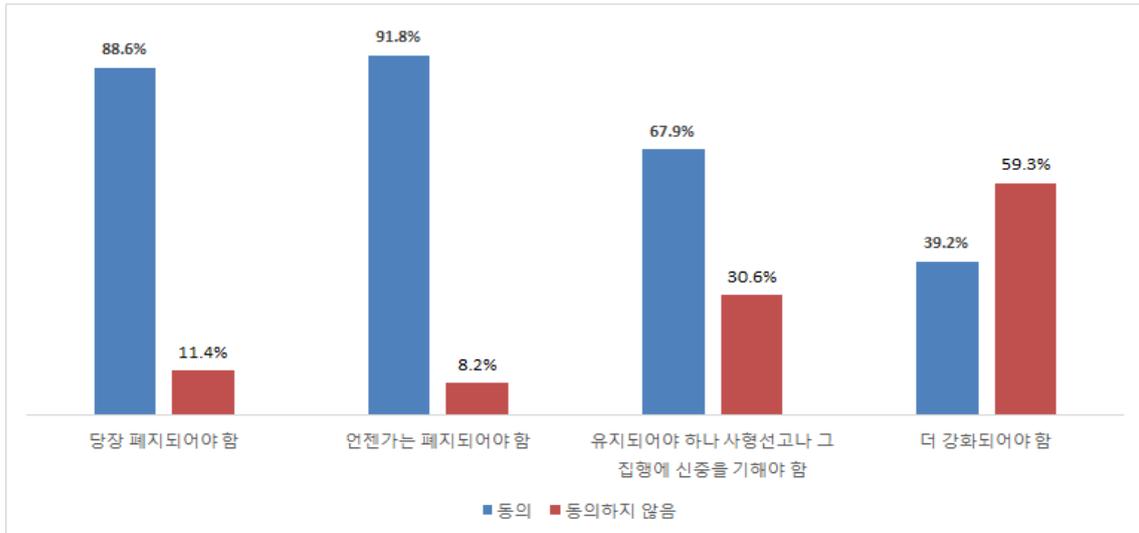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전체		1000	13.4%	53.5%	23.4%	8.5%	1.2%	66.9%	31.9%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14.1%	52.3%	22.4%	9.9%	1.3%	66.4%	32.3%
	모름	321	11.8%	56.1%	25.5%	5.6%	0.9%	67.9%	31.2%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15.5%	51.3%	22.0%	10.0%	1.3%	66.8%	32.0%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7.6%	57.1%	24.4%	9.2%	1.7%	64.7%	33.6%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15.1%	55.9%	21.4%	6.4%	1.1%	71.1%	27.8%
	없음	201	6.5%	43.8%	31.3%	16.9%	1.5%	50.2%	48.3%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56.8%	31.8%	6.8%	4.5%	0.0%	88.6%	11.4%
	향후 폐지	159	21.4%	70.4%	7.5%	0.6%	0.0%	91.8%	8.2%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9.7%	58.2%	25.9%	4.7%	1.5%	67.9%	30.6%
	유지·강화	199	8.5%	30.7%	32.2%	27.1%	1.5%	39.2%	59.3%

그 밖에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라서는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59.1%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54.1%가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각각 40.9%와 45.3%의 비율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가 사형제도가 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65.8%가 대체형벌을 전제로 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 34.1%와 32.2%의 비율에서 대체형벌을 전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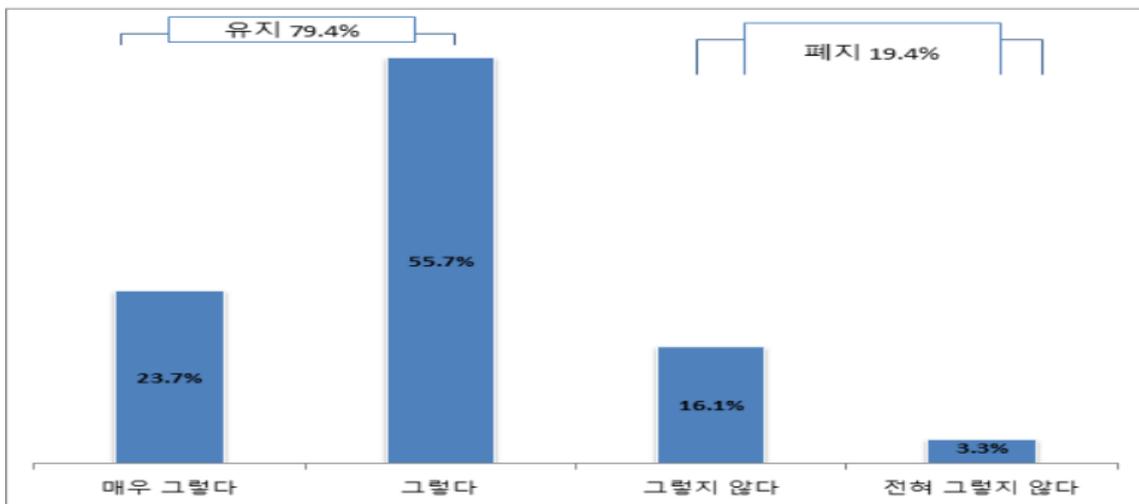
그림 Ⅲ-2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일반국민)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들의 79.4%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23.7%, 대체로 동의 55.7%). 반면에 국제적 흐름에 맞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6.1%, 전혀 동의하지 않음 3.3%).

그림 Ⅲ-27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77.7%)에 비하여 남성(81.1%)이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79.9%)와 30대(86.8%)가, 종교별로는 불교(81.4%)와 무교/기타(80.4%)가 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졸업(85.0%)이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미만/기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층에서 80% 이상이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유지	폐지
전체		1,000	23.7%	55.7%	16.1%	3.3%	1.2%	79.4%	19.4%
성별	남성	507	25.8%	55.2%	14.6%	3.4%	1.0%	81.1%	17.9%
	여성	493	21.5%	56.2%	17.6%	3.2%	1.4%	77.7%	20.9%
연령별	20대	184	20.7%	59.2%	14.7%	2.7%	2.7%	79.9%	17.4%
	30대	197	32.5%	54.3%	10.7%	1.5%	1.0%	86.8%	12.2%
	40대	230	18.7%	55.7%	19.1%	4.8%	1.7%	74.3%	23.9%
	50대	231	22.9%	56.7%	16.0%	3.9%	0.4%	79.7%	19.9%
	60대이상	158	24.7%	51.9%	20.3%	3.2%	0.0%	76.6%	23.4%
종교	기독교	215	21.9%	53.5%	18.1%	5.1%	1.4%	75.3%	23.3%
	불교	156	20.5%	60.9%	14.7%	3.2%	0.6%	81.4%	17.9%
	천주교	87	24.1%	55.2%	14.9%	5.7%	0.0%	79.3%	20.7%
	무교/기타	542	25.3%	55.2%	15.9%	2.2%	1.5%	80.4%	18.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23.0%	56.0%	16.8%	1.7%	2.4%	79.0%	18.6%
	전문대학졸업	180	22.8%	62.2%	11.1%	2.8%	1.1%	85.0%	13.9%
	대학교졸업	461	24.7%	54.4%	16.3%	3.9%	0.7%	79.2%	20.2%
	대학원재학이상	68	22.1%	45.6%	25.0%	7.4%	0.0%	67.6%	32.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20.8%	49.3%	21.5%	5.6%	2.8%	70.1%	27.1%
	200~400만원미만	358	24.6%	56.7%	14.2%	3.4%	1.1%	81.3%	17.6%
	400~500만원미만	209	23.9%	56.5%	16.3%	1.4%	1.9%	80.4%	17.7%
	500만원이상	289	23.9%	57.1%	15.6%	3.5%	0.0%	81.0%	19.0%

표 Ⅲ-47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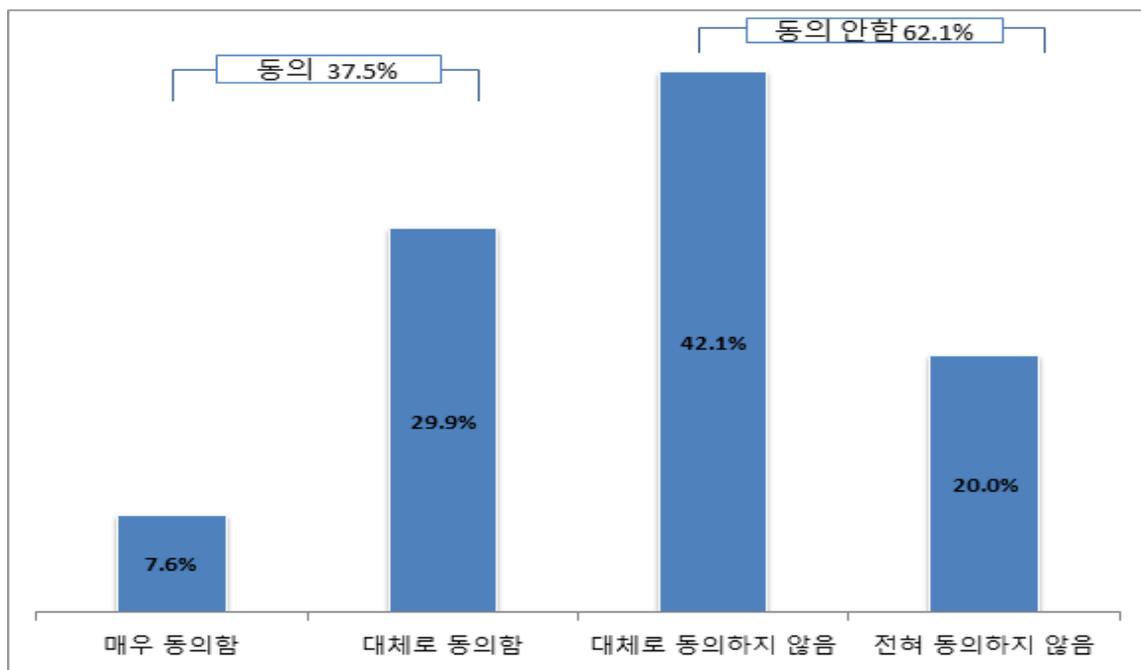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유지	폐지
전체		1000	23.7%	55.7%	16.1%	3.3%	1.2%	79.4%	19.4%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23.7%	55.7%	16.1%	3.3%	1.2%	79.4%	19.4%
	모름	321	26.8%	53.9%	15.0%	3.7%	0.6%	80.7%	18.7%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17.1%	59.5%	18.4%	2.5%	2.5%	76.6%	20.9%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27.0%	54.1%	15.5%	3.4%	0.0%	81.1%	18.9%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26.1%	52.9%	12.6%	5.0%	3.4%	79.0%	17.6%
	없음	201	20.3%	57.1%	17.1%	4.0%	1.5%	77.3%	21.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6.8%	11.4%	40.9%	40.9%	0.0%	18.2%	81.8%
	향후 폐지	159	2.5%	27.7%	61.0%	6.9%	1.9%	30.2%	67.9%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15.7%	75.3%	7.2%	0.5%	1.3%	91.0%	7.7%
	유지·강화	199	68.3%	29.1%	1.5%	0.5%	0.5%	97.5%	2.0%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37.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7.6%, 대체로 동의 29.9%). 반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2.1%로 나타나(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2.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0%) 동의하는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연령별, 종교별, 학력별,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40%가량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60%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28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그 밖에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79.5%가,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77.4%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각각 20.5%와 22.0%의 비율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그 선고와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70.2%가, 사형제도를 더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78.9%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 29.3%와 21.1%의 비율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48 응답자 특성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체		1,000	7.6%	29.9%	42.1%	20.0%	0.4%	37.5%	62.1%
성별	남성	507	6.3%	29.6%	42.0%	21.7%	0.4%	35.9%	63.7%
	여성	493	8.9%	30.2%	42.2%	18.3%	0.4%	39.1%	60.4%
연령별	20대	184	6.0%	31.0%	45.1%	17.4%	0.5%	37.0%	62.5%
	30대	197	5.6%	24.9%	45.7%	22.8%	1.0%	30.5%	68.5%
	40대	230	10.0%	27.8%	43.9%	17.8%	0.4%	37.8%	61.7%
	50대	231	9.1%	33.3%	37.2%	20.3%	0.0%	42.4%	57.6%
	60대이상	158	6.3%	32.9%	38.6%	22.2%	0.0%	39.2%	60.8%
종교	기독교	215	9.3%	37.2%	30.7%	22.3%	0.5%	46.5%	53.0%
	불교	156	5.8%	30.8%	50.6%	12.8%	0.0%	36.5%	63.5%
	천주교	87	9.2%	27.6%	52.9%	10.3%	0.0%	36.8%	63.2%
	무교/기타	542	7.2%	27.1%	42.4%	22.7%	0.6%	34.3%	65.1%
학력	고졸이하/기타	291	8.6%	29.6%	43.0%	18.2%	0.7%	38.1%	61.2%
	전문대학졸업	180	7.2%	25.0%	50.6%	16.1%	1.1%	32.2%	66.7%
	대학교졸업	461	6.7%	31.7%	38.2%	23.4%	0.0%	38.4%	61.6%
	대학원재학이상	68	10.3%	32.4%	42.6%	14.7%	0.0%	42.6%	57.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144	9.7%	31.9%	41.7%	16.0%	0.7%	41.7%	57.6%
	200~400만원미만	358	7.3%	30.4%	43.0%	18.7%	0.6%	37.7%	61.7%
	400~500만원미만	209	7.2%	26.3%	45.0%	21.1%	0.5%	33.5%	66.0%
	500만원이상	289	7.3%	30.8%	39.1%	22.8%	0.0%	38.1%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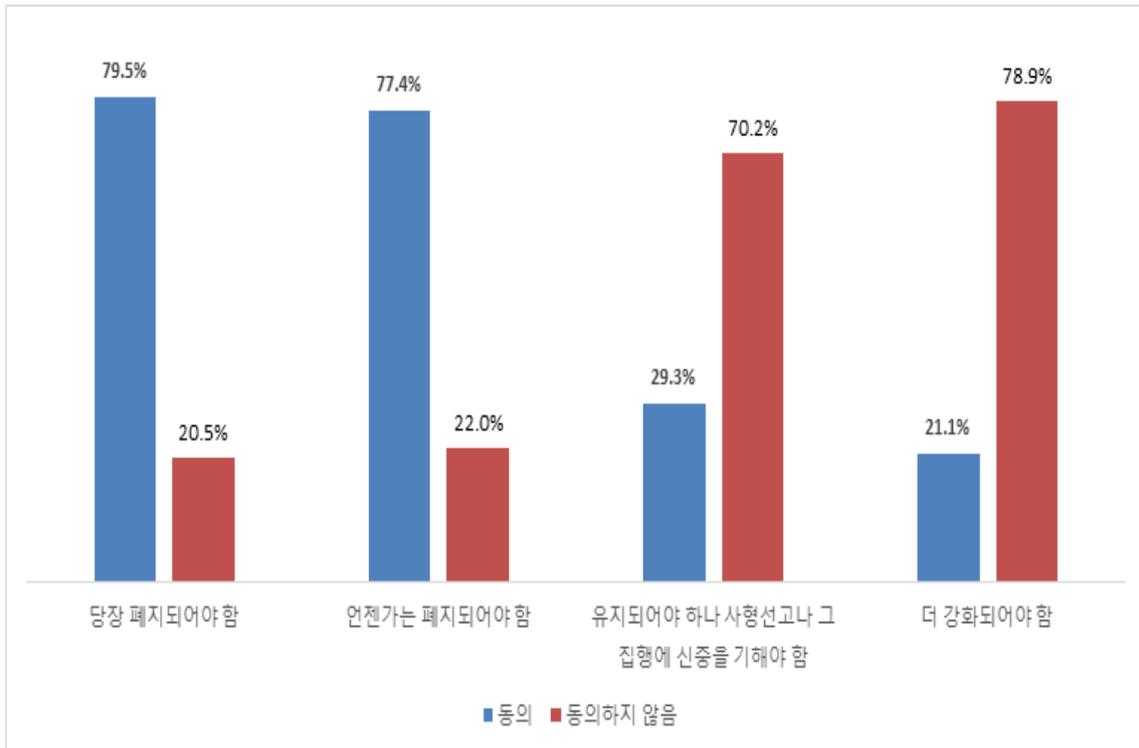
표 Ⅲ-49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하지 않음
전체		1000	7.6%	29.9%	42.1%	20.0%	0.4%	37.5%	62.1%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7.6%	29.9%	42.1%	20.0%	0.4%	37.5%	62.1%
	모름	321	8.1%	28.4%	40.8%	22.4%	0.3%	36.5%	63.2%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6.5%	33.0%	44.9%	15.0%	0.6%	39.6%	59.8%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8.0%	28.2%	40.9%	22.7%	0.2%	36.3%	63.6%
오판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8.4%	29.4%	40.3%	21.0%	0.8%	37.8%	61.3%
	없음	201	8.1%	32.8%	42.2%	16.4%	0.5%	40.9%	58.6%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47.7%	31.8%	11.4%	9.1%	0.0%	79.5%	20.5%

향후 폐지	159	12.6%	64.8%	20.8%	1.3%	0.6%	77.4%	22.0%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2.7%	26.6%	53.3%	16.9%	0.5%	29.3%	70.2%
유지·강화	199	9.5%	11.6%	32.2%	46.7%	0.0%	21.1%	78.9%

그림 Ⅲ-29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동의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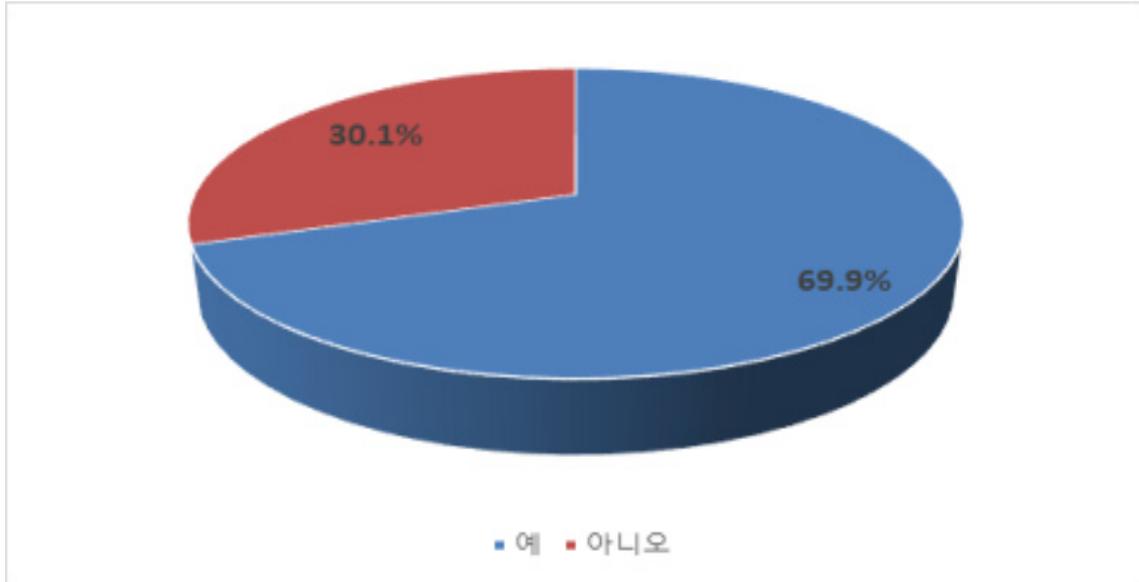
제4절 설문 이후 인식변화

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

가.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형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30.1%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0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여부(일반국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습득의 유형으로는 '오관 등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2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21.4%), 'UN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채택해 오고 있다는 점(19.6%)',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19.5%)',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16.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31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_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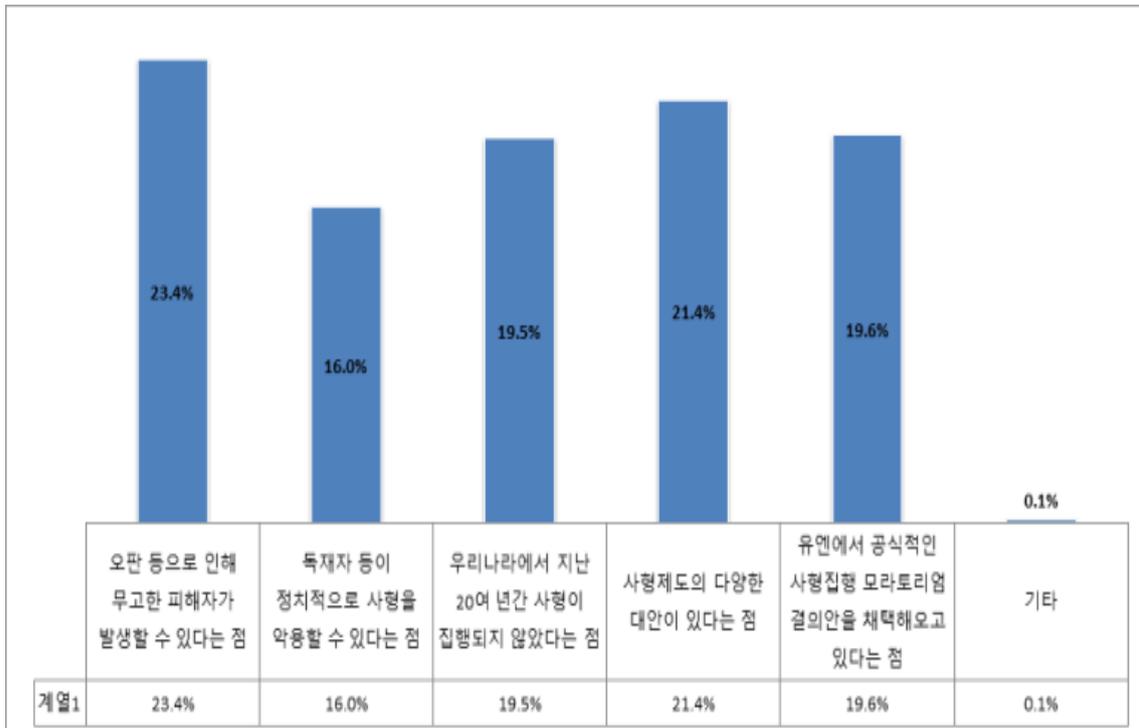


표 Ⅲ-50 응답자 특성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구분		응답자수	예	아니오	응답자수 (중복응답)	오관 등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기타
전체		1,000	69.9%	30.1%	1,649	23.4%	16.0%	19.5%	21.4%	19.6%	0.1%
성별	남성	507	68.6%	31.4%	349	56.7%	38.7%	44.1%	50.7%	44.4%	0.3%
	여성	493	71.2%	28.8%	351	53.6%	36.8%	47.6%	50.1%	47.9%	0.3%
연령별	20대	184	66.8%	33.2%	123	43.1%	31.7%	33.3%	46.3%	41.5%	1.6%
	30대	197	64.0%	36.0%	127	54.3%	29.1%	43.3%	46.5%	53.5%	0.0%
	40대	230	72.6%	27.4%	167	52.7%	39.5%	47.9%	51.5%	48.5%	0.0%
	50대	231	73.2%	26.8%	169	61.5%	40.8%	47.9%	50.9%	46.2%	0.0%
	60대이상	158	72.2%	27.8%	114	63.2%	46.5%	56.1%	57.0%	39.5%	0.0%
종교	기독교	215	72.1%	27.9%	155	60.6%	41.3%	49.0%	51.0%	40.6%	0.0%
	불교	156	73.7%	26.3%	115	61.7%	40.0%	56.5%	49.6%	42.6%	0.0%
	천주교	87	77.0%	23.0%	67	47.8%	41.8%	44.8%	59.7%	50.7%	0.0%
	무교/기타	542	66.8%	33.2%	363	52.1%	34.7%	41.3%	48.8%	48.8%	0.6%
학력	고졸 이하/기타	291	71.1%	28.9%	207	64.3%	41.1%	50.7%	48.3%	42.0%	1.0%
	전문대학 졸업	180	76.1%	23.9%	138	58.7%	39.1%	44.2%	50.0%	50.7%	0.0%
	대학교 졸업	461	67.2%	32.8%	310	49.0%	35.5%	42.6%	51.0%	48.1%	0.0%
	대학원 재학 이상	68	66.2%	33.8%	45	44.4%	33.3%	51.1%	57.8%	37.8%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기타	144	68.1%	31.9%	98	58.2%	40.8%	45.9%	48.0%	39.8%	0.0%
	200~400만원 미만	358	71.5%	28.5%	256	57.0%	37.9%	46.1%	50.0%	47.3%	0.4%
	400~500만원 미만	209	67.5%	32.5%	142	52.1%	35.9%	48.6%	51.4%	42.3%	0.0%
	500만원 이상	289	70.6%	29.4%	204	53.4%	37.3%	43.6%	51.5%	50.5%	0.5%

표 Ⅲ-51 사형제도 인식별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습득 유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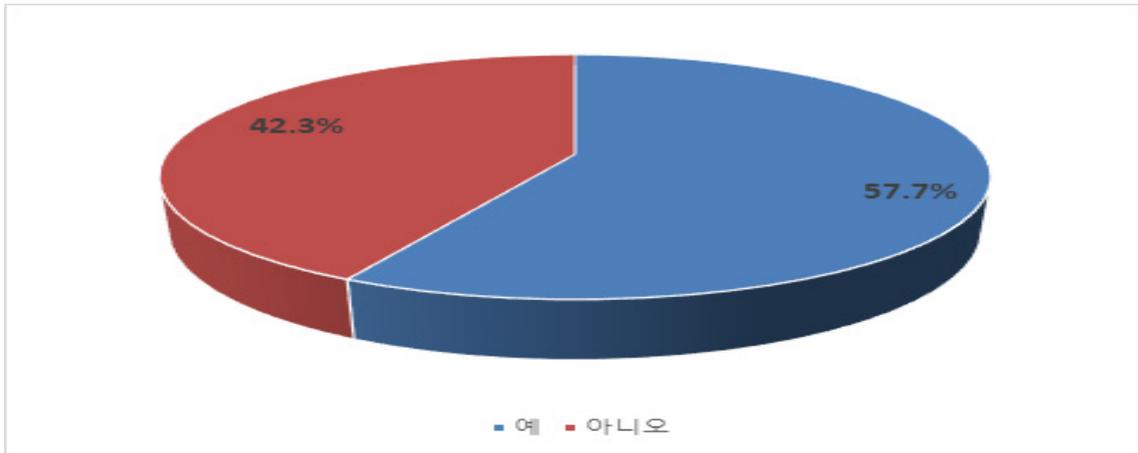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예	아니오	응답자수 (중복응답)	오관 등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기타
전체		1,000	69.9%	30.1%	1,649	23.4%	16.0%	19.5%	21.4%	19.6%	0.1%
사형제도 인지여부	알고 있음	679	67.5%	32.5%	459	60.4%	60.2%	55.5%	68.0%	65.9%	50.0%
	모름	321	75.1%	24.9%	241	39.6%	39.8%	44.5%	32.0%	34.1%	50.0%
인지경로	언론보도	560	69.5%	30.5%	390	89.3%	84.3%	88.2%	84.6%	87.3%	0.0%
	교육 및 연구자료 등	119	58.0%	42.0%	69	10.7%	15.7%	11.8%	15.4%	12.7%	0.0%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799	72.1%	27.9%	577	85.0%	87.1%	85.4%	81.6%	83.9%	0.0%
	없음	201	61.2%	38.8%	123	15.0%	12.9%	14.6%	18.4%	16.1%	0.0%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44	68.2%	31.8%	30	4.4%	4.9%	5.0%	3.7%	5.6%	0.0%
	향후 폐지	159	74.8%	25.2%	119	14.0%	14.0%	17.1%	16.7%	16.1%	0.0%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598	70.9%	29.1%	425	63.2%	62.5%	61.1%	62.9%	63.5%	0.0%
	유지·강화	199	63.3%	36.7%	126	18.4%	18.6%	16.8%	16.7%	14.9%	0.0%

나. 새로운 정보 습득 이후 인식변화

설문조사 이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이후 인식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2.3%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2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여부(일반국민)



인식변화의 유형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가 44.6%로 가장 높았고,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31.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21.5%)',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3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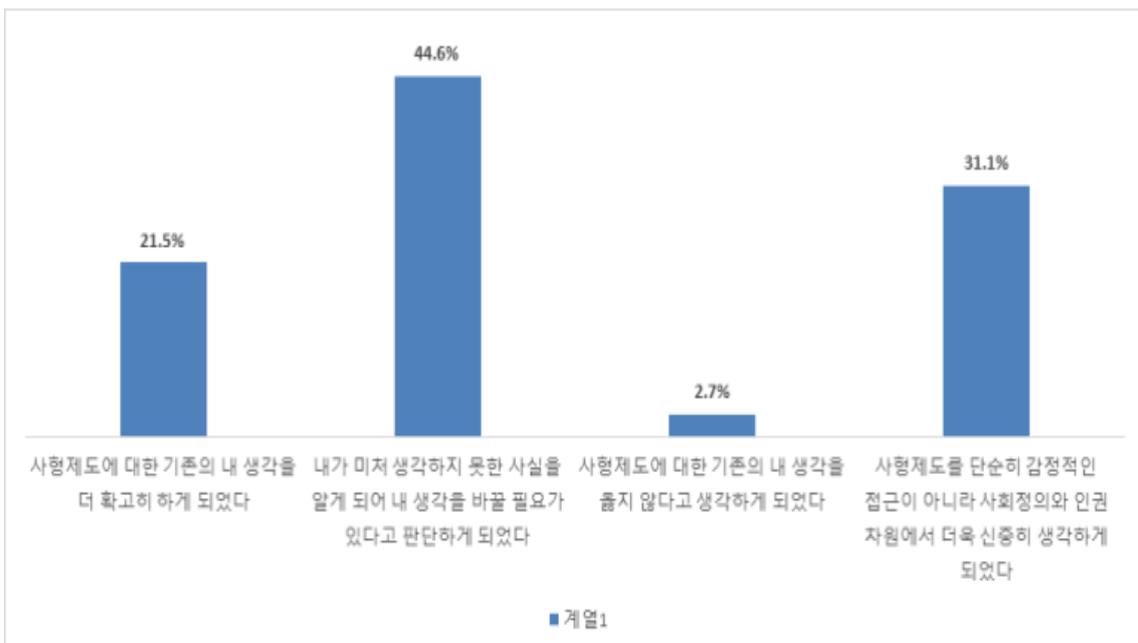


표 Ⅲ-52 응답자 특성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됨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됨
전체		585	21.5%	44.6%	2.7%	31.1%
성별	남성	305	21.3%	47.5%	3.6%	27.5%
	여성	280	21.8%	41.4%	1.8%	35.0%
연령별	20대	103	27.2%	40.8%	3.9%	28.2%
	30대	114	25.4%	43.9%	1.8%	28.9%
	40대	138	21.7%	49.3%	2.2%	26.8%
	50대	142	18.3%	43.7%	2.1%	35.9%
	60대이상	88	14.8%	44.3%	4.5%	36.4%
종교	기독교	133	22.6%	41.4%	3.0%	33.1%
	불교	92	17.4%	45.7%	1.1%	35.9%
	천주교	52	19.2%	42.3%	7.7%	30.8%
	무교/기타	308	22.7%	46.1%	2.3%	28.9%
학력	고졸이하/기타	170	18.8%	48.2%	4.1%	28.8%
	전문대학졸업	118	28.0%	45.8%	1.7%	24.6%
	대학교졸업	256	19.9%	41.8%	2.7%	35.5%
	대학원재학이상	41	24.4%	43.9%	0.0%	31.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기타	72	20.8%	43.1%	2.8%	33.3%
	200~400만원미만	215	23.3%	46.0%	2.8%	27.9%
	400~500만원미만	122	18.9%	45.1%	3.3%	32.8%
	500만원이상	176	21.6%	43.2%	2.3%	33.0%

표 Ⅲ-53 사형제도 인식별 새로운 정보 인지 이후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인식변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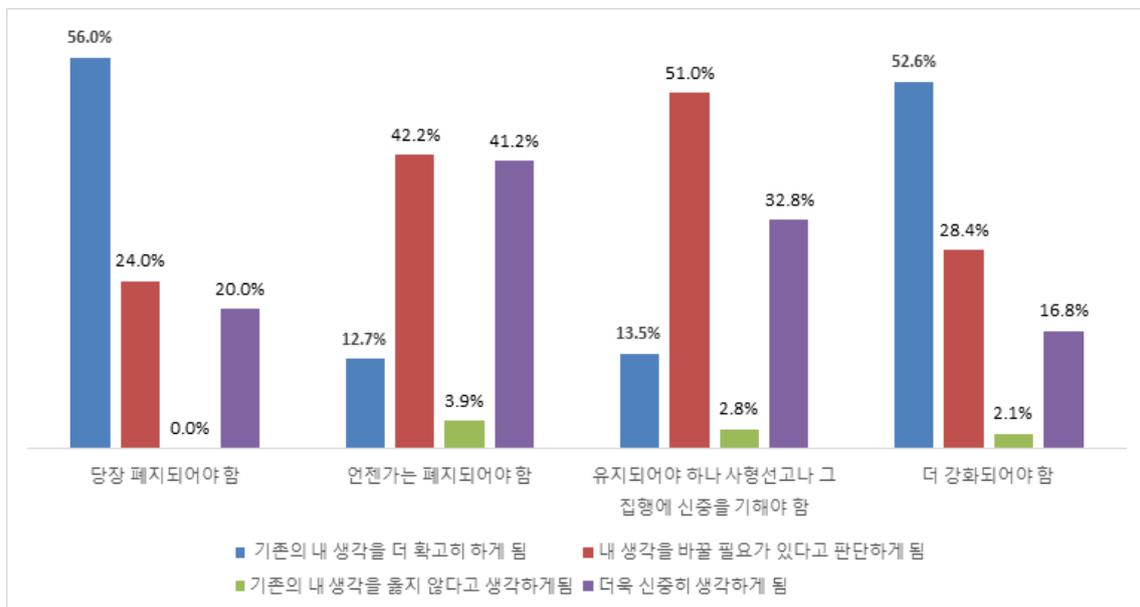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됨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됨
전체		585	21.5%	44.6%	2.7%	31.1%
사형제도 인지에 부	알고 있음	399	25.3%	40.6%	3.8%	30.3%
	모름	186	13.4%	53.2%	0.5%	32.8%
인지경로	언론보도	334	25.4%	41.0%	3.9%	29.6%
	교육 및 연구자료 등	65	24.6%	38.5%	3.1%	33.8%
오관가능성 인지여부	있음	477	19.5%	44.9%	2.3%	33.3%
	없음	108	30.6%	43.5%	4.6%	21.3%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당장 폐지	25	56.0%	24.0%	0.0%	20.0%
	향후 폐지	102	12.7%	42.2%	3.9%	41.2%
	유지하나 선고/ 집행에 신중	363	13.5%	51.0%	2.8%	32.8%
	유지·강화	95	52.6%	28.4%	2.1%	16.8%

2.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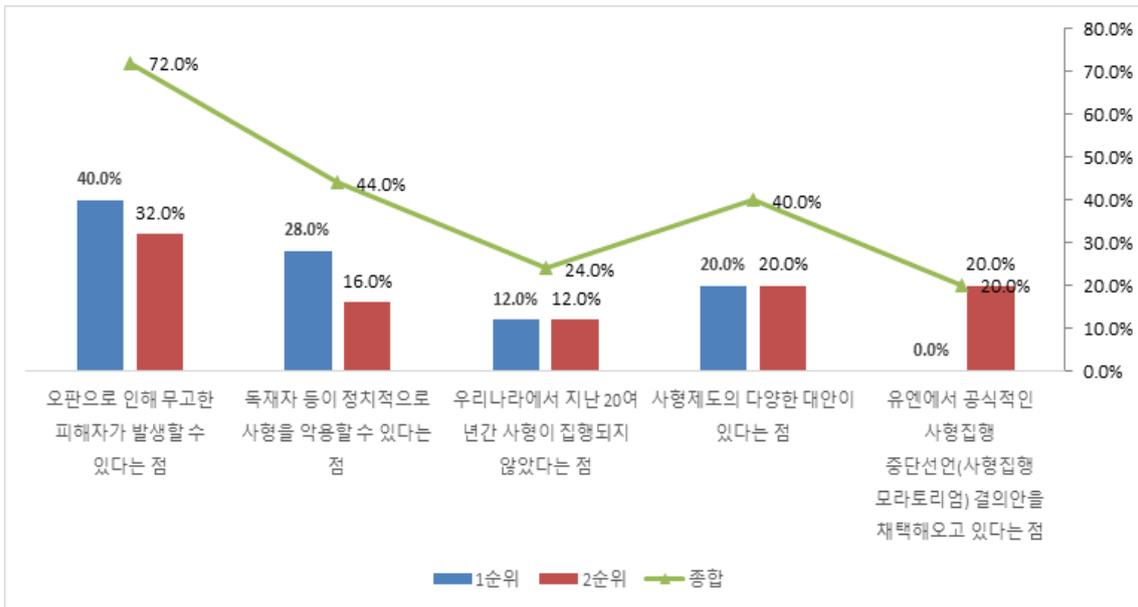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습득 이후 인식변화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56.0%가, 사형제도를 더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52.6%가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설문이후에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그 선고나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51.0%가, 사형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28.4%가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설문조사 이후 인식의 변화가 다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34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의 유형(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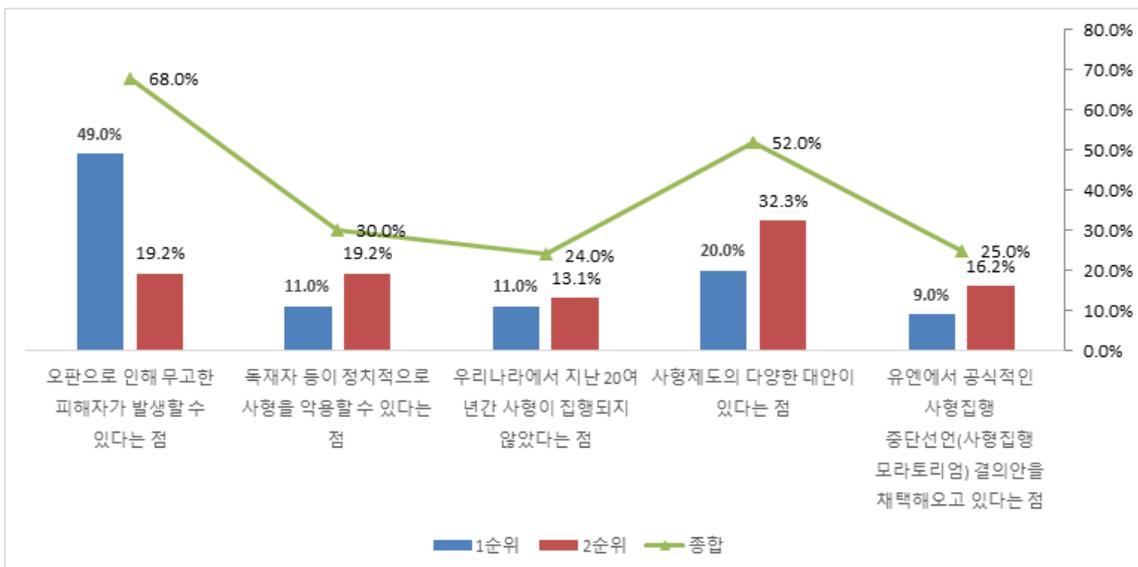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유형에 따라 인식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유형 1: 당장 폐지)는 의견의 경우에는 인식변화의 원인의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40.0%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이 각각 20.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5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1: 당장 폐지)



다음으로 사형제도를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유형 2: 향후 폐지)는 의견의 경우에는 인식변화의 원인의 1순위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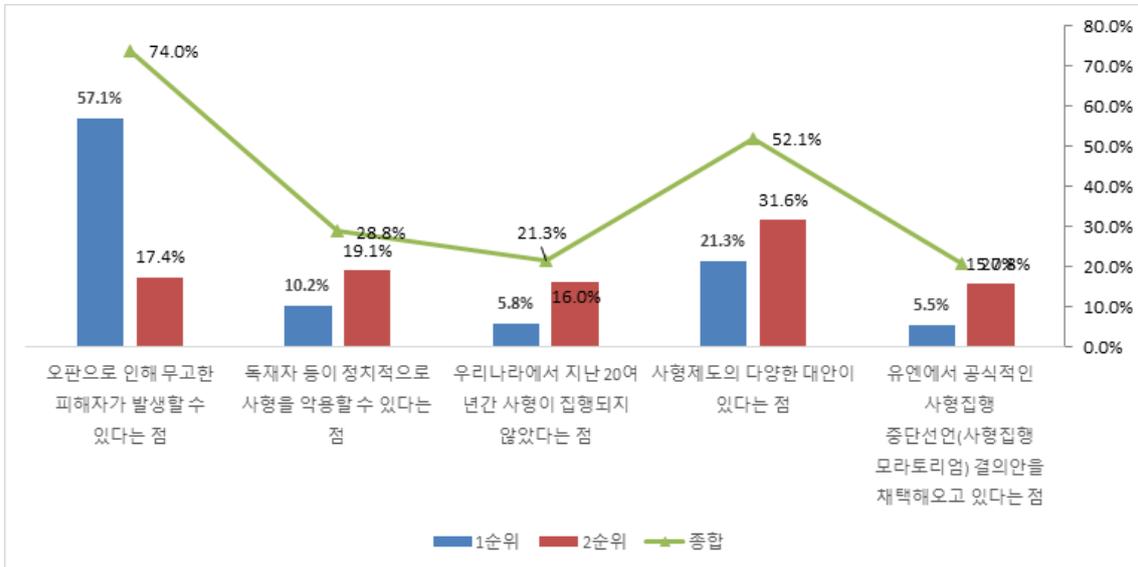
그림 III-36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2: 향후 폐지)



유형 2(향후 폐지)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유형 3: 소극적 유지)는 의견의 경우에도 인식변화의 원인의 1순위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이 31.6%로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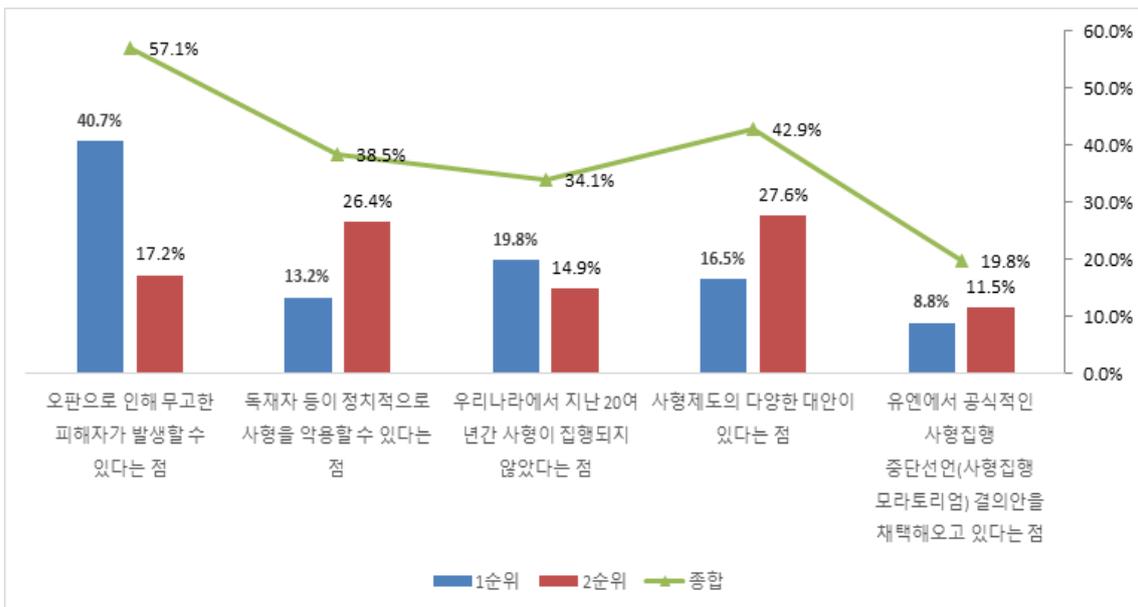
게 나타났다.

그림 Ⅲ-37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3: 소극적 유지)



사형제도를 더 유지·강화해야 한다(유형 4: 적극적 유지)는 의견의 경우에도 인식변화의 원인의 1순위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8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의견에 따른 인식변화 원인(유형 4: 적극적 유지)



제3장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

제1절 일반국민과의 인식비교

1. 사형제도의 인지정도와 인지경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7%(매우 잘 알고 있다 17.4%, 알고 있다 74.2%)로, 일반국민(67.9%)에 비하여 23.8%p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가 집단별로는 국회의원과 교정공무원의 경우, 사형제도에 대해 모든 응답자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조인(98.1%), 시민단체(87.5%), 언론인(80.0%) 순으로 사형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4 현행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정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알고있음	모름
일반국민	1000	9.6%	58.3%	29.7%	2.4%	67.9%	32.1%
전문가	132	17.4%	74.2%	7.6%	0.8%	91.7%	8.3%
법조인	54	24.1%	74.1%	1.9%	0.0%	98.1%	1.9%
시민단체	32	9.4%	78.1%	12.5%	0.0%	87.5%	12.5%
언론인	30	6.7%	73.3%	16.7%	3.3%	80.0%	20.0%
국회의원	6	33.3%	66.7%	0.0%	0.0%	100.0%	0.0%
교정공무원	10	30.0%	70.0%	0.0%	0.0%	100.0%	0.0%

전문가들의 경우 사형제도를 인지하는 경로가 언론보도(40.7%), 학교교육(28.5%), 논문 등 전문자료(22.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과 비교할 때, 언론보도는 41.8%p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교육과 논문 등 전문자료는 각각 13.8%p와 20.1%p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인지경로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언론보도	학교교육	논문 등 전문자료	기타
일반국민	679	82.5%	14.7%	1.9%	0.9%
전문가	123	40.7%	28.5%	22.0%	8.9%
법조인	53	7.5%	47.2%	35.8%	9.4%
시민단체	29	69.0%	10.3%	6.9%	13.8%
언론인	25	80.0%	16.0%	4.0%	0.0%
국회의원	6	83.3%	0.0%	16.7%	0.0%
교정공무원	10	10.0%	30.0%	40.0%	20.0%

2.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지는 의견은 전체의 31.1%로 나타났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향후 폐지의 의견은 27.3%로 조사되어 사형제도 폐지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36.4%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에 비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는 의견은 38.0%p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회의원과 교정공무원들은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인, 시민단체, 언론인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6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당장 폐지 되어야 함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함	유지하나 사형 선고/집행에 신중	더 강화 되어야 함
일반국민	679	4.4%	15.9%	59.8%	19.9%
전문가	123	31.1%	27.3%	36.4%	5.3%
법조인	53	27.8%	31.5%	38.9%	1.9%
시민단체	29	56.3%	21.9%	18.8%	3.1%
언론인	25	26.7%	36.7%	26.7%	10.0%
국회의원	6	0.0%	16.7%	83.3%	0.0%
교정공무원	10	0.0%	0.0%	80.0%	20.0%

3.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 및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로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7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64.5%)’,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39.5%)’,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38.2%)’,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30.0%)’,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18.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7 사형제도 폐지 찬성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일반국민 (203)	전문가 (76)	법조인 (32)	시민단체 (25)	언론인 (18)	국회의원 (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45.8%	64.5%	71.9%	72.0%	38.9%	100.0%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36.9%	38.2%	31.3%	44.0%	38.9%	100.0%

(단위 : 명/%)

구분	일반국민 (203)	전문가 (76)	법조인 (32)	시민단체 (25)	언론인 (18)	국회의원 (1)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8.6%	73.7%	81.3%	64.0%	77.8%	0.0%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14.3%	7.9%	6.3%	12.0%	5.6%	0.0%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10.3%	15.8%	15.6%	16.0%	16.7%	0.0%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8.2%	27.6%	18.8%	36.0%	33.3%	0.0%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7.7%	23.7%	31.3%	24.0%	5.6%	100.0%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25.1%	39.5%	43.8%	28.0%	44.4%	100.0%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30.0%	36.8%	40.6%	40.0%	27.8%	0.0%
기타	1.5%	5.3%	3.1%	12.0%	0.0%	0.0%

전문가들은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의견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50.8%)’,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30.8%)’,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29.2%)’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1.5%로 조사되었다.

표 Ⅲ-58 사형제도 유지 찬성이유(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일반국민 (797)	전문가 (65)	법조인 (22)	시민단체 (16)	언론인 (12)	국회의원 (5)	교정담당 공무원 (10)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49.6%	29.2%	18.2%	31.3%	25.0%	60.0%	40.0%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32.9%	30.8%	27.3%	37.5%	25.0%	20.0%	40.0%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47.9%	52.3%	59.1%	43.8%	33.3%	80.0%	60.0%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9.1%	21.5%	18.2%	25.0%	25.0%	0.0%	30.0%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49.2%	50.8%	54.5%	37.5%	66.7%	40.0%	50.0%
기타	2.1%	7.7%	18.2%	0.0%	8.3%	0.0%	0.0%

일반국민들과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폐지 찬성의 이유로 ‘오판가능성(일반국민: 58.6%, 전문가:

73.7%)‘과 ’국가의 생명권 박탈 문제(일반국민: 45.8%, 전문가: 64.5%)‘를 더 높은 비율로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이유로 제시된 ’흉악범죄의 증가(일반국민: 49.6%, 전문가: 29.2%)‘를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더 낮은 비율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에 대한 의견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잘못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매우 많다 17.4%, 약간 있다 58.3%)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79.9%)에 비하여 4.1%p 낮은 수치이나 ’오판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17.4%로 일반국민 9.5%에 비하여 7.9%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범조인의 경우에도 과반수이상(64.8%)이 사형선고의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9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의 평가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있음	없음
일반국민	1000	9.5%	70.4%	18.7%	1.4%	79.9%	20.1%
전문가	132	17.4%	58.3%	22.0%	2.3%	75.8%	24.2%
법조인	54	11.1%	53.7%	33.3%	1.9%	64.8%	35.2%
시민단체	32	37.5%	50.0%	6.3%	6.3%	87.5%	12.5%
언론인	30	13.3%	86.7%	0.0%	0.0%	100.0%	0.0%
국회의원	6	0.0%	50.0%	50.0%	0.0%	50.0%	50.0%
교정공무원	10	10.0%	30.0%	60.0%	0.0%	40.0%	60.0%

전문가들의 경우,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65.9%(매우 동의 22.0%, 대체로 동의 43.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국민(53.9%)에 비하여 12.0%p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가 집단별로는 교정공무원들은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0.0%로 조사되었으며, 시민단체(동의 84.4%, 동의 안함 15.6%)를 포함한 법조인, 언론인,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0 오판가능성으로 인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안함
일반국민	1000	9.0%	44.9%	35.2%	9.2%	53.9%	44.4%
전문가	132	22.0%	43.9%	31.8%	2.3%	65.9%	34.1%
법조인	54	14.8%	48.1%	35.2%	1.9%	63.0%	37.0%
시민단체	32	40.6%	43.8%	15.6%	0.0%	84.4%	15.6%
언론인	30	26.7%	36.7%	33.3%	3.3%	63.3%	36.7%
국회의원	6	0.0%	66.7%	33.3%	0.0%	66.7%	33.3%
교정공무원	10	0.0%	30.0%	60.0%	10.0%	30.0%	70.0%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문가들은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40.0%로 가장 높았고,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와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각각 24.4%와 13.3%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와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복합적인 원인이 된다는 견해가 다소 있었고, ‘오판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오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 오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형을 선택해야 한다’, ‘오판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국민들과 ‘법관들의 신중한 판단’을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이유로 제시하는 비율은 전문가들이 9.0%p 높게 나타난 반면에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 등을 이유로 제시하는 비율은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31.8%p 낮게 나타났다.

표 Ⅲ-61 오판가능성에도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기타
일반국민	447	15.4%	71.8%	9.6%	3.1%
전문가	45	24.4%	40.0%	13.3%	22.2%
법조인	20	30.0%	20.0%	15.0%	35.0%
시민단체	6	0.0%	83.3%	0.0%	16.7%
언론인	12	25.0%	58.3%	16.7%	0.0%
교정공무원	7	28.6%	28.6%	14.3%	28.6%

제2절 현행 사형제도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

1. 기본권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42.4%), 자유권(32.6%), 평등권(10.6%), 사회권(8.3%), 참정권(1.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우선시해야 되는 기본권은 생명권이 49.2%로 가장 높았고, 자유권(20.5%), 사회권(13.6%), 평등권(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기타의견으로 모든 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응답자들을 위주로 제시되었다. 일반국민과 비교할 때, 생명권을 자신 및 국가에게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가 일반국민에 비하여 각각 14.7%p와 14.0%p 높게 나타났으며, 평등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각각 14.7%p와 10.9%p 낮게 나타났다.

표 Ⅲ-62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일반국민	1000	36.6%	25.3%	1.4%	8.5%	27.7%	0.5%
전문가	132	32.6%	10.6%	1.5%	8.3%	42.4%	4.5%
법조인	54	37.0%	3.7%	0.0%	3.7%	53.7%	1.9%
시민단체	32	21.9%	18.8%	0.0%	3.1%	40.6%	15.6%
언론인	30	33.3%	16.7%	6.7%	20.0%	23.3%	0.0%
국회의원	6	50.0%	16.7%	0.0%	33.3%	0.0%	0.0%
교정공무원	10	30.0%	0.0%	0.0%	0.0%	70.0%	0.0%

표 Ⅲ-63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생명권	기타
일반국민	1000	24.1%	22.3%	4.4%	13.7%	35.2%	0.3%
전문가	132	20.5%	11.4%	2.3%	13.6%	49.2%	3.0%
법조인	54	25.9%	7.4%	0.0%	5.6%	59.3%	1.9%
시민단체	32	6.3%	15.6%	6.3%	31.3%	31.3%	9.4%
언론인	30	26.7%	20.0%	3.3%	10.0%	40.0%	0.0%
국회의원	6	0.0%	0.0%	0.0%	33.3%	66.7%	0.0%
교정공무원	10	30.0%	0.0%	0.0%	0.0%	70.0%	0.0%

2.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은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37.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12.9%로 조사되었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은 일반국민(16.5%)에 비하여 29.0%p 높은 수치이며,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경우, 그러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일반국민(59.5%)에 비하여 22.4%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분야별로는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는 시민단체(68.8%)에서 가장 높았고, 언론인(50.0%), 법조인(42.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4 국가가 사회정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생명 제거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일반국민	1000	23.1%	16.5%	59.5%	0.9%
전문가	132	12.9%	45.5%	37.1%	4.5%
법조인	54	9.3%	42.6%	40.7%	7.4%
시민단체	32	6.3%	68.8%	21.9%	3.1%
언론인	30	16.7%	50.0%	30.0%	3.3%
국회의원	6	50.0%	0.0%	50.0%	0.0%
교정공무원	10	20.0%	0.0%	80.0%	0.0%

제3절 현행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안

1. 사형제도에 대한 평가

가.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 인식

사형제도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56.8%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고(전혀 없다 19.7%, 거의 없다 37.1%), 42.4%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매우 많다 6.1%, 약간 있다 36.4%)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일반국민들은 전문가들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비율(84.5%)로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의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잘 모름	효과있음	효과없음
일반국민	1000	30.1%	54.4%	12.0%	2.8%	0.7%	84.5%	14.8%
전문가	132	6.1%	36.4%	37.1%	19.7%	0.8%	42.4%	56.8%
법조인	54	1.9%	42.6%	44.4%	11.1%	0.0%	44.4%	55.6%
시민단체	32	9.4%	18.8%	21.9%	50.0%	0.0%	28.1%	71.9%
언론인	30	6.7%	30.0%	46.7%	13.3%	3.3%	36.7%	60.0%
국회의원	6	0.0%	50.0%	50.0%	0.0%	0.0%	50.0%	50.0%
교정공무원	10	20.0%	70.0%	10.0%	0.0%	0.0%	90.0%	10.0%

나. 사형제도의 형벌 목적 부합성 평가

사형제도가 형벌 목적에 부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응보주의는 92.5%, 일반예방은 83.0%, 특별예방은 50.0%가 형벌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응보 및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부합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보의 경우 부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가 일반국민(79.4%)에 비하여 13.1%p 높게 나타났고, 특별예방의 경우 부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가 일반국민(67.5%)에 비하여 1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6 사형제도의 형벌의 목적 부합성 인식 비교

(선택형: 사형제도 유지 찬성에 한해서 응답,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부합	부합하지 않음	부합	부합하지 않음	부합	부합하지 않음
일반국민	797	79.4%	16.1%	82.6%	13.9%	67.5%	27.4%
전문가	53	92.5%	3.8%	83.0%	13.2%	50.0%	38.5%
법조인	21	90.5%	0.0%	76.2%	14.3%	38.1%	42.9%
시민단체	6	100.0%	0.0%	100.0%	0.0%	83.3%	0.0%
언론인	11	81.8%	18.2%	81.8%	18.2%	60.0%	40.0%
국회의원	5	100.0%	0.0%	60.0%	40.0%	40.0%	60.0%
교정공무원	10	100.0%	0.0%	100.0%	0.0%	50.0%	40.0%

다.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70.2%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를 나타낼 것이다(19.1%)’,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를 나타낼 것이다(4.6%)’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있든 없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5% 있었다. 일반국민과 비교할 때, 국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45.5%)에 비하여 24.7%p 높게 나타났으며, 소극적 반대와 적극적 반대의 경우 각각 일반국민(37.0%, 10.5%)에 비하여 17.9%p와 5.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7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반응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사형제도가 있는 없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일반국민	1000	45.5%	37.0%	10.5%	6.3%
전문가	131	70.2%	19.1%	4.6%	1.5%
법조인	54	77.8%	9.3%	5.6%	1.9%
시민단체	31	77.4%	19.4%	0.0%	0.0%
언론인	30	63.3%	26.7%	3.3%	3.3%
국회의원	6	50.0%	50.0%	0.0%	0.0%
교정공무원	10	40.0%	30.0%	20.0%	0.0%

2.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관한 의견

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사형제도의 대체형벌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68.2%), 상대적 종신형(56.8%), 무기징역(5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도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85.2%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법조인 집단을 제외한 다른 집단들의 경우에는 절대적 종신형에 동의하는 비율이 20%p 가량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법조인 집단은 절대적 종신형(68.2%)과 상대적 종신형(61.1%)을 찬성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8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절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상대적 종신형			무기징역		
		동의	동의안함	기타	동의	동의안함	기타	동의	동의안함	기타	동의	동의안함	기타
일반국민	1000	78.9%	19.5%	1.6%	85.2%	13.8%	1.0%	38.0%	60.9%	1.1%	43.9%	55.5%	0.6%
전문가	132	68.2%	29.5%	2.3%	70.5%	28.8%	0.8%	56.8%	42.4%	0.8%	54.5%	44.7%	0.8%
법조인	54	66.7%	31.5%	1.9%	59.3%	40.7%	0.0%	61.1%	38.9%	0.0%	51.9%	48.1%	0.0%
시민단체	32	65.6%	28.1%	6.3%	78.1%	18.8%	3.1%	56.3%	40.6%	3.1%	75.0%	25.0%	0.0%
언론인	30	86.7%	13.3%	0.0%	83.3%	16.7%	0.0%	60.0%	40.0%	0.0%	50.0%	46.7%	3.3%
국회의원	6	100.0%	0.0%	0.0%	100.0%	0.0%	0.0%	50.0%	50.0%	0.0%	50.0%	50.0%	0.0%
교정공무원	10	10.0%	90.0%	0.0%	50.0%	50.0%	0.0%	30.0%	70.0%	0.0%	20.0%	80.0%	0.0%

나.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

장기징역의 경우 일반시민과 시민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들의 32.0%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형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3.0%, 전혀 동의하지 않음 9.0%). 반면에 동의하고 있다는 의견은 66.0%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15.0%, 대체로 동의 51.0%). 집단 분류별로는 언론인이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동의하는 비율(76.7%)로 높게 나타났으며, 법조인과 국회의원은 66.7%로 동일한 비율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교정공무원의 70.0%가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69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장기징역에 대한 인식(전문가)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동의	동의안함
전문가(전체)	100	15.0%	51.0%	23.0%	9.0%	2.0%	66.0%	32.0%
법조인	54	11.1%	55.6%	20.4%	11.1%	1.9%	66.7%	31.5%
언론인	30	26.7%	50.0%	20.0%	0.0%	3.3%	76.7%	20.0%
국회의원	6	16.7%	50.0%	33.3%	0.0%	0.0%	66.7%	33.3%
교정공무원	10	0.0%	30.0%	40.0%	30.0%	0.0%	30.0%	70.0%

다.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77.7%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27.7%, 대체로 동의 50.0%).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5%로 나타났다(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16.9%, 전혀 동의하지 않음 4.6%).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문가들이 일반국민(66.9%)들에 비하여 10.8%p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 응답자 전원이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비율은 시민단체(87.1%)와 법조인(83.0%)에서도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언론인의 경우 일반시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교정공무원들의 경우에는 40.0%로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Ⅲ-70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 찬성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일반국민	1000	13.4%	53.5%	23.4%	8.5%	1.2%	66.9%	31.9%
전문가	130	27.7%	50.0%	16.9%	4.6%	0.8%	77.7%	21.5%
법조인	53	20.8%	62.3%	11.3%	5.7%	0.0%	83.0%	17.0%
시민단체	31	51.6%	35.5%	12.9%	0.0%	0.0%	87.1%	12.9%

언론인	30	30.0%	36.7%	26.7%	3.3%	3.3%	66.7%	30.0%
국회의원	6	0.0%	100.0%	0.0%	0.0%	0.0%	100.0%	0.0%
교정공무원	10	0.0%	40.0%	40.0%	20.0%	0.0%	40.0%	60.0%

3. 사형제도 폐지의 국제흐름과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의 57.6%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 맞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16.1%, 전혀 그렇지 않다 31.1%). 반면에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9%로 나타났다(그렇다 37.1%, 매우 그렇다 3.8%). 이러한 결과는 일반국민들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79.4%가 국제적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4%로 조사되었다.

표 Ⅲ-71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제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유지의 동의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기타	사형제도 유지	사형제도 폐지
일반국민	1000	23.7%	55.7%	16.1%	3.3%	1.2%	79.4%	19.4%
전문가	132	3.8%	37.1%	26.5%	31.1%	1.5%	40.9%	57.6%
법조인	54	1.9%	38.9%	29.6%	27.8%	1.9%	40.7%	57.4%
시민단체	32	3.1%	15.6%	21.9%	59.4%	0.0%	18.8%	81.3%
언론인	30	6.7%	33.3%	33.3%	23.3%	3.3%	40.0%	56.7%
국회의원	6	0.0%	66.7%	33.3%	0.0%	0.0%	66.7%	33.3%
교정공무원	10	10.0%	90.0%	0.0%	0.0%	0.0%	100.0%	0.0%

4.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견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6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동의 32.6%, 대체로 동의 30.3%). 반면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6%로 나타나(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1.2%, 전혀 동의하지 않음 14.4%) 동의하는 비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비교할 때, 전문가들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비율이 일반국민(37.5%)에 비하여 25.4%p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6.5%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문분야별로는 시민단체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비율이 90.6%로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법조인과 언론인은 60%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교정공무원은 각각 16.7%와 20.0% 수준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동의여부 비교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일반국민	1000	7.6%	29.9%	42.1%	20.0%	0.4%	37.5%	62.1%
전문가	132	32.6%	30.3%	21.2%	14.4%	1.5%	62.9%	35.6%
법조인	54	31.5%	29.6%	22.2%	16.7%	0.0%	61.1%	38.9%
시민단체	32	56.3%	34.4%	6.3%	3.1%	0.0%	90.6%	9.4%
언론인	30	23.3%	36.7%	20.0%	13.3%	6.7%	60.0%	33.3%
국회의원	6	0.0%	16.7%	50.0%	33.3%	0.0%	16.7%	83.3%
교정공무원	10	10.0%	10.0%	50.0%	30.0%	0.0%	20.0%	80.0%

제4절 전문 분야별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인식

1. 시민단체 대상 사형제도에 폐지시 인권 및 피해자 보호관련 우려사항

사형제도 폐지 시 우려사항과 관련하여 전문가 공통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한 결과, 전문가 집단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만한 상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인권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20 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무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사형(집행)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권관련 단체 관계자 A

“살인범죄피해 유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살인범들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해바라기'에서도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원망하고 증오하기 보다는 오히려 친아들처럼 보살핌으로써 살인범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이 그렇지 않지만 우리 (피해자) 상담사들도 분노와 증오는 치유의 효과보다는 (피해자) 자신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가능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 관계자 B

반면,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형이 가지고 있는 위하력이 사라져 범죄의 증가하고 사적복수의 수단으로 살인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살인에는 계획적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피해자 촉발, 피해자 유발 살인의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러한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피해자들은 '이렇게 살 바에야 (가해자를) 죽이고 처벌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살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수단보다 살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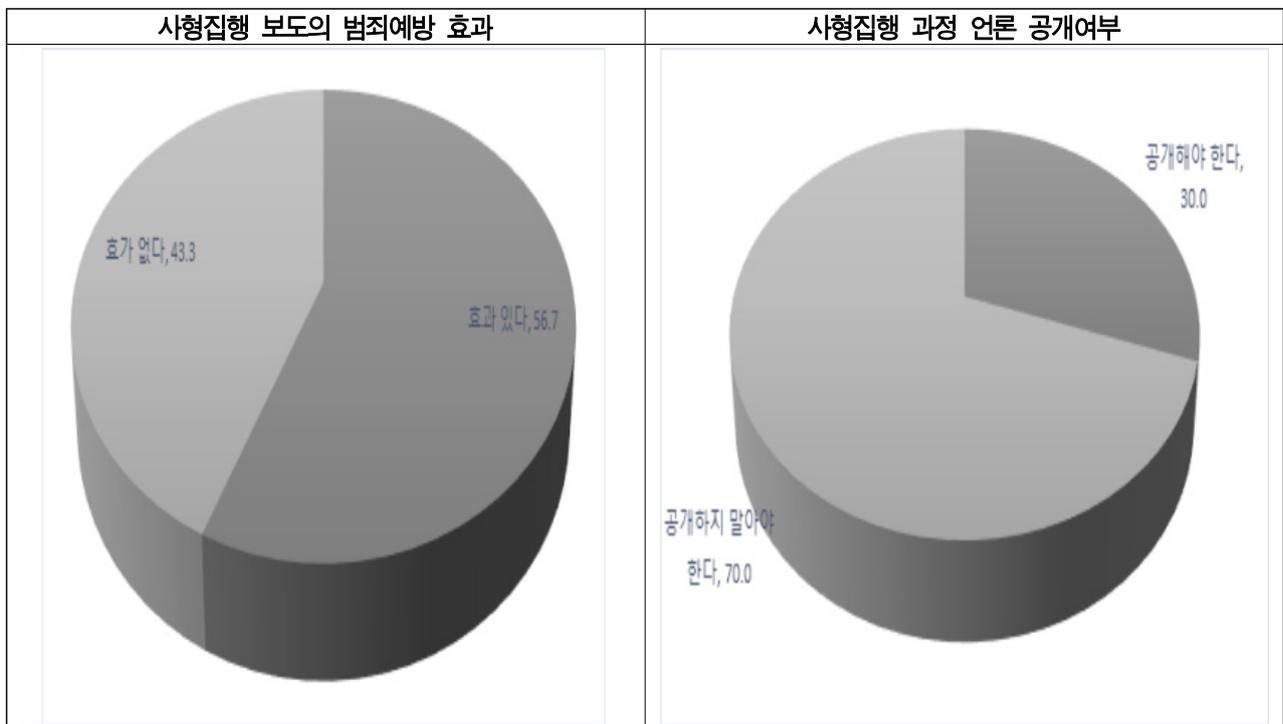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 관계자 C

그 밖에도 설문에서 제시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이 가지는 인권관련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더 큰 인권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응답하였다.

2. 언론인 대상 사형제도와 언론

언론인들의 56.7%는 사형집행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사형집행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은 30.0%로 나타났다.

그림 Ⅲ-39 언론인 대상 추가질문



사형집행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는 이유로 언론인들은 첫째, 사형제도의 취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형집행 과정의 언론보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둘째, 사형제도 나름대로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범죄 예방 차원 등을 고려했을 때도 그 절차와 과정을 (일부) 공개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의 사형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들의 견제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 비슷하게 사형은 국가의 강제력 행사 중 가장 강력한 행사 중 하나 이므로 사형수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매우 큰 공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 또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형집행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반면 사형집행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언론인들은 첫째, 사형수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또는 인권보호를 위해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형집행 과정이 대중이 알아야 할 공공적이고 보편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며, (모방살인 등)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사형은 선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형 집행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인 만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송내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한 범죄예방효과보다는 국가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 더 크다는 점과 사형제 자체가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더러 사회에 하등 이득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3. 범조인 대상 추가 조사항목

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 동의여부

범조인들은 61.5%가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 판결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판사 75.7%, 검사 77.8%, 변호사 55.5%, 대학교수 55.5%로 주로 판사와 검사가 합헌에 동의하는 비율을 높았고,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합헌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73 범조인들의 헌법재판소의 사형 합헌판결 동의여부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범조인	52	15.4%	46.2%	25.0%	11.5%	1.9%	61.5%	36.5%
판사	11	9.1%	63.6%	27.3%	0.0%	0.0%	72.7%	27.3%
검사	9	11.1%	66.7%	0.0%	11.1%	11.1%	77.8%	11.1%
변호사	23	17.4%	39.1%	34.8%	8.7%	0.0%	56.5%	43.5%
대학교수	9	22.2%	22.2%	22.2%	33.3%	0.0%	44.4%	55.6%

나. 사형제도와 우리나라의 안전성 여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과 사회현실은 사형을 존속시킬 만큼 불안전하다’는 질문에 범조인들의 69.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51.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7.3%), 법조인들의 25.0%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동의 7.7%, 대체로 동의 17.3%). 법조인별로는 대학교수 88.9%, 변호사 78.3%, 검사 44.4%, 판사 54.5%가 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74 법조인들의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에 따른 사회상황 인식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법조인	52	7.7%	17.3%	51.9%	17.3%	5.8%	25.0%	69.2%
판사	11	9.1%	27.3%	45.5%	9.1%	9.1%	36.4%	54.5%
검사	9	11.1%	33.3%	33.3%	11.1%	11.1%	44.4%	44.4%
변호사	23	8.7%	8.7%	56.5%	21.7%	4.3%	17.4%	78.3%
대학교수	9	0.0%	11.1%	66.7%	22.2%	0.0%	11.1%	88.9%

다. 사형집행과 범죄예방 효과

'사형을 집행하면,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질문에 법조인들의 6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48.1%,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4%), 30.8%가 사형집행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동의 7.7%, 대체로 동의 23.1%). 법조인별로는 대학교수 77.8%, 변호사 82.6%, 검사 22.2%, 판사 45.5%가 사형집행이 범죄예방 효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5 법조인들의 사형집행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매우 동의	대체로 동의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기타	동의	동의안함
법조인	52	7.7%	23.1%	48.1%	15.4%	5.8%	30.8%	63.5%
판사	11	9.1%	45.5%	27.3%	18.2%	0.0%	54.5%	45.5%
검사	9	11.1%	44.4%	11.1%	11.1%	22.2%	55.6%	22.2%
변호사	23	8.7%	4.3%	69.6%	13.0%	4.3%	13.0%	82.6%
대학교수	9	0.0%	22.2%	55.6%	22.2%	0.0%	22.2%	77.8%

라. 우리나라 재판의 오판 비율

사형선고의 오판율과 관련하여 법조인들의 37.7%가 오판율이 2~5% 이하라고 응답하였고, 1% 이하(32.1%), 6~10% 이하(17.0%), 11~20% 이하(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형선고의 오판율이 1%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판사(45.5%)와 검사(55.6%)일 때 변호사(26.1%)와 대학교수(10.0%)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6 법조인들의 사형선고의 오판율 인식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1% 이하	2~5% 이하	6~10% 이하	11~20% 이하
법조인	52	32.1%	37.7%	17.0%	13.2%
판사	11	45.5%	27.3%	18.2%	9.1%
검사	9	55.6%	33.3%	0.0%	11.1%
변호사	23	26.1%	39.1%	17.4%	17.4%
대학교수	9	10.0%	50.0%	30.0%	10.0%

마. 주요범죄별 사형제도의 찬반여부 및 대체형벌

다음의 표는 주요 죄형별 사형제도의 찬반여부와 대체형벌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정치범, 공안사범, 군사사범의 경우 사형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형사범과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사형을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형벌에 있어서도 일반형사범과 특정범죄사범의 경우에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찬성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정치범과 공안사범, 군사사범의 경우에는 대체형벌로 상대적 종신형을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77 주요 죄형별 사형제도 찬반여부와 대체형벌

(단위 : 명/%)

구분	응답자수	찬성여부		대체형벌 유형별 찬성 비율				
		사형 찬성	사형 반대	절대적종신형	절대적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	상대적 종신형	무기징역	
일반 형사범	살인죄	53	43.4	56.6	48.3%	34.5%	17.2%	0.0%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죄	53	30.2	69.8	25.7%	48.6%	22.9%	2.9%
	강도살인죄	53	45.3	54.7	46.4%	35.7%	17.9%	0.0%
	강간살인죄	53	45.3	54.7	57.1%	28.6%	14.3%	0.0%
특정 범죄	상해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18	34.0	66.0	51.5%	27.3%	21.2%	0.0%
	살인범의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18	35.3	64.7	57.6%	30.3%	12.1%	0.0%
정치범	내란목적 살인죄	14	26.4	73.6	40.5%	27.0%	27.0%	5.4%
	정권탈취 목적의 반란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8	15.1	84.9	31.9%	31.9%	31.9%	4.3%

공안 사범	여적죄	53	18.9	81.1	38.6%	27.3%	25.0%	9.1%
	간첩죄	53	11.3	88.7	19.1%	21.3%	40.4%	19.1%
	반국가단체의 구성의 수괴, 중요임무종사죄	53	13.2	86.8	21.4%	28.6%	33.3%	16.7%
군사 사범	정권탈취목적이 없는 반란과 중요임무 종사죄	4	7.5	92.5	17.8%	24.4%	40.0%	17.8%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	7	13.2	86.8	14.3%	23.8%	40.5%	21.4%
	적진에서의 명령 등의 허위전달죄	7	13.2	86.8	16.7%	23.8%	38.1%	21.4%

4. 교정공무원 대상 추가 조사항목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에서 우선 교수형을 대신할 사형집행방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0%가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0%가 주사형을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형수(사형확정자)들에게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70%가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매우 동의 60%, 대체로 동의 10%),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와 기타 20%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형확정자들이 일반수형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형확정자의 수용형태에서 혼거수용에 동의한다는 비율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혼거수용이 아닌 독거수용을 해야 하는 이유도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사형확정자들이 일반수형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40%) 심지어 일반수형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60%) 하였다. 사형확정자들의 면회와 관련하여서는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90%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면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연히 면회를 하게 해야 한다는 다소 자유로운 면회허용주의는 20% 수준이었으며, 70%가 만나게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사형확정자들의 수형태도와 관련하여 교정공무원들의 70%가 일반수형자와 비슷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0%는 일반수형자에 비하여 교화가 느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모두가 사형집행에 참관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형집행에 참관하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면 응답자 전원인 '참관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참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사형집행참관 경험 및 사형 집행 이후 심경의 변화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형집행에 참관한 교도관들이 없어서 추가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5. 국회의원 관련 추가 조사항목

본 연구를 개시할 때는 국회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정당별로 할당하여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들의 응답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부득이 15개 국회의원실 소속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 각 1인을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³²⁰⁾ 다음은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 15인에 대한 추가설문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국회의원 등에 대한 추가조사항목은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의 폐지에 동의하시겠습니까?”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50.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의원보좌관들은 28.6%가 동의, 7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형폐지와 같은 입법정책이 국민여론에 의해 지나치게 좌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생각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아무래도 국민여론을 도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동의비율보다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표 Ⅲ-78 사형제도 폐지여론에 대한 동의여부

(단위 : N=21, 명/%)

구분	응답자수	동의	동의안함
전체	21	28.6%	71.4%
국회의원	6	50.0%	50.0%
국회의원실 (의원보좌관 등)	15	28.6%	71.4%

320) 정당별로 구별하여 1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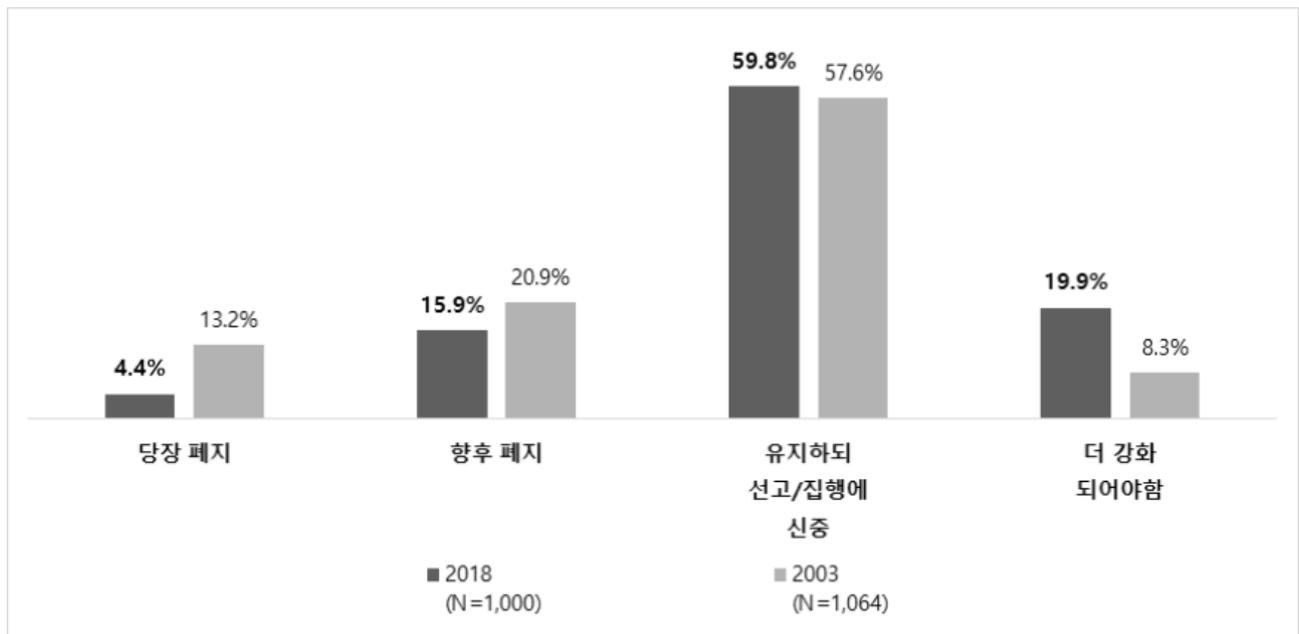
제4장 조사의 합의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에 대한 조사의 합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2003년과 조사하여 비교하면,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2%p와 11.6%p로 증가한 반면,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의견과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향후 폐지의 의견은 각각 8.8%p와 5.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형제도 관련 의견들에 언론보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일반국민들의 대부분이 언론보도(82.5%)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사형’이 언론에 보도된 횟수는 평균 638회이며, 대체로 2004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에 900여회 이상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과거 2003년 조사에 비하여 ‘사형’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사형’관련 언론 보도의 접촉기회도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횟수가 많을 경우 사형제도 유지하자는 의견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림 Ⅲ-40 일반국민들의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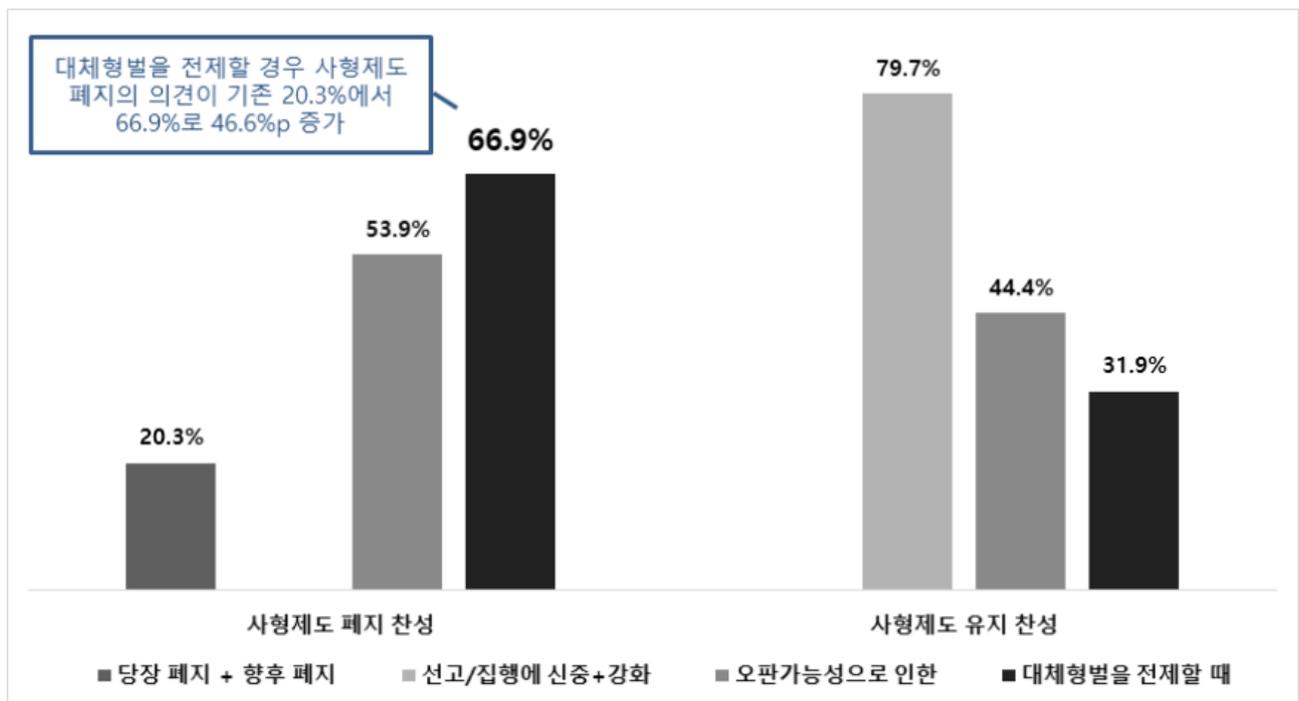
기본권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으로 ‘자유권(36.6%)’이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명권(27.7%)이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응답, 반면, 국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35.2%)’이라 응답하고, 다음으로 자유권(24.1%)이라 응답하였다. 이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의 정책효과(71.0%)과 및 범죄예방효과(84.5%)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형벌목적에도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반국민들은 비교적 제한적인 정보로 사형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정보가 사형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사형제도 폐지 의견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장 폐지(4.4%), 향후 폐지(15.9%)였던 것이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사형폐지 53.9%,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폐지는 66.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의 상황변화에 따른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형제도 유지 찬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황변화에 따라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77.7%가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일반국민들에 비하여 10.8%p 높음) 볼 때 사회 전반에 걸쳐 대체형벌을 전제한 사형제도 폐지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Ⅲ-41 상황에 따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한편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는 주로 ‘절대적 종신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많이 동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유사하게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절대적 종신형(68.2%), 상대적 종신형(56.8%), 무기징역(54.5%)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37.5%, 전문가들의 62.9%가 동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분야별로는 시민단체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비율이 90.6%로 매우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법조인과 언론인은 60% 수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교정공무원

은 각각 16.7%와 20.0% 수준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시 일반국민들의 45.5%가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으며, ‘나와는 상관 없다’는 응답도 6.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 혹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소극적 반대 37.0%, 적극적 반대 10.5%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극적 혹은 적극적 반대의사는 대부분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사형제도 폐지결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70.2%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 결정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1980년 4월호, 1980.
- 강석구/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 권오걸,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법학연구 제17 권 제4호, 한국법학회, 2017.
- 김기두, “사형제도”, 법정 1965년 10월호, 1965.
-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 김남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8권,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 김상겸, “사형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 국회보 제455호, 국회사무처, 2004.
-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호,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원, 2005.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법무부 2008.
- 김영옥, “사형폐지에 대한 대책”, 비교법학 제2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2.
- 김영철, 조현욱,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일감법학 제29호, 건국대 학교 법학 연구소, 2014.
- 김용우, “사형제도 존속문제”, 현안분석 제37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1.
- 김은영/공정식, “살인범죄 피해자들의 종결감과 사형선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찰학논총 제11 권 제3 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 김인선, “한국의 사형집행 현황과 사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재고”,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1호,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2004.
- 김인선,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위헌성 여부,” 교정 제287호, 법무부, 2000.
- 김일수,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범·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 김재윤, “사형 구제제도의 현황과 완비,”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0호, 한국법학회, 2005.
- 김중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17호, 한양법학회, 2005.
-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한국교정학회, 2003.
- 김창균, “특별형법의 속성과 문제점,”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1999.
- 김한균, “사형의 양형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제54호, 법무부, 2017.
- 남홍우, 형법강의(총론), 일조각, 1969.

- 대검찰청,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존폐논쟁”, 범죄분석 통권 제134호, 2001.
- 대한변호협회, 2017년도 인권보고서, 제32집, 2018.
- 류지영, “사형의 위헌성”, 논문집 제20호, 우석대학교, 1998.
- 류지영, “자유 의사와 사형”, 논문집 제14호, 전주우석대학교, 1992.
-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용역보고서, 2006.11.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5호, 한양법학회, 2009.
-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21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박찬걸,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30호, 한양법학회, 2010.
- 박학모, 임석순, 오영근, 전지연, 이용식, 이승호, 한영수, 정승환, 이진국, 류부곤, 김선택, 윤정인,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연구(III)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국원, 2017
- 배성범,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1998.
-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수립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17.10.
- 법무부, 형사법개정 연구자료집, 2009.
- 법무연감, 법무부, 2008.
- 법무연감, 법무부, 1998.
- 손동권, “사형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 손해목, 형법총론 8인 공저, 법문사, 1988
- 송문호, “한국형사제재의 발전경향”, 법학연구 제38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승재현/조성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제3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135~156쪽;
- 신양균, “사형확정자의 처우”, 법조 제670호, 법조협회.
- 신양균,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신진규, 사형, 형사법강좌2, 박영사, 1984.
-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사형폐지론”, 법학논집 제34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심재우,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형벌인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29호, 1995년 5-6 월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여경수, “수형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인권과 정의 제449호, 대한변호사회, 2015.
- 오경식,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 현황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15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3
- 유병철,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0호, 한국교정학회, 2013.
- 유영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억울한가, 타커스, 2016.
- 윤영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12권제3호, 중앙법학회, 2010.
-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이건호, 형법학개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 이경렬, “중국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제4호, 한국비교형 사법학회, 2015.
- 이경렬, “사형사법: 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이덕인,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제26권제2호,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2015.
- 이덕인,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전망,” 입법과 정책 제7권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이덕인, “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26권제2호, 한국형 사정책 학회, 2014.
- 이덕인,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5권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이덕인, “사형제도의 실증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 이덕인, “이승만정권 초기의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 제주4.3사건 및 여순사건을 중심으로,” 경 회법학 제 49권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이덕인,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23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 이보영/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법학연구 제25호, 한국 법학회, 2007.
- 이상돈, “사형폐지론의 이론과 정책”,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심은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 박영사, 2006.
- 이상혁,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현재의 사형제도,” 사목 제246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이승준,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법학연구 제17권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이원경, “사형의 대체방안으로서 종신형제도에 관한 제 문제,” 교정연구 제69호, 한국교정학회, 2015.
- 이인영,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대체형으로서 종신형 도입에 관한 논의”, 한림법학 FORUM 제15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6.
- 이재석,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8집제2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정원, “사형 대상범죄의 축소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이진국, 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 이호중, “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 동아법학 제5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2011.
- 이훈동, “전환기의 한국형법: 사형제도의 새로운 시작”, 「외법논집」 제2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 소, 2007.
-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 제16호, 한국교정학회, 2002.
- 전지연,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제2호-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 정규만,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 제182호, 국회사무처, 1989.
- 정봉휘, “사형존폐론의 이론사적 계보”, 손해목박사회갑기념논문집, 1993.
-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4.
- 제18대 국회 제278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8.11.17.
- 제18대 국회 제278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08.11.19.
- 제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록, 2007.08.08.
- 제15대 국회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4호, 1999.12.15.
- 제33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5.8.11.
- 제33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록, 2015.8.11.
- 조국, “사형폐지 소론”, 형사정책 제20권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 조근석,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사형집행,” 법학논집 제13권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 이념논쟁과 국민정서,”형사정책연구 제17권제2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2006.
-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7권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 1986.
- 차용석, “흉악범과 극형”, 신동아 1983년 7월호, 동아일보사, 1983.
- 최명문,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8
- 하태영, “사형제도의 폐지”, 경남법학 제13호,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하태훈,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 한국갤럽, 범죄자 처벌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9/11.
- 한국법제연구원,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2015.
- 한국법제연구원,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2008.
-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201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9-25-05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총칙 개정안: 죄수, 형벌분야, 200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9-01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1)-사법개혁과 형사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7-09-02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1)-사법개혁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조사, 2007.
- 한영수,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13 봄호)
- 한용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사형집행현황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 사형-그 법 이론적, 정책적 검토,” 사목 제246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허완중,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38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서울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9.02.18.
-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6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티스 제31권제2호, 한국법학원, 1998.
- 홍완식, 법과 사회,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3.
- 황병돈,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8권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6.

■ 외국문헌

- Abolition, Badinter Robert, One Man's Battle Against the Death Penalty, UPNE, 2008.
-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Corrections Compendium. Vol. 3 (9), 1984.
- Arnold Catharine, Underworld London: Crime and Punishment in the Capital City, Simon and Schuster, 2012.
- Ashley Nellis, Life Goes On: The Historic Rise In Life Sentence In America, The Sentencing Project, 2013.
- Astolfo Di Amato, Criminal Law in Italy,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 Bill Bowring, Law, Rights and Ideology in Russia: Landmarks in the Destiny of a Great Power, Routledge, 2013.
- Brandon L. Garrett, End of Its Rope: How Killing the Death Penalty Can Revive Criminal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 Charles J. Ogletree, Jr., Austin Sarat,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New Death Penalty?, NYU Press, 2012.
- Claus Kress, Flavia Lattanzi, The Rome Statute and Domestic Legal Orders: General aspects and constitutional issues, Editrice il Sirente, 2000.
- Council of Europe, The Death Penalty: Abolition in Europe, vol. 285, Council of Europe, 1999.
- David Lanham, David Wood, Bronwyn Bartal, Rob Evans, Criminal Laws in Australia, Federation Press, 2006.

- Dirk van Zyl Smit, Catherine Appleton, *Life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Bloomsbury Publishing, 2016.
- Dirk Van Zyl Smit, Frieder Dünkel, *Imprisonment Today and Tomorrow: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isoners' Rights and Prison Condi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 Franklin E. Zimring & Gordon Hawkins, *Capital Punishment and The American Agenda* 37, 1986.
- Glenn R. Schmitt, Hyun J. Konfrst, *Life Sentences in the Federal System*,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One Columbus Circle, N.E. Washington, DC, 2015.
- Grasberger Ulrike,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atiken der Höchststrafen in den USA u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Todesstrafe und lebenslange Freiheitsstrafe*, Forum-Verlag Godesberg, 1996.
- Great Britain, Parliament.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Towards Effective Sentencing: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vol.1, The Stationery Office, 2008.
- Great Britain, Parliament: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HL 189, HC 1293 – *Legislative Scrutiny: (1)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and (2) Deregulation Bill*, The Stationery Office, 2014.
- Hirschel David/Hirschel J. David/Wakefield William O./Sasse Scott,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Jones & Bartlett Learning, 2008.
- Horder Jeremy, *Homicide and the Politics of Law Reform*, OUP Oxford, 2012.
- Hostettler John, *A History of Criminal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Waterside Press, 2009.
- Hötzel Yvonne, *Debatten um die Todesstra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1949 bis 1990*, Walter de Gruyter, 2011.
- Irma Kovčo Vukadin, Vladimira Žakman-Ban, Anita Jandrić Nišević, “Prisoner Rehabilitation in Croati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Security*,” year 12 no.2, 2010.
- Jensen/Eric L., “Life Imprisonment as a Penal Policy,” *Riev. int. estud. vascos.* 55, 1, 2010.
- Johnson David T/Zimring Franklin E, *The Next Frontier: National Development, Political Change, and the Death Penalty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Jon-Mirena Landa Gorostiza, *Prisión y alternativas en el nuevo Código Penal tras la reforma 2015*, Dykinson, 2016.
- Julián Carlos Ríos Martín, *Life imprisonment in Spain: An inhuman and unlawful punishment* (www.statewatch.org/.../no-259-life-imprisonment-in-Spain.pdf).
- K., Pastore, A. L., & Flanagan, T. J. (Eds.), *Source 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2*.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3.
- Kirstin Drenkhahn, Manuela Dudeck, Frieder Dünkel, *Long-Term Imprisonment and Human Rights*, Routledge, 2014.
- Konrad Buczkowski/Beata Czarnecka-Dzialuk/Witold Klaus/Anna Kossowska/Irena Rzepliska/Dagmara

- Woniakowska-Fajst/Dobrochna Wójcik, *Criminality and Criminal Justice in Contemporary Poland: Sociopol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016.
- Lars Bo Langsted, Peter Garde, Vagn Greve, *Criminal Law in Denmark*,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 Leigey Margaret E., *The Forgotten Men: Serving a Life without Parole Sentenc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 Liptak, A., *Serving Life with No Chance at Redemption*. The New York Times, 2005.
- Maguire, K., Pastore, A. L., & Flanagan, T. J. (Eds.), 1993.
- Mai Sato, *The Death Penalty in Japan: Will the Public Tolerate Aboli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3.
- Matti Jouts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Finland: A General Introduction*, vol.3, Ministry of Justice, Finland, 1995,
- Mauer, M., King, R., & Young, M., *The Meaning of ‘Life’: Long Prison Sentences in Context*. Washington, D. C.: The Sentencing Project, 2004.
- Nellis, A., & King, R. S., *No Exit: The Expanding Use of Life Sentences in America*. Washington, D.\C.: The Sentencing Project, 2009.
- Nuttall Christopher,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Europe*, Council of Europe, 2000.
- P. J. P. Tak, *The Dutch criminal justice system*, Wolf Legal Publishers, 2008.
- Peter Scharff Smith, Thomas Ugelvik, *Scandinavian Penal History, Culture and Prison Practice: Embraced By the Welfare State?*, Springer, 2017.
- Piotr Kadocznny/Marcin Wolny, *European Prison Observatory: Prison conditions in Poland*, European Prison Observatory, *Detention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2013.
- Robert Johnson,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Other Death Penalty Notes on Life Under Sentence of Death by Incarceration,”*The Prison Journal* Volume 88 Number 2, 2008.
- Roger Hood, *The Injustice of Death Penalty, in the Machinery of Death: A Shocking Indictment of Capital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175*, Amnesty International, 1995.
- Ron Eyerman, *The Assassination of Theo van Gogh: From Social Drama to Cultural Trauma*, Duke University Press, 2008.
- Source 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2.
- Susanna Marietti, *European Prison Observatory: Prison conditions in Italy*, European Prison Observatory, *Detention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 2013.
- Tuğrul Ansay, Don Wallace, *Introduction to Turkish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United Nations Office at Vienna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 *Life Imprisonment*, United Nations, 1994.

第59回 人權擁護大会 シンポジウム 第3 分科会 基調報告書, 死刑廃止と拘禁刑の改革を考える-寛容と共生の社会
をめざして-, 日本弁護士連合会, 2016.10.6., 173頁 이하.

[8]

○ ○ ○ ○ **검찰청**

()

:

:

1.

2.

. . . (, ,)

: 1 . .

:

:

㉠

210mm × 297mm(80g/㎡)

[9]

○ ○ ○ ○ **검찰청**

()

. . .

:

:

1.

2.

()

㉠

210mm × 297mm(80g/m²)

사형집행조서

· · ·			
· · ·			
, · · ·			
, · · ·			
·			
5 ·			
· · ·			
인			
인			
인			

210mm × 297mm(80g/㎡)

[13]

○ ○ ○ ○ 검찰청

()

: () :
 : (•) : ⑨

		()
		• • •
	•	
		• • •

1. 1
2. 1 . .

210mm × 297mm(80g/m²)

[14]

○ ○ ○ ○ 검찰청

()

:
:
:
:

:

	. . .
	. . .
	() 826.1 (. . .)

210mm × 297mm(80g/m²)

[21]

형집행정지결정

		()
		. . .
	.	
		. . .
		()

. . .

210mm × 297mm(80g/㎡)

[22]

○ ○ ○ ○ 검찰청

()

· · ·
: :
: : 인

		()
		· · ·
	·	
		· · ·

210mm × 297mm(80g/m²)

형집행정지자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집행정지자기록

				()	

210mm × 297mm(80g/㎡)

[15]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

()						.	
						()	
	: :						
	: : :						

210mm × 297mm[80g/m²]

[국민인식 조사 설문지(일반국민/시민단체)]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일반국민/시민단체)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사형제도 및 형벌제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
 조 사 기 관 : 쥬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문의 ☎ : 055-249-2129, E-mail : whitecrow@nate.com)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기본 현황

SQ1) 성별 (QUOTA확인)	1) 남성	2) 여성	3) 기타
SQ2) 연령 (QUOTA확인)	만 _____ 세		
SQ3) 거주지 (QUOTA확인)	01) 서울	07) 울산	13) 전남
	02) 부산	08) 경기	14) 경북
	03) 대구	09) 강원	15) 경남
	04) 인천	10) 충북	16) 제주
	05) 광주	11) 충남(세종)	17) 그 외 (☞면접중단)
	06) 대전	12) 전북	
	()군/구	()읍/면/동	

먼저,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1.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본권 유형	의미
1)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5) 청구권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6) 생명권	인간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격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

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_____)

문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 2)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 3) 모른다 ☞ 문 4번으로
- 4) 전혀 모른다 ☞ 문 4번으로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언론보도
- 2) 학교교육
- 3) 논문 등 전문자료
- 4) 기타 (_____)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필요함
- 2) 대체로 필요함
- 3) 대체로 필요 없음
- 4) 전혀 필요 없음
- 5)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효과적임
- 2) 대체로 효과적임
- 3) 대체로 효과 없음
- 4) 전혀 효과 없음
- 5) 기타 (_____)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많다
- 2) 약간 있다
- 3) 거의 없다
- 4) 전혀 없다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기타 (_____)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 5) 기타 (_____)

사형제도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효과(위하적 효과)는 남겨두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배제하여 생명권 존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부터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문12.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3.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매우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있음	대체로 효과 없음	전혀 효과 없음	잘 모름
1)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사형제도 유지·강화	①	②	③	④	⑤
5)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①	②	③	④	⑤
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14.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문14-1.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어떠한 이유로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수감한다.(절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2.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 수형자가 작업(노역)의 대가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3.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기간(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상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4.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무기징역)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례1]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유죄에서 무죄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 가운데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31.5%), 피해자, 목격자가 착각한 진술(70%), 과학적 증거의 오류(13.9%)가 오판의 원인이었습니다.” *

[사례2]1974년 국가정보기관은 북한의 지령에 받아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중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8시간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32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하여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문15.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1) 매우 동의함 ☞ 문 16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 문 16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문 15-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문 15-1번으로
- 5) 기타 (_____)

문15-1. (문15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 오판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형폐지를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경찰·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3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법관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 2) DNA 검사 등과 같은 첨단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 3) 오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 4) 기타 (_____)

문16. 위의 설명과 같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오판)으로 인하여 죄가 없음에도 실제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주어 보상하면 된다.
- 2)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명예를 회복해 주면 된다.
- 3)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 4) 불행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 5) 기타 (_____)

문17.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형제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예 ☞ 문 17-1번으로
- 2) 아니요 ☞ 문 18번으로

문17-1. (문17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두 체크해 주세요? (중복응답)

- 1)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 6) 기타 (_____)

문18.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9. 이번 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나요?

- 1) 예 ☞ 문 19-1번으로
- 2) 아니오 ☞ 문 20번으로

문19-1.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가 귀하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 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3)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4)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문19-2. (문19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_____)

- 1)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 6)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 01)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02)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 03)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 04) 전문대학(4년제 미만) 졸업
- 05)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 06) 대학원 재학 이상
- 07) 무학
- 08) 기타 (_____)

DQ2.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 01) 전문/관리직
- 02) 행정직/관리직
- 03) 일반 사무직
- 04) 단순 노무직
- 05) 개인사업/자영업
- 06) 생산직/기능직 피고용인
- 07) 판매·서비스업·영업직 피고용인
- 08) 농림/어업/축산업
- 09) 주부
- 10) 학생
- 11) 무직
- 12) 기타

DQ3. 귀하의 종교는?

- 01) 기독교
- 02) 불교
- 03) 천주교
- 04) 무교
- 05) 기타 (_____)

DQ4. 귀하와 귀하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소득 _____ 가구소득 _____

- 01) 소득 없음
- 02) 100만원 미만
- 03) 100-200만원 미만
- 04) 200-300만원 미만
- 05) 300-400만원 미만
- 06) 400-500만원 미만
- 07) 600-700만원 미만
- 08) 700-1,000만원 미만
- 09) 1,000만원 이상
- 10) 기타 (_____)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문가 대상별 조사 설문지]

1. 언론인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언론인)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사형제도 및 형벌제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

조 사 기 관 : 쥬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문의 ☎ : 055-249-2129, E-mail : whitecrow@nate.com)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기본 현황

DQ1) 성별	1) 남성	2) 여성	3) 기타
DQ2) 연령	1) 20대	3) 40대	5) 60대
	2) 30대	4) 50대	6) 70세 이상
DQ3) 종교	01) 기독교	02) 불교	03) 천주교
	04) 무교	05) 기타 (_____)	

먼저,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1.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본권 유형	의미
1)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5) 청구권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6) 생명권	인간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격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

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_____)

문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2)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3) 모른다 ☞ 문 4번으로 4) 전혀 모른다 ☞ 문 4번으로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언론보도 2) 학교교육
 3) 논문 등 전문자료 4) 기타 (_____)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필요함 2) 대체로 필요함
 3) 대체로 필요 없음 4) 전혀 필요 없음
 5)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효과적임 2) 대체로 효과적임
 3) 대체로 효과 없음 4) 전혀 효과 없음
 5) 기타 (_____)

문5-1. 그 이유는?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기타 (_____)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 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 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3)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4)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 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 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 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 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10) 기타 (_____)

문 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가능)

- 1)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 2)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 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4)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 6) 기타 (_____)

문 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목적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응보)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자처벌을 통한 일반인들의 범행심리 위축 및 법준수 유도 (일반예방)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자 개개인의 반성 및 교정교화 (특별예방)	①	②	③	④	⑤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 5) 기타 (_____)

문12.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사형제도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효과(위하적 효과)는 남겨두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배제하여 생명권 존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부터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문13.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문15-4.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무기징역)**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5.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5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부과한다. (장기징역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례1]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유죄에서 무죄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 가운데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31.5%), 피해자, 목격자가 착각한 진술(70%), 과학적 증거의 오류(13.9%)가 오판의 원인이었습니다.” *

[사례2] 1974년 국가정보기관은 북한의 지령에 받아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중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8시간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32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하여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성준, “무죄판결과 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문16.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1) 매우 동의함 ⇨ 문 17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 문 17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5) 기타 (_____)

문20. 이번 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나요?

- 1) 예 ☞ 문 20-1번으로
- 2) 아니오 ☞ 문 21번으로

문20-1.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가 귀하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 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3)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4)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문20-2.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 6) 기타 ()

문21. 언론이 사형 집행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22.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하는 과정을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공개해야 한다. (22-1번 문항으로)
- 2)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2-2번 문항으로)

문22-1) 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2-2) 왜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법조인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법조인)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사형제도 및 형벌제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

조 사 기 관 : 쉼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문의 ☎ : 055-249-2129, E-mail : whitecrow@nate.com)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기본 현황

DQ1) 성별	1) 남성	2) 여성	3) 기타
DQ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세 이상
DQ3) 직무	01) 판사 04) 법학교수	02) 검사 05) 기타 (_____)	03) 변호사
DQ4) 종교	01) 기독교 04) 무교	02) 불교 05) 기타 (_____)	03) 천주교

먼저,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1.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본권 유형	의미
1)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5) 청구권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6) 생명권	인간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격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

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_____)

문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2)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3) 모른다 ☞ 문 4번으로 4) 전혀 모른다 ☞ 문 4번으로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언론보도 2) 학교교육
 3) 논문 등 전문자료 4) 기타 (_____)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필요함 2) 대체로 필요함
 3) 대체로 필요 없음 4) 전혀 필요 없음
 5)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효과적임 2) 대체로 효과적임
 3) 대체로 효과 없음 4) 전혀 효과 없음
 5) 기타 (_____)

문5-1. 그 이유는?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기타 (_____)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 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 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3)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4)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 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 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 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 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10) 기타 (_____)

문 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가능)

- 1)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 2)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 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4)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 6) 기타 (_____)

문 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목적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응보)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자처벌을 통한 일반인들의 범행심리 위축 및 법준수 유도 (일반예방)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자 개개인의 반성 및 교정교화 (특별예방)	①	②	③	④	⑤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 5) 기타 (_____)

문12.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사형제도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효과(위하적 효과)는 남겨두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배제하여 생명권 존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부터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문13.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매우 관심 있음	대체로 관심 있음	대체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잘 모른다
1)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사형제도 유지·강화	①	②	③	④	⑤
5)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①	②	③	④	⑤
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15.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문15-1.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어떠한 이유로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수감한다.(절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2.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 수형자가 작업(노역)의 대가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3.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기간(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상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4.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무기징역)**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5.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5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부과한다. (장기징역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례1]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유죄에서 무죄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 가운데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31.5%), 피해자, 목격자가 착각한 진술(70%), 과학적 증거의 오류(13.9%)가 오판의 원인이었습니다.” *

[사례2] 1974년 국가정보기관은 북한의 지령에 받아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중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8시간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32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하여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성준, “무죄판결과 법원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문16. 귀하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1) 매우 동의함 ⇨ 문 17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 문 17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5) 기타 (_____)

문23. 다음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요 죄명들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사형찬반에 대한 의견과 반대할 경우 적합한 대체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명		찬반여부		(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사형 찬성	사형 반대	
일반형사범	살인죄·존속살해죄 (존속살해라함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죄 (가족이 죽음을 강요하여 죽인 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강도살인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강간살인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특정범죄	살해목적미성년자악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살인범의보복범죄에대한가중처벌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정치범	내란목적살인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정권탈취목적의반란수괴·중요임무종사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

죄명		찬반여부		(반대할 경우) 대체형벌
		사형 찬성	사형 반대	
공 안 사 범	어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반국가단체의구성외수과중요임 무종사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군 사 범 죄	정권탈취목적이없는반란수과중 요임무종사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반란목적의군용물탈취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적전에서의명령등의허위전달죄	①	②	1) 절대적 종신형 2) 상대적 종신형 3) 무기징역형 4) 기타(_____)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교정공무원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교도관)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사형제도 및 형벌제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

조사기관 :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문의 ☎ : 055-249-2129, E-mail : whitecrow@nate.com)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기본 현황

DQ1) 성별	1) 남성	2) 여성	3) 기타
DQ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세 이상
DQ3) 직무	01) 교도관	02) 교정위원	03) 기타 (_____)
DQ4) 종교	01) 기독교 04) 무교	02) 불교 05) 기타 (_____)	03) 천주교

먼저,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1.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본권 유형	의미
1)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5) 청구권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6) 생명권	인간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격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

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_____)

문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2)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3) 모른다 ☞ 문 4번으로 4) 전혀 모른다 ☞ 문 4번으로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언론보도 2) 학교교육
 3) 논문 등 전문자료 4) 기타 (_____)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필요함 2) 대체로 필요함
 3) 대체로 필요 없음 4) 전혀 필요 없음
 5)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효과적임 2) 대체로 효과적임
 3) 대체로 효과 없음 4) 전혀 효과 없음
 5) 기타 (_____)

문5-1. 그 이유는?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기타 (_____)

문8. 만약 귀하가 범죄피해자의 가족이라면, 국가가 가해자의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분노, 증오, 슬픔 등의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예 (☞ 문 9로)
- 2) 아니오 (☞ 문 8-1로)

문8-1. 피해자가족에게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응답)

- 1) 신경·정신적 치료
- 2) 사형수(사형확정자) 및 사형수 가족과의 화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3)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취업지원, 학비 제공, 위로금 지급 등)
- 4) 기타 (_____)

문9.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문9-1.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2)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문9-2. 만약에 귀하의 가족이 중범죄의 피해자라고 가정할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2)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형제도의 유지와 폐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0.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1) 사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문 10-1번으로
- 2) 사형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 문 10-1번으로
- 3)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선고나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문 10-2 & 10-3번으로
- 4)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 ☞ 문 10-2 & 10-3번으로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 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 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3)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4)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 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 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 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 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10) 기타 (_____)

문 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가능)

- 1)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 2)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 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4)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 6) 기타 (_____)

문 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목적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응보)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자처벌을 통한 일반인들의 범행심리 위축 및 법준수 유도 (일반예방)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자 개개인의 반성 및 교정교화 (특별예방)	①	②	③	④	⑤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 5) 기타 (_____)

문12.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사형제도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효과(위하적 효과)는 남겨두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배제하여 생명권 존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부터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문13.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귀하는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범죄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매우 관심 있음	대체로 관심 있음	대체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잘 모른다
1) 해체된 가족기능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구성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대책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사형제도 유지·강화	①	②	③	④	⑤
5)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잠재적 범죄자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①	②	③	④	⑤
7)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15.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대안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문15-1.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어떠한 이유로도 사면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구금시설에 수감한다.(절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2.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 수형자가 작업(노역)의 대가로 얻게 되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절대적 종신형 + 징벌적 손해배상)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3.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상당한 기간(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상대적 종신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20. 이번 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나요?

- 1) 예 ☞ 문 20-1번으로
- 2) 아니오 ☞ 문 21번으로

문20-1.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가 귀하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 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3)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4)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문20-2.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귀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 6) 기타 ()

문21.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한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수형이 가장 적절하다.
- 2) 총살형
- 3) 전기의자형
- 4) 독극물형
- 5) 주사형
- 6) 기타 ()

문22. 사형수(사형확정자)에게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동의함 ☞문 23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문 23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문 22-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문 22-1번으로
- 5) 기타 ()

문22-1. (문22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23. 형집행법(§89)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형수(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수를 일반수용자와 혼거수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동의함 ☞문 24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문 24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문 23-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문 23-1번으로
- 5) 기타 (_____)

문23-1. (문22에서 3, 4번으로 응답한 경우)귀하는 왜 사형수(사형확정자)와 일반수용자를 분리하여 독거수용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형수(사형확정자)는 일반수형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 사형수(사형확정자)는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수형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 3) 기타 (_____)

문24. 사형집행 전 사형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면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당연히 만나게 해야 한다.
- 2) 만나게 하되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 3) 외부와의 접촉은 죽는 날까지 억제 되어야 한다.

문25.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의 수용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 1) 일반수용자와 비슷하다.
- 2) 일반수용자보다 훨씬 교화가 빨리 된다.
- 3) 일반수용자에 비해 교화가 늦게 된다 .
- 4) 잘 모르겠다.

문26. 귀하에게 사형집행에 참관하라는 명령이 전달된다면 참관하시겠습니까?

- 1) 전혀 참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2) 참관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참관 하겠다.
- 3)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 4) 기타 (_____)

문27. 귀하는 사형집행에 참관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 29-1번으로
- 2) 없다. ☞ 설문종료

4. 국회의원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사형제도와 대체형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향후 사형제도 및 형벌제도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소중한 연구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8월

조사의뢰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교수)

조 사 기 관 : 쉐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문의 ☎ : 055-249-2129, E-mail : whitecrow@nate.com)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기본 현황

DQ1) 성별	1) 남성	2) 여성	3) 기타
DQ2)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세 이상
DQ3) 소속정당	(_____)		
DQ4) 종교	01) 기독교 04) 무교	02) 불교 05) 기타 (_____)	03) 천주교

먼저, 생명권과 사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1.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사회권,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기본권 유형	의미
1)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2) 평등권	모든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사회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5) 청구권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
6) 생명권	인간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고 인격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

문1-1.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의원님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무엇인가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1-2. 위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사회권
5) 생명권 6) 기타 (_____)

문2. 사회정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 다수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은 보존되어야 한다.
3) 살인의 동기와 방법 등이 잔인한 살인범의 생명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기타 (_____)

문3. 의원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2) 알고 있다 ☞ 문 3-1번으로
 3) 모른다 ☞ 문 4번으로 4) 전혀 모른다 ☞ 문 4번으로

문3-1. (위 질문에서 1, 2로 응답한 경우) 의원님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 1) 언론보도 2) 학교교육
 3) 논문 등 전문자료 4) 기타 (_____)

문4.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필요함 2) 대체로 필요함
 3) 대체로 필요 없음 4) 전혀 필요 없음
 5) 기타 (_____)

문5.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효과적임 2) 대체로 효과적임
 3) 대체로 효과 없음 4) 전혀 효과 없음
 5) 기타 (_____)

문5-1. 그 이유는?

문6.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에서 잘못된 사형선고의 가능성(오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많다 2) 약간 있다 3) 거의 없다 4) 전혀 없다

문7.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998년 70개국에서 2017년에는 142개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2017년 23개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기타 (_____)

문10-1. (문10에서 1번, 2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 1)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 2)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 3) 사람(법관)이 판단하는 일이므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4)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 5)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 6)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인간적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7) 중범죄를 저지른 자도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 8) 사형제도가 범죄예방과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 9)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10) 기타 (_____)

문 10-2.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가능)

- 1)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 2)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 3)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 4) 사형수(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5)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 6) 기타 (_____)

문 10-3. (문10에서 3번, 4번 응답자의 경우) 사형제도가 다음의 형벌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목적	매우 부합	대체로 부합	대체로 부합되지 않음	전혀 부합되지 않음	잘 모르겠다
1)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보상 (응보)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자처벌을 통한 일반인들의 범행심리 위축 및 법준수 유도 (일반예방)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자 개개인의 반성 및 교정교화 (특별예방)	①	②	③	④	⑤

문11. 만약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행동할 생각이신가요?

- 1)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 2)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3) 사형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이나 시위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낼 것이다.
- 4) 사형제도가 있든 없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 5) 기타 (_____)

문12.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사형제도의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법률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효과(위하적 효과)는 남겨두면서 인권침해 요인을 배제하여 생명권 존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이라고 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부터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문13.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4. 다음은 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의원님은 중범죄 방지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문15-4.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무기징역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무기징역)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문15-5.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5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부과한다.** (장기징역형)

- 1) 매우 동의함
- 2) 대체로 동의함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의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의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례1]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간 유죄에서 무죄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 사건 540건 가운데 피고인 또는 공범의 허위 자백(31.5%), 피해자, 목격자가 착각한 진술(70%), 과학적 증거의 오류(13.9%)가 오판의 원인이었습니다.” *

[사례2] 1974년 국가정보기관은 북한의 지령에 받아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많은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 중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18시간 후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32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하여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가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2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 인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문16. 의원님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 1) 매우 동의함 ⇨ 문 17번으로
- 2) 대체로 동의함 ⇨ 문 17번으로
- 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4)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문 16-1번으로
- 5) 기타 (_____)

문20. 이번 설문조사가 사형제도의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나요?

- 1) 예 ☞ 문 20-1번으로
- 2) 아니오 ☞ 문 21번으로

문20-1.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가 의원님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 1)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다.
- 2)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 3) 사형제도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4) 사형제도를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인권 차원에서 더욱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문20-2. (문20에서 1번으로 응답한 경우)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서 의원님의 생각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오관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2) 독재자 등이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
- 3) 우리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
- 4)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점
- 5) 유엔에서 공식적인 사형집행 중단선언(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는 점
- 6) 기타 ()

문21.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높을 경우, 사형제도의 폐지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 1) 동의한다
- 2) 동의하지 않는다 ☞ 문 21-1번으로

문21-1. 그 이유는?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 인쇄일 | 2018년 10월 15일

| 발행일 | 2018년 10월 15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31

| F A X | 02)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다해 02-2266-9247

ISBN : 978-89-6114-643-2 93360 비매품